

## 장보고와 한국 해양네트워크의 역사

## 장보고와 한국 해양네트워크의 역사

---

발행처 ·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발행인 · 김재철

지은이 · 최덕수, 윤재운, 박찬홍, 이진한, 이욱, 김윤희

발행일 · 2006년 12월 31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한국무역센터 1803호

공급처 · 청아출판사

ISBN · 978-89-959164-4-5 03910

---

비매품

# 장보고와 한국 해양네트워킹의 역사

최덕수, 윤재운, 박찬홍, 이진한, 이욱, 김윤희 지음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 발간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 이 표현은 어릴 적부터 들어왔기 때문인지 이미 관용적 수사구가 되어 버린 느낌마저 든다. 더욱이 농경생활을 최상의 경제 가치로 생각했던 조선 시대의 경험 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거친 바다를 뚫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향해했던 옛사람들의 자취는 선뜻 머릿속에 떠오르는 않은, 그래서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은 채 기억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해상무역네트워크를 역사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에 6명의 연구자들이 함께 한 것도 역사적 경험을 되살려보자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2004년 봄 우리는 무역네트워크의 역사적 원형을 장보고의 무역활동에서 찾아들어가기 시작했다. 완도를 근거지로 중국 산둥 반도에서 상하이에 이르는 지역과 일본 큐슈 지역을 넘나들면서 무역활동을 펼쳤던 장보고의 무역활동에 주목하여 고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를 연결하여 한국의 해상무역네트워크의 발달사를 정리해보고자 했다.

해상무역네트워크의 작동과 그것을 둘러싼 정책은 시대마다 특징을 갖고 있었다. 해상무역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작동 방식이 존재했던 시대, 정책적 의지가 보다 더 부각되어 해상무역활동이 위축되거나 또는 작동방식이 드러나지 않았던 시대 그리고 개인, 집단, 국가라는 상이한 이해관계가 중첩되었던 과정 등이 우리가 발견한 무역네트워크의 발달사였다.

한편 우리의 공동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 큐슈대학에서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연구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2004년 11월 13일 일본 큐슈대학 한국연구센터와 함께 ‘동아시아 삼국의 지역네트워크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라는 제목 하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중국 푸단대학의 孫科志, 큐슈대학의 荒木和憲 등 동아시아 삼국의 해상무역네트워크 연구자들이 참석한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는 연구방법론과 연구관점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우리의 작업이 3년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야무지게 결심했던 처음의 의도가 자료와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고 자임할 수 없지만, 한국 해상무역네트워크의 역사를 시대적 특징에 따라 고찰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놓았다고 자평하고 싶다.

우리 연구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처음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작업을 위해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최광식 교수와 자료를 정리하느라 분주했던 구효선, 한승훈의 노고를 잊을 수 없다.

2006년 12월

필자 일동

## 차례

### I. 지역사로서의 동북아시아와 평화공존의 모델 / 9

(최덕수, 책임연구원)

### II. 南北國時代 육상·해양네트워크 / 21

(윤재운, 공동연구원)

### III. 후삼국시기 육상·해상 네트워크의 변화와 재편 / 83

(박찬홍, 공동연구원)

### IV. 高麗前期 對外貿易과 그 政策 / 117

(이진한, 공동연구원)

V. 조선시대의 육상·해양 네트워크 발전 조건과 한계 / 153

(이욱, 공동연구원)

VI. 근대 해양 네트워크의 작동과 상업 발전 / 187

(김윤희, 공동연구원)

한국고대 해상교류 일람표 / 233

조선시대 密貿易·雜貿易 관련 기사 / 257



# I . 지역사로서의 동북아시아와 평화공존의 모델

(최덕수, 책임연구원)



## 연구총론

1990년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는 동북아시아 발전의 새로운 모델링을 위한 노력을 촉발시켰다. 중국의 개방정책, 소련의 분할, 북한의 개방정책 등등은 20세기 냉전체제에 의해 단절되었던 동북아시아 국가의 상호 교류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미국 및 유럽에 비해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는 20세기 말 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공동금융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 삼국 간의 관계에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전에 없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자국사의 역사서술에 있어서 불거져 나온 ‘역사분쟁’은 동북아시아 삼국 국민 간에 형성되어왔던 배타적 민족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고구려사, 발해사, 고조선사 등 한국고대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중국과의 역사귀속성 논쟁, 근대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화에 대한 역사서술 및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역사 논쟁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이처럼 현대 한국인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공존과 배타성의 이중적 태도는 근대 한국역사의 전개과정이 식민지와 그 이후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비단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며 상당부분은 국내 정치, 사회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론의 등장은 그간 연구에서 동북아시아 삼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단순 비교하는 비교사적 관점에 대한 새로

은 대안을 요구했다. 지역사로서 동북아시아는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 속에서 출발한 새로운 방법론이었다.

지역사로서 네트워크 연구 방법은 개별성, 특수성, 다양성을 기초로 하여 국가 간 교류의 내용을 각 국가의 지역 간 교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정보다는 개별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네트워크 중심 지역이 여타의 다른 지역과 고립된 것은 아니다. 지역네트워크는 다른 국가 지역과의 결합-국제교류 지역이 포괄하는 국내 지역의 상호관련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비교사적 연구방법이 갖는 단순성-차이점과 공통점의 발견-을 극복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의 층위(수평적 또는 층차적 층위), 유기성(씨실과 날실이라는 2차원적 연결이 아닌 다층적 다면적 연결)을 다각도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채택하는 이유는 21세기 동북아시아 경제교류가 매우 다양화되고 다각화되어 간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책적 지원도 지역 간 네트워크의 층위와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적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로서 동북아시아를 접근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연결 지역의 개별성과 특수성 그리고 지역네트워크의 다양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연결되는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21세기 해양경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는데 기초 이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한편에서는 20세기 동아시아 국가단위의 경제개발 정책의 한계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변동은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공동체 논의로 확대되었다.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론의 등장은 그간 연구에서 동북아시아 삼

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단순 비교하는 비교사적 관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요구했다. 지역네트워크로서의 동북아시아는 이러한 정세변화를 배경으로 나타난 새로운 방법론이었다.

1994년 일본에서는 지역사에 대한 연구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마시타 다케시(浜下武志)를 비롯한 일본의 지역사 연구자들은 『**77**から考える』라는 시리즈 제목의 6권을 출간하여 동아시아 지역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 후 일본 지역사 연구는 일본과 중국의 지역네트워크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일본의 연구는 자국의 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지역네트워크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삼국의 네트워크의 작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일본의 동아시아네트워크에 대한 이러한 기존 연구는 서구의 동아시아사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예로 세계지역시스템에 대한 연구서로서 안드레 쿤더 프랑크의 『리오리엔트』(이희재 옮김, 이산, 2002)에서 동아시아 유통시스템에 대한 서술은 이러한 일본의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도 한반도의 역할 특히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네트워크에 대한 서술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지역네트워크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서해안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북아시아 유통네트워크를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사 연구에서 한반도의 역사적 위상을 재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국내의 개항기 경제사 연구에서 유통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과정에서 통로역할로서 주목받아왔다. 예를 들어 인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1876년 부산이 개항되면서 대일무역상품의 대부분은 인천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었다. 그러나 1883년 인천 개항과 양화진 개장이 허용되면서 새로운 해외무역항으로서 인천의 위상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서구 자본제상품의 공급지로서 그리고 수출상품인 미국과 콩 그리고 우피 등의 집산지로서 인천은 1890년 부산을 제치고 한국 총 무역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제1의 무역항으로 발전했다.

인천을 통해 유입된 수입상품은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 유통망을 통해 평양, 군산, 목포 등지의 지방과 인천으로 공급되었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이 세계자본주의체제로 편입되어 왔고, 종래 전통적인 유통구조에 변용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인천항을 중심으로 하는 수입상품은 전통적인 산업을 와해시켰고, 인천항을 통해 대량의 곡물이 수출됨으로 인해 인천의 곡물수급은 차질을 빚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수출입항으로서 인천항은 개항기 자주적인 자본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국주의 침략의 통로였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다.<sup>1)</sup>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략과 대응이라는 관점 하에서 진행된 이러한 연구는 개항기 무역구조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넓히는데 의미가 있었지만, 인천 네트워크의 구체적 운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측면이 있었다. 즉 개항기 동북아시아 삼국 간 무역의 의미와 그 속에서 경인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상 성장의 조건이 이들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드

---

1) 村上勝彦, 1975, 「植民地」, 『日本産業革命の研究』 下, 東京大出版會; 吉野誠, 1979, 「李朝末期における綿製品輸入の展開」, 『朝鮮歴史論集』 下; 金敬泰, 1986, 「大韓帝國時期的 米穀通商構造; 帝國主義形成期の 米穀問題」, 『大韓帝國研 米穀通商研究』 4; 權泰億, 1989, 『韓國近代綿業史研究』, 일조각; 崔泰鎬, 1992, 「開港期の 貿易構造와 貿易物價에 관한 研究 -開港期の 穀・綿交易體制를中心으로」, 『擇窩 許善道선생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河元鎬, 1995, 「開港期 인천의 穀物流通構造」, 『郷土인천』 第55號.

러나지 않았다.

1890년 이후 인천은 동북아시아 삼국의 유통네트워크의 매개지일 뿐만 아니라 1899년 개통된 경인철도의 유통인프라를 기반으로 경인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지였다. 인천의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개항장과 개항장 밖 시장의 상품을 유통했던 한상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또한 나가사키(오사카)-인천-상해를 연결하는 자금흐름의 중간매개지로서 인천은 환율시장이 발전하고 신용이 확대되어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매력적인 유통시장이 발전했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조건은 바로 동북아시아 삼국을 연결하고 국내 남과 북 그리고 서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지역네트워크가 인천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러한 무역항의 발전은 한국자본주의의 부정적 발전과 특징을 규정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단기회전과 초과이윤을 통해 성장했던 인천 지역의 한상들은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최대의 이윤추구자로 행세했다. 이들의 활동이 이제 막 성장하려던 소상공인, 수공업자의 성장을 박탈했던 것 역시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역기능을 초래한 것은 19세기와 20세기 팽배했던 자본주의의 폭력성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연구 경향처럼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었던 무역항이 갖고 있던 경제발전의 조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1세기 변화하는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에 발맞추어 인천은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무역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통해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새로운 시험장으로서 새롭게 복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무역항은 일본인과 청국인의 거류지, 그리고 외국인 공동거류지로 구분된 시가지의 모습을 띠고 있다. 여기에 개항장과 국내시

장을 연결했던 한상의 상점들이 존재했던 무역항은 이제 막 접촉을 시작했던 이질적인 문화가 뒤섞였던 공간이었으며, 동시에 상호모방의 공간이기도 했다. 무역항에서 한상과 청상간의 거래는 매우 익숙하게 진행되었다. 조선 후기 이래 형성된 청상과 한상간의 거래관행은 거래주체들의 유대관계에 의해 지탱되는 신용거래였다. 신뢰와 신용의 형성은 외상거래 또는 연불거래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청상과 한상에 비해 일상은 이질적인 무역항의 상관습에 적응하는데 쉽지 않았다. 더욱이 낮설고 이질적인 문화는 거래주체 사이에 유대를 형성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었다. 또한 신뢰할 수 없을 만큼 눈앞의 이재를 다투는 소자본의 일상을 믿고 외상거래와 연불거래를 할 청상과 한상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처럼 거래관습의 이질성은 안전한 금융 제도들이 만들어지면서 점차 극복되어 갔지만, 여전히 삼국 상인간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었다. 삼국 간 거래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는가에 따라 삼국 간 거래관행의 표준은 변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근대 무역항의 거래관행의 이질성은 1905년 일본이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일상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일상 간 거래를 표준하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질적 거래관행이 접합되는 무역항의 공간적 의미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기존 연구 경향의 탓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이질적 경제문화가 존재했던 인천 지역의 다양한 모습과 이를 극복하려는 상인 간 노력-상호모방과 불신을 극복하고자 했던 다양한 제도적 고안들은 20세기 내내 경쟁과 배제의 관계를 유지했던 동북아시아 삼국 간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주요한 역사적 경험이다.

지역사로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접근은 비단 현재적 관심 정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20세기 중국과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은 일본 학자들의 이러한 연구 경향을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 보기도 한다. 이는 현재 일본에서 제기되는 지역사로서의 동아시아 연구가 평화적 가치를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동북아시아 삼국의 경제체제의 차이점과 이후 발전에서 예상되는 경제팽창주의는 지역사로서 동북아시아의 접근을 쉽지 않게 하는 환경이 되기도 했다.

지역네트워크의 작동은 경제적으로 각 지역 간 분업의 확대를 전제하고 있다. 전근대시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무역체제가 유지되는 원인은 역시 중국의 앞선 생산력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전 근대 시기 중국 생산품인 비단, 한자서적, 지배층의 각종 행사 및 문화와 관련된 소비상품들은 이것을 필요로 하는 한반도와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에 포섭될 수 있는 기반이었다. 그러나 기존 네트워크는 이러한 국제적 분업 관계 하에 진행된 상품의 유통이 정작 한반도, 일본 등 국내 유통 부분과 어떻게 접맥되어 있었는지 또는 각기 국내 생산부분과 어떠한 유기적 관련성을 맺고 있었는지에 대해 충분한 고찰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자국의 경제발전을 일국사적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많은 연구의 성과물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그간 일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연구 성과를 국제적 분업이라는 확장된 관점으로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예를 들어 개항기 국내시장의 독점영업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국내 시장질서라는 점에서 또는 단선적으로 외상의 침략에 대한 대응형태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독점영업권의 유지확대라는 당시의 현상을 국제적 분업관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독점영업

은 가장 효율적으로 수출입 상품을 매집하고 공급할 수 있는 영업 시스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은 기존 지역네트워크 연구 방법론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다만 기존 연구 방법론이 담지 못하고 있었던 지역네트워크와 국내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살펴보려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독점영업권을 둘러싸고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국내세력, 즉 소자본가 등이 독점영업권을 매개로 하여 국제적 분업관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고찰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네트워크 연구 방법론은 기존의 국가 대 국가 간 교류를 전제로 한 기존의 연구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다. 따라서 지역네트워크는 유통망에 포섭된 지역 간 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 삼국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을 제공해줄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방법론이 국가 간 교류의 성격을 구명하는 대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동북아시아 삼국 간의 지역네트워크와 국내 이미 형성된 지역네트워크와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천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통과 생산의 관계에서 분배의 문제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점은 본 연구가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진행과정에서 동북아시아 제 구성원이 평화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네트워크의 작동과 국내 분배 문제의 상호관련성을 구명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 분배의 문제를 고찰하기에는 대상 시기와 자료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주제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평화적 가치에 대한 발견은

역시 분배의 문제를 통해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된 경제적 발전이 국내 지역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 II. 南北國時代 육상·해양 네트워크

(윤재운, 공동연구원)

머리말

1. 남북국시대 네트워크의 형성
2. 남북국시대 네트워크의 전개
  - (1) 네트워크의 성립기
  - (2) 발해의 무역 융성기
  - (3) 신라의 무역 융성기
  - (4) 9세기후반 교역질서의 혼란·경쟁기
  - (5) 남북국의 육상 네트워크

3. 남북국시대 네트워크와 정부정책

맺음말



## 머리말

본고에서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경제적 域圈 간의 사람·물자의 이동 체계를 가리키는 것<sup>1)</sup>, 또는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성격인 ‘관계성(relations)’ 자세에 기초하여 다양한 연결 기능(신축·확장·팽창·가변·재편성·상호보완)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개념<sup>2)</sup>으로, ‘貿易網’이라는 개념은 기존 연구성과들에서 交易體系·交易網 등으로 쓰이던 개념으로 신라나 발해 같이 국내에 한정된 경우만을 ‘貿易網’으로 사용하고자 한다.<sup>3)</sup>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해양네트워크가 중심이 된다. 해양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항구와 항구를 연결하는 관계망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연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관계망(항구-항구間), 이동수단(조선술, 항해술 등), 네트워크 연결의 내용(인적, 물적 교류의 내용),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정부정책 등) 등의 검토가 요구된다.

본 프로젝트의 전체주제인 ‘장보고 해양경영 모델로서 해상 네트워크’ 아래 남북국시대 네트워크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 역사에서 해양 네트워크의 성립은 선사시대로까지 올라간다. 즉 黑曜石이라든지 明刀錢 같은 중국 화폐의 출토는 그 명백한 증거가 된다. 하지만 정기적이고 항속적인 네트워크의 성립은 남북국시대로부터라고 보여진다.

---

1) 浜下武志, 1997,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岩波書店.

2) 家島彦一·김정환 옮김, 2003, 『서양에서 본 아시아사』 『바다의 아시아』1-바다의 패러다임-, 다리미디어.

3) 尹載云, 2003, 『8~9세기 동아시아의 교역-장보고의 청해진 활동을 중심으로-』 『白山學報』66, 26쪽의 註12.

이하에서는 실질적인 네트워크의 성립기인 남북국시대 네트워크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네트워크 형성의 배경을 국내·국외의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물적 교류의 내용을 분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에 미친 국가정책의 특성과 영향을 검토하여, 네트워크 발전에서 정부정책의 지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남북국시대 네트워크의 형성

남북국시대 무역의 전체적인 양상에 대한 검토는, 주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국내학계의 기존 연구성과들은 무역형태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나라들과의 무역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것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일본학계에서 제기된 동아시아론·아시아 교역권론과, Hugh R. Clark이 제기한 중세무역사와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신라·발해가 주변나라와 무역면에서 어떻게 연관을 가지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Hugh R. Clark은 중국시장권을 북해무역과 남해무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당에서는 중엽이후 남방의 해로를 통해 다수의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廣州·揚州·泉州 등의 항구가 번영하였다. 이들 항구는 상품하역센터로서 交易港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담당했던 것은 南海貿易(중국남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아의 다도해로부터 서쪽의 인도양과 심지어 유럽의 사회까지 포함)이었다. 한편 동북아시아의 北海貿易(동북아시아 지역 즉 平安時代의 일본, 발해, 신라)을 담당하고 있던 것은 신라인이었다. 이 남해 무역과 북해무역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장보고로 대표되는 신라인<sup>4)</sup>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Hugh R. Clark의 견해는 남북국시대의 무역을 중세세계 무역사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옳다고 할 수 있지만, 발해의 무역면에서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즉 발해의 대중국·대일본 무역에서의 역할과, 발해 상인들에 의한 대 중국·일본 무역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일본학계의 ‘동아시아론’이다. 한반도·일본열도·인도차이나 반도의 베트남 지역(이하에서는 특별히 밝히지 않는 限 한국·일본·베트남·중국을 지역 명칭으로 사용한다)은 일찍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한자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을 매개로 유교·율령·한역(漢譯) 불교 등 중국에서 기원하는 문화를 수용하였다. 이러한 역사 현상으로 인해 중국의 중심부를 포함하여 이들 지역을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 견해<sup>5)</sup>도 있다.

이 문화권은 문화가 독자적으로 확장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독자의 정치구조(책봉체제)가 존재하며 이 정치구조를 매개로 중국문화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란 동아시아 세계라는 역사적 세계의 설정이 그 전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니시지마는 당의 멸망으로 인해 국제적인 정치 질서로서의 동아

---

4) Hugh R. Clark, 1993, 『한반도와 남중국간의 무역과 국가관계』 『장보고 해양경영사연구』, 도서출판 李鎭.

5) 西嶋定生, 1985, 『日本歴史の國際環境』, 東京大學出版會.

시아 세계는 붕괴되었다고 해석하고, 이를 대신해서 경제적 교역권으로서의 동아시아 세계가 출현한다고 본다. 동아시아 교역권에서 무역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교역권을 확대,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일본·베트남 등지에서 행해지던 교역이 동남아시아에서 인도 방면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러한 동아시아 세계는 19세기에 이르러 유럽 자본이 동아시아 세계에 미치게 되었을 때 정치적·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붕괴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우선은 동아시아 세계영역은 시대와 함께 변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니시지마는 그 영역이 유동적이어서 고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다음은 관직을 매개로 한 관계야말로 책봉체제를 규정하는 내실로서 중시되고, 6세기부터 8세기까지의 중국 왕조와 ‘동쪽 지역의 나라들’과의 정치관계가 실증적으로 검토되어 그것에 대해 책봉체제란 명칭이 붙여졌다. 엄밀하게 말하면 책봉체제란 한정된 시대(6~8세기)와 지역(중국과 그 동쪽 지역의 나라들)에서 검증되고 이론화된 것으로,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다.<sup>6)</sup>

이상의 ‘동아시아론’이나 ‘동아시아 역사상’이 제기된 출발점은 동아시아사적 시점으로서 세계사와 일본사를 조망하려는 데 있었다.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세계사의 기본법칙’의 유용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것이 결국은 극복되어야 할 구미중심 사관이며, 비교사의 방법도 후진국과 선진국이 서로 영향을 주고 제약을 받는 상호관계를 간과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본학계의 ‘아시아교역권’론에 대해 살펴보겠다. 일본 학계에서 동아시아를 무대로 하는 연구가 새로이 부각되기 시작한

---

6) 李成市著 박경희역, 2001, 『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 『만들어진 고대』, 삼인, 138~151쪽.

것은 8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부터였다. 80년대 후반 이후 동아시아 내지 아시아는 논문이나 저서명에서 마치 관용 접두어처럼 유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80년대 이후 90년대의 아시아적 시각은 역사학의 영역을 벗어나, 지리학·철학·민속학·정치학·사회학 등의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접근되었다. 연구대상과 시기가 워낙 다종 다양하여 하나의 논리로 묶어보기 힘들지만, 아시아적 시각 가운데서도 가장 논리적 구조를 갖추어 있는 것이 ‘아시아교역권’론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 교역권론에서는 국경을 넘어서는 규모에서 기능하는 경제적 域圈을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지역과 域圈 상호 제관계의 전체로서 하나의 이념과 원리 하에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各國史·各地域史의 전개도 그 아래에 자리 잡는다고 본다.

아시아 국제시스템에서 域圈으로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것이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는 이질적인 세계를 자신의 논리 속에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갖추고 있는 특성을 지닌다.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동이다. 물자·사람·돈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여, 정보가 전달되고 언어가 접촉하고 문화가 이동하는 것이다. 국경에 의해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로 열린 세계에서는 중심부보다도 周緣部, 그리고 양자의 관계가 중시된다. 그리고 지역적 공간을 매개로 아시아 고유의 국제질서 시스템, 네트워크 그리고 사람·돈·물자의 이동을 통해 구성되는 세계로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곧 조공시스템이다.

이러한 그간의 아시아 교역권론은 참조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아시아 교역권론에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아시아 교역권론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인간과 돈·물자의 교류에 치중한 결과, 교류가 항상 동반하는 마찰과 갈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하나의 역권이라도 그 속에 특정한 지

역·민족 혹은 국가의 헤게모니가 존재하나, 상호 영향·상대적 독립과 異化라는 점만이 강조되고 있다. 해역의 세계는 관계의 세계이고 이동의 세계이지 생활의 세계나 定住의 세계가 아니다. 끊임없는 영토분쟁과 전쟁이 일었고 인간생활의 주무대인 육지를 열려진 세계로만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해역 중심의 균형 잃은 시각이 되기 쉽다.

둘째, 동아시아세계는 각국 집단이 단일언어, 단일민족, 단일국가를 장기간 지속해 온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경제권으로의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국가와 민족 혹은 지역과 에스니시티 간의 마찰과 갈등, 헤게모니의 문제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sup>7)</sup>

이상에서 일본학계에서 제기한 ‘동아시아론’과 ‘아시아교역권론’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다시 논의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역권에 대해 살펴보자.

좁은 의미의 市場을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라고 한다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크고 작은 여러 시장이나 상인들의 네트워크를 廣義의 市場·市場圈·交易圈·貿易圈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8)</sup>

8~9세기 당시 세계에는 크게 네 개의 廣域 市場圈이 있었다. 즉 中國市場圈, 南아시아市場圈, 西아시아市場圈, 地中海市場圈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4개의 광역시장권 가운데 신라와 발해가 속해 있던 곳은 중국시장권이다. 이 중국시장권의 중심국가인 중국과 중국시장권 안에 있던 여러 나라와 민족을 연결시켜주던 역할을 하던

7) 하세봉, 1996, 「일본학계의 ‘아시아교역권’론」, 『中國現代史研究』2, 중국현대사연구회; 2001, 『동아시아 역사학의 생산과 유통』, 아세아문화사, 213~231쪽.

8) 松井透, 1999, 「商人と市場」, 『岩波講座 世界歴史』15-商人と市場-, 岩波書店, 10쪽.

것이 바로 朝貢이다.

신라·발해·일본 등 중국의 주요한 관계국들에게 조공체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일원적으로 기능하지 않았고, 중화관의 공유와 수용 뿐만 아니라 저항이나 자립의 과정도 존재한다. 또한 러시아 등과 중국과의 관계는 이와는 달리 중국에 영향을 주거나 互市交易(대등한 교역)을 행하는 등 북서주변부에 있어서 조공관계의 기능은 중국 동쪽의 여러 나라와는 다른 것을 나타낸다.

동아시아의 공간적 범위는 중국과의 가깝고 먼 것에 따라 나라별로 구분되었다. 조공관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드러나는 관계로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琉球나 對馬島 등의 중계적·매개적 기능은 중시되지 않았다. 동아시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부 즉 위성적인 중화권이 배치되고 서로가 다각적으로 중계지를 매개로 연결하는 복합적 지역관계도 있었다.

華夷秩序안에는 ① 소수민족의 지도자를 土司·土官으로써 지방관에 임명하는 간접통치 지역, ② 理藩院에 의해 관할된 몽고의 예를 대표로 하는 이민족 통치(藩部) 지역, ③ 조공에 의한 통치 지역, ④ 상호관계의 색채가 강한 互市國, ⑤ 그리고 가장 외곽에 교화가 미치지 않는 化外地域 등이 있었다.

中華秩序에 기초한 통치형태의 특징은 그 안에 간접통치·조공통치가 있고 동시에 대등관계도 존재하는 등 여러 통치원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華夷秩序 전체를 통괄하는 이념이 中華였다. 즉 중화이념은 여러 통치이념을 포섭하기 위해 보다 추상화하고 확장된 中心-周緣관계를 둘러싼 통괄적 이념이고, 구심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포괄적·중개적이다.<sup>9)</sup>

---

9) 浜下武志, 1997,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岩波書店, 5~11쪽.

결국 朝貢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동아시아 무역망을 형성시킨 전제이고, 조공무역에 수반한 사무역의 확대를 촉진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 내 교역의 주요한 루트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시장권이라는 광역시장안에는 여러 시장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신라와 발해와 관련 있는 것만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산동반도 일대의 교역권이다. 이는 장보고로 대표되는 신라상인들의 활약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신라상인의 활약은 재당신라인사회와 재일신라인사회를 기반으로 하였다. 당과 일본에는 7세기 이래 신라 유이민이 이주하여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시기에 유민이 발생한 것은 통치기강의 문란과 토지의 집중화현상에 따른 부산물이었다. 게다가 자연재해라는 요인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sup>10)</sup> 이들 유민들은 때로 도적화하기도 했고 지방 세력의 휘하에 들어가 사병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중 일부는 중국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sup>11)</sup> 특히 이들은 재당신라인사회나 재일신라인사회에 흡수된 것으로 생각된다.

당에서의 신라인촌락은 초주·해주를 비롯한 회하유역과 산동반도 일대에 많았고, 일본에서의 신라인사회는 九州와 下毛野國·武藏國·美濃國·近江國·駿河國 등에 있었다. 재당신라인사회는 ‘新羅坊’이라 하였는데, 인구가 많은 외국인 거주구역인 ‘番坊’의 하나였다. 재일신라인사회는 新羅郡 또는 度田郡 이라 불리었다. 재당신라인들은 주로 거주 지역 근처의 연안무역에 종사하고 있었고, 재일신라인들은 일본정부가 필요로 하는 각종 바다 관련 고급인력(통역관·선원·노 젓는 사람 등)을 제공해 주었다. 즉 해외 신라이민사

10) 『三國史記』에 나오는 신라의 자연재해는 총 143회인데 그중 신라하대에 해당하는 8·9세기에는 각각 29·16회로 다른 세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申滢植, 1981, 『三國史記研究』, 一潮閣, 187~188쪽).

11) 『三國史記』卷10, 憲德王 8年, 春正月條.

회가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소규모 지역시장을 관장한 연안무역상인이었다면 장보고로 대표되는 광역시장을 담당하는 무역상인도 존재했던 것이다.<sup>12)</sup> 이외에 이연효<sup>13)</sup>·이광현<sup>14)</sup> 같은 발해상인들의 존재도 주목된다. 이상의 신라·발해상인들에 의해 산동반도에서 행해진 무역은 黃海를 주무대로 행해졌기 때문에 ‘黃海貿易圈’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경우이다. 중국의 경우에 비해서 빈도수나 양은 적지만 대일본무역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일본무역의 장소는 크게 두 곳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大宰府를 중심으로 하여 신라사절단과 신라상인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해사절단에 의해 일본의 동북부 지방의 발해객원·객관에서 행해진 경우이다. 전자는 대한해협을 거쳐 일본의 서쪽 지역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西部日本貿易圈’으로 정의하고, 후자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행해졌기 때문에 ‘東海貿易圈’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결국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조공·책봉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맺어진 것이다. 이는 지역 내의 交易·移民·金銀의 이동 네트워크를 형성시켰고, 상품의 흡수와 배출의 중심으로서 중국(華中·華南의 경제지대)이 기능하고 주변제국과의 사이에 화이관을 공유하면서 조공관계의 실체를 형성하였다.

조공무역(공무역)의 발전은 중국 주변 여러 나라들의 사무역을

12) 尹載云, 1999a, 『韓國 古代 貿易의 形態』 『先史와 古代』12.

13) 馬一虹, 1999, 『渤海と唐の關係』 『アジア遊學』6.

14) 朱越利, 1993, 『唐氣功師百歲道人赴日考-以‘金液還丹百問訣’爲據-』 『世界宗教研究』3期,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王勇, 1999, 『渤海商人李光玄について』 『アジア遊學』6; 임상선, 2000, 『‘渤海人’李光玄과 그의 道敎書 檢討』 『韓國古代史研究』20, 한국고대사학회, 656쪽.

15) 尹載云, 2002, 『南北國時代 貿易研究』,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4~30쪽.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9세기 사무역의 발전은 이전 시기의 공무역 발달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조공에 대해서는 주로 정치적 관점에서만 이해되어 왔으나 이에 못지않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해석도 필요하다. 단순히 중국왕조가 주는 官爵이나 印綬 그리고 衣服 등이 집단 자체 내에서의 지배자나 지도자의 정치·사회적인 권위를 높여주는 효과 때문만은 아닐 것이며 보다 실질적인 목적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중국정부만이 취급하는 일정한 물품을 획득하는데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朝貢과 下賜의 형식을 통해 물자교역이 가능하였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sup>16)</sup>

南北國時代 조공사절이 唐에 入朝할 경우, 唐에서 그들에 대한 대우를 총괄하는 것은 禮部이고, 主客郎中이 그 중심이었다. 鴻臚寺·典客署는 그 중에서 주로 長安에서 그들의 접대를 禮部和 연락을 취하면서 관할하는 것이었다.

조공사절이 唐에 도착하면, 그들은 邊境州縣에서의 취조→중앙으로부터 入京 허가자 리스트의 도착→入京者 上京→京師 도착→영빈관 입소→환영의식 출석→황제알현일의 전달→황제알현→당으로부터의 國書수여→임시하사물 수령→귀국할 때의 의식→歸途(대기자와의 합류)→歸國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이상의 과정 중에서 교역품(헌상품)은 의식장소에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었다. 州縣으로부터 鴻臚寺로 연락이 갈 때, 낙타·말 같은 종류는 중앙에 바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州縣이 그것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기이한 동물의 헌상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唐에서 외국사절에 답례품을 주는 경우는 연회를 할 때이다. 선

16) 李賢惠, 1994, 「三韓의 對外交易體系」,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1998, 『韓國 古代의 생산과 교역』, 一潮閣, 266쪽.

물을 줄 때는 헌상품의 가치에 따랐기 때문에, 헌상품의 가치결정은 불가결한 것이었다. 만일 가치가 불명확한 경우는 鴻臚寺가 小府監이나 市司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중서성에 보고하였다. 이렇게 의식적 행위인 回賜로서 수여된 중국으로부터의 하사품은 주변나라들이 화이질서를 유지하고 기능시키는 것에 대한 중국측으로부터의 비용 지불이라고 생각된다.

외국사절로부터 당에 건너온 물품은 『大唐開元禮』 ‘皇帝受蕃使表及幣’에 ‘幣’<sup>17)</sup>와 ‘庭實’<sup>18)</sup>이라고 기록되었듯이 두 종류의 헌상품이 존재하였다. 또한 당으로부터의 답례품도 연회장에서 주는 물품과는 별도로 사절의 귀국 환송장에서도 賜物의 수여가 있어서, 이것도 외국으로부터 두 종류의 헌상품에 대응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당왕조측의 조공무역관리는 조공관계를 맺은 國名은 禮部 主客郎中과 鴻臚寺·典客署에서 기록하였고, 무역품목·액수는 戶部가 기록하였다. 또 물품의 보관은 太府寺가 관리하였다.<sup>19)</sup>

위에서처럼 下賜와 朝貢의 형식을 통해 상당량의 물자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朝貢과 官爵, 印綬의 수여를 통한 중국 정부와 신라·발해 사이의 물자교류형태를 조공무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공무역은 교역형태상 직접적인 교섭에 의한 교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직접 접촉에 의한 교역’은 교역과정에 제3의 중개인이거나 중개장소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 같은 무역형태에서는 교역활동이 정치지배자에 의해 조직되고 통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sup>20)</sup> 아울러 Karl Polany가 언급한 증여교역에 해당한다.<sup>21)</sup>

17) 幣란 帛 같은 비단을 중심으로 하는 方物, 貢獻品을 말한다.

18) 庭實이란 정원에 가득 찬 貢物이란 의미다.

19) 石見清裕, 1997, 『唐代外國貿易・在留外國人をめぐる諸問題』, 『魏晉南北朝隋唐時代史の基本問題』; 1998,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505~508쪽.

20) Lamberg-Karlovsky에 따르면 무역은 직접접촉에 따른 무역(direct contact

한편 중국정부와 신라·발해에서 파견된 遣唐使 사이에 직접 물자가 거래된다는 점에서 조공무역은 公貿易의 성격을 가지며,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집단 간의 사적인 교역과는 구분된다.

다음으로 對唐貿易에서 조공무역과 구별되는 것으로 互市를 통한 교역을 들 수 있다. 互市의 설치와 운영은 중국 황제의 허가에 의해 소재지 정부나 관인의 관리와 감독하에 행해졌다. 일반적으로 互市에서 교환하는 것은 말이나 소·낙타 등이었다. 남북국시대의 例로는 李正己一家가 지배하던 시기의 淄靑藩鎮과 발해사이의 교역을 들 수 있다. 이 때 唐側이 주는 것은 발해 지배층이 필요한 絹·帛 등의 직물이어서, 소위 ‘絹馬貿易’이라고도 불렸다.<sup>22)</sup>

이상에서처럼 무역의 주체에 의해 무역의 형태를 公貿易과 私貿易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남북국시대 公貿易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바로 빈번히 唐에 파견된 遣唐使였다. 遣唐使들은 본국의 왕을 대신하여 貢獻品을 獻上하고, 그 과정에서 본국왕에게 주는 回賜品

---

trade), 교역(exchange), 중심지무역(central place trade)등 세 가지로 나누어진 다. 첫 번째의 ‘직접접촉에 의한 무역’은 교역을 위해 두 개의 다른 장소 간에 직접 얼굴을 대하면서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의 교역은 상품이 퍼져나 감에 있어 어떤 뚜렷한 조직이나 특수한 자원에 대한 표준화된 가치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다. 세 번째의 중심지무역은 상품이나 자원이 필연적으로 몇몇 중계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나타난 경우이다.(崔夢龍, 1985, 『古代國家成長과 貿易』,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57~61쪽).

21) 한편 Karl Polany의 무역형태 구분법에 따르면, 무역은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첫째는 증여교역이다. 이는 대체로 의례적인 것이며 상호간의 선물교환이나 사절 교환, 수장 또는 왕들의 정치적 행위 등을 포함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관리교역 또는 조약교역이다. 이 경우에는 수입의 이해득실이 쌍방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교역은 정부 또는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규칙에 의해서 조직된다. 셋째는 시장교역이다. 여기서는 교환이 당사자를 서로 맺어주는 통합의 형태가 된다. 이 경우의 교역조직은 수요·공급·가격기구에 따라서 생겨나게 된다고 한다.(Karl Polany, 1977, *The Livelihood of Man*, Academic Press; 朴賢洙譯, 1983, 『人間의 經濟』 I, 도서출판 풀빛, 141~144쪽).

22) 馬一虹, 1999, 『渤海と唐の關係』, 『アジア遊學』6, 52쪽.

과 사절단 개인에게도 관등의 高下에 따라 回賜品을 받았다. 따라서 公貿易의 주체는 남북국시대의 王室과 遣唐使로 파견된 중앙귀족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朝貢을 매개로 형성된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시장과 각 지역에 형성된 지역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사와 관련된 지역시장은, 중국 중심의 광역시장 아래 ‘黃海貿易圈’·‘西部日本貿易圈’·‘東海貿易圈’ 등이었다.

## 2. 南北國時代 네트워크의 전개

### (1) 네트워크의 성립기(618-754년)

남북국시대 네트워크 형성의 외적인 계기로는 唐의 건국을 들 수 있다. 전근대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는 중국대륙의 정치·사회 변동에 매우 민감하였다. 7세기 전반 唐의 건국에 이은 신라의 삼국통일, 10세기 초 5대10國의 혼란과 후삼국의 鼎立 그리고 宋과 고려의 건국, 14세기말 元·明 교체와 조선왕조의 등장과 같이, 한국은 중국 왕조와 운명을 같이하는 듯이 보일 정도로 양국관계가 밀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곧 한국사의 전개과정에서 對中外交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았음을 암시해 준다.

한국의 대외교역은 고조선과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隋·唐 이전에는 상호 침략에 의한 적대적 관계 혹은 간헐적인 사신 왕래를 통한 단속적인 교섭에 그쳤다. 6세기 후반 隋가 중

원을 통일한 후 한반도의 삼국은 隋에 빈번히 사절을 보냄으로써 양 지역 간의 정치·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隋나라는 3代 38년 만에 망하고 唐이 그 뒤를 이었다.

中原을 재통합한 唐은 세계제국을 표방하면서 주변국들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였다. 그 결과 고구려·백제·발해·吐蕃·突厥·契丹·回骨·波斯國 등 수많은 주변국들이 당에 사절단을 보내어 당과 정치적 유대관계를 맺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당문화를 습득하기 위한 유학생과 求法僧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각종 상인들이 당나라에 모여들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발해의 왕래도 빈번하였다. 고구려와 백제는 각각 25회, 신라는 178회의 각종 사절단을 보냈음이 확인된다. 전근대에서 외교와 무역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정기적·항속적 외교관계가 시작된 당 건국 이후가 네트워크의 형성시기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형성의 내적인 배경으로 우선 신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후기<sup>23)</sup>의 무역발전의 국내배경으로는 王京에 시전의 증설과, 지방제도의 정비에 의한 거점도시의 시전설치를 들 수 있다. 아울러 대중국해상교통의 요충지였던 서남해도서지방의 장악도 신라의 기간도로인 5通을 비롯한 유통망의 정비에 큰 기여를 했다. 다음으로 公貿易과 私貿易의 각각의 주체들에 의한 무역품의 제작이 궁중수공업·관영수공업·민간수공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한편 발해는 건국기(高王~武王)의 꺾끄러웠던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각종 정치제도의 정비·말갈부족 정

23) 本稿에서의 신라후기는 삼국통일전쟁 이후의 시기로, 기존에는 통일신라로 불리던 용어이다.(최광식, 1995, 『韓國 古代國家의 支配이데올로기』, 『韓國史의 時代區分-古代·中世-』, 신서원, 150쪽).

북 등을 이루고, 新羅道の 개통, 대일무역과 대중국무역의 활성화를 이룬 文王 전기가 貿易網이 성립한 시기로 판단된다.

## (2) 발해의 무역 융성기(755-827년)

이상에서 살펴본 남북국시대의 네트워크를 주도했던 것은 발해·신라인이었다. 이 시기 당은 閉關과 海禁정책을 세우고, 자국민이 바다로 나가 사무역에 종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당은 그 결과 발생하는 무역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국가의 공무역 사절단의 입당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즉 당과 외국의 무역은 공무역인 조공무역의 형태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 중엽 安史의 亂 이후로는 藩鎮勢力이 강화되자 사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sup>24)</sup>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唐人을 필두로 하는 중국인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9세기 후반부터였다.

<표> 발해 무역융성기의 왕래

| 도착지<br>출발지 | 발해  | 신라 | 唐  | 일본 | 계    |
|------------|-----|----|----|----|------|
| 발해         |     | ?  | 63 | 20 | 83   |
| 신라         | 2+a |    | 41 | 5  | 48+a |
| 唐          |     |    |    | 1  | 1    |
| 일본         | 11  | 1  | 4  |    | 16   |

24) 王杰·王莉, 2000, 『張保皋大使의 海洋經營과 韓·中間 發展方向』, 『張保皋大使의 海洋經營과 21世紀 韓國 海軍의 海洋安保』, 제8회 艦上討論會, 해군본부, 114~118쪽.

먼저 남북국시대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발해였다. 위의 표에서 보이는 대로, 황해무역권의 중심지였던 산동반도 일대에 가장 많은 항해를 했던 것은 발해였다. 발해가 신라보다 우위에 섰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760년대에 재개통되었던 新羅道는 신라와 발해의 문물교류에 큰 역할을 한 주요 교통로였다. 기존의 新羅道에 대한 견해들은 발해의 교통로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미 부여가 분명한 반면에 新羅道만은 그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인 통교의 흔적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견직물의 교류를 통해 볼 때, 남북교섭의 적극적인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新羅道の 운영인 것이다. 다음으로 발해는 安史의 亂 기간의 당 중앙정부와 반란군 사이의 중립적 입장, 고구려 유민 李正己의 淄靑藩鎮과 당 중앙정부 사이의 적절한 외교를 바탕으로 국제정치·무역면에서 신라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이것은 공무역의 가능자인 遣唐使의 파견횟수나 산동반도 지역과의 絹馬貿易, 발해상인들의 활약을 통해 알 수가 있었다. 이러한 대중국무역에서 발해의 신라에 대한 우위는 이르면 淄靑藩鎮의 소멸시기인 819년, 늦어도 淸海鎮이 설치되는 828년까지는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安史의 亂 후 청해진설치이전의 시기까지 대일무역에서도 발해의 우위는 확인된다. 신라는 779년을 끝으로 더 이상 공식적인 외교사절을 파견하지 않았다. 반면에 신라침공계획의 무산으로 소원했던 일본과 발해의 외교관계는 771년에 文王이 다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열리게 된다. 이후 康王·定王·簡王을 거치면서 渤海客院을 중심으로 활발한 대일무역이 전개된다.

<표> 일본에 남아있는 발해객원 관련 유적<sup>25)</sup>

| 유적명           | 현재지명                         | 주요 출토유물                                           | 비고                                                             |
|---------------|------------------------------|---------------------------------------------------|----------------------------------------------------------------|
| 福良津・泊         | 石川縣 羽咋郡<br>富來町 福浦            |                                                   | 발굴은 안되었으나 역사서의 기록에 의거 가능성이 높음                                  |
| 能登客院<br>(加賀郡) | 金澤市 戸水町<br>C遺跡               | 10여棟의 건물터,<br>唐花鏡片, 銅環, 帶金具, 石帶, 和銅開珎, 綠釉陶器, 灰釉陶器 | 발해사절을 安置供給하던 시설일 것으로 추정                                        |
| 松原遺跡          | 福井縣 敦賀市<br>松原의 氣比神宮<br>別宮 주변 | 나라시대토기, 素文鏡, 銅鈴, 和銅開珎, 神功開寶, 隆平永寶                 | 氣比神宮의 관리하에 敦賀(福井縣)에 도착하여 入京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항의 안전을 기원하는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 |
| 馬場遺跡          | 新潟縣 佐渡郡<br>相川町               | 帶金具, 馬菴                                           | 752년 발해사신 慕施蒙과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                                     |
| 舩倉島           | 石川縣 輪島市<br>舩倉島               | 海獸葡萄鏡                                             | 발해사신의 안전항해를 기원하던 유적으로 추정                                       |

### (3) 신라의 무역 융성기(828-851년)

발해의 뒤를 이어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장악한 것은 신라였다. 청해진이 설치되어서 폐쇄될 때까지 23년 동안 신라는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강자로 군림하였다. 아래의 표를 통해 보면 전시기에 발해와 신라의 중국항해 회수가 3:2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12:11회로 거의 대등하게 되었다. 이 횟수는 기록에 남아

25) 위의 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했음. (酒寄雅志,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28~30쪽; 小嶋芳孝, 1990, 「高句麗・渤海との交流」, 『海と列島文化』1-日本海と北國文化-, 小學館; 小嶋芳孝, 1995, 「日本海を越えてきた渤海使節」, 『日本の古代』3, 中央公論社).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공적인 교섭 즉 외교사절단의 파견위주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진다. 『入唐求法巡禮行記』에 일부 보이는 신라인 등의 활동을 고려할 때, 장보고를 필두로 하는 신라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신라 무역융성기의 왕래

| 출발지 \ 도착지 | 발해 | 신라 | 당  | 일본 | 계  |
|-----------|----|----|----|----|----|
| 발해        |    | ?  | 12 | 2  | 14 |
| 신라        | ?  |    | 11 | ?  | 11 |
| 당         |    |    |    | 7  | 7  |
| 일본        | 0  | 0  | 1  |    | 1  |

828년 청해진의 설치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당과 일본에 형성되어 있던 재당신라인사회와 청해진, 재일신라인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일련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동북아시아 지역 무역의 번영을 촉진하였다.<sup>26)</sup>

둘째, 신라 鎭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즉 중국에서 활동한 장보고의 건의에 의해 설치된 청해진의 성공에 고무된 신라조정의 대응으로 인한 당성진을 비롯한 잇단 해상교통 요충지에의 鎭 설치, 9세기 당시 활발했던 대외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 그리고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에 계속된 자연재해와 지방세력의 성장에 의한 중앙정부 재정의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조정은 육상·해상교통의 요충지 장악과 아울러 재정확보

26) 尹載云, 1996, 「9世紀前半 新羅의 私貿易에 관한 一考察」, 『史叢』45.

차원에서 경제적 요충지에 진을 설치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sup>27)</sup>

셋째, 당·일본을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지역 무역의 주도권을 신라가 장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청해진이 설치되었던 828년에서 장보고가 암살당한 841년까지 활발했던 발해의 遣日使가 전혀 파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알 수가 있다.<sup>28)</sup>

이상의 세 가지 점을 통해 보았을 때, 산동반도부터 회하에 이르는 중국 동남해안의 황해무역권과 大宰府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일본 무역권을 신라가 확실히 장악했음을 알 수 있다.

#### (4) 9세기 후반 교역질서의 혼란·경쟁기(852-926년)

<표> 9세기 후반 교역질서 혼란기의 왕래

| 도착지<br>출발지 | 발해 | 신라  | 당  | 일본 | 계    |
|------------|----|-----|----|----|------|
| 발해         |    | 1+a | 3  | 9  | 13+a |
| 신라         | ?  |     | 18 | ?  | 18+a |
| 당          | 0  | 0   |    | 7  | 7+a  |
| 일본         | 0  | 0   | 0  |    | 0    |

※ 907년 唐 멸망 이후 신라와 5代의 교섭은 미포함

851년 청해진의 혁파는 장보고에 의한 무역독점이 해소되었고, 신라 각지에서 해상세력이 대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해상세력은 호족층의 일부로 보여지는데, 康州의 왕봉규, 金州의 李彦謨, 울산의 박윤웅, 개성지방의 왕건집안, 나주 오씨, 영암 최씨 등을 들 수 있다.

27) 尹載云, 1999, 「新羅下代 鎭의 再檢討」, 『史學研究』58·59합집.

28) 윤재운, 2001, 「발해의 왕권과 대일무역」, 『韓國史學報』11, 고려사학회.

아울러 신라 중앙정부에 의한 무역 장악노력(해상요충지의 鎭)도 보이고 있고, 민간무역업자들의 등장도 엿보인다. 결국 각계각층에 의한 활발한 무역활동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청해진혁과의 영향으로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청해진에 의한, 신라에 의한 동북아시아 무역독점의 주도권이 바뀐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에 왕래한 상인의 명단과 일본에서 출토되는 도자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본의 鴻臚館이 史書에 처음 보이는 것은 847년 入唐僧 圓仁 등이 귀국한 사료로, ‘홍려관 앞에 이르렀다.’라고 나온다. 그 후 貞觀年間(859~876)에 집중해서 보이지만, 1091년 大宋商人 季居簡이 다라니경을 비교한 기사를 최후로 모습을 감춘다. 따라서 홍려관의 전신인 筑紫館 시대를 포함하여 홍려관이 두어진 시기는 400년이고, 외교기관과 교역의 거점으로서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 오랜 기간을 陶磁貿易의 관점으로 나누면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① 8세기말에서 9세기전반, ② 9세기후반에서 11세기 전반이다. 이같이 시기구분 하는 것은 각 시기의 도자무역 상인이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②시기는 중국에서 당상인이 교역의 중심을 담당하던 시기이고, ①시기는 신라상인이 중심이었던 시기이다.<sup>29)</sup>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일본에 간 상인관련 자료이다. 9세기의 1/4분기와 그 이전 8세기대에 당상인의 내항사료는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承和年間(834~847)까지 일본에 간 상인은 당·신라인이 混在하고 있어서, 그 뒤에 일반적인 당상인만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이 경우 흥미로운 것은 초기무역도자기의 출토지가 平城京과 大宰府 관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후자에 많다는 점

29) 龜井明德, 1992, 『唐代陶磁貿易の展開と商人』,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Ⅲ—海上の道一, 東京大學出版會, 131쪽.

이다. 이런 실태는 신라사가 가져온 화물이 平城京과 대부분은 鴻臚館에서 매매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大宰府를 중심으로 西海道 관청이나 관내 사원에서의 船載貨物의 유통이 가능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청해진혁과의 영향으로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대일무역의 양상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장보고 사후 청해진을 통해 계속 대외교역을 장악하려 했던 염장의 의도에 대해 청해진의 잔존세력들이 계속 반발하면서 신라상인의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와 함께 재당신라인들은 당과 일본 간의 교류에서 신라를 경유하지 않고 南路를 이용하여 일본과 직접 교역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신라에 대한 반감에서뿐만 아니라 일본과 보다 유리하게 교역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당상인이라 칭하면서 교역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sup>30)</sup>

즉 9세기에 신라와 당, 그리고 일본을 대상으로 대외교역을 담당했던 신라상인들의 동향은 9세기 전반까지는 청해진을 정점으로 한 거점교역에서, 9세기 후반에는 재당신라인과 한반도의 신라상인으로 나뉘어져 각기 대일교역에 참가하는 교차교역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841년에 장보고의 사후, 신라의 소란과 무역관계의 파산에 의해 大宰府나 瀬戸内海 지역에 혼란이 생겨 일본정부는 842년 8월에 신라인 入境을 금지하고, 鴻臚館에서 신라인과의 무역관계를 폐쇄하는데 이르렀다.

이리하여 842년 교역통제에 의해 大宰府 鴻臚館에서 배제된 신라 연해 지역의 상인집단 일부는 다른 교역장소를 찾거나, 해적이 되어 일본 연해안에 출몰하였다.<sup>31)</sup>

30) 南漢鎬, 1997, 「9世紀 後半 新羅商人의 動向」, 『靑藍史學』創刊號.

31) 李炳魯, 1996, 「寬平期(890년대) 일본의 대외관계에 관한 일고찰」, 『日本學誌』16; 山崎雅檢, 2000, 「貞觀八年應天門事件と新羅賊兵」, 『人民の歴史學』146; 山崎雅檢, 2001, 「貞觀十一年新羅海賊來寇事件の諸相」, 『國學院大學大學院紀要』32.

이후 후백제, 태봉(후고구려), 신라에 의한 후삼국의 정립은 난립 하던 해상세력의 재편을 요구하게 되었다. 각각의 해상세력들은 세 나라로 흡수통합 되어간다. 하지만 후백제 지역에 있던 나주 오씨와, 영암 최씨는 왕건에 협력하여 왕건의 나주공략에 적극 협조하게 된다. 이후 고려의 후삼국통일에 의해 중앙귀족화한 나주 오씨와 영암 최씨는 해상의 기반을 떠남으로서 서남해안의 무역활동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sup>32)</sup>

## (5) 南北國의 육상 네트워크

신라와 발해 양국이 교섭했던 사실은 발해와 신라 사이에 ‘新羅道’<sup>33)</sup>가 있었고, 신라 泉井郡으로부터 발해의 柵城府까지에 걸쳐 39개의 驛<sup>34)</sup>이 있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사료에 몇 차례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교섭도 바로 이 신라도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길을 많이 이용했을 대상은 경제와 문화교류의 주인공인 민간인들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35)</sup>

新羅道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2-1. 용원부의 동남쪽은 바다인데 일본으로 가는 길이다. 남해부는 新羅로 가는 길이다. 압록부는 朝貢하는 길이다. 장령부는 영주로 가는 길이다. 부여부는 거란으로 가는 길이다.

(『新唐書』卷219, 北狄列傳 渤海)

32) 姜喜雄, 1977, 「高麗 惠宗朝 王位繼承亂의 新解釋」, 『韓國學報』7.

33) 『新唐書』卷219, 北狄列傳 渤海.

34) 『三國史記』卷35, 地理志 2; 『三國史記』卷37, 地理志 4.

35) 韓圭哲, 1994, 『渤海의 對外關係史』, 신서원, 11~12쪽.

2-2. 발해국의 남해, 압록, 부여, 책성의 4부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이다. 신라 정천군으로부터 책성부까지 39개의 역이 있다.

(『三國史記』卷35, 地理志, 賈耽 古今郡國志)

2-3. 渤海의 전성기에 日本과 往來가 빈번하였다. 남으로는 新羅와 국경을 맞대어 道路가 통하였는데, 어찌 사신의 왕래가 없었겠는가? 또한 渤海의 交通로인 五道 가운데에 南海府를 新羅道로 삼았으니, (이는) 兩國 통교의 명확한 증거이다.

(『渤海國志長篇』卷19, 叢考, 渤海後志2)

위의 사료 2-1은 발해의 대외교통로를 설명하는 중에 남해부가 新羅道였음을 언급한 내용이고, 사료 2-2에서는 책성부에서 신라 국경인 천정군까지 39개의 역이 있었다고 하여 新羅道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료 2-3을 통해서는 발해전성기인 문왕대에 신라와의 교섭이 新羅道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新羅道の 설치시기에 대해, 여호규는 4세기 무렵 고구려가 이용한 교통로에서 그 연원을 찾고 있는데, 국내성에서 두만강 하류에 이르는 東海路가 그것이라고 보았다.<sup>36)</sup> 이외에 8세기 특히 문왕대 전기인 721~757년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sup>37)</sup> 그 근거로는, 757년에 쌓은 탄향관문에 주목하였는데, 이 관문은 이미 721년에 쌓은 장성에 기초한 것이다. 나아가 탄향관문 축조를 계기로 그 이전과 달리 신라와 발해는 교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新羅道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는 책의 서술시점을 근거로,

36) 余昊奎, 1995, 「3세기 후반 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남도와 북도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91, 27쪽.

37) 宋基豪, 1993, 「渤海 文王代の 개혁과 사회변동」 『韓國古代史研究』6, 74~75쪽.

新羅道가 9세기중엽까지 신라와 발해 양국 간의 상설교통로로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sup>38)</sup> 즉 『三國史記』에 인용된 가탐의 고금군국지는 당시 중국을 왕래하던 외국 사신들의 견문을 참고로 간행된 지리서로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 책은 『舊唐書』 가탐열전에 의하면, 당 덕종 정원 17년(801)에 간행된 것<sup>39)</sup>으로 9세기초반까지만 해도 양국은 新羅道를 매개로 빈번하게 왕래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新唐書』의 발해관련서술은 張建章의 『渤海國記』를 참고한 것이다. 장건장은 유주절도사의 막하에 있던 문종 태화 4년(833) 발해에 사신으로 부임하였다가, 태화 9년(835)에 귀국한 뒤에 『渤海國記』를 저술하였다. 따라서 760년 전후에 개통된 新羅道는 9세기중엽까지 양국 간의 상설교통로로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鈴木靖民은 남경남해부는 북한 함경남도 북청군의 청해토성에 비정되어지며, 동해를 따라 남하하는 新羅道를 수비하였을 것인데, 이 길이 신라와의 교통을 목적으로 했는지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sup>40)</sup>

최근에 방학봉은 新羅道の 구체적인 노정과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즉 新羅道를 동서 육상교통로와 동서해상항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동부 육상교통로는 사료2-2에 있는 賈耽의 『古今郡國志』에 그 노정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정천군은 오늘의 함경남도 德源(지금의 원산지방)이고 책성부는 발해시기 동경용원부(오늘의 길림성 훈춘현 팔련성)이다. 당나라 제도에 의하면 30리마다 1개의 역을 두었으므로 정천군에서 책성까지의 거리는 1,170리이다. 이는 대체적으로 오늘의 훈춘 팔련성으로부터 덕원까지의 거리에 해당한다.

38) 趙二玉, 2001, 『統一新羅의 北方進出 研究』, 서경문화사, 181~182쪽.

39) 『舊唐書』卷138, 列傳88, 賈耽.

40) 鈴木靖民, 1998, 『渤海の國家構造』, 『しにか』9월호, 16쪽.

新羅道는 동경용원부에서 떠날 때는, 두만강을 건너 경원에 이르고 경원에서 다시 서쪽을 향해 나가 종성에 이르고 종성에서부터 남행하여 회령, 청진, 경성, 어랑, 화대 등의 지역을 지나 북청에 이르렀다. 북청에서 다시 출발하여 신포, 홍원, 함흥을 거쳐 정천군에 이르며 정천군으로부터 동해안을 따라 남행하여 경주에 이르는 길이었다.

중경(和龍縣 西古城)에서 떠날 때는 동흥촌옛성, 영성옛성, 동성용을 거쳐 두만강을 건넌 후 종성과 상삼봉 일대로부터 남행하여 회령, 청진, 경성, 어랑, 북청, 함흥, 덕원을 거쳐 경주에 이르렀다.

舊國에서 南海로 통하는 길을 보면 구국에서 떠나 할바령을 넘고 양병태, 명월구, 노두구, 연길, 영성, 동서용을 지나 두만강을 건너 종성과 상삼봉 지대에 이르렀다.

상경용천부로부터 남경남해부로 가는 길은 상경용천부에서 마련하를 따라 남하하여 할바령을 넘어 홍운, 춘양, 천교령, 왕청, 백초구, 의란, 연집, 연길, 영성을 지나 동성용에 이르렀다.

西京(오늘의 길림성 임강진)을 이용하여 남경남해부로 다니는 길도 있었다. 임강에서 떠나 협심강, 신방자를 지나 장백진에 이르렀다.

동해안 육로외에 또 발해의 국내성으로부터 한반도의 서부 지역인 평안도 지방을 경유하여 경주에 이르는 길이 있었다.<sup>41)</sup> 이 길은 新羅道중 서부 육상교통로에 해당한다. 『三國史記』地理4에 “평양으로부터 국내성까지 17驛이 있다. 국내성은 北朝경내에 있다.”라고

41) 日野開三郎은 발해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중국이고, 중국 다음의 무역상대국은 신라라고 하면서, 신라와의 무역로는 함경도 南京南海府부터 신라 東北境에 이르는 노선이 있지만, 별도로 西京鴨綠府관하의 桓州(오늘날의 집안)부터 滿浦를 경유하여 신라의 西北境에 이르는 노선이 있었는데, 민간상인중에는 후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하였다.(日野開三郎, 1968·1972, 『國際交流史上より見た滿鮮の絹織物』, 『朝鮮學報』48·63; 1984, 『日野開三郎東洋史學論集』9-北東アジア國際交流史の研究(上)-, 三一書房, 376쪽).

기재하였다. 국내성은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기전의 수도이며  
오늘의 길림성 집안현 현성이다. 이 경로를 통해 양국의 수도로 다  
니자면 동해안 경로보다 멀기 때문에 내왕이 빈번하지 못하였다.

해상항로 가운데 동해바다를 통하는 길은 남해부의 吐號浦에서  
떠나 한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경주에 이르는 길이다. 이외  
또 서해바다를 통해 경주로 가는 길이 있었다. 그 노선에 대해 『新  
唐書』<sup>42)</sup>에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sup>43)</sup>

결국 이를 통해 보았을 때, 新羅道는 발해 때 설치한 交通路로서  
의 역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 고구려시대부터 동해  
안의 주요 交通路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라와 발해는 新羅道를 통하여 적어도  
9세기 중엽까지 활발한 교섭을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에는 양  
국간의 교류의 주목적이 정치적이었는지 아니면 경제적인 목적이었  
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다만 경제적인 교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라는 짐작만 하였다.<sup>44)</sup> 그리고 문왕대 말기인  
원성왕대에 한 차례 사신이 파견된 사실<sup>45)</sup>로 미루어 보아 정치적인  
교섭이 있었던 것도 확실하다. 즉 8세기 중엽에 이르면 양국관계는  
대립보다는 친선과 교류가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新羅道를 통한 남북국 경제교섭의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이 견적

---

42) 登州東北海行過大謝島・龜嶺島・末島・烏湖島三百里 北渡烏湖海至馬石山東之  
都里鎮二百里 東傍海壖 過靑泥浦・桃花浦・杏花浦・石人汪・駱駝灣・烏骨江  
八百里 乃南傍海壖 過烏牧島・貝江口・椒島 得新羅西北之長口鎮 又過秦王石  
橋・麻田島・古寺島・得物島千里 至鴨綠江唐恩浦口 乃東南陸行七百里 至新羅  
王城(『新唐書』卷43下, 地理志).

43) 方學鳳, 2000, 「渤海遺址로부터 본 新羅道」, 『中國境內 渤海遺蹟研究』, 백산자료  
원, 399~409쪽.

44) 이용범, 1978, 「발해의 성립과 그 문화」, 『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93쪽.

45) 『三國史記』卷10, 元聖王 6년.

물의 교류이다. 발해인은 신라인과 같이 해상무역에 진출하였고 육상교역에도 활약했지만, 수입품은 항상 견직물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하였다. 그 수입선을 보면 견직의 본고장인 중국은 물론 멀리 일본에까지 이것을 구하고 있다.

해동성국을 구가한 발해의 융성은 지배계급의 호사스런 생활을 지원하는 외에 일반 海人이나 여진인의 생활도 향상시켰을 것이다. 발해의 신라산 견직물 수입도 일반적인 紬·絹·錦으로부터 고급품인 魚牙·朝霞錦 등의 錦紬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였을 것이다.

결국 신라는 재래의 錦絹생산의 증가외에 朝霞·雲霞·魚牙錦이나 朝霞·魚牙紬 등 신라독자의 고급견직물을 생산하여 중국·발해·소고구려에 수출하였고, 소고구려에 수출된 朝霞錦·魚牙錦은 거란으로 넘어가 거란으로부터 중국에 공헌되었다. 요동으로부터 거란을 경유하여 중국에 수입된 것은 발해·소고구려·거란에 들어갔던 신라산 錦絹紬로 그 지방에 있던 통구스 계통 유목민족의 생산품은 아니었다.<sup>46)</sup>

이러한 사실은 발해의 뒤를 이어 만주지방을 지배했던 遼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려의 對遼貿易 수출품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직물류였다. 직물류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 것이 絹이다. 원래 거란인은 유목민족이었던 만큼 거란인의 전통적인 의류는 文皮라 불리던 호·표피 등의 동물가죽으로 5세기 중엽 거란이 교역을 시작했을 당시 거란의 대표적인 수출품이었다.<sup>47)</sup> 이들 동물가죽은 방한의류로 우수한 반면 세탁상의 어려움으로 비위생적이며 내의용으로는 부적합했을 것이다. 견직물은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해주는 것은 물론 촉감이나 미관상으로도 수려하여 거

46) 日野開三郎, 1984, 위의 책, 362~364쪽.

47) 李在成, 1996, 『古代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社, 139쪽.

란인의 絹에 대한 애호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遼의 견직물은 점령 지역의 한인에 의해 대릉하를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거란 지역에서 생산된 견직물로는 수요량에 태부족이었고, 이외에 중요한 공급로로는 송으로부터의 유입이었다. 송으로부터의 유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전연의 화약 조건인 세폐견 20만필-흥종 11년 이후에는 30만필로 증액-이었다. 세폐견으로도 부족한 양은 송으로부터 수입해서 충당해야 했다. 견직물의 특성상 영구적인 축적이 가능한 은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 소모되는 만큼 요의 견직물 수요는 늘상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문에 고려로부터 견직물을 수입하는 것에도 중요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契丹國志』에 紫花綿紬와 白綿紬의 품목을 규정해 두었다는 사실<sup>48)</sup>에서도 알 수가 있다.<sup>49)</sup>

고려와 東女眞의 絹馬貿易, 고려와 遼의 무역품에 보이는 絹 등을 통해 볼 때, 각각 고려와 여진·요의 바로 전시기에 있었던 신라와 발해도 활발한 경제교섭을 했을 것임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50)</sup>

남북 경제교섭을 견직물의 교류를 통해 살펴보았다. 신라와 발해간의 경제교섭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사료는 없다. 하지만 고려와 遼간의 무역, 고려와 여진간의 絹馬貿易을 통해 볼 때, 遼와 고려의 앞선 시기에 있었던 신라와 발해도 경제교섭을 했을 것임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발해의 생산구조를 고려할 때, 당·일본뿐만 아니라 신라와의 경제교섭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48) 『契丹國志』卷21, 外國貢進禮物 新羅國貢進物件.

49) 이정희, 2000, 「고려전기 對遼무역의 성격」 『고려시대 세제의 연구』, 國學資料院, 306~307쪽.

50) 尹載云, 2002, 「신라와 발해의 경제교섭」 『史叢』55, 歷史學研究會.

### 3. 남북국시대 네트워크와 정부정책

唐代 무역관리제도의 특징가운데 먼저 주목되는 것은, 대외무역은 황제의 전권사항이었다고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漢代 이래의 계보를 잇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漢·魏·南北朝를 거치는 약 800년간의 실천경험을 바탕으로 隋·唐시기에 이르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唐律의 제정시행과 더불어 대외무역 및 항해와 관련된 문서들이 제 격식을 갖추게 되었으며, 互市監의 대외무역에의 관여를 계기로 중앙정부의 대외무역과 항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더 중요한 변화는 漢代의 候官이후, 새로운 항해 및 무역관리기구인 市舶使가 설치되면서 중국 고대 무역관리제도상 새로운 市舶使시대가 개막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대 무역관리제도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수출품규제<sup>51)</sup>였다.

당만이 가질 수 있었던 뛰어난 문물은 당연히 여러 외국이 열망한 것이었다. 그러한 탐낼만한 물품을 여러 나라가 유일하게 입수할 수 있는 기회가 조공이었다. 당대의 수출품규제는 화사품의 가치를 극도로 높여 많은 나라를 조공에 불러들이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沿邊互市보다 公使(사실상 당에서는 거의 朝貢使로 간주됨)로서 入朝하여 교역하는 편이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것 등도 고려한다면 당대 율령제 하의 무역관리제도는 조공관계의 유지를 위한 시스템

---

51) 당대의 수출품규제는 官市令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令의 규정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변경·추가가 勅으로 시행되어 수출금제품도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예컨대 開元 2年 閏3月の 勅(『唐會要』86, 市), 정원 3년 12월의 禁令(『冊府元龜』999, 外臣部 互市), 건중 원년 10월 6일의 勅(『冊府元龜』999, 外臣部 互市) 또 勅 등의 법령의 형식으로는 남아 있지 않으나, 최신·선진의 서적 등에 대한 수출규제가 있었던 일도 알려져 있다.

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당의 조공을 통한 무역관리제도가 변하게 되는 것은 사무역을 용인하면서부터이다. 사무역 발전의 단서는 開元年間(713~741)의 초두에서 확인된다. 그 예로 市舶使의 설치<sup>52)</sup>와 西域에서의 征稅<sup>53)</sup>를 들 수 있다. 어느 쪽이건 대외무역에 대한 과세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때까지 제한하고 있었던 사무역을 적극적으로 용인하려고 하는 당의 새로운 방침을 알 수 있다. 개원연간 이후 당의 대외무역 특히 남해무역이 점차 성행하였던 것은 이러한 무역정책의 전환에 의한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될 것이다. 또 당연한 것이지만 이 시기의 唐 국내의 사회·경제상황도 대외무역의 융성에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 당에서의 南海貿易의 영향은 주변 여러 나라의 무역관계에도 반영되었던 것은 이미 8세기 중반에 신라가 당에서 구한 南海產 香藥을 일본에 가지고 온 것<sup>54)</sup>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당 왕조가 멸망하고 책봉체제가 붕괴한 뒤에 동아시아교역권이 탄생하였다고 하는 의견<sup>55)</sup>도 있지만 9세기에는 이미 교역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의 태동은 8세기 전반 盛唐期에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sup>56)</sup>

이렇게 당의 사무역 용인이라는 방침 변경의 주요한 원인은 재정 팽박에 의한 새로운 재원의 확보 때문이었다. 7세기말에는 율령제적인 均田·租庸調제도는 잘 행해지지 않고 전통적인 중농주의적 세금징수만으로는 불충분하게 되었다. 시박사가 징수한 船脚과 西

52) 和田久徳, 1960, 『唐代における市舶使の創置』, 『和田博士古稀紀念東洋史論叢』.

53) 伊瀬仙太郎, 1955, 『西域貢に對する征稅』, 『中國西域經營史研究』.

54) 東野治之, 1992, 『遣唐使と正倉院』, 岩波書店.

55) 西嶋定生, 1985, 『日本歴史の國際環境』, 東京大學出版會.

56) 榎本淳一, 1992, 『國風文化と中國文化-文化移入における朝貢と貿易』, 『古代を考える唐と日本』, 吉川弘文館; 2002, 『張保臯關聯研究論文選集』-中國・日本編-,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655쪽.

域商戶에 대한 征稅는, 8세기 후반 연이어 신설된 鹽稅・商稅 등의 상업과세의 선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고종조 즈음부터 현저한 관리의 증가, 지배영역 확대에 의한 군사비의 증대도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당에서의 사무역 발전에 역동적 추진력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 755년 11월에 일어난 安史의 亂이었다. 安祿山은 平盧・范陽・河東의 세 절도사를 겸하면서, 당으로 침입해오던 契丹이나 奚의 정벌에 功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재상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있던 楊國忠을 배제할 것을 구실로 擧兵하여 낙양・장안을 점령하였다. 玄宗은 四川으로 피신하였고, 肅宗에게 讓位하였다. 이 사이 平盧留後事の 職에 있던 徐歸道는 張元瀾을 발해에 파견하여 원군을 요청했지만, 발해는 서귀도가 안록산과 내통하고있다는 것을 의심하여 원군을 파견하지 않았다. 게다가 758년 安東都護 王玄志는 將軍 王進義를 발해에 파견하여 안록산의 진압을 명하는 숙종의 칙서를 가져왔다. 그러나 발해는 당을 직접적으로 군사지원하지 않았다. 또한 당은 762년 文王에게 ‘渤海國王’號와 ‘檢校太尉’의 관작을 수여한다. 이것은 당이 발해의 지원을 기대하는 조치<sup>57)</sup>였다고 보인다.

唐은 8세기중엽 安史의 亂(755~763)을 겪으면서 지방의 통제가 해이해졌고, 그 결과 각지에서 변진세력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고구려계 유민 출신인 李正己・李汭・李師古・李師道로 이어지는 李氏一家의 세력이다. 그들은 신라와 해상교통이 편리한 산동반도 전역을 장악하여, 3代 55年間(765~819)이나 治外法權적인 변진세력으로 唐內의 小王國으로 군림하였다.<sup>58)</sup>

57) 酒寄雅志, 1991, 『東北アジアの動向と古代日本-渤海の視點から』, 新版『古代の日本』2-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 角川書店;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113쪽.

58) 金文經, 1975, 『唐代 藩鎮의 한 研究-高句麗遺民 李正己一家를 中心으로-』, 『省

平盧淄青藩鎮이 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職名은 ‘平盧淄青節度觀察使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인데, 이 職名은 羈靡政策으로서 주변 제민족을 통치하던 당이 변방의 국가 통치에 대한 업무를 부여할 때 除授하는 職名이다. 즉 이 직책은 ‘신라와 발해의 두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그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할하는 장관’이라는 의미이다.<sup>59)</sup>

원래 이 직함은 ‘海運’과 ‘押新羅渤海兩蕃使’라는 두 직책을 합친 복합적인 직함이다. 그 중 앞의 ‘海運使’라는 직함은 해상을 통하여 남방 지역에서 생산된 양곡을 북방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들의 군량미로 운반함에 있어 해상항로를 통한 운반책임을 지는 것이며, 원래는 安祿山에게 주어졌던 직함이다.

‘押新羅北海兩蕃使’는 765년에 이정기가 후회일을 몰아내고 平盧淄青節度觀察使가 되었을 때, 부여된 직함이다.<sup>60)</sup> 그러다가 10년 후인 775년에는 이 직함이 ‘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로 바뀐다.<sup>61)</sup> 다시 9년 후인 784년에는 ‘海運陸運押新羅渤海兩蕃使’가 된다. 앞의 775년의 직함에 해운을 추가한 것은 군량미의 해상운송을 책임지도록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후 ‘陸運海運押新羅渤海兩蕃等使’로 바뀌어 兩蕃과 使 사이에 ‘等’자를 추가한 것은 신라와 발해뿐만 아니라 일본 등 기타 지역과의 교역도 그 관할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9년 후에 ‘陸’자를 추가한 것은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육상운송에 관한 책임도 平盧淄青節度使에게 맡겼던 것이다. 따라서 이정기의 평로치청절도사는 해상무역 뿐만 아니라 육상운송과 연안운송 등 중국의 동북지방

谷論叢』6: 1984, 『唐代の 社會와 宗教』, 崇田大學校 出版部.

59) 사회과학연구소편, 1979, 『조선전사』5-발해 및 후기신라사-, 48쪽.

60) 『新唐書』65, 方鎮表5, 永泰元年條.

61) 『舊唐書』124, 列傳74, 李正己.

의 교통망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 조정하는 막강한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sup>62)</sup>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唐末의 대외무역을 관리하던 것은 市舶使<sup>63)</sup>였다. 시박사는 대외무역선의 입출항 및 교역의 관리와 세금의 징수, 그리고 궁중에서 사용하는 각종 사치품들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였다. 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도 시박사와 같은 기능을 한 것으로, 시박사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기구로 해석하고 있다.

시박사가 순수한 무역관리기구인 반면에 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는 당의 對渤海, 對新羅 외교의 일선창구라는 정치, 외교적인 기능이 더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王杰에 의하면 시박사의 주요기능은 황실의 여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치품의 조달이 설치동기였다고 보이며, 정치적 부패의 심화로 상류층의 사치가 더해질수록 시박사가 해외무역선으로부터 조달하는 궁중사치품의 수량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정기를 비롯한

62) 허일·최재수·강상택·이창역外 共著, 2001, 『張保皋와 황해해상무역』, 국학자료원, 170~172쪽.

63) 唐代에 설치된 市舶使는 다음과 같다.(黎虎, 2002, 「唐代市舶使與市舶管理」, 『東國史學』37, 562쪽의 표).

| 연도           | 성명  | 직 책    | 장소 | 신 분    | 출 전                                     |
|--------------|-----|--------|----|--------|-----------------------------------------|
| 開元 2년(714)   | 周慶立 | 市舶使    | 安南 | 朝官     | 『舊唐書』卷8, 玄宗紀                            |
| 開元 10년(722)  | 韋某  | 市舶使    | 廣州 | 宦官     | 『全唐文』卷371, 于肅<br>『內給事諫議大夫韋公神道碑』         |
| 天寶初(742~755) | 無   | 中人之市舶者 | 廣州 | 宦官     | 『新唐書』卷126, 盧奐傳                          |
| 廣德 元年(763)   | 呂太一 | 市舶使    | 廣州 | 宦官     | 『舊唐書』卷11, 代宗紀                           |
| 德宗初(779~804) | 王虔休 | 市舶使    | 廣州 | 朝官     | 『全唐文』卷515, 王虔休<br>『進嶺南王館市舶使院圖表』         |
| 開成 원년(836)   | 無   | 市舶使    | 廣州 | 宦官(監軍) | 『舊唐書』卷177, 盧鈞傳                          |
| 大中 4년(850)   | 李敬實 | 市舶使    | 廣州 | 宦官(都監) | 『考古與文物』1985년 6期, 關雙喜,<br>『西安東郊出土唐李敬實墓誌』 |

역대 평로절도사가 담당했던 押新羅渤海兩蕃使의 기록중에는 이러한 사치품 조달이라는 업무를 수행한 흔적은 거의 안 보이는 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정치·외교적인 업무를 수행한 흔적이 보인다.<sup>64)</sup>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두 기구가 왜 존재하였을까? 이러한 차이는 시박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廣州 등 남방 지역과 押新羅渤海兩蕃使가 위치하였던 중국의 동북지방의 지정학적인 중요성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광주 등 중국 남부의 海港을 이용하는 서역과 동남아제국들은 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으므로, 그들이 먼 바다를 건너와서 다시 대륙 깊숙이까지 쳐들어와서 당나라 정권을 위협할 개연성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당나라 남부 항구를 이용하는 무역선들을 대하는 당 조정의 태도도 경제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당의 동북지방의 경우, 당나라와 건국초기의 당나라가 고구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신라와 연합하여 한반도를 통일하여 겨우 동북지방의 근심거리를 제거하였다고 생각한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발해가 나타나서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발해의 존재는 신라에게도 경계의 대상이었다. 중국 동북지방은 당과 신라, 그리고 발해와 일본이라는 네 세력 간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다. 押新羅渤海兩蕃使는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미묘한 정세 속에서 다변화된 외교를 하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선기관<sup>65)</sup>이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唐은 8세기 초를 경계로 조공을 중심으로 한 공무역정책에서, 사무역을 용인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이후 안사의 난을 계기로 절도사 같은 지방관리, 市舶使 등에서 무역을

64) 王杰, 1994, 『中國古代對外航海貿易管理史』, 大連海事大學出版社, 76쪽.

65) 허일·최재수·강상택·이창익外 共著, 2001, 위의 책, 174~175쪽.

관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무역의 담당층이 늘어가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러한 당의 무역정책 전환이 신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겠다. 신라와 당은 일시적인 전쟁상태에 있었으나 703년부터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어 성덕왕대(702~736)에는 총 46회의 조공사가 파견되었다. 이러한 조공사의 파견은 왕권의 신장과 관련을 가짐과 동시에 대당 조공의 성격도 문화적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된다. 즉 조공제도의 실질적인 목적은 주변국가인 중국의 선진문물을 수입하여, 왕족과 귀족들의 정치적 지위의 보장과 그들의 경제적 이익의 독점에 있다. 단순히 중국왕조가 주는 官爵이나 印綬 그리고 衣服 등이 집단 자체 내에서의 지배자나 지도자의 정치·사회적인 권위를 높여주는 효과 때문만은 아닐 것이며 보다 실질적인 목적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중국정부만이 취급하는 일정한 물품을 획득하는데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朝貢과 下賜의 형식을 통해 물자교역이 가능하였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sup>66)</sup> 이러한 朝貢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동아시아 무역망을 형성시킨 전제이고, 조공무역에 수반한 사무역의 확대를 촉진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 내 교역의 주요한 루트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67)</sup>

기존에는 사무역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점을 8세기중반 이나 9세기 전반으로 보아왔다. 하지만 다음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66) 李賢惠, 1994, 『三韓의 對外交易體系』,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1998, 『韓國 古代의 생산과 교역』, 一潮閣, 266쪽.

67) 尹載云, 1999a, 앞의 글.

2-1. 夏 5월에 靈巖郡 太守인 一吉滄 諸逸이 公益을 배반하고 私益을 영위하여 杖刑 100에 처하고 섬으로 보냈다.<sup>68)</sup>

2-2. 禹金里에 사는 가난한 여자 寶開에게 長春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바다의 장사꾼을 따라 나가더니 오래 되어도 소식이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敏藏寺 觀音菩薩앞에 가서 7일 동안 기도했더니 長春이 갑자기 돌아왔다. 그 동안의 연유를 물으니 長春이 대답했다. “바다 가운데서 회오리바람을 만나 배는 부서지고 동료들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지만, 저는 널판 쪽을 타고 뭍나라 바닷가에 닿았습니다. 뭍나라 사람이 저를 데려다가 들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스님 하나가 마치 고향에서 온 것처럼 은근히 위로하더니 저를 데리고 같이 가는데, 앞에 깊은 도랑이 있어 스님은 저를 겨드랑이에 끼고서 도랑을 뛰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 우리 집 말소리와 우는 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저녁때에 뭍나라를 떠났는데, 이곳에 도착한 것이 겨우 戌時였다. 이때는 바로 天寶 4년 乙酉(745) 4월 8일이었다.<sup>69)</sup>

사료 2-1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신라관인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료로서 주목되었다. 즉 신라에서는 관인에 대해 杖刑과 流配刑이 竝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隋唐의 律이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진 특징 중의 하나는 유형의 里數가 단축되었다는 점, 또 유형에 鞭笞刑(杖刑)이 竝科되던 기존의 형벌체계가 폐지되었다는 점인데, 아직도 신라에서는 장형과 유형이 병과되는 형벌체계가 남아있어 주목된다는 것이다.<sup>70)</sup>

68) 夏五月 靈巖郡太守一吉滄諸逸 背公營私 刑一百杖 入島(『三國史記』8, 孝昭王 10年).

69) 『三國遺事』 3, 塔像4, 敏藏寺條.

70) 尹善泰, 2003, 「新羅 中代の 刑律-中國律令 受容の 新羅の 特質과 관련하여-」, 『강좌 한국고대사』3-고대국가의 구조와 사회(2)-, 재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

하지만 효소왕대(692~702)의 끝부분인 8세기 초반부터 사무역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一吉漁 諸逸이 영위한 私益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하지만 靈岩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문화적 성격을 고려해 보면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즉 백제시대에 王仁이라는 인물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 이 지역의 문화배경이나 성격이 백제의 중심세력문화와는 자못 다른 바가 많고, 왕인의 도일시기와 백제의 마한세력 복속시기가 거의 비슷하고 또 왕인의 고향인 영암이 최후의 복속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영암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대중국항로의 중요 기점 가운데 하나였다. 한편 남북국시대에도 영암 관내의 月出山에서 신라의 國祭인 小祀(月奈岳祭)가 지내졌음을 통해 볼 때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sup>71)</sup> 따라서 영암군태수 一吉漁 諸逸이 영위한 私益은 상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사료 2-2에 나오는 長春은 왕경인으로 해상무역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항해 도중에 조난하여 양자강 하류지방에 표착했다는 것은, 장춘이 속한 商團이 대중국 해상무역에 종사했음을 시사해 준다. 장춘은 왕경에 거주하는 평민출신으로서 귀족이 조직한 商團에 참여했다고 보여진다. 이제는 민간 상업세력이 독자적으로 대외교역에 진출하게 되었고, 경덕왕이 이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민장사에 보시를 한 것은 귀족 주도의 대외교역이 적어도 국가의 묵인하에 이뤄지던 사정을 보여준다.<sup>72)</sup>

원, 121쪽.

71) 李海濬, 1986, 「靈岩郡의 沿革」, 『靈岩郡의 文化遺蹟』, 국립목포대학박물관 · 전라남도 영암군, 19~21쪽.

72) 김창석, 2001, 「장보고 집단의 교역활동과 靑磁」, 『STRATEGY21』8, 125~126쪽.

이상의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8세기 초반에 민간 해상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할 정도로 무역이 발달했다는 점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의 무역정책이 사무역 용인으로 전환한 시점이 開元年間(713~741)초였다. 그런데 신라의 경우에는 효소왕 10년(701)에는 私益을 추구한 영암군태수 一吉滄 諸逸을 처벌하고 있는 데 반해서, 경덕왕대에는 평민인 長春도 아무런 제약 없이 해상 무역에 종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라정부의 무역정책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고 보여진다. 즉 적어도 신라는 성덕왕대부터는 사무역 용인정책으로 전환하였다고 생각된다.

당의 무역정책 전환이라는 외적인 계기 외에 무역발전의 내적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신라의 산업발전이다. 특히 신라의 가장 전성기라고 하는 성덕왕대부터 대당관계의 진전에 의해 신라의 진골 귀족들은 자기의 공방에서 많은 대외교역품을 생산했다고 보여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752년에 김태렴 일행이 일본에 가져간 물건을 들 수 있다. 이 물건은 신라 사절단과 함께 來日했다고 추측되는 다수의 교역담당자가 각 공방의 귀족으로부터 위탁판매를 받은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당과의 교역을 통하여 얻은 물품을 신라가 일본에 파는 중계무역을 행했다고 볼 수도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8세기 이전에 신라에서 일본에 가져간 물품은 금, 은, 동, 인삼 등의 원료품 중심이었으나, 8세기 중엽부터는 금은세공품, 모직물, 견직물 등 정교한 공예품이 눈에 띄게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김태렴 일행이 일본에 가져간 물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이시라 기모쓰게(新羅買物解)’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일본율령귀족층이 신라에서 가져오는 舶載品에 대하여 강렬한 구매의욕을 보이고 있다. 舶載品인 향료, 약물, 채색료, 口脂, 髮刺, 鏡鑑類 등의 소비가 적지 않

은 것을 보면 당시의 황실과 귀족들이 대신라무역에의 의존도를 알 수 있다. 결국 8세기에 있어서 양국의 교역은 표면적으로 긴박한 외교형식을 둘러싸고 마찰을 계속하고 있는 뒤편에서는 5位 이상의 귀족층과 신라상인 간에 빈번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sup>73)</sup>

사무역은 9세기에 들어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 8세기 단계와의 차이점은 무역 담당자 층의 확대를 들 수 있다. 8세기 단계까지 무역의 주체는 주로 왕이나 귀족 등이었다. 하지만 9세기로 접어들면 서부터는 평민들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814년(헌덕왕 6)부터 9세기 전반에 신라 상인들이 일본에 10여 차례 내향한 기록이나,<sup>74)</sup> 『興德王陵碑片』에 보이는 ‘貿易之人’<sup>75)</sup>은 민간상인이 뚜렷한 사회계층으로 등장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3. 漢山州 瓢川縣에 妖人이 있어, 빨리 부유해지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므로 못 사람들이 자못 이에 미혹되었다. 왕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左道로써 무리를 미혹케 하는 자를 처형하는 것은 선왕의 법이다.”라고 하여 그를 외딴 섬으로 내쳤다.<sup>76)</sup>

2-4. 왕위에 오른 지 9(834)년제인 太和 8년에 고지를 내려 말하기를, “사람은 위사람과 아랫사람의 구별이 있고, 지위에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있어 이름의 차례가 같지 않으며, 의복도 또한 다른 것이

73) 이병로, 1996, 『8세기의 羅・日관계사-中華사상과 교역을 중심으로-』, 『日本學年報』4, 247~249쪽.

74) 李成市, 1997, 『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 青木書店.

75) △思之不△△ △貿易之人問△ 規諫及乎(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2, 『韓國古代金石文』Ⅲ,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76) 三年 夏四月 漢山州瓢川縣妖人 自言有速富之術 衆人頗惑之 王聞之曰 執左道以惑衆者 刑之 先王之法也 投畀其人遠島(『三國史記』10, 興德王 3年).

다. 그런데 풍속이 점차 경박해져서 백성들은 사치와 호화를 다투며, 오직 외래 물건의 진기함을 숭상하고 도리어 토산품의 세련되지 못함을 싫어한다. (이에) 신분에 따른 禮의 차이가 거의 무시되는 지경에 빠지고 풍속은 허물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감히 옛 법에 따라 밝은 명령을 펴는 바이니, 혹시 일부러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고 했다.<sup>77)</sup>

사료 2-3에서는 왕경이 아닌 한산주에서 富의 축적방법이 유포되고 주민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었던 사실이 주목된다. 지방에서도 경제적 부에 대한 선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던 것은, 직접 생산자층의 몰락과 함께 당시 지방에서 상업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富가 창출되고 있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78)</sup> 한편 이 사료에서도 신라정부의 사무역 용인정책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신라정부는 현실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사무역행위에 대해서는 묵인 또는 용인을 하고 있었으나, 이처럼 공공연히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였던 것이다.<sup>79)</sup>

77) 興德王卽位九年 太和八年 下敎曰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薄 民競奢華 只尙異物之珍寄 却嫌土產之鄙野 禮數失於逼僭 風俗至於陵夷 敢率舊章 以申明命 苟或故犯 固有常刑(『三國史記』33, 雜志2, 色服條).

78) 한편 한산주의 妖人이 설파한 ‘速富之術’에 대해서는 농민층 빈곤에 따른 사회적 불안 때문에 나타난 일종의 예언, 미신으로 보기도 하고(李基東, 1997,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53쪽), 귀신·卜筮에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趙仁成, 1996, 『彌勒信仰과 新羅社會』, 『震檀學報』82, 38~39쪽).

79) 사이버네틱스·시스템이론에 의하면 봉건대국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관료기구가 형성되어 관료의 유동성도 또한 크다. 이러한 관료정치는 각 지역을 아우르는 상업유통 활동을 매우 필요로 한다. 동시에 상품경제는 자급자족의 소농경제를 파괴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여, 일정정도 귀족화경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경제가 지나치게 발달하면 지주경제 구조를 위태롭게 하고 봉건경제의 쇠퇴를 초래한다. 그래서 봉건대국의 경제구조 전체는, 상업이 비교적 발달하지만 봉건적 생산관계를 파괴하는 데는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경직된 평형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평형점에서 지나치게 괴리

사료 2-4는 834년 흥덕왕이 반포한 사치 제한령이다. 이 규정은 屋舍・色服・車騎・器用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제한령이다. 이는 당시 진골귀족 이하 귀족층 사이에 만연되고 있던 사치 풍조를 규제하려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 제한령에 보이는 외래상품 가운데는 그 원산지가 타슈켄트 지방 아랄해 동안인 瑟瑟을 비롯하여 羊毛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 페르시아의 坐具用 모직물인 毳毼・毼氍, 캄보디아산 翡翠毛, 보르네오・자바산 玳瑁, 자바・수마트라산 紫檀, 수마트라가 주산지인 沉香 등이 보인다. 이러한 사치품은 장보고의 무역선단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sup>80)</sup>

사료 2-3, 2-4 외에 9세기대의 신라 무역정책을 엿볼 수 있는 것이 軍鎭이다. 신라 하대에 설치하였거나 또는 이전에 설치하였으나 하대까지 존속한 軍鎭으로서 北鎭, 溟江鎭, 淸海鎭, 唐城鎭, 穴口鎭, 長口鎭, 施彌知鎭과 더불어 沙火鎭, 阿弗鎭, 昵於鎭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沙火鎭, 阿弗鎭, 昵於鎭은 후삼국시기에 신라가 王京을 특별히 鎭護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北鎭과 溟江鎭은 모두 북방 변경 지역에 설치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민족의 침략을 방어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北鎭은 무열왕 5년(658)에 悉直(삼척)에 처음 설치되었다. 그러나 설치 직후의 북진이 가진 군사적 위상은 州治인 何瑟羅보다 낮았으며, 州治의 배후에서 말갈의 침입에 대비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북진

---

되면 이 때도 마찬가지로 봉건대국은 해체된다고 한다(金觀濤 著・河世鳳 譯, 1997, 『中國史의 시스템理論의 分析』, 신서원, 53쪽). 신라의 경우에도 국가운영의 필요성 면에서 상업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봉건 생산관계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업의 발달을 조절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80) 李基東, 1985, 「張保臯과 그의 海上王國」, 『張保臯의 新研究』, 莞島文化院; 1997,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은 경덕왕 16년 이후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실직에서부터 泉井郡(덕원)으로 移置되었다. 이렇게 옮겨진 북진은 성덕왕 20년(721)에 축조되었던 北境長城과 경덕왕 16년경에 설치된 炭項關門을 수비하는 임무를 가진 동북변경 방어의 최일선 기지로 되었다. 북진은 사료를 통해서도 헌강왕 12년(886) 당시까지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으므로,<sup>81)</sup> 경덕왕대 이후 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동북변경방어의 중핵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sup>82)</sup> 한편 溟江鎮은 782년(선덕왕 3) 大谷(황해도 평산)에 설치한 軍鎮인데, 이것은 8세기 중반에 새로 개척한 패강 지역을 북방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하였다고 이해되고 있다.<sup>83)</sup>

이외에 신라 하대에 설치한 군진으로는 淸海鎮(흥덕왕 3년, 828), 唐城鎮(흥덕왕 4년, 829), 穴口鎮(문성왕 6년, 844), 長口鎮<sup>84)</sup>을 들

81) 春 北鎮奏 狄國人入鎮 以片木掛樹而歸 遂取以獻(『三國史記』 11 憲康王 12年條).

82) 李文基, 1994, 「統一新羅期の '北鎮'과 軍事的 位相」, 『九谷 黃鍾東教授 停年紀念史學論叢』.

83) 패강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들이 참조된다.

藤田亮策, 1953, 「新羅九州五京攷」, 『朝鮮學報』5; 李基白, 1958, 「高麗 太祖時の 鎮」, 『歷史學報』10(1968,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에 재수록); 末松保和, 1975, 「新羅의 郡縣制」, 『學習院大學文學部研究年報』21(1995, 『新羅의 政治と社會』下에 재수록); 木村誠, 1979, 「統一新羅의 郡縣制と 溟江鎮經營」, 『朝鮮歷史論集』上; 方東仁, 1979, 「溟江鎮의 管轄範圍에 關하여」, 『靑坡盧道陽博士古稀紀念論文集』(1997, 『韓國의 國境劃定研究』, 一潮閣에 재수록); 李基東, 1976, 「新羅 下代의 溟江鎮」, 『韓國學報』5(1984,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에 재수록); 李成市, 1981, 「新羅兵制における 溟江鎮典」,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別冊7(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에 재수록); 배종도, 1989, 「新羅 下代의 地方制度 改編에 대한 考察」, 『學林』11; 李仁哲, 1993, 「新羅統一期の 地方統治體系」,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姜鳳龍, 1997, 「新羅 下代 溟江鎮의 設置와 運營-州郡縣體制的 擴大와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研究』11; 全德在, 1997, 「新羅 下代 鎮의 設置와 性格」, 『軍史』35; 尹載云, 1999b, 「新羅下代 鎮의 再檢討」, 『史學研究』58・59合.

84) 登州東北海行 過大謝島・龜欽島・淤島・烏湖島三百里 北渡烏湖海 至馬石山東之都里鎮二百里 東傍海壖過靑泥浦・桃花浦・杏花浦・石人汪・橐駝灣・烏骨江八百里 乃南傍海壖 過烏牧島・貝江口・椒島 得新羅西北之長口鎮 又過秦王・

수 있다. 청해진<sup>85)</sup>은 전남 완도에, 당성진은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에, 혈구진은 강화도에, 장구진은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 근처<sup>86)</sup>에 위치하였다. 이처럼 해상교통의 요지에 대규모의 군대가 주둔하는 진영을 설치하였다는 점에서 신라는 일차적으로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해안 지역에 진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해진 설치 이후에 설치된 鎭들은 청해진의 성공, 활발한 대외무역을 위한 안전한 항로 확보, 부족한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설치되었다.<sup>87)</sup>

결국 신라는 景德王代(742~765) 이전부터 사무역 용인으로 무역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소왕 10년(701)의 一吉漁 諸逸 처벌, 흥덕왕 3년(828)의 한산주 妖人 처벌, 흥덕왕 9년(834)의 사치 제한령 반포 등을 볼 때, 국가운영의 필요성 면에서 상업·무역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사회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무역의 발달을 조절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石橋・麻田島・古寺島・得物島千里 至鴨綠江唐恩浦口 乃東南陸行七百里至新羅王城 (『新唐書』 43下, 地理志33下, 靑州・河北道 登州條).

85) 청해진에 관한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蒲生京子, 1979, 「新羅末期의 張寶高의 擡頭と反亂」, 『朝鮮史研究會論文集』16; 李基東, 1985, 「張保皐와 그의 海上王國」, 『張保皐의 新研究』, 莞島文化院; 尹載云, 1996, 「9世紀前半 新羅의 私貿易에 관한 一考察」, 『史叢』45.

86) 今西龍, 1970, 「慈覺大師入唐求法巡禮行記を讀みて」,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356쪽.

87) 尹載云, 1999b, 앞의 논문.

##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1장에서는 남북국시대 네트워크의 형성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朝貢을 매개로 형성된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시장과 각 지역에 형성된 지역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사와 관련된 지역시장은, 중국중심의 광역시장 아래 ‘黃海貿易圈’·‘西部日本貿易圈’·‘東海貿易圈’ 등이었다.

2장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물적 교류의 내용을 네 분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우선 네트워크의 성립기(618-754년)에서는 네트워크의 형성의 배경을 국내, 국제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외적인 계기로는 唐의 건국을 들 수 있다. 내적인 계기로는 신라의 경우는 王京에 시전의 증설과, 지방제도의 정비에 의한 거점도시의 시전설치, 대중국해상교통의 요충지였던 서남해도서지방의 장악, 公貿易과 私貿易의 각각의 주체들에 의한 무역품의 제작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발해는 건국기(高王~武王)의 걸끄러웠던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각종 정치제도의 정비·말갈부족정복 등을 이루고, 新羅道の 개통, 대일무역과 대중국무역의 활성화를 이룬 文王 전기가 貿易網이 성립한 시기로 판단된다.

발해의 무역 융성기(755-827년)는 공무역의 가늠자인 遣唐使의 파견횟수나 산동반도 지역과의 絹馬貿易, 발해상인들의 활약을 통해 알 수가 있었다. 이러한 대중국무역에서 발해의 신라에 대한 우위는 이르면 淄靑藩鎮의 소멸시기인 819년, 늦어도 淸海鎮이 설치되는 828년까지는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의 무역 융성기(828-851년)에는 청해진의 설치를 계기로 신

라가 무역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청해진 혁파후인 9세기후반 교역 질서의 혼란·경쟁기(852-926년)에는 신라국내 해상세력의 대두, 대일무역의 양상 변화 등 전반적으로 경제이나 혼란에 접어드는 상황을 알 수가 있다.

3장에서는 네트워크에 미치는 국가정책에 대해 신라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았다. 신라는 景德王代(742~765) 이전부터 사무역 용인으로 무역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소왕 10년(701)의 一吉滄 諸逸 처벌, 흥덕왕 3년(828)의 한산주 妖人 처벌, 흥덕왕 9년(834)의 사치 제한령 반포 등을 볼 때, 국가운영의 필요성 면에서 상업·무역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사회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무역의 발달을 조절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남북국시대 한국·중국·일본 삼국의 항해 사례(종합)

| 시기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668.9  | 金東嚴            | 신라  | 일본  |    | 김유신에 船 1척, 신라왕에 船, 絹, 綿, 韋 사여                                              |
| 668.9  | 小山下 道守臣<br>麻呂  | 일본  | 신라  |    | 新羅使 金東嚴과 동행                                                                |
| 669    |                | 일본  | 唐   |    |                                                                            |
| 669.9  | 督儒             | 신라  | 일본  |    |                                                                            |
| 670.9  | 阿曇連賴垂          | 일본  | 신라  |    |                                                                            |
| 671.6  |                | 신라  | 일본  |    | 別獻 水牛, 山鷄                                                                  |
| 671.10 | 金萬物            | 신라  | 일본  |    | 신라왕에 絹, 純, 綿, 韋 선사                                                         |
| 672.11 | 金押實            | 신라  | 일본  |    | 筑紫에서 연회, 신라사절단에게 船 1척 사여                                                   |
| 673.閏6 | 金承元            | 신라  | 일본  |    | 賀登極使, 中客 이상 27인 入京                                                         |
| 675.2  | 金忠元            | 신라  | 일본  |    | 送使 奈末金風那 筑紫귀국, 級浪 金比蘇 등 4인 동행, 難波에서 귀국                                     |
| 675.3  | 朴勤修            | 신라  | 일본  |    | 大奈末 金美質 동행                                                                 |
| 675.7  | 小錦上 大伴連<br>國麻呂 | 일본  | 신라  |    |                                                                            |
| 676.10 | 大乙上 物部連<br>麻呂  | 일본  | 신라  |    |                                                                            |
| 676.11 | 金清平            | 신라  | 일본  |    | 김청평 이하 13인 入京, 送使 奈末被珍那 筑紫에서 귀국, 표류민 동행                                    |
| 676.11 | 金楊原            | 신라  | 일본  |    | 고구려 使人 筑紫에 送使                                                              |
| 678    | 金消勿            | 신라  | 일본  |    | 送使 加良井山이 新羅使의 해중조난을 알림. 消勿 등 不來                                            |
| 679.10 | 金項那            | 신라  | 일본  |    | 筑紫에서 연회. 調物 10여종. 別獻物                                                      |
| 680.5  | 考那             | 신라  | 일본  |    | 高句麗使人을 筑紫에 送使                                                              |
| 680.11 | 金若弼            | 신라  | 일본  |    | 習言者 3인 동행. 筑紫에서 연회, 賜祿物                                                    |
| 681.7  | 小錦下 采女臣<br>竹羅  | 일본  | 신라  |    |                                                                            |
| 681.10 | 金忠平            | 신라  | 일본  |    | 調物. 金銀銅鐵, 錦絹, 鹿皮, 細布之類各有數. 別獻 天皇, 皇后太子金銀, 錦, 霞幡, 皮之類, 各有數. 文武王 告喪. 筑紫에서 연회 |
| 682.6  | 金釋起            | 신라  | 일본  |    | 高句麗使人 送使                                                                   |
| 683.11 | 金主山            | 신라  | 일본  |    |                                                                            |
| 684.4  | 小錦下 高向臣<br>麻呂  | 일본  | 신라  |    | 學文僧 觀常·雲觀 귀국, 신라왕 賜物, 馬·犬·鸚鵡·鵲及種種寶物                                        |
| 684.12 | 金物儒            | 신라  | 일본  |    | 大唐學生 土師宿禰塙 등을 送使                                                           |

| 시기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685.11 | 金智祥         | 신라  | 일본  |    | 請政, 進調. 細馬一疋, 騾一頭, 犬二狗, 鍔金器及金銀, 霞錦, 綾羅, 虎豹皮及藥物之類并百餘種.<br>別獻物, 金銀, 霞錦, 綾羅, 金器, 屏風, 鞍皮, 絹布, 藥物之類, 各六十餘種, 別獻皇后, 皇太子, 及諸親王等之物各有數<br>筑紫에서 연회, 연회를 위해 川原寺의 伎樂을 筑紫로 옮김, 祿物 사여 |
| 686.2  |             | 신라  | 唐   |    | 禮記·문장요정, 圓測 방환요정                                                                                                                                                       |
| 687.1  | 直廣肆 田中朝臣法麻呂 | 일본  | 신라  |    | 天武天皇의 告喪使                                                                                                                                                              |
| 687.9  | 金霜林         | 신라  | 일본  |    | 奏請國政, 獻調賦, 金銀, 絹布, 皮銅鐵之類十餘物, 別所獻佛像, 種種彩絹, 鳥馬之類十餘種. 所獻金銀, 彩色, 種種珍異之物, 八十餘物.<br>筑紫에서 연회, 級漡 金薩舉·金仁述 및 大舍 蘇陽信 동행                                                          |
| 689.4  | 金道那         | 신라  | 일본  |    | 天武天皇 弔問使, 學問僧 明聰, 觀智等 送使. 別獻金銅阿彌陀像, 金銅觀世音菩薩像, 大勢至菩薩像, 彩帛錦綾.<br>筑紫에서 연회, 新羅 學問僧 明聰, 觀智의 師友에게 보낼 綿 사여, 사신에게 賜物                                                           |
| 690.9  | 金高訓         | 신라  | 일본  |    | 大唐學問僧 智宗·義德·淨願·大伴部博麻 등을 送使. 筑紫에서 연회, 사신에 賞賜                                                                                                                            |
| 692.11 | 朴億德         | 신라  | 일본  |    | 難波館에서 연회, 新羅調 5社에 헌납, 표류민 37명 송환                                                                                                                                       |
| 693.2  | 金江南         | 신라  | 일본  |    | 신라왕에 絹, 絁, 綿, 韋 선사                                                                                                                                                     |
| 693.3  | 直廣肆 息長真人老   | 일본  | 신라  |    | 신라왕에게 선물, 學問僧 弁通·神叡 동행                                                                                                                                                 |
| 695.3  | 金良林         | 신라  | 일본  |    | 奏請國政, 進調獻物. 薩漡 朴強國, 韓奈麻 金周漢·金忠仙 동행                                                                                                                                     |
| 695.9  | 直廣肆 小野朝臣毛野  | 일본  | 신라  |    |                                                                                                                                                                        |
| 699.2  |             | 신라  | 唐   |    |                                                                                                                                                                        |
| 700.5  | 直廣肆 佐伯宿禰麻呂  | 일본  | 신라  |    | 신라에서 孔雀·珍物 하사                                                                                                                                                          |
| 700.11 | 金所毛         | 신라  | 일본  |    | 孝昭王母의 告喪使, 金所毛 사망, 絁·綿·布 사여, 新羅使 水夫 이상 賜祿                                                                                                                              |

| 시기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702.6  |                 | 일본  | 唐   |        |                                         |
| 703.1  | 金福護             | 신라  | 일본  |        | 孝昭王의 告喪使, 難波館에서 연회, 표류 신라인 동행           |
| 703.1  |                 | 신라  | 唐   |        |                                         |
| 703    | 金思讓             | 신라  | 唐   |        |                                         |
| 703.10 | 從5位下 波多<br>朝臣廣足 | 일본  | 신라  |        | 신라왕에게 綿·絁 선물                            |
| 705.3  | 金志誠             | 신라  | 唐   |        |                                         |
| 705.9  |                 | 신라  | 唐   |        |                                         |
| 705.10 | 金儒吉             | 신라  | 일본  |        | 新羅使 大極殿 新年賀禮, 朝堂 연회, 新羅調 伊勢 및 7道諸社에 헌납  |
| 706.4  |                 | 신라  | 唐   |        |                                         |
| 706.8  |                 | 신라  | 唐   |        |                                         |
| 706.10 |                 | 신라  | 唐   |        |                                         |
| 706.11 | 從5位下 美努<br>連淨麻呂 | 일본  | 신라  |        | 學問僧 義法, 義基, 惣集, 慈定, 淨達 귀국               |
| 707.12 |                 | 신라  | 唐   |        |                                         |
| 709.3  |                 | 신라  | 일본  |        | 貢方物, 朝堂에서 연회, 賜祿, 신라왕에게 絁·射·綿 사여        |
| 709.6  |                 | 신라  | 唐   |        |                                         |
| 710.1  |                 | 신라  | 唐   |        |                                         |
| 711.12 |                 | 신라  | 唐   |        |                                         |
| 712.2  |                 | 신라  | 唐   |        |                                         |
| 712.10 | 從5位下 道君<br>守名   | 일본  | 신라  |        |                                         |
| 712.12 |                 | 신라  | 唐   |        |                                         |
| 713.2  |                 | 신라  | 唐   |        |                                         |
| 713.6  |                 | 신라  | 唐   |        |                                         |
| 714.2  | 朴裕, 金守忠         | 신라  | 唐   | 賀正, 宿衛 | 朝堂 연회, 朴裕 朝散大夫 員外奉御 受爵, 김수충은 716년 9월 귀국 |
| 714.10 |                 | 신라  | 唐   |        | 內殿 연회, 宰臣 및 4품 이상 淸官 참석                 |
| 714.11 | 金元靜             | 신라  | 일본  |        | 入京, 中門에서 연회, 賜綿                         |
| 714    |                 | 발해  | 唐   |        | 唐使 崔忻·學生 동행                             |
| 716.3  | 金楓厚             | 신라  | 唐   | 賀正     | 員外郎 受爵                                  |
| 717.3  |                 | 일본  | 唐   |        |                                         |
| 717.5  |                 | 신라  | 唐   |        |                                         |
| 718.2  |                 | 신라  | 唐   |        | 守中郎將 受爵                                 |
| 718.5  | 正5位下 小野<br>朝臣馬養 | 일본  | 신라  |        |                                         |

| 시기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719.1  |                  | 신라  | 唐   | 賀正        | 帛 50필 受領                                                                    |
| 719.5  |                  | 신라  | 唐   |           | 도중 卒, 太僕卿 追贈, 絹 100필 賻物                                                     |
| 719.5  | 金長言              | 신라  | 일본  |           | 獻貢物, 驛馬・牧牝 각1필, 신라왕과<br>長言에게 賜祿                                             |
| 719.8  | 從6位上 白猪<br>史廣成   | 일본  | 신라  |           |                                                                             |
| 721.1  | 靺鞨大首領            | 발해  | 唐   |           | 折衝 受爵                                                                       |
| 721.12 | 金乾安              | 신라  | 일본  |           | 元明天皇 사망으로 筑紫에서 방환                                                           |
| 722.5  | 正6位下 津史<br>主治麻呂  | 일본  | 신라  |           |                                                                             |
| 722.10 | 金仁壹              | 신라  | 唐   | 賀正        |                                                                             |
| 722.11 | 大臣 味敦計           | 발해  | 唐   |           | 鷹軒상, 大將軍 受爵, 錦袍金魚袋 受<br>領                                                   |
| 723.4  |                  | 신라  | 唐   |           | 果下馬・人蔘・牛黃・表文 현상                                                             |
| 723.8  | 金貞宿외 15인         | 신라  | 일본  |           | 朝堂에서 연회                                                                     |
| 724.2  | 金武勳              | 신라  | 唐   | 賀正        | 遊擊將軍 受爵, 帛 50匹 수령                                                           |
| 724.2  | 賀作慶              | 발해  | 唐   | 賀正        |                                                                             |
| 724.8  | 從5位上 土師<br>宿禰豐麻呂 | 일본  | 신라  |           |                                                                             |
| 724.12 |                  | 신라  | 唐   |           | 抱貞・貞苑 현상                                                                    |
| 725    |                  | 신라  | 唐   |           | 封禪儀式 慶賀                                                                     |
| 725.1  | 大首領 烏借芝<br>蒙     | 발해  | 唐   | 賀正        |                                                                             |
| 725.4  | 首領 謁德            | 발해  | 唐   |           | 果毅 受爵                                                                       |
| 725.5  | 王弟 大昌敦價          | 발해  | 唐   |           | 左威衛員外將軍・襄平縣開國男 受<br>爵, 紫袍金帶魚袋, 帛50필, 무왕의 綵<br>練 100필 수령                     |
| 726.4  | 從弟 金忠信           | 신라  | 唐   | 賀正,<br>宿衛 | 帛 100필 수령                                                                   |
| 726.4  | 長子 大都利行          | 발해  | 唐   |           | 貂鼠皮 현상, 左武衛大將軍員外置 受<br>爵, 在唐卒, 特進兼鴻臚卿 追贈, 絹<br>300필・粟300석 賻物, 官造靈輿 본국<br>송환 |
| 726.5  | 王弟 金欽質           | 신라  | 唐   |           | 郎將 受爵                                                                       |
| 726.5  | 薩渰 金造近           | 신라  | 일본  |           | 入京, 朝堂에서 연회                                                                 |
| 726.11 | 王子 大義信           | 발해  | 唐   |           |                                                                             |
| 727.1  |                  | 신라  | 唐   | 賀正        | 奉御 受爵, 緋袍銀帶魚帶 수령                                                            |
| 727.8  | 王弟 大寶方           | 발해  | 唐   |           |                                                                             |
| 727.9  | 大使 高仁義<br>외 24명  | 발해  | 일본  |           | 出羽國 도착                                                                      |

| 시기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728.2  | 引田虫麻呂      | 일본  | 발해  |           | 送使                                             |
| 728.7  | 從弟 金嗣宗     | 신라  | 唐   |           | 果毅 受爵                                          |
| 728.9  | 蔭夫須計       | 발해  | 唐   |           | 果毅 受爵                                          |
| 729.1  |            | 신라  | 唐   | 賀正        |                                                |
| 729.2  | 王弟 大胡雅     | 발해  | 唐   |           | 遊擊將軍 受爵, 紫袍金帶 수령                               |
| 729.3  |            | 발해  | 唐   |           | 帛 20필 수령                                       |
| 729.8  | 王弟 大琳      | 발해  | 唐   |           | 中郎將 受爵                                         |
| 729.9  |            | 신라  | 唐   |           |                                                |
| 730.1  | 王弟 大郎雅     | 발해  | 唐   | 賀正, 宿衛    | 在唐 嶺南에 유배                                      |
| 730.2  | 王姪 金志滿     | 신라  | 唐   |           | 小馬·狗·頭髮 헌상. 太僕卿員外置同正員 受爵, 絹 100필, 紫袍銀帶魚帶 수령    |
| 730.2  | 大首領 知蒙     | 발해  | 唐   |           | 馬 헌상. 中郎將 受爵, 絹 20필, 緋袍銀帶 수령                   |
| 730.5  | 烏那達利       | 발해  | 唐   |           | 海豹皮·貂鼠皮·瑪瑙杯·馬 헌상. 果毅 수작, 帛 수령                  |
| 730.10 |            | 신라  | 唐   |           |                                                |
| 731.2  | 金志良        | 신라  | 唐   |           | 牛黃·金銀 등 헌상. 太僕小卿員外置 受爵, 詔書·帛 60필 수령            |
| 731.2  |            | 발해  | 唐   | 賀正        | 장군 受爵, 帛 100필 수령                               |
| 731.4  | 馬文軌, 葱勿雅   | 발해  | 唐   | 大門藝 주살 요청 | 唐에 억류                                          |
| 731.10 | 大耶珍 등 120인 | 발해  | 唐   |           | 果毅 受爵, 帛 30필 수령                                |
| 732.1  | 金長孫        | 신라  | 일본  |           | 進種種財物, 并鸚鵡·鳩鴿·獨狗·獵狗·臚·騾. 김장손 등 40인 入京, 朝堂에서 연회 |
| 732.1  |            | 신라  | 唐   | 賀正        |                                                |
| 732.2  | 從5位上 角朝臣家主 | 일본  | 신라  |           |                                                |
| 732.9  |            | 신라  | 唐   | 宿衛        | 在唐 病死                                          |
| 733.4  |            | 일본  | 唐   |           | 4척 가운데 3·4船 조난                                 |
| 733.12 | 王姪 金志廉     | 신라  | 唐   | 謝恩, 宿衛    | 表文·馬·牛黃·人蔘 헌상. 內殿연회, 鴻臚小卿員外置 受爵, 束帛 수령, 在唐病死   |
| 734.4  | 大臣 金丹竭丹    | 신라  | 唐   | 賀正        | 內殿연회, 衛尉小卿 受爵, 緋蘭袍平漫銀帶, 絹 60필 수령               |
| 734.12 | 金相貞        | 신라  | 일본  |           | 入京後 王城國으로 국호변경 때 문에 返却                         |

| 시기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735.1  | 金義忠, 金榮, 金義質   | 신라  | 唐   | 賀正      | 金榮 在唐 卒, 光祿小卿  추증, 溟江鎮 사여, 詔書 수령             |
| 735.2  | 金思蘭            | 신라  | 唐   | 謝恩      | 太僕卿員外置 受爵, 당에 잔류                             |
| 735.12 | 金(忠)相          | 신라  | 唐   |         | 도중 卒, 衛尉卿  추증                                |
| 735    | 大茂慶            | 발해  | 唐   |         |                                              |
| 736.3  | 大蕃             | 발해  | 唐   | 宿衛교체요청  | 太子舍人員外 受爵, 帛 30필 수령, 大郎雅  동행 귀국              |
| 736.4  | 從5位下 阿倍朝臣繼麻呂   | 일본  | 신라  |         |                                              |
| 736.6  |                | 신라  | 唐   | 賀正, 謝恩  |                                              |
| 737.1  | 大首領 木智蒙        | 발해  | 唐   |         |                                              |
| 737.2  | 金抱質            | 신라  | 唐   | 賀正      |                                              |
| 737.4  | 公伯計            | 발해  | 唐   |         | 將軍 受爵                                        |
| 737.8  | 大首領 多蒙固        | 발해  | 唐   |         | 左武衛將軍 受爵, 紫袍金帶 · 帛 100필 수령                   |
| 737.12 |                | 신라  | 唐   | 告哀, 告嗣位 |                                              |
| 738.1  | 金想純외 147명      | 신라  | 일본  |         | 大宰府  연회, 放還                                  |
| 738.3  | 金元玄            | 신라  | 唐   | 賀正      |                                              |
| 738.6  |                | 발해  | 唐   |         | 『唐禮』, 『三國志』, 『晉書』, 『36國春秋』 필사요청              |
| 739.2  | 王弟 大晟進         | 발해  | 唐   | 宿衛      | 鷹  헌상, 內殿연회, 左武衛大將軍外置同正 受爵, 紫袍金帶 · 帛 100필 수령 |
| 739.7  | 大使 胥要德, 副使 己珍蒙 | 발해  | 일본  |         | 出羽國 도착                                       |
| 739.10 | 受福子            | 발해  | 唐   | 謝恩      | 果毅 受爵, 紫袍銀帶 수령                               |
| 740.1  | 大伴犬養           | 일본  | 발해  |         | 專使                                           |
| 740.4  | 外從5位下 紀朝臣必登    | 일본  | 신라  |         |                                              |
| 740.10 |                | 발해  | 唐   |         | 貂鼠皮 · 昆布  헌상                                 |
| 741.2  | 失阿利            | 발해  | 唐   | 賀正      | 郎將 受爵                                        |
| 741.4  |                | 발해  | 唐   |         | 鷹鵠  헌상                                       |
| 742.1  |                | 일본  | 신라  |         | 日本國使 신라에서 不納                                 |
| 742.2  | 金欽英외 187명      | 신라  | 일본  |         | 新京 미완성으로 放還                                  |
| 742.5  |                | 신라  | 唐   |         |                                              |
| 743.3  | 金序貞            | 신라  | 일본  |         | 調를 土毛라고 개칭, 大宰府에서 返却                         |

| 시기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743.7  | 大蕃                         | 발해  | 唐   | 宿衛            | 左領軍衛員外大將軍 受爵               |
| 744.閏2 |                            | 신라  | 唐   | 賀正            |                            |
| 744.4  |                            | 신라  | 唐   | 謝恩            | 馬·보물 등 헌상                  |
| 744.10 |                            | 신라  | 唐   | 賀正            | 左淸道率府員外長史 受爵, 紫袍銀帶 수령      |
| 745.4  |                            | 신라  | 唐   |               |                            |
| 746.2  |                            | 신라  | 唐   | 賀正            |                            |
| 746.3  |                            | 발해  | 唐   | 賀正            | 馬 헌상                       |
| 747.1  |                            | 신라  | 唐   | 賀正            |                            |
| 747.1  |                            | 발해  | 唐   | 賀正            |                            |
| 748    |                            | 신라  | 唐   |               | 金銀, 牛黃, 人蔘, 布 등 헌상         |
| 749.3  |                            | 발해  | 唐   |               | 鷹 헌상                       |
| 750.3  |                            | 발해  | 唐   |               | 鷹 헌상                       |
| 752.1  | 正5位下 山口<br>忌寸人麻呂           | 일본  | 신라  |               |                            |
| 752.閏3 | 金泰廉의 700<br>인              | 신라  | 일본  |               | 朝堂에서 연회, 大安寺·東大寺<br>예불     |
| 752.閏3 |                            | 일본  | 唐   |               | 4척 가운데 1船은 安南에 漂着          |
| 752.9  | 慕施蒙의 75인                   | 발해  | 일본  |               | 越後國 도착                     |
| 753.1  |                            | 신라  | 唐   | 賀正            |                            |
| 753.2  | 從5位下 小野<br>朝臣田守            | 일본  | 신라  |               | 日本國使 신라왕이 不見               |
| 753.3  |                            | 발해  | 唐   | 賀正            |                            |
| 754.1  |                            | 발해  | 唐   | 賀正            |                            |
| 755.4  |                            | 신라  | 唐   | 賀正            |                            |
| 757.1  |                            | 신라  | 唐   | 賀正            | 成都에서 賀正, 당 현종 五言十<br>韻詩 수령 |
| 758.2  | 小野田守                       | 일본  | 발해  |               | 專使                         |
| 758.8  |                            | 신라  | 唐   |               |                            |
| 758.9  | 대사 楊承慶,<br>부사 楊泰師<br>외 23인 | 발해  | 일본  |               | 越前國 도착                     |
| 758    |                            | 발해  | 唐   | 唐帝還宮<br>여부 확인 |                            |
| 759.1  | 高元度                        | 일본  | 발해  |               | 送使                         |
| 759.2  |                            | 일본  | 唐   |               |                            |
| 759.10 | 대사 高南申,<br>부사 高興福          | 발해  | 일본  |               | 對馬島 漂着                     |

| 시기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760    | 揚方慶                   | 발해  | 唐   | 賀正 | 일본인 高元度 등 11인 동행   |
| 760.2  | 陽侯玲瑯                  | 일본  | 발해  |    | 送使                 |
| 760.9  | 金貞卷                   | 신라  | 일본  |    | 放還                 |
| 761.2  | 金嶷                    | 신라  | 唐   | 宿衛 |                    |
| 761.10 | 高麗大山                  | 일본  | 발해  |    | 專使                 |
| 762.9  |                       | 신라  | 唐   |    |                    |
| 762.10 | 대사 王新福, 부사 李能本 외 23인  | 발해  | 일본  |    | 越前國 加賀郡 도착         |
| 763.2  | 金體信의 211인             | 신라  | 일본  |    |                    |
| 763.4  |                       | 신라  | 唐   |    | 檢校禮部尙書 受爵          |
| 763.11 | 多治比小耳                 | 일본  | 발해  |    | 送使                 |
| 764    | 金容                    | 신라  | 唐   | 謝恩 | 唐使 韓朝彩 동행 入唐       |
| 764.7  | 金才伯의 91인              | 신라  | 일본  |    |                    |
| 765.4  |                       | 신라  | 唐   |    | 檢校禮部尙書 受爵          |
| 767.冬  | 金隱居                   | 신라  | 唐   |    |                    |
| 767.7  |                       | 발해  | 唐   |    |                    |
| 767.8  |                       | 발해  | 唐   |    |                    |
| 767.9  |                       | 발해  | 唐   |    |                    |
| 767.11 |                       | 발해  | 唐   |    |                    |
| 767.12 |                       | 발해  | 唐   |    |                    |
| 768.9  |                       | 신라  | 唐   |    |                    |
| 769.1  |                       | 발해  | 唐   |    |                    |
| 769.3  |                       | 발해  | 唐   |    |                    |
| 769.11 |                       | 신라  | 唐   |    |                    |
| 771.6  | 대사 壹萬福, 부사 慕昌祿 외 325명 | 발해  | 일본  |    | 常陸國 도착             |
| 772.2  | 武生鳥守                  | 일본  | 발해  |    | 送使                 |
| 772.5  | 金標石                   | 신라  | 唐   |    | 1월 신라출발. 衛尉員外小卿 受爵 |
| 772.秋  |                       | 발해  | 唐   |    |                    |
| 772.12 |                       | 발해  | 唐   |    |                    |
| 773.4  |                       | 신라  | 唐   | 賀正 | 金銀・牛黃 등 헌상         |
| 773.4  |                       | 발해  | 唐   | 賀正 |                    |
| 773.6  |                       | 신라  | 唐   | 謝恩 |                    |
| 773.6  |                       | 발해  | 唐   | 賀正 |                    |
| 773.6  | 대사 烏須弗 외 40인          | 발해  | 일본  |    | 能登國 도착             |
| 773.11 |                       | 발해  | 唐   |    |                    |

| 시기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773.閏11 |                       | 발해  | 唐   |                       |                                               |
| 773.12  |                       | 발해  | 唐   |                       |                                               |
| 774.1   |                       | 발해  | 唐   |                       | 2월 延英殿 귀국 인사, 大英俊 동행 귀국                       |
| 774.4   |                       | 신라  | 唐   |                       |                                               |
| 774.10  |                       | 신라  | 唐   | 賀正                    | 延英殿 引見, 衛尉員外郎 受爵                              |
| 774.10  | 金三玄 외 235인            | 신라  | 일본  |                       | 大宰府 도착. 遣唐大使 藤原河清의 서간을 가지고 음.貢調를 國信物이라고 함, 放還 |
| 774.12  |                       | 발해  | 唐   |                       |                                               |
| 775.1   |                       | 신라  | 唐   |                       |                                               |
| 775.1   |                       | 발해  | 唐   |                       |                                               |
| 775.5   |                       | 발해  | 唐   |                       |                                               |
| 775.6   |                       | 신라  | 唐   |                       |                                               |
| 775.6   |                       | 발해  | 唐   |                       |                                               |
| 775.12  |                       | 발해  | 唐   |                       |                                               |
| 776.7   |                       | 신라  | 唐   |                       |                                               |
| 776.10  |                       | 신라  | 唐   |                       |                                               |
| 776.12  | 대사 史都蒙 외 166인         | 발해  | 일본  |                       | 越前國 加賀郡 도착                                    |
| 777.1   |                       | 발해  | 唐   |                       | 일본 舞女 11인 헌상                                  |
| 777.2   |                       | 발해  | 唐   |                       | 鷹 헌상                                          |
| 777.4   |                       | 발해  | 唐   |                       |                                               |
| 777.5   | 高麗殿嗣                  | 일본  | 발해  |                       | 送使                                            |
| 777.6   |                       | 일본  | 唐   |                       | 1船 난파                                         |
| 777.12  |                       | 발해  | 唐   |                       |                                               |
| 777.12  |                       | 신라  | 唐   |                       |                                               |
| 778.9   | 張仙壽                   | 발해  | 일본  |                       | 越前國 坂井郡 三國湊 도착                                |
| 778.12  | 大網廣道                  | 일본  | 발해  |                       | 送使                                            |
| 779.5   |                       | 일본  | 唐   |                       |                                               |
| 779.9   | 押領 高洋粥, 通事 高說昌 외 359인 | 발해  | 일본  |                       | 出羽國 도착                                        |
| 779.10  | 金蘭蓀                   | 신라  | 일본  | 賀正                    | 入京, 金殿・薛仲業・金貞樂・金蘇忠 등 入京                       |
| 779.12  | 從6位上 下道朝臣 長人          | 일본  | 신라  | 탐라에 표류한 견당사를 귀환시키기 위해 |                                               |

| 시기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780.10  |              | 발해  | 唐   |           |                          |
| 782.閏1  |              | 신라  | 唐   |           |                          |
| 782.5   |              | 발해  | 唐   |           |                          |
| 784     | 金讓恭, 道義      | 신라  | 唐   |           |                          |
| 786.4   | 金元全          | 신라  | 唐   |           | 唐 칙서, 답례품 수령             |
| 786.9   | 李元泰외 65인     | 발해  | 일본  |           | 越後國 도착                   |
| 787.2   |              | 일본  | 발해  |           | 送使                       |
| 789     | 金俊邕          | 신라  | 唐   |           |                          |
| 790     | 金彦昇          | 신라  | 唐   |           |                          |
| 791.1   | 大常靖          | 발해  | 唐   | 賀正        | 衛尉卿同正 受爵                 |
| 791.8   | 王子 大貞翰       | 발해  | 唐   | 宿衛        |                          |
| 792     |              | 신라  | 唐   |           | 7월 본국 출발                 |
| 792.閏12 | 楊古福 등 30인    | 발해  | 唐   |           |                          |
| 794.1   | 王子 大清允 등 30인 | 발해  | 唐   |           | 右衛將軍同正 受爵, 수행인 30인 官爵 수령 |
| 795.11  | 呂定琳외 68인     | 발해  | 일본  |           | 越後國에 도착                  |
| 795.12  | 密阿古 등 30인    | 발해  | 唐   |           | 中郎將 受爵                   |
| 796.5   | 御長廣岳         | 일본  | 발해  |           | 送使                       |
| 798.初   |              | 발해  | 唐   | 康王 官爵加授요청 |                          |
| 798.4   | 王姪 大能信       | 발해  | 唐   | 官爵加授요청    | 左驍衛中郎將 受爵                |
| 798.4   | 內藏賀茂麻呂       | 일본  | 발해  |           | 專使                       |
| 798.12  | 大昌泰          | 발해  | 일본  |           | 隱岐國 智夫郡 도착               |
| 799     |              | 신라  | 唐   | 告哀        | 人蔘헌상                     |
| 799.4   | 滋野船白         | 일본  | 발해  |           | 送使                       |
| 803     |              | 일본  | 唐   |           | 3船 난파                    |
| 804.11  | 眞鑑禪師 동행      | 신라  | 唐   | 賀正        |                          |
| 804.11  |              | 발해  | 唐   |           |                          |
| 805.5   |              | 발해  | 唐   |           |                          |
| 806.8   |              | 신라  | 唐   |           |                          |
| 806.12  |              | 신라  | 唐   |           |                          |
| 806.12  |              | 발해  | 唐   |           |                          |
| 807.4   | 楊光信          | 발해  | 唐   | 端午節 경축    |                          |
| 807.12  |              | 발해  | 唐   |           |                          |
| 809     | 金陸珍          | 신라  | 唐   | 謝恩        | 7월 본국출발                  |
| 809.1   |              | 발해  | 唐   |           | 麟德殿 引見                   |
| 809.10  | 高南容          | 발해  | 일본  |           |                          |

| 시기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810.1  | 高才南                | 발해  | 唐   |             |                            |
| 810.9  | 高南容                | 발해  | 일본  |             |                            |
| 810.10 | 왕자 金憲章,<br>僧 冲虛 동행 | 신라  | 唐   | 順宗 명복 기원    | 佛像・佛經 헌상, 勅書 수령            |
| 810.11 | 왕자 大延眞             | 발해  | 唐   |             |                            |
| 810.12 | 林東仁                | 일본  | 발해  |             | 送使                         |
| 812.1  |                    | 발해  | 唐   |             | 麟德殿 引見, 官告 35통, 의복 각 1벌 수령 |
| 812.4  | 金昌南                | 신라  | 唐   | 告哀, 賀正, 請冊封 | 54명 入京, 門戟 수령              |
| 812.12 |                    | 발해  | 唐   |             |                            |
| 813.12 | 왕자 辛文德 등 97인       | 발해  | 唐   |             | 연회, 錦綵 수령                  |
| 814.1  | 高禮進 등 37인          | 발해  | 唐   |             | 금은불상 헌상. 麟德殿 연회, 선물 수령     |
| 814.9  | 대사 王孝廉<br>부사 高景秀   | 발해  | 일본  |             | 出雲國 도착                     |
| 814.11 |                    | 발해  | 唐   |             | 鷹鵠헌상                       |
| 814.12 | 大孝眞 등 59인          | 발해  | 唐   |             |                            |
| 815.1  |                    | 신라  | 唐   |             | 南詔使 共同引見, 연회, 선물 수령        |
| 815.1  | 印貞壽                | 발해  | 唐   |             | 官告 수령                      |
| 815.2  | 大呂慶                | 발해  | 唐   |             | 2월 22일, 3월 5일 官告 수령        |
| 815.7  | 왕자 大庭俊 등 101인      | 발해  | 唐   |             |                            |
| 816    | 金士信                | 신라  | 唐   | 宿衛          | 11월 楚州 鹽城縣 漂着              |
| 816.2  | 고숙만 등 20인          | 발해  | 唐   |             | 錦綵, 銀器, 官告 수령              |
| 816.11 |                    | 발해  | 唐   |             |                            |
| 817    | 金張廉                | 신라  | 唐   | 노비금지요청      | 明州 漂着                      |
| 817.2  | 大誠愼                | 발해  | 唐   |             | 錦綵 수령                      |
| 818    |                    | 신라  | 唐   |             | 樂工 헌상, 6월 본국출발             |
| 818.3  | 李繼常 등 26인          | 발해  | 唐   | 告哀          | 官告 수령                      |
| 818.4  | 慕感德                | 발해  | 일본  |             |                            |
| 819    | 唐人 張賞濟, 新羅人 王請・李信忠 | 唐   | 일본  |             | 出羽國 漂着                     |
| 819.11 | 대사 李承英             | 발해  | 일본  |             |                            |
| 820.閏1 |                    | 발해  | 唐   |             | 麟德殿 연회                     |
| 820.2  |                    | 신라  | 唐   |             | 麟德殿 연회, 선물 수령              |

| 시기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820.11 |                                     | 신라  | 唐   |                        | 麟德殿 연회                       |
| 820.12 |                                     | 발해  | 唐   |                        | 麟德殿 연회                       |
| 821.11 | 王文矩                                 | 발해  | 일본  |                        |                              |
| 822.1  |                                     | 발해  | 唐   |                        | 麟德殿 引見                       |
| 822.12 | 金昕, 金柱弼,<br>無染禪師 동행                 | 신라  | 唐   | 賀正, 宿衛, 본국<br>인 노비방환요청 | 金昕 金紫光祿大夫 試<br>太常卿 受爵        |
| 823.11 | 대사 高貞泰<br>부사 璋璿외 101인               | 발해  | 일본  |                        | 越前國 도착                       |
| 824.2  | 大聰叡 등 50인                           | 발해  | 唐   | 宿衛요청                   |                              |
| 825.3  |                                     | 발해  | 唐   |                        |                              |
| 825.5  | 金昕, 金允夫·金<br>立之·朴亮·道允<br>동행         | 신라  | 唐   | 國學입학 및 放<br>還 요청       |                              |
| 825.11 | 대사 高承祖, 부사<br>高如岳외 103인             | 발해  | 일본  |                        | 隱岐國 도착                       |
| 826.1  |                                     | 발해  | 唐   |                        |                              |
| 826.12 |                                     | 신라  | 唐   |                        | 麟德殿 送別宴會, 선<br>물수령           |
| 827.4  |                                     | 신라  | 唐   |                        |                              |
| 827.4  | 승려 貞素 동행                            | 발해  | 唐   |                        | 11인 入京, 麟德殿 연<br>회, 선물 수령    |
| 827.12 | 王文矩외 100인                           | 발해  | 일본  |                        | 但馬國 도착                       |
| 828    |                                     | 신라  | 唐   |                        | 2월 본국출발                      |
| 828.12 | 金大廉                                 | 신라  | 唐   |                        | 麟德殿 引見, 선물 수<br>령, 茶증자 지참 귀국 |
| 828.12 |                                     | 발해  | 唐   |                        | 麟德殿 引見                       |
| 830.12 |                                     | 신라  | 唐   |                        |                              |
| 830.12 |                                     | 발해  | 唐   |                        |                              |
| 831.2  | 金能儒, 승려 9명<br>동행                    | 신라  | 唐   |                        |                              |
| 831.12 |                                     | 신라  | 唐   |                        |                              |
| 831.12 |                                     | 발해  | 唐   |                        |                              |
| 832.3  | 왕자 大明俊                              | 발해  | 唐   |                        | 麟德殿 引見, 宴會                   |
| 833.1  | 同中書右平章事 高<br>寶英, 解楚卿·趙<br>孝明·劉寶俊 동행 | 발해  | 唐   | 謝恩, 학생 입학<br>및 방환 요청   | 李居正·朱承朝·高<br>壽海 동행 귀국        |
| 833.2  | 왕자 大先晟                              | 발해  | 唐   |                        | 麟德殿 宴會                       |
| 836.6  | 왕자 金義琮, 梵日<br>동행                    | 신라  | 唐   | 謝恩 겸 宿衛                | 정월 본국출발, 玄昱<br>동행 귀국         |

| 시기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836.12 |                         | 신라   | 唐   | 宿衛, 학생 放還<br>및 처우 요청 | 金義琮 동행 귀국                             |
| 836.12 |                         | 발해   | 唐   |                      |                                       |
| 837.1  | 왕자 大明俊 외 19인            | 발해   | 唐   | 賀正, 국학 입<br>학 요청     | 麟德殿 연회                                |
| 837.7  |                         | 일본   | 唐   |                      | 2船 南海에 漂着 신라<br>선을 타고 귀국              |
| 838    |                         | 발해   | 唐   |                      | 麟德殿 引見, 錦綵銀<br>器 수령                   |
| 839.7  |                         | 신라   | 唐   | 淄青節度使에<br>게 노비현상     | 體澄 동행 귀국                              |
| 839.12 | 왕자 大延廣                  | 발해   | 唐   |                      | 唐使 동행 귀국                              |
| 840.4  |                         | 신라   | 唐   | 告哀, 宿衛학생<br>방환요청     |                                       |
| 841    |                         | 발해   | 唐   |                      | 瑪瑙櫃, 紫瓷盆 헌상                           |
| 841.12 | 대사 賀福延, 부사<br>王宝璋외 105인 | 발해   | 일본  |                      | 長門國 도착                                |
| 842    | 唐人 李隣德                  | 唐 明州 |     |                      | 惠萼 동승                                 |
| 842.8  | 唐人 李處人                  | 唐    | 일본  |                      | 肥前 值嘉島 도착. 惠<br>運 동승                  |
| 843.12 | 新羅人 張公靖외 26<br>인        | 唐 楚州 | 일본  |                      | 長門國 도착. 仁好·<br>順昌 동승                  |
| 846.1  | 왕자 大之萼                  | 발해   | 唐   |                      | 宣政殿 朝會, 麟德殿<br>引見, 內亭子 연회,<br>錦綵器皿 수령 |
| 846.2  | 金國連                     | 신라   | 唐   |                      |                                       |
| 847    | 일본인 神御井 등               | 唐 明州 | 일본  |                      |                                       |
| 847.6  | 신라인 張支信 등<br>37인        | 唐 明州 | 일본  |                      | 肥前國 值嘉島 도착.<br>惠運·仁好·惠萼 동<br>승        |
| 847.9  | 신라인 金珍 외<br>44인         | 唐 蘇州 | 일본  |                      | 圓仁, 惟正, 性海, 丁<br>雄万 동승                |
| 849.8  | 唐商人 53인                 | 唐    | 일본  |                      |                                       |
| 848.12 | 대사 王文矩, 부사<br>烏孝愼외 100인 | 발해   | 일본  |                      | 能登國 도착                                |
| 850    | 元弘                      | 신라   | 唐   |                      | 佛經, 佛牙 지참귀국                           |
| 852    | 唐客 徐公祐                  | 唐 明州 | 일본  |                      | 大宰府 도착                                |
| 852    | 新羅商人 欽良暉                | 唐    | 일본  |                      |                                       |
| 856    | 圓朗禪師 동행                 | 신라   | 唐   | 賀正                   |                                       |
| 856    | 唐人 秀英覺, 陳太信             | 唐 廣州 | 일본  |                      |                                       |
| 858    | 了悟禪師 동행                 | 신라   | 唐   |                      |                                       |

| 시기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858.6  | 발해인 李延孝             | 唐 明州 | 일본  |                       | 圓珍 동승. 值嘉島 도착                       |
| 859.1  | 烏孝愼의 104인           | 발해   | 일본  |                       | 加賀國 도착                              |
| 861.1  | 대사 李居正의 104인        | 발해   | 일본  |                       | 出雲國 嶋根郡 도착                          |
| 862    | 富良                  | 신라   | 唐   |                       | 7월 본국출발, 8월 入唐도중 의사                 |
| 862.7  | 李延孝 등 43인           | 唐 明州 | 일본  |                       |                                     |
| 863    | 新羅商人 張支信            | 唐    | 일본  |                       | 賢眞, 惠蓐, 忠全 등 동승                     |
| 864    |                     | 신라   | 唐   | 告哀, 請冊封               |                                     |
| 864    | 唐商 詹景全              | 唐    | 일본  |                       |                                     |
| 869    | 金胤, 李同 등 동행         | 신라   | 唐   | 謝恩, 국학생 입학요청          | 馬·金銀·牛黃 등 헌상, 국학생 입학요청, 7월 본국출발     |
| 870    | 金因, 金瓘, 朗空大師 동행     | 신라   | 唐   | 宿衛                    | 2월 본국출발                             |
| 871.12 | 대사 楊成規 부사 李興晟의 105인 | 발해   | 일본  |                       | 加賀國 도착                              |
| 873    | 崔宗佐, 大陳潤, 門孫宰 등 60인 | 발해   | 唐   | 徐州平定 축하               | 2척의 배, 일본 薩摩國 館嶋郡 漂着, 본국 송환         |
| 876    |                     | 신라   | 唐   |                       | 7월 본국출발                             |
| 876.12 | 대사 楊中遠의 105인        | 발해   | 일본  |                       | 出雲國 嶋根郡 도착                          |
| 878    |                     | 신라   | 唐   |                       | 7월 본국출발, 황소의 난으로 중단                 |
| 882    | 金直諒, 朴仁範            | 신라   | 唐   |                       |                                     |
| 882.11 | 대사 裴頌 부사 高周封의 105인  | 발해   | 일본  |                       | 加賀國 도착                              |
| 884    | 金仁圭                 | 신라   | 唐   |                       | 최치원 동행 귀국                           |
| 885    | 金僅, 金茂先·崔渙 등 동행     | 신라   | 唐   | 황소의 난 평정 경하, 국학생 입학요청 | 10월 본국 출발, 唐帝 勅書 2통 수령, 金紹遊 등 동행 귀국 |
| 891    | 崔元, 崔葵·先覺大師 동행      | 신라   | 唐   | 昭宗登極 慶賀, 숙위학생 입학요청    | 초봄 본국 출발                            |
| 892.1  | 王龜謀의 105인           | 발해   | 일본  |                       | 出雲國 도착                              |
| 893    | 金處誨                 | 신라   | 唐   | 納旌節                   | 入唐도중 의사                             |
| 893    | 金峻, 崔致遠             | 신라   | 唐   | 告奏, 賀正                | 도로블통 還國                             |
| 894.12 | 대사 裴頌의 105인         | 발해   | 일본  |                       | 伯耆國 도착                              |
| 896    |                     | 신라   | 唐   | 崔藝熙, 眞澈大師 동행          |                                     |

| 시기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897    | 金穎          | 신라  | 唐   | 賀正, 告讓位, 숙위학생 입학 및 방환 요청 |                |
| 897.7  | 왕자 大封裔      | 발해  | 唐   | 賀正, 발해의 신라상석 요청          |                |
| 진성왕대   | 良貝          | 신라  | 唐   |                          |                |
| 효공왕대 초 |             | 신라  | 唐   | 謝恩, 告嗣位                  |                |
| 906    | 재상 烏炤度      | 발해  | 唐   | 賓貢科 석차변경 요청              |                |
| 908.1  | 대사 裴璆       | 발해  | 일본  |                          | 伯耆國 도착         |
| 919.11 | 대사 裴璆의 105인 | 발해  | 일본  |                          | 越前國 도착         |
| 929.12 | 대사 裴璆의 93인  | 東丹國 | 일본  |                          | 丹後國 竹野郡 大津浜 도착 |

### Ⅲ. 후삼국 시기 육상·해상 네트워크의 변화와 재편

(박찬홍, 공동연구원)

머리말

1. 五代・十國 시기 중국의 해상무역
  - (1) 오대・십국 시기 중국 경제의 변화상
  - (2) 오대・십국 시기 중국 동남해안 지역의 무역 중심지
2. 후삼국 시기 대외무역네트워크
  - (1) 서해사단항로의 개척과 이용
  - (2) 신라 대외무역 네트워크의 붕괴
  - (3) 견훤의 한・중・일 무역네트워크 복원 시도
3. 고려 초 대외무역 네트워크의 변화와 재편
  - (1) 왕건의 서남해안 무역네트워크 장악
  - (2) 고려 초 무역 네트워크의 재편

맺음말



## 머리말

한국사에 있어서 후삼국 시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이르는 이 시기의 중국은 이른바 五代・十國의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이다. 907년 당나라가 망한 뒤 10세기 전반기 중국 화북지방에는 後梁(907~922년), 後唐(923~935년), 後晉(936~946년), 後漢(947~950년), 後周(951~959년)의 5나라가 잇달아 건국되었고, 다시 북쪽에는 거란족이 흥기하여 大遼를 건국하였다. 한편, 중국 남부에서는 吳(902~936년), 南唐(937~975년), 前蜀(901~925년), 後蜀(934~965년), 南漢(916~971년), 楚(926~951년), 吳越(908~978년), 閩(909~944년), 荊南(925~963년), 北漢(951~979년)의 十國이 번갈아 건국되었다.

후삼국 시기는 북중국의 후량・후당, 거란의 태조(907~925년)・태종(926~946년) 시기에 해당된다. 후삼국과 중국 북부 五代와의 관계는 주로 정치・외교적인 측면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후량과는 외교관계가 보이지 않고 후당과의 교섭에 치중하였다. 이것은 당을 멸망시킨 후량보다는 당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후당과의 외교에 치중함으로써 후삼국 모두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sup>1)</sup>

이에 비해 후삼국과 남부 十國과의 관계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이 중심이 되었다. 특히 후백제나 고려는 十國 가운데 吳越, 閩國, 南唐 등과 교역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들 국가는 남중국해무역을 장악

---

1) 권덕영, 2000, 『後百濟의 海外交涉 活動』, 『후백제와 건환』, 서경문화사, 131~132쪽.

하고 있었다. 당나라 중기 이래 하북 지역에서는 절도사들의 난립으로 정치·경제적으로 혼란스러웠던 반면, 강남의 해안 도시들은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하여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그것이 十國시기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완도에 청해진을 세우고 동아시아 삼국의 무역 네트워크를 장악했던 장보고가 피살되고, 얼마 있다가 청해진마저 폐쇄되었지만, 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산동반도의 登州를 비롯한 신라민 교민사회는 여전히 건재해 있었다. 신라에서는 장보고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서남해안지방의 여러 무역업자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삼국 간 교역을 독점했던 장보고란 존재가 사라진 뒤에도 환서해무역에서 신라인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여전했던 것이다.

한국사상에서 후삼국에서 고려에 이르는 9세기 말~10세기 중엽의 시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정치·사회적인 혼란을 거쳐 다시 안정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동시에 9세기 초 장보고가 활약했던 시기 이후 한·중·일 삼국의 육상·해상 네트워크가 새롭게 변화하고 재편되는 시기였다. 처음 견훤과 왕건은 해상세력이 출신답게 한반도 서남해안을 장악하고 삼국 간의 네트워크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견훤은 정치적인 실패로 인해, 또 고려에서는 대외무역정책의 변화와 인적기반의 상실로 말미암아 삼국 간 육상·해상네트워크의 재건에 실패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후삼국 시대에서 고려 초에 이르는 시기의 이러한 무역네트워크의 변화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후삼국 시기에 해당하는 唐末에서 五代·十國에 이르는 시기에 중국 동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 견훤과 왕건의 대외관계와 해상무역정책, 한·중·일 삼국 간의 무역네트

워크에서 한반도 서남해안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 아울러 장보고가 활약했던 시기의 무역네트워크가 재현되지 못한 이유를 재음미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고찰을 통해 현재 삼국 간 무역네트워크 형성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인적·지역적 인프라는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1. 五代・十國 시기 중국의 해상무역

### (1) 오대・십국 시기 중국 경제의 변화상

동아시아 대외교역에 있어서 해상교역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특히 당나라 시기에 들어와 동아시아 해상교역은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나라의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과 함께 이슬람제국의 활발한 해상활동에 힘입은 것이다. 당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유지되었던 8세기까지는 당나라, 특히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교역이 이루어졌다.

안사의 난[755~763년] 이후 당나라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되면서, 해상무역활동의 중심은 각지의 지방세력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구려의 유민출신인 이정기 일가나, 특히 신라의 장보고 등이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활발한 해상무역을 주도하면서 당나라와 신라, 일본 혹은 발해와의 대외무역을 펴나갈 수 있었다.

907년 주전충이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후량을 건국하면서 오대십국시기가 막을 열었다. 5 왕조가 교체되었던 북방 지역에서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경제적 파괴가 진행되었다. 빈번하게 이어진 전쟁은 생산력을 직접적으로 파괴시켰고, 전쟁을 치러야하는 통치자들은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을 자행했으며, 제방 파괴로 생긴 홍수 등의 인위적인 자연재해까지 겹쳤다. 여기에 화폐의 남발과 가혹한 商稅로 인해 상인들의 정상적인 무역은 침체되었고, 당연히 생산 활동은 매우 정체되고 말았다.

이에 비해 남방 10국의 경제는 회복되고 발전되었다. 북방 지역의 혼란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남쪽으로 옮겨옴에 따라<sup>2)</sup> 증대된 노동력이 생산발전을 촉진시켰고, 자연히 농업생산력의 회복과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紡織·차[茶]·製鹽·製鍊·도자 등의 수공업도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상업 및 대외무역도 발전하게 되었다.<sup>3)</sup>

남방의 경제가 발전하게 된 데에는, 먼저 하층민 출신의 통치자들이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생산 발전에 유리한 정책을 펼쳐나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북방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쟁의 파괴와 혼란이 적었고, 수나라·당나라 때부터 발전하고 있었던 양호한 남방경제의 기초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sup>4)</sup> 화북 지역의 五代정권이 거란의 남침에 직면하면서 전란으로 황폐화되었던 것과는 달리, 강남의 정권들은 경제적 안정에 힘입어 부국강병책을 취하면서 경제력을 키워나갔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외무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국 간의 교역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이다.<sup>5)</sup>

2) 張劍光, 2003, 『唐五代江南工商業布局研究』, 江蘇古籍出版社, 35~44쪽.

3) 張一農, 1989, 『中國商業簡史』, 中國財政經濟出版社, 186~188쪽.

武金銘·顏吾芑·楊西岩, 1994, 『中國隋唐五代經濟史』, 人民出版社, 149~167쪽.

4) 武金銘·顏吾芑·楊西岩, 같은 책, 167~168쪽.

이로써, 당대까지는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중심지가 關中·華北 지역이었으나, 10세기를 전후하여 唐末·五代시기에 오면서 강남 지역이 사회·경제적인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화북의 五代의 왕조는 강남의 10국에게 경제적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던 것이다.

남방 10국의 여러 나라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몇 개의 경제 지역으로 나뉘어졌다. 成都를 중심으로 한 四川경제구역, 楊州를 중심으로 한 江淮경제구역, 杭州를 중심으로 한 兩浙경제구역, 廣州를 중심으로 한 대외무역경제구역, 福州를 중심으로 한 福建경제구역, 長沙를 중심으로 한 湖南경제구역 등으로 구분된 경제구역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정치적인 분열로 인해 통일적인 화폐는 없었고 차[茶] 등의 현물과 화폐가 함께 사용되었다. 하지만, 각 경제구역의 생산물은 자급자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분열에도 불구하고 각국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었고 통상관계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sup>5)</sup>

浙江지방의 吳越같은 나라에서는, 백성들을 모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賦稅를 면제해줌으로써 농업 및 상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특히 해외무역의 발전을 가져와 신라·일본과의 통상관계도 만들어 나갔는데, 그 대외무역의 중심 무역항이 福州이다. 福建 지역의 閩越 또한 농업 부문의 비약적인 발전을 배경으로 상공업이 번창하였고, 다시 이를 기반으로 해상무역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福州과 같이, 10세기를 전후하여 강남의 연안지방을 중심으로 한 海岸도시가 발달하였다. 杭州, 蘇州, 明州, 密州, 紹興, 泉州, 廣州 등 중국 동남 해안의 도시는 착실한 농업생산의 발전을 이룬 배후지를 배경으로

5) 申採湜, 2000, 『唐末·五代之 東南沿海地域과 韓半島의 海上交涉』, 『東國史學』 34, 163~164쪽.

6) 張一農, 1989, 앞의 책, 188~189쪽.

활발한 대외교역을 통해 번영을 이룩하였다.<sup>7)</sup>

## (2) 오대 · 십국 시기 중국 동남해안 지역의 무역 중심지

강남 지역의 대외무역은 일찍이 당나라 때부터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興盛하였다. 海路 교통이 끊임없이 개척되어 강남 지역의 대외무역이 발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나갔던 것이다.<sup>8)</sup> 唐代의 국제무역은 북쪽이 남쪽만 하지 못했고, 일반 공업 · 상업의 발전 또한 남방이 북방을 뛰어넘었다<sup>9)</sup>고 언급될 정도였다.

唐代에 이어서 오대 · 십국 시기 중국의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지역은 강남 지역 연안의 항구와 포구였다. 특히 십국 가운데 南漢, 閩國, 吳越 세 나라의 해외무역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다. 남한의 廣州에서는 원래부터 해외무역이 발달했는데, 오대 시기에는 많은 상인들이 남해에 이르러 해외무역을 진행하였다. 閩國의 대외무역 역시 매우 번성했는데, 甘棠 · 福州 · 泉州 · 漳州가 주요한 해외무역항이었다. 이들 항구는 후삼국 · 일본 · 남해 및 중국 북부 오대 국가들과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중심지가 되었다.<sup>10)</sup> 오월의 錢氏는 동아시아 · 동남아시아 · 남아시아 및 서아시아의 원양항해업을 경영하고자, 杭州 · 明州 등의 항구를 중요한 대외무역기지로 만들어나갔다.

이들 항구도시들은 한반도 중남부의 후삼국과 일본, 중국 북방 지역과의 해상교역은 물론이고 멀리 중국 南海교역의 중심지로도 발

---

7) 申採湜, 2000, 앞의 논문, 164쪽.

8) 張劍光, 2003, 앞의 책, 420~421쪽.

9) 朱伯康 · 祝慈壽, 1946, 『中國經濟史綱』, 商務印書館, 138쪽.

10) 日野開三郎, 1984, 「五代閩國の對中原朝貢と貿易」 『北東アジア國際交流史の研究(下)』(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第十卷), 三一書房, 258~275쪽.

전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일본은 당시 폐쇄적인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값비싸고 진귀한 물품이나 서적 등의 문화교류에 대한 필요성은 물론이고, 정치·외교상의 교류를 위한 매개체로서 해상 교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국 상인들이 이러한 교역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과의 대외교역에서 중심항구 역할을 했던 곳은 明州였다.<sup>11)</sup>

吳越이 자리하고 있었던 양자강 이남의 兩浙 연안의 교역 중심지로 寧海(明州定縣), 杭州, 秀州, 溫州, 台州 등의 신흥상업도시가 遠洋航路의 기지로서 성장해갔고, 양자강 南岸에서는 福山鎮, 江陰 등의 신도시가 경제를 주도해나갔다. 吳와 南唐의 영토인 淮南과 江西지방에서도 역시 양자강 하류의 東樞州, 海門縣, 靜海縣, 揚子縣 등과 상류의 昇州, 舒州 등 양자강 南岸과 北岸에 걸쳐있는 신흥 경제도시가 원양항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발전하고 있었다. 특히 揚州는 중국 南海貿易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는데, 중국 南海 여러 나라 한반도의 국가들, 일본과도 매우 밀접한 교역을 진행해나갔다. 한반도에서 중국 강남 지역으로 건너간 선박들도 대부분 揚州에서 중국의 물품은 물론이고 남해 여러 나라의 상품도 접할 수 있게 되었다.<sup>12)</sup>

외국상인들의 무역활동도 蘇州·杭州·越州 등 강남지방의 항구들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瓷器를 비롯하여 각종 견직물과 藥材 등의 수공업 및 농업생산품을 수출하였다.<sup>13)</sup> 그런데, 당나라 중기까지 중국 동남해안의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것은 이슬람 상인세력이었고, 대외교역의 중심지는 산둥반도 지역이었다. 당나라 말기에 이르

11) 孫光圻, 1989, 『中國古代航海史』, 海洋出版社, 323~325쪽.

12) 申採湜, 2000, 앞의 논문, 165~166쪽.

13) 張劍光, 2003, 앞의 책, 426~438쪽.

러 정치·사회적인 혼란상이 가중되자 이슬람 상인은 그 모습을 차츰 감추었고, 대신 중국의 선박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갔다. 또한 해상교역의 중심지 역시 강남 지역의 福建, 廣南, 浙江의 연안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자연히 海洋船의 建造기술 역시 북진, 광남 지방이 가장 발달하게 되었다.<sup>14)</sup> 강남 경제력의 신장을 뒷받침했던 대외무역 발전의 배경에는 해상활동에 필수적인 조선기술의 발전이 수반되었던 것이다.<sup>15)</sup>

## 2. 후삼국 시기 대외무역네트워크

### (1) 서해사단항로의 개척과 이용

삼국시대 이래로 한반도와 중국의 해상교역에 이용되었던 항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북방해로, 서해횡단항로, 서해사단항로가 그것이다. 북방해로는 산둥반도의 登州에서 바다를 건너 요동반도 및 서해연안을 따라 항해하는 해로였다. 이 해로는 중국 산둥반도의 등주를 출발하여 동북쪽으로 渤海灣의 馬石山[老鐵山] 河口를 거쳐 압록강 하구에 이른 뒤, 한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대동강 하구와 강화도를 거쳐 남양만에 이른다. 근해 연안이나 섬을 따라 항해하기 때문에 항해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비교적 안전하다.<sup>16)</sup>

---

14) 斯波義信, 1968, 『宋代商業史研究』, 風間書房, 49~132쪽.

15) 申採湜, 2000, 앞의 논문, 167쪽.

이 연안우회항로는 기원전 21~16세기까지 소급된다고 하며,<sup>17)</sup> 6세기 초엽까지 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sup>18)</sup> 노철산항로라고도 부르는데, 당나라 賈耽(730~805년)의 『道里記』에는 ‘新羅王城路’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이 ‘新羅王城路’가 9세기 초 신라와 당나라의 일반적인 항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연안우회항로는 경제성·합리성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官人의 巡廻 公路’ 또는 중국 商船들의 연안항해로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一面的 항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9)</sup>

서해횡단항로는 산둥반도에서 바로 서해를 가로질러 예성강·당은포에 이르는 해로로, 4세기 말 이후 5세기 초엽에는 개척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시대의 백제와 신라, 남북국시대의 신라는 북쪽 연안항로를 장악하고 있었을 고구려와 발해와의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 산둥반도로 직항하는 서해횡단항로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sup>20)</sup>

9세기 중엽의 일본 승려인 圓仁이 지은 『入唐求法巡禮記』에 따르면, 9월 2일 정오경에 적산포를 출발한 배가 3일 아침에 벌써 멀리 신라의 산들을 보았고, 4일 해뜰 무렵에 공주 앞바다를 지났다고 한다. 다시 6일에는 대마도에 이르렀다고 하니, 적산포를 떠난 지 5일 만에 대마도에 도착한 셈이다. 북방해로보다 매우 빠르기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항해술의 발달을 필요로 했다. 백제나 신라의 경우, 일본인들이 배우고자했던 ‘百濟船’이나 ‘新羅船’과 같

16) 權惠永, 1997,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一潮閣, 199~202쪽.

17) 무함마드 간수, 1996, 『남해로의 동단-고대 한·중해로』 『장보고와 청해진』, 해안, 230~240쪽.

18) 신형식, 1989, 『韓國古代의 西海交涉史』 『國史館論叢』 2, 39쪽.

19) 최근식, 2005, 『신라해양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24~131쪽.

20) 최근식, 같은 책, 131~140쪽.

은 뛰어난 선박의 건조기술이나 指南器와 같은 항해기구가 뒷받침되었다.<sup>21)</sup>

여기에 해류와 풍향을 이용한 항해기술이 발달해야 한다.<sup>22)</sup> 남방 해로를 이용하는 선원들이 계절풍과 海潮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라 말에 중국으로 떠났던 승려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늦겨울에 중국으로 가서 여름철인 7월에 무주·전주·강주·나주 방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면, 계절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sup>23)</sup>

신라시대 이후 특히 후삼국시기에 들어와서는 북방해로나 서해 횡단항로보다는 서해사단항로가 보다 많이 이용되었다. 흑산도 부근에서 서남쪽으로 바다를 건너 양자강 입구나 남중국으로 직항하는 해로였다. 중국의 明州 定海縣, 台州 黃岩縣, 揚州, 泉州, 廣州 등과 한반도의 武州[光州], 羅州, 全州, 康州[晉州]를 잇는 항로인 것이다. 『唐會要』에는 望海鎮[明州 定海縣]이 일찍부터 신라 遠航선박의 중요한 發着항구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輿地紀勝』에는 明州 昌國縣이 고려·신라·발해·일본 등의 선박이 바람을 기다리던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입당구법순례행기』 839년 4월 2일조에 따르면, “明州에서 떠난 배는 바람에 밀리어 신라의 경계에 도착했으며 또한 양자강으로부터 떠난 배도 신라에 도착했습니다.”라는 말처럼, 별다른 항해기술 없이도 명주나 양자강에서 신라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중환의 『택리지』(『전라도』 영암군조)에서도 “신라가 당에 조공할 때에 모두

21) 최근식, 같은 책, 72~118쪽 및 181~209쪽.

22) 權惠永, 1996, 앞의 책, 205쪽.

權惠永, 1999, 『南北國時代 新羅 황해경영의 기반』 『史學研究』 58·59합집, 346~350쪽.

23) 金文經, 1999, 『해상활동』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298~299쪽.

이 靑[영암군]의 바닷가에서 배로 떠났다. 바닷길을 하루 가면 흑산도에 이르고, 흑산도에서 하루 가면 홍의도에 이른다. 다시 하루를 가면 가가도에 이르며, 동북풍이 불면 3일 만에 태주 영과부 정해현에 도착하게 되는데, 참으로 순풍을 만나면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다. … 당나라 때에 신라 사람이 바다를 건너서 당나라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나루터에서 나루를 건너는 것 같았고 선박의 항해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여, 서해사단항로가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왕래에 가장 빈번히 이용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장보고가 활동한 시기에 이미 한반도 서남 지역에서 중국 양자강 유역을 잇는 최단거리 사단직항로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4)</sup>

당나라 안사의 난[755~763년] 이후 농업·수공업·상업 등에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 남부의 揚州·泉州·廣州·福州·明州·杭州 등의 여러 항구도시가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크게 번성하면서 서해사단항로의 이용 빈도는 더욱더 증가하였다. 신라 말 후삼국시기에 이르러, 중국 화북 지역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경제 중심지가 남쪽으로 옮겨지면서<sup>25)</sup> 서해사단항로가 더욱 활발하게 이용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항해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해서 남방해로가 활발하게 이용되었다는 것은 후삼국시기에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이 주요한 대외무역기지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구나 화북 지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서해에서의 해상활동에서 산동반도 지역이 차지하는 역할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양자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 강남 지역이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

24) 최근식, 2005, 앞의 책, 144~147쪽.

25) 孫光圻, 1989, 앞의 책, 322쪽.

게 되었다. 결국 한반도 삼국과 강남 지역을 잇는 해상무역로는 한반도 서남부에서 강남 지역으로 직접 건너가는 남방해로를 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따라서 향후 견훤의 후백제와 궁예 및 왕건의 태봉·고려의 대중국 해상활동은 이 지역의 쟁패를 놓고 벌 어질 수밖에 없었다.

## (2) 신라 대외무역 네트워크의 붕괴

9세기 초 장보고와 청해진 세력이 주도했던 동아시아 대외무역 네트워크는 이들을 제거한 신라 국가의 관할 아래로 재편되었다. 그 결과, 예성강 일대와 청해진이 위치한 서남해안 일대, 진주와 김해를 중심으로 한 남부 해안 일대가 중국·일본과의 대외무역을 담당 하는 중심 지역으로서 기능하였다.

889년 진성왕의 조세 독촉으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호족이 득세하였고, 결국 신라는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다. 대중국교역의 중심지이었던 예성강 지역과 서남해안 지역에서도 역시 해상세력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세력결집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신라 중앙정부에서는 대중국 향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먼저 서남해 지역을 통제할 防戍軍을 파견하기에 이르렀고, 이 방수군에는 견훤이 포함되어 있었다.

신라가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지역에 가장 먼저 방수군을 보낸 것은 대외무역에서 이 지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해상세력을 압도하여 국가적 해상교역 루트를 재개하기 위한 의도에서였지만, 견훤이 서쪽으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진주 지역에서 독

립세력임을 선포하고, 순천을 거쳐 광주에서 스스로 왕임을 자부하여 자립을 선언함으로써,<sup>26)</sup> 이러한 신라 왕실의 의도는 어긋나고 말았다.

진도를 중심으로 고이도, 압해현, 갈초도 등의 서남해안 섬 지역은 能昌이 독자적인 해상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sup>27)</sup> 예성강 일대의 해상세력 역시 궁예에게 복속됨으로써, 신라의 대중국 교역은 남해의 진주와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sup>28)</sup>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진주의 호족들도 신라 정부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890년대 赤袴賊의 난을 계기로 자립하여 920년에 왕건에게 귀부하였던 康州將軍 閔雄이 있고, 뒤를 이어 王逢規가 득세하였다. 왕봉규는 924년에는 泉州節度使로서 後唐에 사신을 보냈고, 927년 3월에는 權知康州使로서 후당에게 懷化大將軍에 임명되었으며, 이어 4월에는 林彦을 후당에 보내 조공하였다. 왕봉규를 이어 康州 지역을 장악한 사람은 928년에 보이는 康州將軍 有文이었다.

진주 지역에서 짧은 시기에 세 명의 세력가들이 교체가 되었든 이유는 이 지역의 대외무역상의 중요성 때문이다. 진주 지역을 장악하려는 견훤과 왕건의 공격으로 인해 그때마다 새로운 호족으로 교체되었던 것이다. 즉, 924년 경상도 지역에 대한 견훤의 공략 당시 친고려적이었던 윤웅이 몰락하고 대신 왕봉규가 득세를 했으며, 927년 왕건의 공격으로 왕봉규 역시 유문으로 교체되었다가, 928년에 다시 견훤의 공격으로 인해 진주 지역은 견훤의 세력권으로 편입되고 말았다.<sup>29)</sup>

26) 姜鳳龍, 2000, 『甄萱의 勢力基盤 擴大와 全州 定都』, 『후백제 견훤정권과 진주』, 주류성, 98~99쪽.

27) 鄭淸柱, 1996,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54쪽.

28) 朴承範, 2004, 『9-10世紀 東아시아 地域의 交易』, 『中國史研究』 29, 120~121쪽.

김해 지역 역시 890년대에 이후 蘇律熙와 金仁匡이 장악하게 되었고,<sup>30)</sup> 경주의 外港이었던 울산은 901년(효공왕 5)년 무렵 호족 朴允雄의 세력권 아래 들어갔다.<sup>31)</sup> 신라정부는 이들 진주와 김해 지역 호족세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후하려 하였고, 이러한 시도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927년 진주의 왕봉규가 權知康州事를 칭할 때 新羅國 소속이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김해 지역 호족의 경우 신라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後唐 明宗 天成 2년(927)에 新羅國登州知後官 本國金州司馬로 나오는 李彦謨가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당나라 등주의 신라 거류민과 신라 본국의 연락사무를 담당한 등주 지후관에 있는 이연모가 金州 즉 김해의 군사책임자인 司馬를 겸하고 있다. 이연모가 소율희의 아래에서 軍權만을 전담했는지<sup>32)</sup> 아니면 소율희와 무관하거나 그를 대체한 독자적인 세력이었는지,<sup>33)</sup> 신라 정부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했던 점은 분명하다. 신라정부로서는 중국 등주의 신라 거류민과의 연락사무도 직접 시행하지를 못하게 됨에 따라 끝까지 친신라정책을 고수하고 있었고 또한 해상세력과의 연결되었던 것으

29) 이현모, 2003, 『羅末麗初 晉州地域의 豪族과 그 動向』, 『歷史教育論集』 30, 145~152쪽.

30) 김인광과 소율희의 등장시기와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文』 기록의 해석 차이에 따라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知金海府進禮城諸軍事明義將軍 김인광이 먼저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906년(효공왕 10)을 전후하여 蘇忠子·소율희 형제가 김인광을 몰아낸 뒤 소율희가 金海府知軍府事가 되었다는 견해(崔柄憲, 1978, 『新羅末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 『韓國史論』 4, 서울대, 403~408쪽. 朴承範, 2004, 앞의 논문, 125쪽.)와, 소율희 이후에 김인광이 등장했다는 견해(金相澈, 1996, 『新羅末 舊加耶圈의 金海 豪族勢力』, 『震檀學報』 82, 61~62쪽.)가 그것이다.

31) 具山祐, 1992, 『羅末麗初의 蔚山地域과 朴允雄』, 『韓國文化研究』 5, 부산대, 14쪽.

32) 崔柄憲, 1978, 앞의 논문, 431쪽.

33) 朴承範, 2004, 앞의 논문, 123쪽.

로 추측되는 김해지방의 호족세력에 위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해 지역에 대한 신라정부의 제후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주 지역은 928년 견훤의 세력권에 완전히 흡수되었고, 김해 지역의 호족세력 역시 견훤이 경주에 침입한 경애왕 말년(927)에는 몰락하여 신라의 대외교역 창구로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되었고, 울산의 박윤웅도 930년(경순왕 5)에 고려에 귀부함으로써 신라는 울산을 통한 교역의 가능성마저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로써, 신라는 주변의 교역망 근거지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다.<sup>34)</sup> 이제 신라의 대외 무역로와 대외무역루트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무역루트의 차단은 신라로 하여금 국가적 존망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요소의 하나가 되었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신라는 스스로 고려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 (3) 견훤의 한·중·일 무역네트워크 복원 시도

신라 말 궁예와 견훤은 각각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을 부르짖으며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그 가운데 신라 서남해안에서 일어난 견훤은 일찍부터 대외관계에 눈을 떴다. 북중국의 後唐은 물론이고 거란과도 교섭하는 한편, 남중국 十國의 吳越을 중심으로 閩國, 南唐 등과도 교역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대체로 북방 오대와의 해상왕래는 중간에 위치한 태봉·고려의 방해와, 후백제와 오대 사이의 국제관계가 조화롭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남중국 10국과 비교

---

34) 朴承範, 2004, 앞의 논문, 126~127쪽.

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후백제와 중국 남부 지역의 조공 및 무역선 왕래는 산둥 지역에 대한 경우와는 반대로 대단히 활발했으며, 특히 그 중심국은 吳越國이었다. 오월지방은 당시 중국의 최대 무역항구가 모여 있었던 곳으로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등 각국의 物産이 모여들었다. 후백제는 북쪽의 오대와는 주로 정치·외교적인 친선 관계를 쌓는 한편, 남쪽의 십국과는 외교적인 교류는 물론이고 대외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 후백제가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기 위해 배를 띄운 것은 약 35년 간 4번[900년, 909년, 918년, 927년], 오월에서 후백제로 사신을 파견한 것은 3번이었다.

후백제가 甌나 閩과 사신 혹은 무역 교류를 한 사료는 찾을 수 없으나, 역시 지속적으로 조공과 무역을 전개했다고 추측하는 것이 옳은 듯하다. 승려의 왕래를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유추할 수 있다. 885년에 중국으로 떠났다가 909년 武州 昇平으로 돌아온 砥平 보리사 대경대사 현기를 비롯하여, 892년 북중국 秦橋로 건너갔다 921년 전주 임피군으로 돌아온 광양 옥룡사 통진대사 보운, 896년 남중국 鄞江으로 건너갔다 911년 나주 회진으로 돌아온 해주 광조사 진철대사 보월 승공, 900년 양자강과 회수 지역으로 건너갔다 924년 전주 회안현으로 돌아온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 원오, 떠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908년 무주 회진으로 돌아온 장단 옥룡사 법경대사 보조 혜광, 892년 商船을 따라 중국으로 갔다가 921년 강주 덕안포로 돌아온 여주 고달사 원종대사 혜진 등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지금의 전라도 지역을 출발한 배가 10회였고, 또 대부분 남중국 지역 특히 淮南·兩浙 방면으로 왕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35)</sup>

35) 日野開三郎, 1960, 『羅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 『朝鮮學報』 17 : 1984, 『北東アジア國際交流史の研究(上)』(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第九卷),

한반도 서남해안을 장악하고 있었던 후백제는 양자강 유역의 강남지방과 해상무역을 전개해나가기에 가장 유리한 입장이었다. 예로부터 남중국과의 해상교역을 위해서는 대부분 한반도 서남해안의 항구들을 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영산강 하구에 있었던 會津은 당시 서남해안에 있던 대표적인 항구로 서해사단항로의 대표적인 출발지였다.<sup>36)</sup>

회진 앞 서남해안 일대를 장악하면서 중소 해상세력들을 아우르고 있었던 사람은 壓海縣의 ‘賊首’ 能昌이었다. 능창은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끝까지 왕건과 싸우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왕건과는 적대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다만, 견훤과는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견훤이 신라의 防戍軍으로서 해상세력의 활동을 규제하는 입장에 있었다거나,<sup>37)</sup> 능창이 ‘포스트 장보고’를 꿈꾸며 서남해안 일대 ‘바다를 억눌러[壓海]’ 장악하면서 이 지역의 패권을 놓고 견훤·왕건과 패권을 다투었다는 점을 들어 견훤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세력으로 보기도 한다.<sup>38)</sup>

그러나 견훤과 궁예·왕건의 양자가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대규모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제3자로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진주나 김해의 예에서 보듯 중소 호족들은 모두 견훤 혹은 궁예·왕건에게 귀부함으로써 독자적인 세력권을 보장받으면서 생존을 도모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두 세력이 막대한 대외무역의 이권을

---

三一書房, 47~49쪽.

36) 權惠永, 1997, 『古代韓中關係史』, 一潮閣, 191~192쪽.

37) 鄭淸柱, 1996, 앞의 책, 154쪽.

38) 姜鳳龍, 2000, 『押海島의 변영과 쇠퇴-고대·고려시기의 압해도-』 『島嶼文化』 18, 13~17쪽.

姜鳳龍, 2002, 『後百濟 甄萱과 海洋勢力』 『歷史教育』 83, 121~127쪽.

위해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서남해안 지역의 세력가였던 능창이 그러한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왕건과 대결을 취했던 능창은 견훤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견훤이 능창을 포섭하여 자신의 군사적 세력기반으로 삼았던 것<sup>39)</sup>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능창은 견훤의 남중국 무역루트를 보장해주는 대신, 해상무역의 이권을 일부 나누어 가졌을 것이다. 견훤 역시 능창을 통해 오월 지역과 대외무역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확충하는데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903년 왕건이 금성과 부근 10여 개 군현을 함락시킨 뒤, 910년에는 압해도를 중심으로 서남해안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能昌 세력을 흡수함으로써, 견훤은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중국 강남 지역과 왕래할 수 있는 중요한 대외무역 루트가 막혀버린 것이다. 견훤으로서는 나주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을 제외한 다른 곳을 새로운 무역항으로 삼아 남중국과의 교섭을 시도해야 했다. 후백제에서 918년·927년에는 오월에, 925년·936년에는 후당에 각각 사신을 파견한 것을 보면, 회진 앞 압해도 일대 바다를 경유하지 않은 채 중국 남부로 항해할 수 있는 항로를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사유적이 발견된 부안 죽막동 지역<sup>40)</sup>이 주요한 교역항의 하나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견훤은 남해안을 통해 일본과의 교섭을 시도하였다. 일본은 838년의 遣唐使를 끝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779년 이래 신라와의 관계도 단절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민간에서의 대

39) 申虎澈, 1993, 『後百濟 甄萱政權研究』, 一潮閣, 31~32쪽.

40) 國立全州博物館, 1998,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研究』

외무역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해적들이 발호하는 가운데 신라와 손을 잡고 무역을 했다는 밀고를 받자 반란을 일으킨 藤原宮田麻呂[843년], 大宰 少貳 藤原元利麻呂[870년] 등의 예로 보아 지방관현들의 밀무역 행위는 끊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41)</sup>

이러한 상황에서 견훤은 922년 사신 輝巖(函)을 먼저 보내 書狀과 信物을 가지고 대마도에 가서 일본 정부와의 통상을 원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로부터 견훤이 신라의 신하라는 점을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양국간 통상 교섭의 주역은 견훤이었다. 일본과의 교역로는 당연히 한반도 남해안의 무역항을 경유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삼국시대 이래로 대일본교역항이었던 섬진강 하구의 진주나 낙동강 하구의 김해 등을 거쳐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견훤은 이들 지역 호족세력들을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했다.

929년 후백제 상선이 대마도에 표류하자 對馬島守 坂上經國은 3월 檢察임무를 띠고 있는 檢非違使 秦滋景 등에게 통역을 맡려 보내면서 견훤에게 島守의 書狀을 전하였다. 표류인을 돌려보면서 이를 계기로 대마도수의 書狀까지 견훤에게 직접 바친 것을 보면, 대마도수는 견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바랐던 듯하다. 아마도 그것은 견훤과의 통상이었거나,<sup>42)</sup> 견훤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와 통상교섭을 다시 시도해보기를 권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만약 후백제와 일본 정부와의 통상 교섭이 성사된다면 대마도수로서는 중간에서 경제적인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곧이어 5월에 견훤은 표류민 송환에 대한 답례로서 일본 京都 정부에 사신을 파견하

41) 李基東, 1991, 『9~10世紀에 있어서 黃海를 舞臺로 한 韓·中·日 三國의 海上活動』 『震檀學報』 71·72, 297쪽.

42) 申虎澈, 1993, 앞의 책, 140~141쪽.

였고, 이번에도 통상을 요구한 듯하지만 같은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 시기에 견훤이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던 것은 정치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대외무역의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즉, 927년에 왕봉규가 장악하고 있었던 진주, 김해 지역이 왕건에 의해 소멸한 뒤, 견훤이 다시 이 지역 공략에 나서 진주, 김해 지역을 자기 세력권에 편입시켰던 것이다. 진주, 김해 지역은 선사 이래로 일본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견훤으로서는 이 지역을 확보한 직후 일본과의 교역을 바로 재개했던 것이다.

당시 일본 서부지방의 土豪나 관료 중에는 한국과의 밀무역에 종사한 사람이 꽤 있었던 듯하다. 936년 반란을 일으킨 ‘해적’ 藤原純友<sup>43)</sup>가 평소 한반도 나라들과의 밀무역에 종사하면서 견훤의 존재에 주목, 그로부터 인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배운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sup>44)</sup>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936년은 후백제가 멸망하는 해인데, 이들 반란은 그동안 후백제와의 밀무역 루트가 없어짐으로 인해 더 이상 이익을 취할 수 없었던 데에도 그 하나의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무튼, 서남해안이 이미 왕건에게 편입된 직후 견훤은 중국 및 일본과의 대외무역을 위해 새로운 무역항과 무역로를 개척해야만 했다. 특히 중국 남부 지역과의 교역로 개척은 견훤에게는 매우 절실한 문제였을 것이다. 한 가지 대안은부안 등 압해도 이북의 서해안에서 출발하는 항로를 찾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남해안을 통하는 것이었다. 서해안에서 중국 남부로 향하는 항로는 압해도 앞바다에서 왕권의 水軍에게 붙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

43) 生田滋, 1996, 「藤原純友とバイキング」, 『日本の古代』 8(海人の傳統), 中央公論社, 399~405쪽.

44) 藤間生大, 1966, 「九世紀末から10世紀初めにかけての東アジアの動亂」, 『東アジア世界の形成』, 春秋社, 139~176쪽.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견훤의 선박들은 그 위험을 피해 압해도 앞 바다를 멀리서 돌아 양자강 유역까지 건너가는 길을 새롭게 개척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이 일본과의 통상교역까지 개척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장보고가 활약한 시기 이후 중국 남부와 한반도와 일본을 잇는 무역 네트워크를 다시 부활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으로 향하는 가장 빠르고 편리한 교역항인 회진과 그 앞바다를 잃고 우회해야만 하는 상황에다가, 일본과의 통상교섭도 실패함으로써, 대외무역을 통해 富를 축적하여 후백제 국가의 경제적 기반으로 삼기에는 富의 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얼마 뒤 후백제는 고려에 멸망당함으로써, 견훤이 세우고자 했던 중국 남부와 한반도, 일본을 잇는 무역네트워크는 실패로 돌아가고, 무역 네트워크를 재건하는 역할은 고려의 몫으로 남겨졌다.

### 3. 고려 초 대외무역 네트워크의 변화와 재편

#### (1) 왕건의 서남해안 무역 네트워크 장악

9세기 중엽 이래로부터 계속된 당나라 말기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북중국 지역의 상업은 쇠퇴하였고, 중국 강남 지역이 새로운 대외무역의 중심지로 변모해갔다. 북중국과의 대외무역을 주도해갔던 패강진 지역의 해상세력들은 강남 지역과의 교역을 피해야 했고, 그를 위해서는 서남해 지역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지역을

확보한 세력이 중국과의 교역을 장악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러한 교역으로 인해 막대한 무역이권을 독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상 무역 가문 출신인 왕건은 이러한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889년 진주 지역을 장악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갖춘 견훤 역시 서남해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당시 한반도 서남해 지역에는 나주 지역의 多隣君 吳氏와, 연안 섬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能昌이 있었다. 나주 지역이 남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교두보였다고 한다면, 서남해 연안 도서 지역은 실제적인 교역이 이루어지는 무역로의 출발지였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의 확보는 견훤은 물론이고 왕건 세력에게 있어서 남중국과의 교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

견훤의 등장으로 용건·왕건세력을 비롯한 패강진 해상세력은 한반도 서남해 지역을 사이에 두고 그와 대결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궁예가 한반도 중부 동해안을 거쳐 패강진 지역으로 진출하려 하자, 용건을 비롯한 이 지역 해상세력들은 견훤과의 대결을 일단 접어두고 궁예에게 귀부하였다. 이것은 우선 궁예의 군사력에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너져가는 신라 정부에 대신할 만한 권력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대신 고구려를 부흥한다는 의미로 국호를 ‘高麗’로 정함으로써 명분을 획득할 수 있었다. 궁예의 통치 아래서 궁예를 도움으로써 견훤과의 대결을 추진해 나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해상세력가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왕건세력에게 있어서 이 지역의 확보가 중요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궁예 통치하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 확대시켜 나가야했기 때문이었다. 왕건의 아버지 용건이 궁예에게 귀부하였던 이유는 물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궁예와 대결하여 위협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그에게 복

속함으로써 기존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였다. 궁예의 입장에서 보면, 패강진 세력의 귀부를 허락함으로써 이 일대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함과 동시에 그들 해상세력으로부터 나오는 대외무역의 이권을 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왕건세력의 이러한 입지는 끊임없이 대외무역의 활로를 개척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낳았다. 즉, 왕건은 궁예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무역루트를 확보를 통해 그러한 궁예의 요구에 응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압력에 적절히 대응해나가야 했다.

결국 왕건세력은 남중국과의 대외무역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서남해 지역으로 진출했는데,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세력은 다련군 오씨와 능창이었다. 능창은 견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건은 나주 지역의 다련군 오씨를 적극적으로 포섭할 수밖에 없었다. 견훤 세력과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었던 다련군 오씨로서는 왕건의 제의에 망설였을 것이나, 왕건과 오씨의 딸이 혼인을 함으로써 결합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나주의 오씨와 결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오늘날의 충남 당진군 면천면인 면천군 출신의 박술희와 복지겸의 역할이 컸다. 이들 역시 아마도 당나라와의 해상교역을 배경으로 성장한 해상세력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아마도 당시 패강진 지역의 왕건세력 아래에 편입되어 있었던 듯하다. 북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무역이익을 취하는 것이 어려워진 당시 남중국과의 무역로 개척은 이들에게도 절실했을 것이다. 왕건이 장화왕후 오씨의 소생인 武[뒤의 惠宗]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박술희로 하여금 그 후견인이 되도록 당부를 했다는 점에서, 왕건과 면천 지역세력, 나주 지역세력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45)</sup>

왕건은 903년 나주 인근의 10여 개 군현을 점령함으로써, 남중국

과 교역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것은 왕건세력에게는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었다.

먼저, 해상세력출신으로서 해상무역의 주도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었다. 당시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중국 남방 지역과의 대외무역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여 자신의 세력기반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이러한 기반을 배경으로 궁에 통치 아래에서도 계속 왕건세력이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 강화해나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나주 지역으로의 진출은 후백제를 배후에서 위협함으로써, 견훤과의 대결에서도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910년 능창마저 제거한 왕건은 견훤과 남중국 사이의 교토로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해상세력으로서의 왕건세력은 더욱 강력한 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궁예를 쫓아내고 고려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한반도 남해안 서부의 나주 지역부터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패강진 지역까지의 서남해안 전역이 왕건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

한편, 나주 동쪽 남해안의 진주와 김해 지역에서는 견훤과 왕건의 세력다툼이 이어지고 있었다. 927년 9월 공산성 전투에서 견훤이 승리한 뒤, 이 지역 해안에 대한 주도권은 후백제에게로 넘어갔다. 930년대에 양검을 강주도독으로 파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45)</sup> 그러나 935년 6월 견훤의 투항과 10월 신라 경순왕의 투항이 뒤이어 936년 2월 순천 지역 호족이자 견훤의

---

45) 姜鳳龍, 2003, 「羅末麗初 王建的 西南海地方 掌握과 그 背景」, 『島嶼文化』 21, 360~362쪽.

46) 姜鳳龍, 2002, 앞의 논문, 131쪽.

사위인 박영규의 귀부로 인해 왕건은 이 일대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장보고시대 이후 흩어졌던 해상무역세력들이 왕건에 의해 다시 결집되었고, 왕건은 장보고시대의 동북아해상무역 네트워크를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 (2) 고려 초 무역 네트워크의 재편

고려 초에도 한·중·일 동북아 삼국의 무역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역은 한반도의 서남해안, 특히 영산강 하구의 나주·완도 등지였다. 이 지역을 장악한 세력이 중국과 한반도, 한반도와 일본의 무역네트워크를 주도했던 것이다. 특히 남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영산강 하구의 會津이 대중국무역의 기항지로서 가장 대표적인 항구였다. 영산강 하구에서 浙東지방의 明州나 양자강 하류의 揚州에 이르는 서해사단항로는 당시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무역로였다. 이 무역을 주도했던 것은 아마도 서남해안을 기반으로 성장한 해상세력가들이었을 것이다.

나주오씨를 비롯한 이들 서남 지역 해상세력가들은 역시 서남 해상세력가 출신인 왕건에게 적극 협력하여 중앙귀족화하였다. 고려는 이러한 인적·물적 기반 위에서 동북아무역네트워크를 장악할 수 있는 국가적인 好期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고려 왕실은 장보고와 같은 사무역자의 활약이 곧바로 중앙정부에게 위협이 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지방세력의 사무역을 금지하고 사대교린관계에 입각한 국가 간의 공식적인 무역관계를 위주로 무역정책을 운영하였다.<sup>47)</sup>

성종 원년(982) 6월 최승로가 올린 時務28조 가운데 대외교역에

관해, “지금은 병례를 위한 사신만이 아니라, 무역으로 인하여 使者의 왕래가 빈번하니 중국의 천시를 받을까 두렵고, 또한 왕래하다가 배가 난파되어 목숨을 잃는 자가 많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조빙할 때의 사신 편에 무역을 兼行하게 하고 그 밖에 때 아닌 때에는 일체 禁斷하여 끊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후삼국 시기 이래 고려 초에는 국가 주도의 공무역인 사행무역 이외에 민간에서 주도하는 사무역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런데, 최승로가 사무역을 금지하자고 건의를 했고 이를 성종이 받아들임으로써, 그 결과 8~9세기 신라 때와 같은 활발한 사무역 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국내의 교역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사무역을 금지하는 고려의 무역정책으로 인해, 모든 무역은 왕실이 간여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사무역을 통해 성장한 세력이 왕실에 위협이 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이 자리하고 있었다. 해상 무역을 기반으로 고려를 건국했던 왕실이, 무역을 일반인들에게 허용할 경우 일시적인 이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이 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 초 대외무역을 왕실 및 중앙정부가 장악을 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공식 무역 이외에 사무역을 통제하게 된 데에는 고려 초 집권세력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즉, 왕건의 고려 건국에 큰 기여를 한 패서 지역 출신의 호족세력과,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서남해 지역의 해상 호족세력이 왕건이 죽은 뒤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는 후자의 패배로 귀결되었다. 즉 나주 지역 호

47) 森克己, 1959, 『日・宋の高麗との私獻貿易』, 『朝鮮學報』 554~555쪽.

蔡雄錫, 1988, 『高麗前期 貨幣流通의 기반』, 『韓國文化』 9, 116쪽.

이진한, 2004, 『한국무역의 역사』,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55~256쪽.

죽을 외가로 둔 惠宗이 죽은 뒤 패서 세력이 지원한 定宗과 光宗이 잇달아 즉위하면서 서남해 지역 출신 호족들은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것이다.<sup>48)</sup>

하지만, 권력을 장악한 패서 지역 출신 호족들 역시 광종 대의 왕권 강화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종 대의 유교적 통치 질서 확립이 가능했던 것이며, 사무역 금지 정책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대외무역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주도할 역량을 가진 세력은 모두 사라졌다. 결국, 동북아 무역네트워크를 장악하여 국가적 발전을 꾀할 수 있었던 이러한 好期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갔다.

이후 고려와 송나라의 사이의 무역은 남중국출신의 송나라 상인들이 독점적으로 장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려가 대외교역에서 소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동아시아 해상활동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상실하고 대신 그 자리를 송나라와 일본의 상인들이 독점하게 되었다. 송나라의 경우 적극적으로 사무역을 유도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사무역의 욕구와 필요성 자체가 감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려는 배제된 채 송나라와 일본 상인들 사이의 사무역이 활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고려 왕실과 중앙정부는 사무역의 활성화로 인해 생기는 더 큰 이권과 이익을 보지 못한 채, 그 이권을 송나라 상인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말았다.<sup>49)</sup>

여기에는 호족 연합을 통해 탄생한 고려정부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권력구조상의 취약성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강력한 왕권으로 호족을 제압하지 못한 채 호족들 간의 연합과 추대 위에서 탄생했던 고려 왕실과 중앙정권의 한계로

48) 鄭淸柱, 1996, 앞의 책, 179~186쪽.

49) 朴承範, 2004, 앞의 논문, 135~139쪽.

인해 왕권에 도전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세력의 성장도 용인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 맺음말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이르는 9세기 말~10세기 중엽의 후삼국 시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정치·사회적인 혼란을 거쳐 다시 안정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동시에 9세기 초 ‘장보고시대’ 이후 한·중·일 삼국의 육상·해양 네트워크가 새롭게 변화하고 재편되는 시기였다.

10세기를 전후하여 唐末·五代시기에 오면서 강남 지역이 사회·경제적인 중심지로 크게 부상하게 되었고, 화북의 五대의 왕조는 강남의 10국에게 경제적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이것은 강남 지역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데 그 주요한 원인이 있었다. 오대십국 이래의 吳越와 南唐의 국내는 비교적 안정되어 兩浙지방의 경제는 더욱 번영하여, 북방의 五代는 물론이고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일본, 아라비아 등과도 빈번한 해상교역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해상교역을 바탕으로 10세기를 전후하여 강남의 연안지방을 중심으로 海岸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 동남연안에 자리잡은 浙江지방의 吳越, 福建 지역의 閩越, 그리고 閩과 吳越 또한 각각 沿海地域의 지리적인 조건을 이용하여 해상무역을 번성하였던 것이다. 閩國, 지금의 福建지방의 福州·長樂縣·泉州·漳州, 吳越이 있었던 兩浙 연안의 寧海(明州定縣)·杭州·秀州·溫州·台州, 吳와 南

唐이 있었던 淮南과 江西지방에서는 양자강 하류의 東海州・海門縣・靜海縣・揚子縣 등과 상류의 昇州・舒州 등의 도시가 크게 발전하고 있었다.

후삼국시기의 대외무역에서는 북방해로나 서해횡단항로 대신 서해사단항로가 적극적으로 개척되고 이용되었다. 서남쪽으로 바다를 건너 양자강 입구나 남중국으로 직항하는 해로였는데, 남방해로는 중국의 明州 定海縣, 台州 黃岩縣, 揚州, 泉州, 廣州 등과 한반도의 武州[光州], 羅州, 全州, 康州[晋州]를 잇는 항로였다. 서해사단항로의 이용은 선박건조술과 항해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졌다.

따라서 후삼국의 패권뿐만 아니라, 중국 강남 지역과의 대외무역로・무역항구를 장악하기 위해 한반도 서남부 지역을 두고 견훤과 궁예・왕건 사이에 쟁패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이 시기 신라의 경우, 중국으로 가는 무역로가 후백제와 태봉・고려에 완전히 장악됨으로써, 대외무역 네트워크는 실질적으로 붕괴되었다.

후삼국의 혼란 속에서 제일 먼저 대외무역 네트워크를 복원시키려고 했던 사람은 견훤이었다. 일찍부터 대외관계에 눈을 뜬 견훤은, 오대와는 주로 정치・외교적인 친선관계를 쌓는 한편, 남쪽의 十國과는 외교적인 교류는 물론이고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 특히 영산강 하구의 연안 도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능창과 결탁함으로써 한반도 서해안과 중국 강남 지역 사이의 무역네트워크를 개척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일본과의 교섭을 통해 이러한 네트워크를 일본열도까지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남해안의 진주나 김해 지역을 세력권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왕건과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나주와 뒤이어 회진 앞바다를 빼앗김으로써 견훤의 대중국무역 네트워크는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

한편, 패강진 지역의 해상무역세력 가문에서 성장한 왕건은 궁예 치하에서 水軍을 배경으로 정치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특히 나주 지역을 점령하여 후백제의 배후를 장악함으로써 견훤에게 치명타를 안김과 동시에, 淸城(충남 당진)·영암·나주·진도 등의 해상세력가들을 자신의 세력 안에 편입시킬 수 있었다. 결국, 장보고가 활약했던 시기 이후 흩어졌던 해상무역세력들이 왕건에 의해 재결집되었고, 왕건은 ‘장보고 시대’의 동북아해상무역 네트워크를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여기에 대중국무역을 주도했던 서남해안 지역 출신의 해상세력가들이 왕건에게 적극 협력하여 중앙귀족화함에 따라, 따라서 동북아 무역네트워크를 장악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 이 더욱 풍부해졌다.

그러나 최승로의 사무역 금지 상서를 성종이 받아들이고, 뒤이어 羅州 吳氏를 비롯한 서남해안 지역 출신들이 惠宗 말년의 왕위계승 쟁탈전에서 패배함으로써 대외무역정책을 주도할 정치세력마저 붕괴되었고, 승리한 패서 지역 출신 호족들 역시 광종 대의 왕권 강화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종 대의 유교적 통치 질서 확립이 가능했던 것이며, 사무역 금지 정책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동북아 무역네트워크를 장악하여 국가적 발전을 꾀할 수 있었던 이러한 好期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갔다. 이렇게 고려가 대외 교역에서 소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동아시아 해상활동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상실하고 대신 그 자리를 남중국 출신의 송나라 상인과 일본의 상인들이 독점하게 되었다.

고려의 이와 같은 정책은 국내의 교역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호족 연합을 통해 탄생한 고려정부는 사

무역을 기반으로 한 세력이 왕권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싹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사무역을 금지함으로써 모든 무역은 왕실이 간여하게 되었다. 해상세력으로 출발하여 건국했다는 역사적 경험의 중앙 집권화를 추구하면서, 사무역을 통해 각 지역이 독립적으로 교역을 주도하거나 이를 배경으로 지방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반면, 송나라의 경우 적극적으로 사무역을 유도하여, 상인의 대외 무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하였다. 고려가 적극적인 사무역 단속에 나서자, 송나라와 일본은 동중국해를 가로지르는 직항로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고려를 둘러싸고 송나라와 일본 삼국의 해상무역은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그 해상무역의 이권에서 고려의 상인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갔다.



## IV. 高麗前期 對外貿易과 政策<sup>1)</sup>

(이진한, 공동연구원)

머리말

1. 禮成港 貿易 繁盛論에 대한 비판
  - (1) 禮成港과 高麗의 海上貿易
  - (2) 예성항에서의 對아라비아 貿易에 대한 再檢討
2. 高麗의 海外貿易에 대한 再檢討
3. 高麗 前期의 貿易政策
  - (1) 遼·金과의 國境 地域 貿易에 대한 政策
  - (2) 海外貿易에 대한 政策

맺음말

---

1) 이 글은 2004년 11월에 열린 ‘九州大學韓國研究センタ(RCKS) 主催 國際 シンポジウム 2004’에서 발표한 ‘高麗時代 對外貿易과 禮成港’ 가운데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韓國研究センタ-年報』 5, 九州大學, 2005에 게재하였다. 본 발표에 대해九州大學의 森平雅彦 교수를 비롯한 여러 일본인 학자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며, 특히 송상의 고려 무역과 관련해서는 ‘山内晋次, 『奈良・平安期日本とアジア』, 吉川弘文館, 2003,’이란 훌륭한 업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본에서 돌아와 이 책을 구입하여 읽었는데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았다. 따라서 발표문 후반부의 송상과 고려 왕실 재정을 논한 부분은 山内氏를 비롯한 일본의 연구 성과를 검토한 뒤 별도의 논고로 삼기로 하였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森平 선생 등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 머리말

高麗와 朝鮮 두 왕조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 서 대비되는 점이 많았다. 상부구조로는 정치제도나 운영 방식이 달랐고,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가족제도 역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으며, 國家 이데올로기는 고려가 佛教였고, 朝鮮이 性理學이었다. 이처럼 두 왕조 사이에는 비교되는 점이 많았지만, 무역이나 무역정책 만큼 확연히 대조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된다. 즉, 고려는 예성향을 중심으로 활발한 대외 무역과 교류를 하는 등 개방적인 정책이었고, 조선은 중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외국과의 해상왕래를 단절하는 소위 ‘鎖國政策’을 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일찍이 식민지 시대부터 주목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日本의 韓半島 强占을 경험한 한국사 연구자들은 日帝에게 강점된 이유의 하나를 조선왕조의 폐쇄성에서 찾고 그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반면 고려의 海上貿易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어서 韓國史 概說書<sup>2)</sup> 뿐만 아니라 中高等學校 教科書에서도 비교적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sup>3)</sup> 이와 같은 서술은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둔

---

2) 그 대표적인 개설서 두 편의 서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다가 宋과 성히 무역을 하고 있던 大食(아라비아)人들의 商船까지 開京의 海上門戶인 禮成港에 출입하며 水銀·香料·藥品 등의 물자를 들여왔다. 이리하여 禮成港은 당시에 국제적인 商港으로서 번성을 극하게 되었다’(李基白, 『韓國史新論(改訂版)』, 一潮閣, 1976, 157쪽).

‘이때 예성강구의 벽란도는 송의 상인뿐만 아니라 멀리 대식국의 상인까지도 출입하는 국제항구로 성황을 이루었다’(邊太燮, 『韓國史通論(改訂版)』, 三英社, 1988, 219쪽).

3) 중학교 국사 교과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활발한 무역을 개방적인 대외 정책때문이었다고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반면 고등학교 교과서는 그보다 훨씬 절제된

것이었는데, 고려의 대표적인 항구인 禮成港에 宋・日本・大食國 등 여러 나라의 商船이 찾아와 활발하게 무역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무역이 조선시대와 견주어지면서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다. 고려의 해상 무역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조선의 그것이 침체되었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돋보였던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禮成港에서의 무역 및 고려인들의 해상 활동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재검토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이어 고려시대 변경 지역 및 해상 무역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예성항에서의 무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금지하는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고려시대 해상 무역에 대한 새롭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

서술을 하고 있다.

‘한편 고려는 대외 무역을 장려했으므로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무역을 하러 고려에 왔다. 예성강 입구의 벽란도는 당시에 국제 무역 항구로서 크게 번성하였다. 우리나라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서방 세계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도 고려 왕조의 이러한 개방적인 대외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편, 『중학교 국사』, 2002, 100쪽).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대외 무역의 발전과 함께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 한편 대식국인이라고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도 고려에 들어와서 수은, 향료, 산호 등을 팔았다. 이들을 통하여 고려의 이름이 서방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편, 『고등학교 국사』, 2002, 156~157쪽).

## 1. 禮成港 貿易 繁盛論에 대한 비판

### (1) 禮成港과 高麗의 海上貿易

해상무역이 번성했다고 알려진 고려에서 중국 등의 해외로 통하는 항구로는 禮成港, 武州의 會津·昇平, 羅州, 康州, 全州의 臨陂郡·喜安縣, 貞州, 豐州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회진·승평·나주·강주·임피·회안 등의 경우는 후삼국 시대와 고려 초에 중국을 왕래할 때 이용되었고, 정주는 의천이 宋에 갈 때 송상의 배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유일하다.<sup>4)</sup> 따라서 고려시대의 대표적이고 거의 유일한 항구는 예성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성항은 ‘禮成’이란 명칭의 유래가 宋에 조회할 때에 모두 여기에서 배를 띄웠기 때문이었다는<sup>5)</sup> 데서 알 수 있듯이, 고려의 대중국 항해의 出發點이자 回歸點이었다. 실제로 송나라 사신의 일원으로 고려에 왔던 徐兢의 기록에 의하면, 1123년(인종 1) 송의 使臣團을 실은 ‘神舫’가 정박하고 영접을 받은 곳이 예성항이었고, 그 후 宋에 갈 때 출발한 곳도 같았다.<sup>6)</sup>

예성항이 고려의 門戶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과 가깝기 때문이었다. 본래 예성강 지역은 신라의 변방이었으나 고려를 건국한 王建의 先代가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해상 무역에 종사하면서 대중국 무역 중심지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조선후기 개성지방의 邑誌인 『中京誌』에 의하면 예성강에는 碧瀾渡·錢浦·梨

4) 金澈雄, 「高麗와 宋의 海上交易路와 交易港」, 『中國史研究』 28, 2004, 119~121쪽.

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 開城府 上 山川條.

6) 『高麗圖經』 권39, 「海道」 6 禮成港.

浦・東方浦・昌陵浦・領井浦・昇天浦・祖江渡・唐頭浦 등 많은 포구와 나루가 있었고,<sup>7)</sup> 그보다 앞서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벽란도・전포・이포를 예성강의 대표적인 포구로 들고 있으며,<sup>8)</sup> 전포는 『編年通錄』을 인용한 『高麗世系』에 唐 肅宗이 下船한 곳이었다고 전해질 만큼 오래된 항구였다.<sup>9)</sup> 이와 같이 예성강에는 여러 항구와 포구가 있었지만, 고려시대 무역의 중심지였던 예성항은 벽란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고려의 王城에서 약 4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은 송의 사신을 맞이하는 碧瀾亭이 있었다고 한다.<sup>10)</sup>

고려시대 禮成港은 해외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했으나 조선시대에는 국제 항구로서의 기능은 없어지고 한양에서 개성을 거쳐 황해도 白川으로 가는 나루터로 바뀌었으며, 官員으로 종9품 渡丞이 배치되었다.<sup>11)</sup> 조선후기에 面里制가 실시되면서 開城府 西面 碧瀾里가 되었고,<sup>12)</sup> 식민지 시대에는 京畿道 開城郡 西面이 되었다. 해방 이후 38선 이남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였으나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영역이 되었다. 현재는 北韓의 開城直轄市 開豐郡에 속하며 예성강을 건너 黃海南道 白川郡을 마주하고 있다.

고려가 멸망한 뒤 국제 항구로서의 면모를 잃고 단지 강을 건너는 작은 나루로 변해버린 禮成港이 식민지 시기부터 史學者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망국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조선시대의 鎖國孤立 정책과 달리 高麗時代에는 문호를 개방하여 中國・日本・大食國 등 여러 나라와 활발히 교류하였으며, 예성항이 바로 이러한 해상 교류

7) 『中京誌』 권3, 山川條.

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 開城府 上 山川條.

9) 『高麗史』 『高麗世系』.

10) 『高麗圖經』 권39, 『海道』 6.

11) 『世宗實錄地理志』 권148, 舊都 開城留後司.

12) 『中京誌』 권2, 部坊.

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民族主義 史學者의 하나였던 安在鴻은 조선의 역사가 退嬰되어 결국은 망하기에 이른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성항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新羅의 領域이 동남에 치우쳐서 慶州가 동해안에 다가붙었으니, 東으로 日本의 各港과 西로 渤海・黃海와 支那海인 唐의 諸港灣에는 왕성하게 그 商船이 출입하였고, 惠超의 五天竺 巡歷을 최고봉으로 印度 왕래의 學僧들은 長安의 유학생과 함께 新舊가 빈번히 교대하였으니, 新羅의 聯唐政策이 民族史上 심대한 罪過로 되었으나 오히려 內剛自衛의 實을 나타내었다. 高麗의 시대가 또한 그러하여 宋과의 교통통상이 松京으로 國際都市化하였을 뿐 아니라 禮成江口에는 멀리 사라센의 交易船까지 맞이하여 인도양을 건너오는 西方의 文物에 영향된 바 많았으니 밖으로는 국제적 접촉이 그 宗國意識을 쉴 새 없이 깨우침 있고, 안으로 國風派的 公지는 그 自立魂의 警勸가 오히려 埋沒된 없어, 거꾸거꾸 닥쳐오는 침략에서 오히려 百戰抗爭의 氣魄을 드날린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漢陽朝의 鎖國孤立과 尊明自安의 政策이 얼마나 民과 國에 蠱毒되었을 것은 可謂 생각의 반이 넘는 것입니다.<sup>13)</sup>

안재홍은 쇄국고립과 존명자안의 태도를 조선 멸망의 원인으로

13) 民世安在鴻選集刊行委員會編, 『退嬰의 由來와 經緯(2)』, 『民世安在鴻選集』 1, 知識産業社, 1983, 489쪽.

그리고 이 바로 뒷부분은 ‘이와 같이 國際事情과는 전혀 담싸고 돌아앉은 色盲적인 처지에서, 中國 이외에 문명한 世界없고 朱子學 이외에 다시 學問없고 膏盲에 든 병은 자신을 因循한 속에서 스스로 빠질 수 없이 졸연 급격한 國際勢力에 다닥치매, 措手의 겨를도 없이 낭패하는 體勢가 灰色的인 覆沒의 局을 짓고 만 것이며 이 웅대한 悲劇 …’이라고 하였다(같은 책, 490쪽).

또한 民世는 이 글의 筆者後記에서 ‘新羅 高麗 兩朝 700년간 오히려 왕성하던 海外交通조차 막 끊어버리고 鎖國 孤立에서 생겨난 固陋한 宗派主義의 惡習을 집어내고, 永續적인 自滅의 길을 밟아오던 由來를 드러내었다.’라고 하였다.

들었으며, 그와 상대되는 고려는 신라에 이어 문호를 열어서 松京은 국제도시를 이루고 멀리 아라비아의 교역선이 드나들 만큼 무역이 번성하고 서방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나라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거의 같은 時期 대표적인 社會經濟史學者인 白南雲도 송나라 배가 南宋이 멸망하기까지 거의 300 여년에 걸쳐 끊임없이 개경의 관문인 예성항을 방문했다는 점을 비중 있게 서술하였다.<sup>14)</sup> 이처럼 당시에는 학문적인 경향을 불문하고 고려의 해상 활동은 긍정적으로 이해되었다.

고려의 해상 무역은 해방 이후 식민사관의 극복과 우리 민족사의 복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金庠基의 한국 古中世의 海上活動과 貿易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더욱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sup>15)</sup> 특히 그는 한국의 實證의인 研究者로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정밀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학계에서 대부분 수용되어 고려의 해상 무역이 개설서와 교과서에서 빠지지 않고 실리게 되었던 것도 그의 영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고려의 해상 무역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역사학계도 마찬가지이다.<sup>16)</sup>

그런데 고려의 해상 무역이 발달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

14) 白南雲, 『商業及商業資本』,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 改造社, 1937, 768~769쪽.

15) 김상기, 『해상의 활동과 문물의 교류』, 『국사상의 제문제』 4, 국편, 1959; 『東方史論叢』, 서울大出版部, 1974, 459~460쪽.

16)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배무이 및 항해 기술』, 『조선기술발전사(고려편)』, 1994, 118쪽.

그리고 무역사를 서술한 홍희유는 고려의 수도 개경에는 오빈관·영빈관 등 10개의 상관(商館)이 있었고, 여기에 송나라·여진·아라비아·금나라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머물며 무역을 하는 국제도시인 것처럼 서술하면서 고려 무역의 번성을 강조하였다(홍희유, 『고려시기 상업과 화폐유통의 장성』, 『조선상업사(고대·중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9, 111쪽). 그러나 이와 같은 활발한 외국 상인들의 도래는 오히려 우리 상인들의 해외 진출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었다.

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위기가 그 다음 왕조인 조선에까지 계승되지 못하므로 결국은 조선의 퇴영성만 더욱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의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국사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 부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우리 연구자들이 의도적으로 회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 (2) 예성항에서의 對아라비아 貿易에 대한 再檢討

그동안 한국사 연구자들이 고려시대 예성항 무역에 대해 주목했던 것은 멀리 아라비아 지역에 있었던 大食國의 상인이 직접 찾아왔다는 점에 있었다. 특히 고려의 무역 상대가 동아시아를 벗어나 있던 국가였다는 것은 植民主義 史觀에 의해 歪曲되고 停滯되었다는 韓國史像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므로 단순한 해상 문호 개방 차원을 넘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아라비아 상인들이 예성항에 와서 무역을 했던 것은 顯宗代와 靖宗代에 걸쳐 세 차례일 뿐 그 이후의 기록은 전혀 없다.<sup>1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고려 전시기에

17) (1024년 9월) 대식국의 悅羅慈 등 1백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高麗史』 권 5, 「世家」 현종 15년 9월)

(1025년 9월) 대식국의 夏訛羅慈 등 1백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高麗史』 권 5, 「世家」 현종 16년 9월 신사)

(1040년 6월) 대식국의 상객 保那盖 등이 와서 水銀·龍齒·占城香·沒藥·大蘇木 등을 바치니 왕이 해당 관원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을 客館에서 후하게 접대하도록 하였으며 돌아갈 때에는 금과 비단을 후히 주라'고 하였다(『高麗史』 권 6, 「世家」 정종 6년 11월 병인).

이후에는 대식국의 상인이 왔다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는데, 이것은 자료의 누락이라기보다는 실제 오지 않았던 사정의 반영일 것이다. 왜냐하면 고려에서는

걸쳐 그들과 무역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예성항은 송·일본 등의 배 뿐 아니라 멀리 아라비아의 배조차도 수없이 드나들었던 것처럼 이해하였는데<sup>18)</sup> 그 중요한 근거는 『또 누각 위에서 潮水를 보고 동료 金君에게 주다』라는 이규보의 시였다.

이 내용은 해상 무역에 대해 많은 연구를 남겼던 金庠基가 적극적으로 해석한 이후<sup>19)</sup> 북한의 상업사 저술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서술되고 있으며,<sup>20)</sup> 그 밖에 최근의 연구 성과에서도 고려 무역의 융성함을 설명하면서 이 시를 제시하고 있다.<sup>21)</sup> 하지만 그들의 주장처럼 그 詩에 아라비아 무역선이 많다는 표현이 있는지, 나아가 그것을 예성항 무역의 번성함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재고의 여지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사실 확인을 위해 그 시를 직접 검토해보자.<sup>22)</sup>

#### <또 樓閣 위에서 潮水를 보며 同僚 金君에게 주다>

潮水는 밀려왔다 밀려가고  
오고가는 배는 머리와 꼬리를 물어 서로 잇대었더라  
[來船去舶首尾銜相連].  
아침에 이 다락[樓: 누각] 밑을 떠나면

---

외국에서 무역하러 온 상인들을 마치 조공하러 온 것처럼 가장하여 왕권을 높이 고 있었으므로 대식국과 같이 먼 곳에서 온 상인을 기록에 남기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18) 고려후기에 고려에서 활동한 西域人들은 元 帝國에서 활동하다 입국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무역과는 별개의 일이다.

19) 김상기, 『앞의 글』, 461쪽.

20) 홍희유, 『앞의 글』, 84~88쪽.

21) 김한규, 『契丹과 女眞이 遼東과 中國을 統合한 시기의 韓中關係』 『한중관계사 I』, 아카넷, 1999, 423쪽.

22) 이 시의 번역은 김상기, 『앞의 글』, 461쪽과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동국이상국집』 III, 1967의 내용을 모두 참고하였다.

한 낮이 못되어 돛대는 南蠻 하늘에 이르도다.  
 사람들은 배를 가리켜 물위의 驛馬라 하니  
 나는 바람 쫓는 駿馬의 굽도 이에 비하면 오히려 더디다 하리.  
 만약 돛단배 바람 속에 달리듯 한다면  
 순식간에 蓬萊 仙境에 도달하니  
 어찌 구구하게 달팽이의 뿔과 같은 좁은 곳[蠻觸界]에서  
 작은 일로 다투겠는가<sup>23)</sup>  
 이 목도(木道: 배)를 빌리면 어느 곳이든 거슬러 이르지 못하리.<sup>24)</sup>

이 내용을 보건대, 작자인 李奎報가 禮成港의 한 누각에서 바다를 직접 보고 시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고가는 ‘배가 꼬리와 머리를 물어 서로 잇대었다.’라는 것은 예성항에 배가 많았다는 표현이며,<sup>25)</sup> ‘한 낮이 못되어 남만 하늘에 도착한다.’거나 배를 가리켜 ‘물위의 역마’라고 하는 것은 그 배가 매우 빠름을 나타낸다. 그 가운데 ‘남만 하늘’은 중국 四夷의 하나인 남쪽의 蠻族이 있는 곳 이어서, ‘바다 건너 남방의 異國’의 뜻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종합하여 고려의 배가 먼 곳까지 항해해 나갔다는 것으로 유추하였다.<sup>26)</sup> 결국 이 시에서 해상 무역의 융성함을 보여주는 요소는 배가

23) 김상기는 ‘蠻觸界’를 남만의 지경으로 해석하였다(김상기, 『앞의 글』, 461쪽). 그러나 蠻觸은 숙어로서 ‘蝸角之爭’과 같은 뜻이며, 조그마한 일로 싸우는 것을 비유한다. 그것은 뒷 연에서 배를 빌려 넓은 바다를 거슬러 가는 것과 대구된다는 점에서 그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24) 潮來復潮去 來船去舶首尾銜相連 朝發此樓底 未午棹入南蠻天 人言舟是水上驛 我導道追風駿足較此猶遲延 若使孤帆一似風中去 倏忽想倒蓬萊仙 何況區區蠻觸界 假此木道何處不洞沿(『東國李相國集』 권16, 「又樓上觀潮贈同寮金君詩-予以公事往來數月」).

25) 예성강 주변에 배가 매우 많았다는 점은 1088년(선종 5) 5월 갑술일 밤에 ‘비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海水가 범람하여 강가에 살던 집과 배들이 떠내려갔으며 물에 빠진 사람과 전복되고 파괴된 배들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는데 禮成江이 더욱 심하였다.’는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高麗史』 권53, 「五行志」 1 水 宣宗 5년 5월 갑술).

많다는 것과 그 배가 남만에 간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확대 해석되어 남만에 가는 배가 많으니 아라비아와의 해상 무역이 성했음을 알려준다는 것이 되었다.

하지만 이 시를 정밀하게 해석하면 그와 같이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점이 적지 않다. 먼저 ‘아침에 이 다락[樓] 밑—예성항—을 떠나면 오시(午時: 11시~13시)가 못되어 중국 남쪽 바다인 남만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빠른 배가 있을 수 있었는지의 여부이다. 물론 시라는 특성상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기도 하겠지만,<sup>27)</sup> 지나치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남만이 중국 남방의 먼 나라라고 하면 그 배는 遠洋을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컸을 것인데, 孤舟와 같은 뜻의 孤帆—돛단배—으로 표현되어 있다.

설령 남만을 항해할 배라고 하더라도 그런 배가 꼬리를 잇대어 있을 만큼 고려의 해운이 발달하지는 않았으며, 이규보가 이 시를 짓던 시기인 최씨 정권기에 예성항을 드나들던 무역선도 적었다.<sup>28)</sup> 이 무렵 宋의 明州 지방의 기록에서는, 고려가 강화로 천도했을 때 고려를 왕래하는 宋나라 상선의 운영 방식은 乙番 3척이 고려에 도착하면 이미 와 있던 甲番 3척이 무역을 마치고 되돌아왔고 丙丁의 방식도 같았으며, 배의 규모는 약 2~300명이 탈 수 있었다고 한다.<sup>29)</sup>

26) 김상기, 『앞의 글』, 461쪽.

27) 김상기, 『앞의 글』, 461쪽.

28) 『高麗史』 등의 여러 자료에 의하면 1012년(현종 3)에서 1278년(충렬왕 4)에 이르기까지 고려에 온 송상은 모두 120회로, 평균 2.21년에 한 번 꼴이었으며, 이 규보의 활동 시기였던 회종에서 고종 연간에는 세 차례에 불과하다(김상기, 『앞의 글』, 447~454쪽). 다만, 무신정권기의 송상 도래 자료는 매우 부정확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29) 今高麗雖臣屬於韃 然每有畏韃賊之心遷都海島 防其侵犯 … 常有販高麗者 大率甲番三隻到麗國 必乙番三隻回歸 丙丁亦如之 今慶元人見有在彼國仕宦者 卻緣此等船隻 皆屬朝廷分司 制司不可得而察其往來之迹 此間之舟一隻 可以載二三百人 萬一彼有異之 併吾甲乙兩番之舟 並行拘奪 以渡韃賊 則亦意外之過慮也(『許國公奏議』(宋·吳潛) 권3 「奏曉諭海寇復爲良民及海關防海道事宜」).

송의 상선이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고려에 왔던 정황은 1058년 8월에 문종이 耽羅와 靈巖에서 목재를 구하여 큰 배를 만들고 장차 송과 통하려 하자 內史門下省이 반대하면서 ‘상선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고 날마다 귀중한 보배가 들어오고 있으니[商舶絡驛不絕 珍寶日至] 중국에서는 실로 도움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라는 주장에서도<sup>30)</sup> 알 수 있다. 상선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송나라 상선의 운영이番禺을 나누어 다음 차례의 상선이 예성항에 도착하면 이미 와 있던 배는 宋으로 귀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할 뿐 배의 수가 많았다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靖宗代 이후 아라비아 상인이 왔다는 기록이 없었으므로 이 무렵 예성항을 드나들던 배는 송의 商船과 간헐적으로 오던 일본의 배 뿐이었다. 따라서 송의 상선은 대략 3척 정도가 항상 예성항에 머물렀으며 일시적으로 다음 차례의 배가 와서 甲乙이나 丙丁 순번의 배가 동시에 정박한 경우에만 6척 정도가 된다. 여기에 泉州 등 明州 이외의 中國 상선이나 日本의 배가 왔다고 해도 무역선이 ‘머리와 꼬리를 잇대어 가는’ 상황은 있을 수 없었다.

이와 더불어 ‘南蠻’이란 용어가 중국 남쪽이나 나아가 아라비아 지역과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고려 俗樂 『風入松』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外國이 직접 찾아와 모두 歸依함에, 四境이 편안하고 깨끗하여 무기를 버리니 … 四海가 昇平하고 有德하여 모두 堯임금 때 보다 낫도다. 邊廷에 아무 일도 없어 장군의 寶劍은 휘두를 일 없네. 南蠻과 北狄이 스스로 來朝하여 백가지 寶를 우리 天子 섬돌 아래 드리네’ 라고 되어 있는데,<sup>31)</sup> 여기서 南蠻과 北狄은 고려에 土產物을 進獻하는 등 하위에 있거나 그렇게 될 집단이나

30) 『高麗史』 권8, 『世家』 文宗 12년 8월 乙巳.

31) 『高麗史』 권71, 『樂志』 2 俗樂 風入松.

민족이고, 외국은 그보다 높은 격으로 대우되는 국가일 것이다.<sup>32)</sup>

그렇다면 北狄는 遼가 멸망되기 전인 1120년경까지 고려에 와서 朝貢 형식의 교역을 하던 여진이었을 것이다.<sup>33)</sup> 그에 반해 남만은 고려 남쪽에 있으면서 교류했던 어떤 집단을 의미하며, ‘四海가 昇平하다.’거나 邊廷에 아무 일도 없어 장군의 보검이 휘두를 일이 없다.’고 했으므로 묘사된 시기가 거란과의 전쟁이 있었던 현종대는 아니었다.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예성향을 찾았던 大食國은 남만이 될 수 없다.

지리적 위치로 보건대, 남만은 고려의 남쪽에 있었던 일본이나 탐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속악에서 표현된 비슷한 형식의 일들을 『仲冬八關會의 의례』에서 동서번과 탐라가 행하고 있었다. 즉, 宋商과 동서번·탐라국은 팔관회에 방물을 바치고 자리에 앉아 의례를 관람하는 것을 常例로 삼았다고 한다.<sup>34)</sup> 그들은 팔관회에 참여하여 宋의 綱首 다음 차례로 東西番과 탐라가 동시에 축하하고 공물을 바쳤다.<sup>35)</sup> 이 때 동서번은 동서여진을 의미하므로 북적에 해당되고, 탐라는 남만이 될 것이다. 탐라는 고려 태조대부터 고려에 복속하여 조공을 바쳤고,<sup>36)</sup> 宋商도 고려에서 무역하기 위하여 왕에게 여러 가지 물품을 바치는 私獻을 하였기 때문에,<sup>37)</sup> 宋商·女眞·耽羅와 고려의 전통적인 관계를 팔관회 의식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 국왕

32) 盧明鎬, 『高麗時代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1999, 10쪽.

33) 盧明鎬, 『東明王篇과 李奎報의 多元的 天下觀』, 『震檀學報』 83, 1997, 306쪽.

34) 『高麗史』 권6, 『世家』 靖宗 卽位年 11월 庚子.

35) 『高麗史』 권69, 『禮志』 11 仲冬八關會儀.

36) 고려와 탐라의 조공 및 책봉 형식의 교류는 고려 초부터 시작되어 숙종 10년에 탐라가 독립적인 지위를 잃고 고려의 耽羅郡으로 편입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탐라와 고려의 교류는 해마다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졌다. 현종대에는 왕의 生日인 7월과 重陽節을 축하하기 위해 6~9월에 많이 왔으며, 그 이후는 八關會와 燃燈會가 각각 열리는 11월과 2월에 집중되었다고 한다(김창현, 『高麗의 耽羅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韓國史學報』 5, 1998, 311~317쪽).

37) 森克己, 『日・宋の高麗との私獻貿易』, 『朝鮮學報』 14, 1959.

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던 것이다.<sup>38)</sup>

이런 점에서 고려와의 朝貢關係도 성립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정식 외교조차도 없었으며, 고려에 찾아온 횡수도 그다지 많지 않았던 일본보다는 탐라가 남만에 더욱 적합한 대상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고려 俗樂 『風入頌』에서의 남만은 탐라였으며, 이규보 시의 ‘(배가) 아침에 이 다락 밑을 떠나서 한 낮이 못되어 돛대는 南蠻 하늘에 이르도다.’라는 표현에서 ‘南蠻’ 역시 아라비아보다는 탐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다음으로 이규보가 시에서 읊었던 누의 아래를 떠나던 배의 정체를 생각해보자. 그 해결의 실마리는 이규보가 예성항에 왜 갔는지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이 시는 그가 ‘公務로 예성항에 갔다가 지은 것이지만,<sup>39)</sup>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찍이 이규보가 千牛衛叅軍事로서 漕運船을 맡아 예성항에 있었다는 점이<sup>40)</sup> 주목된다. 그 시기는 1212년(강종 1) 정월에서 6월까지로<sup>41)</sup>

38) 奥村周司, 『高麗における八關會的秩序と國際環境』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1979.

그 밖에 八關會의 참가를 비롯하여 宋商이 고려에서 수행했던 여러 가지 活動은 山内晋次, 『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商と國家—10~13世紀を中心とする覺書一』 『歴史學研究』 681, 1999; 『奈良平安期の日本とアジア』, 吉川弘文館, 2003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39) 『東國李相國集』 권16, 『又樓上觀潮贈同寮金君詩-予以公事往來數月』

40) 『東國李相國集』 권13 『禮成江上偶吟二首-予以千牛叅軍課漕船』,  
竹繞清江課漕船 篙工羅拜白沙邊 海軍擁後猶吹角 鷗鷺驚飛不自前  
江鷺飛時吟正快 海潮來後語還雄 偶然傳寫江湖景 錯認年來壯物工  
이 시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동국이상국집』 II, 1968, 227~228쪽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대나무가 둘러싸인 맑은 강가에서 조운선을 맡으니  
백사장가에서 사공들이 죽 늘어서서 절하네.  
수군들이 뒤를 옹위하여 화각소리 요란하니  
갈매기들이 놀라 내 앞에 오지 못하네.

조운이 이루어지던 2월에서 5월까지와<sup>42)</sup> 거의 일치한다. 그는 바다와 관련된 해군을 포함하는 千牛衛錄事參軍事로서 開京에서 禮成港에 파견되어 조운선을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런 상황을 참고할 때 그의 ‘공무’는 조운선의 감독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예성항구와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이규보는 『을유년 大倉泥庫의 上樑文』에서 곡식을 싣고 배가 오가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배가 많음을 나타내는 상당히 유사한 것이 있었다. 즉 ‘우리 國家는 萬世의 都邑을 정하고 四方의 貢稅를 받는다. 먹을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천 칸이나 되는 곳집[庫]을 지어 여기에 저장하게 되었다. (조세로 거둔 곡식을) 수로로 옮겨서 해안에 정박하는 것이 배의 꼬리를 서로 물었다[水轉而泊岸者舟尾相銜]<sup>43)</sup>고 하였던 것이다. 그에 비해 예성강에서 읊은 시에 서는 ‘오고가는 배는 머리와 꼬리를 서로 물어 잇대었더라[來船去舶首尾銜相連]’고 하였다.

후자의 묘사가 조금 더 자세하고, 하나는 항구에 배를 대는 것이고 다른 것은 오고 가는 것이었다는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배가 많았다는 것은 양자가 같다. 그런데 예성강에서 읊은 시의 배도 조운선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 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려의 11개 해창에는 稅穀을 나르는 哨馬船이 각각 6척씩이 있었

---

해오라기 날아갈 때 시 읊는 운치 상쾌하고  
조수 들어오자 말하는 소리도 웅장하다  
우연히 강호의 경치를 그려내니  
근래에 글짓는 솜씨 늘었는가봐.

41) 『東國李相國集』 「年譜」, 壬申年.

42) 고려에서는 각 州郡의 조세를 일단 추수 후 일시적으로 여러 창고에 수송하였다가 그 다음해 2월부터 조운을 시작하여 가까운 곳은 4월, 먼 곳은 5월까지 京倉으로 수송하도록 하였다(『高麗史』 권79, 「食貨志」 2 漕運).

43) 『東國李相國全集』 권19, 上樑文 「乙酉年大倉泥庫上樑文」.

으며,<sup>44)</sup> 보통 한 척이 4차례 정도 航運했다고 한다.<sup>45)</sup> 조운의 시기에 각 지역에 출발한 배가 거의 동시에 예성항에 도착하면 시적인 표현으로 충분히 배의 꼬리와 머리가 잇대었다고 읊을 수 있다.

그리고 ‘바다 위의 역마’라는 표현도 육지에서 운영되는 공적 교통·통신 수단인 역마와 비견되는 바다에서의 공적 운송 수단으로서의 조운선과 어울린다. 아울러 ‘아침에 떠나 午時가 되기 전에 남만에 도착한다.’는 것도 예성항에 세곡을 내리고 다시 남쪽으로 되돌아가는 배를 표현한 것이었다.

또한 ‘이 木道를 빌리면 어느 곳이든 거슬러 이르지 못하리’<sup>46)</sup>에서 ‘거슬러 이르다[洄沿]’는 것도 연안이나 강을 운행하는 조운선이나 작은 어선과 적합하며, 蠻觸界를 남만의 지경이라고 한 해석도 달팽이의 뿔과 같은 좁은 곳[蠻觸界]이라고 해야 더욱 적당한 것 같다. 결국 남만으로 가는 배는 무역선이라기보다는 조운선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반면에 이규보가 예성강의 누각에서 읊은 다른 시에서는 ‘백사장 머리에 뿔뿔이 모인 배들이 썰물을 만나 떠나는 것을 표현하면서, 누각 위에 있는 자신과 배 위에 있는 고기잡이 늙은 이[漁叟]를 대비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백사장의 많은 배들이 고기잡이에 이용되는 것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sup>47)</sup> 이 역시 무역선과는

44) 『高麗史』 권79, 「食貨志」 2 漕運.

45) 崔完基, 「漕運과 漕倉」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1993, 407~408쪽

46) 潮來復潮去 來船去舶首尾銜相連 朝發此樓底 未午棹入南灣天 人言舟是水上驛 我導道追風駿足較此猶遷延 若使孤帆一似風中去 倏忽想倒蓬萊仙 何況區區蠻觸界 假此木道何處不洄沿(『東國李相國集』 권16, 「又樓上觀潮贈同寮金君詩-予以公事往來數月」)

47) 백사장 머리에 뿔뿔이 모인 배  
썰물에 모두 떠나는구나  
바다에 뜬 나그네는 풍랑을 시름겨워하지만  
바라보기엔 한가히 노는 듯하니 어찌하라

무관하다.

이상에서 이규보 시의 ‘만죽계로 가는 배’는 해외로 떠나는 무역선이 아니었음을 논증하고, 그것은 조운선이거나 어선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아마 전자였을 것이다. 어쨌든 이 시를 근거로 고려의 해상 활동이 활발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나친 해석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당시 고려의 형편상 무역하러 항구를 떠나 바다로 나가는 배가 머리와 꼬리를 잇대어있을 수 없었으며, 예성항에서 조운선을 감독했던 이규보가 멀리 해외로 나가는 배를 구별하지 못했을 리도 없기 때문이다. 고려전기의 예성항은 정기적으로 송의 상선이 드나들던 것 이외에 시기에 따라 일본, 아라비아 등도 찾아와 무역을 한 개방된 항구였으나, 언제나 외국의 선박이 꼬리를 잇대어 오가는 곳은 아니었다.

## 2. 高麗의 海外貿易에 대한 再檢討

이제까지의 고려시대 해상무역의 연구에서 고려에 찾아오는 상선들에 대한 과장된 평가를 한 것처럼 고려인들이 배를 타고 해외에 나가는 무역에서도 그러한 점이 엿보인다. 즉, 고려 상인들의 대외

---

고기잡는 늙은이 노를 멈추고 자주 돌아보는구나  
물노니 그대는 무슨 일로 머무는가  
배에서는 樓의 낙을 부러워하지만  
樓에 있는 사람은 도리어 너의 놀이를 부러워하노라  
才看畫鷁簇沙頭 趁得廻潮摠不留 海客自愁風浪苦 望中無奈似閑遊  
漁叟停橈屢轉頭 問渠何事故成留 舟中應羨樓中樂 樓上人還羨爾遊  
(『東國李相國集』 권16, 「禮成江樓上次板上諸公韻」).

무역이 활발했다는 점은 김상기의 해상활동에 관한 글 이후 아무런 의심이 없이 받아들여졌는데, 그 근거의 하나는 송대에 고려의 海船이 자주 明州·登州에 표착했다는 기사가 『宋史』 『高麗傳』에 실려 있다는 것이다.<sup>48)</sup> 明州와 登州는 고려와의 교통 및 무역에 있어 중요한 항구로서 唐代로부터 고려의 상선이 자주 출입하던 곳이었므로 그곳에 자주 漂着했다는 고려의 선박은 상선으로 해석되며 宋에서는 東南沿岸의 중요한 항구에 市舶司를 두어 징세와 海舶에 대한 檢察이 엄하였던 관계로 양국 민간 사이에는 密貿易이 성했다고 한다.<sup>49)</sup>

또한 1170년(의종 24) 금의 30만 군대가 남하하여 역대 帝王의 陵寢을 발굴하여 옮기려한다는 첩보가 있어 송나라 전체가 흥흥할 때 海舶 수백 척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결국은 고려 상인의 배가 표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기록도 있는데,<sup>50)</sup> 이것은 고려 상인들이 수십척의 선단을 이끌고 송과 무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한다.<sup>51)</sup>

그러나 고려인의 표착을 직접적으로 무역과 연관시키기는 어렵다. 우선 『宋史』 高麗傳에 표류해온 고려 사람들을 돌려보낸 기사 가운데 그들이 상인이었다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했다면 적어도 한두 기록에서는 그것을 밝혔을 것이다. 아울러 이들

48) 등주·명주 이외에도 台州·溫州·福建 등의 지역에 고려인들의 漂着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송 정부는 이들의 구출에 노력하기도 했다고 한다(張東翼, 「高麗·宋의 文物 交流에 관한 記事」, 『宋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출판부, 2000, 427쪽).

49) 김상기, 「앞의 글」, 459~460쪽.

50) 一日 有報國門外 海舶數百艘將及岸者 中外恍駭 上召問公 公對當是外夷賈舟風飄至此 果高麗賈胡也 上志克復(『誠齋集』(宋·楊萬里) 권120, 「宋故左丞相節度使雍國公 … 虞公(允文)神道碑」).

51) 張東翼, 「앞의 글」, 348~347쪽. 그러나 씨가 지척한 바처럼 수백 척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과장이며, 도착한 정확한 지점이나 보고한 관원도 없어 자료의 신빙성이 의문된다. 당시 宋의 백성들이 금에 대한 공포심으로 공황상태에 있었을 때, 우운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음을 알리기 위해 삽입되었을 것이다.

이 표착한 배를 밀무역을 위한 상선이었다고 했는데, 밀무역을 위한 배가 등주나 명주로 가다가 그곳에 표착하기 위해서는 거의 다 간 상태에서 표류해야 한다. 왜냐하면 서해를 가로 질러가던 중에 풍랑을 만났다면 서쪽 방향이 아닌 훨씬 남쪽이나 북쪽의 엉뚱한 곳으로 표류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표착의 사례는 고려 상인의 활동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설령 그것을 상선이라고 해도, 밀무역이라고 했으므로 고려나 宋 政府의 공식적인 허가를 얻지 못했으니 고려의 대외무역을 활발했다는 주장과 잘 맞는 것은 아니다.<sup>52)</sup>

물론 고려 상선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남송 말경에 이르러 明州 지방에서는 다른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1/15을 入口稅로 징수했지만 고려의 상선에 대해서는 1/19을 세율로 하였다는 기사가 있기 때문이다.<sup>53)</sup> 이는 당시 명주가 고려와의 교통 무역에 중심적인 항구였던 만큼 출입이 빈번하던 고려 상선에 대하여 특혜조례를 베풀었던 것이라고 한다.<sup>54)</sup>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고려의 배가 명주에 드나들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시기가 寶慶 연간(1225~1227)이어서 武臣亂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였으므로 고려 전시기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와 설명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 기사의 앞부분에는 고려의 무역선이 많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 즉 ‘무릇 중국의 상인과 고려와 일본 및 여러 藩人으로 중국에 이르는 자는 오직 慶元府—明州—를 통해서만 오고 갈 수

52) 한편 ‘일본국이 우리나라의 풍랑으로 표류한 상인 安光 등 44인을 돌려보냈다.’(『高麗史』 권9 『世家』 文宗 33년 9월)는 기사도 고려의 해상 활동이 활발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단순히 배를 타고 가던 상인 안광이 표류한 것인지, 아니면 안광이 배를 타고 무역을 하러 가다가 표류하게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채, 다만 안광이 상인이었다는 사실만 확인된다.

53) 『寶慶四明志』(宋·羅濬等) 권6.

54) 김상기, 『앞의 글』, 460쪽.

있었는데, 1227년에 稅率을 정하여 細色은 1/5로 하였고 組色은 1/7.5로 하였으나 후에 舶商이 오지 않아 戶部에 더욱 혜택을 베풀도록 하여 세색과 조색을 구분하지 않고 고려·일본선에 대해 1/19을 거두고 그 나머지 船客은 1/15을 거두게 했다.’는 것이다.<sup>55)</sup> 고려의 선박에 대한 세율을 1/19로 낮추었던 까닭이 고려나 일본 상인들의 배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당시 고려에서 宋의 명주로 향하던 무역선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sup>56)</sup>

그러나 무역을 위해 중국을 오가던 고려 상인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 고려초 중국을 왕래하는 무역을 했다는 것은 崔承老의 상서문에서도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태조는 뜻[情]을 사대하는데 오로지 하였음에도 오히려 몇 해에 한 번 行李를 보내 報聘의 예를 닦았을 뿐입니다. 지금은 비단 交聘의 사절과 무역으로 인한 使价가 많으니 중국에서 賤하게 여기는 바가 될까 두렵습니다. 또한 왕래 때문에 배가 부서져 죽는 자가 많습니다. 바라건대 지금부터 交聘의 사절에게 무역을 겸하여 행하게 하고 그 나머지 제 때가 아닌 매매[非時賣買]는 하나같이 모두 금하십시오.<sup>57)</sup>

55) 『寶慶四明志』(宋·羅瀾等) 권6.

56) 그밖에 송의 법에서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대상으로서 고려의 상인이 언급되었던 것이 있다(張東翼, 『高麗·宋의 政治·外交에 관한 記事』, 『앞의 책』, 서울대출판부, 2000, 175쪽. 예를 들어 兩浙市舶司에서 고려 상인들이 銅器를 판매할 때 세를 거두어들일 것을 요청한 것(『建炎以來繫年要錄』(宋·李心傳) 권183, 紹興二十有九年 秋7月 戊午)이나 1199년 5월에 고려 상인이 銅錢을 구매하여 가지 못하도록 한 조치(『兩朝綱目備要』 권5, 寧宗 慶元 5년 7월 甲寅)가 있다. 여기서 賈人이나 商旅는 중국을 왕래하는 고려의 상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반대로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러한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한 예비적인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57) 『高麗史』 권93, 崔承老傳.

성종대 최승로의 건의는 그 이전에 외교 사절 뿐 아니라 무역을 하기 위한 사절이 많았다고 하면서 후자를 문제 삼았다. 이들을 ‘使价’라고 했다는 것으로 보아 고려의 허가를 받고 중국에 가서 무역을 하던 자들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934년 7월에 고려의 배 1척이 登州에 도착하여 管押將 盧昕 이하 70인이 州에 들어와 무역하였다는 것과, 10월에 고려에서 靑州에 사람을 보내 市易했다는 기록과 거의 일치한다.<sup>58)</sup> 왜냐하면 管押將이라는 것은 배를 거느리고 온 사람이 고려의 官人的인 성격이었음을 알려주며, ‘遣人’이라는 표현도 고려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했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승로는 이들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천하게 여기는 바가 되고 배의 난파로 인한 인명 손실이 적지 않음을 들어 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교빙의 사절로 하여금 무역을 겸하게 하고, 외교적 명분없이<sup>59)</sup> 무역만을 위해 가는 것은 없애자고 하였다.<sup>60)</sup> 이 내용을 보건대, 최승로의 건의가 받아들여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 태조대 이후 성종 초에 이르기까지 고려에서 고려의 허가를 받고 중국과 무역을 하는 배가 적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이처럼 고려 초 대외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인지, 대중국 무역을 수행했던 무역 상인으로 高麗 舶主 王大世와<sup>61)</sup> 더불어 포괄적이지만

58) 7월 登州言 高麗船一艘至岸 管押將盧昕而下七十人 入州貿易 十月 靑州言 高麗遣人 市易(『冊府元龜』 권999, 外臣部 互市 後唐 末帝 靑泰(太) 元年).

59) 非時를 백남운은 수시로 해석하였으나 내용을 보면 그것은 외교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때를 의미하므로 ‘외교적 명분 없이’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60) 白南雲, 『商業及商業資本』,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 改造社, 1937, 763쪽.

61) 高麗舶主王大世選沈水近千片 疊爲旖旎山 像衡岳七十二峰(『清異錄』(宋·陶谷) 권61 『說郭』)

張東翼은王大世에 대해서는 國籍 및 人的 事項을 알 수 없으나 그가 高麗舶主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고려 상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張東翼, 『高麗·五代 王朝에 관한 記事』, 『앞의 책』, 서울대출판부, 2000, 89쪽).

중국에 갔던 것이 분명한 고려의 舶人으로 판매하기 위해 이른 자,<sup>62)</sup> 고려 船人<sup>63)</sup> 등도 확인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중국에 갔던 고려의 무역상이나 무역선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고려 상인들의 이름을 중국의 문헌에 거의 기록을 남기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활동이 매우 부진했다는 것과 관련되었다고 생각된다.<sup>64)</sup>

그런 점에서 고려의 해상 활동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65)</sup> 무엇보다도 고려 해상들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은 당시 宋商이 서해 무역을 활발히 하던 시기에 고려의 해상들이 그들과 경쟁하며 충분히 實利를 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송에서는 한때 고려와 私貿易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그것을 근절할 수 없게 되자, 1079년부터 고려에 드나들던 상인 가운데 財本이 5천緡 이상인 자를 明州로 하여금 그 성명을 등록하게 하였고, 해마다 허가를 받은 2척씩 출발하여 고려에 가서 교역하되 금하는 물품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해 즉시 돌아오게 하였으며, 허가 없이 간 자들은 盜販法에 의거하도록 하였다.<sup>66)</sup>

62) 高麗善染采 紅紫尤妙 紫草大梗如牡丹 搗汁染帛 高麗人多織席 有龍須席 藤席 今舶人販至者 皆席草織之(『鷄林志』).

63) 또한 일본측 자료에서 중국에 있던 高麗船人이 나타난다.

天晴 陳詠來 與上紙三帖了 高麗船人來 告知日本言語 惟觀・心賢・善久 笠・直五十文錢與之(『參天台五臺山記』(日本・成尋) 권1, 年久 4년 4월 23일).

이 자료는 成尋이 탄 송 상인의 배가 항주 부근의 바다에 정박해 있을 때, 고려 선인으로 표현된 고려인들이 찾아와 성심의 일행과 접촉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들은 송에 진출한 상인으로 추측되며, 일본어를 알고 있다는 점을 보아 중국 및 일본 지역을 오가면서 국제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던 인물로 추측된다(張東翼, 『日本 古中世 高麗資料研究』, 서울대출판부, 2004, 190쪽).

64) 森克己, 「앞의 글」, 554~555쪽

65) 震檀學會編, 「제3회 環黃海 韓中交涉史研究 심포지움—高麗時代 韓中交涉史의 諸樣相」, 『震檀學報』 71・72합, 1991, 400~401쪽. 高柄翊의 발표에 대한 洪承基의 질문.

66) 詔舊明州括索自來入高麗商人財本及五天緡以上者 令明州籍其姓名 召保識 歲許出引發船二隻 往交易 非違禁物 仍次年卽回 其發無引船者 依盜販法 先是 禁私

그리고 1059년에 문종이 耽羅와 靈岩의 巨木들을 伐採하여 큰 배를 만들고자 했던 것을 통해<sup>67)</sup> 당시 고려에는 항해를 건너는 遠洋船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고려는 항해술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고 해외통교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해협을 운항할 정도의 선박에 대한 신속하고 착실한 건조 능력은 갖고 있었다.<sup>68)</sup>

對蒙抗爭 時期 고려의 造船術과 航運 능력에 대해 宋의 吳潛은 ‘高麗는 배를 만들 만한 松杉木이 없고 雜木만이 있으며 釘鐵마저 없으니 다만 그 나라 경계에 가까운 곳만을 왕래하며 매매할 뿐이지 능히 큰 바다를 멀리 넘나들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sup>69)</sup> 그것이 정확한 견문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처럼 고려의 기술을 평가절하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송을 왕래하는 고려의 무역선이 많지 않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송의 상선들은 상인들의 재력이 일정 규모 이상이었으며 왕래도 어느 정도 정기적이었다. 11세기말 僧統 義天은 송에 유학했다가 귀국한 뒤에도 송의 승려 淨源과 서신 왕래를 한 것이 매우 많아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그 밖에도 佛教典籍을 보내고 그가 있던 사찰인 慧因院에 경제적 후원을 하였다. 바다로 격해 있던 양국의 승려가 수많은 서신을 주고받으며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徐戡·徐成·李元積 등의 宋商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며,

---

販高麗者 然不能絕 至是 復與中國通 故立是法(『續資治通鑑長編』 권296, 神宗元豐 2년 春正月 丙子).

67) 『高麗史』 권8, 『世家』 文宗 12년 8월 을사.

68) 高柄翊, 『麗代 東아시아의 海上交通』, 『震檀學報』 71·72합, 1991, 302~303쪽. 그는 서궁이 고려의 선박들이 별로 대수로울 것 없음을 놀라워했음을(『高麗圖經』 권33 舟楫) 지적하고 있다. 다만 고려의 선박 건조 기술 자체는 훌륭하여 麗·蒙 聯合軍의 일본 원정 때 명성을 떨쳤다고 한다.

69) 『許國公奏議』(宋·吳潛) 『奏曉諭海寇復爲良民及海關防海道事宜』.

전적이나 경제적 후원금들은 그들의 배편을 이용하였던 것이다.<sup>70)</sup> 그리고 무신정권기에도 고려와 송은 양국의 현안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신을 파견하지 않은 채 송상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sup>71)</sup>

요컨대, 송에 가서 무역을 한 고려의 상인이 고려 초에 있을 뿐 그 이후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송의 상선이 활발하게 고려를 왕래하며 무역하는 가운데 고려의 무역 상인들이 독자적인 선단을 운영하며 그들과 경쟁하여 수익을 거두기는 매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려의 해외 활동과 해상 무역이 활발했다는 견해는 조선시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지나친 의미 부여는 삼가는 것이 옳다.

### 3. 高麗 前期의 貿易政策

이상에서 고려의 해상 무역은 대외 진출보다는 외국의 상인들이 고려를 찾아와 무역하는 것에 훨씬 큰 비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역에 대한 고려의 정책은 그러한 사실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혹은 모순되었는지 살펴보겠다. 다만 요·금과의 무역은 국경무역이었고, 송과의 그것은 해상 무역이었으므로 구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70) 崔柄憲, 「大覺國師 義天의 渡宋活動과 高麗·宋의 佛教政策」, 『震檀學報』 71·72合, 1991, 368~370쪽.

71) 張東翼, 「高麗·宋의 政治·外交에 관한 記事」, 『앞의 책』, 291쪽

## (1) 遼・金과의 國境 地域 貿易에 대한 政策

고려와 遼의 무역이란 측면에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요의 각장 설치 문제이다. 각장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양국의 백성들이 필요한 물품을 교역하는 互市場이다.<sup>72)</sup> 1005년(목종 8)에 요는 국경 지역 振武軍과 保州에 각장을 설치하였으나<sup>73)</sup> 1010년(현종 1)에 요의 침입으로 폐쇄하였다가<sup>74)</sup> 1014년 遼가 保州와 靜州를 취하고 각장을 설치하였지만<sup>75)</sup> 이것도 遼의 3차 침입으로 기능을 상실하였을 것이다.<sup>76)</sup>

그 뒤 1086년(선종 3)에 압록강변의 보주에 각장을 설치하려 하자 고려는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그 부당함을 지적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골자는 994년에 요와 고려가 맺은 협정에서 保州를 고려의 영토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곳에 각장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sup>77)</sup> 왜냐하면 고려의 입장에서 그 동안 영토 분쟁이 되어 왔던 보주에 각장이 서고 그곳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요의 영토임을 승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sup>78)</sup> 이러한 이유에서 고려는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마침내 고려에서 여러 명의 사신을 보내 집요하게 遼의 當局者를 설득한 결과 사태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난 1088년에 각장의 설치를 포기하겠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아내기에 이르렀다.<sup>79)</sup>

72) 고려시대 각장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이미지, 『高麗 宣宗代 榷場 문제와 對遼 관계』 『韓國史學報』 14, 2003, 78~84쪽.

73) 『遼史』 권60, 『食貨志』 下 統和 23년.

74) 丸龜金作, 『高麗と契丹・女眞との貿易關係』 『歷史學研究』 5-2, 1937, 64~65쪽.

75) 『遼史』 권38, 『地理志』 2 東京道 保州 宣義軍.

76) 이미지, 『앞의 글』, 96~97쪽.

77) 『高麗史』 권10, 『世家』 宣宗 5년 9월.

78) 이미지, 『앞의 글』, 92~94쪽.

79) 『高麗史』 권10, 『世家』 선종 5년 11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를 바탕으로 각장이 설치되어 기능했다고 그대로 믿어버리는<sup>80)</sup> 점이다. 더 나아가 고려가 각장의 설치를 반대한 것은 교역의 주도권을 지키려했기 때문이라거나,<sup>81)</sup> 각장의 설치로 인해 고려와 여진의 무역이 막히는 정치·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철폐했다는<sup>82)</sup> 설명을 하기도 한다. 내용의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모두 각장이 호시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견해이다.

각장이 국가 간의 호시장으로서 遼의 국경에 설치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호시는 말 그대로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遼에서 아무리 대규모의 각장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고려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역에 응하지 않으면 전혀 기능할 수 없다.<sup>83)</sup> 또한 현실적인 원인으로 고려의 입장에서 경제·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요와의 무역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sup>84)</sup> 요에서 3차례나 각장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하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sup>85)</sup>

고려가 변방에서의 사적인 무역을 허락하지 않았음은 다음의 기

80) 丸龜金作, 「앞의 글」.

이정희, 『高麗前期 對遼貿易』 『지역과 역사』 4, 1997, 18~19쪽.

81) 이미지, 「앞의 글」.

82) 金在滿, 「契丹絲考—東西 間接交易과 直接交易의 形態(下)」, 『歷史教育』 8, 1964, 148~149쪽.

83) 박한남은 각장을 이유삼아 거란인들이 자주 왕래함으로써 압록강 지역을 농토화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고려의 영토는 실질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각장의 설치를 반대한 것도 또다른 이유라고 하였다(朴漢男, 「12세기 麗金貿易에 대한 검토」, 『大東文化研究』 31, 1996, 112~113쪽).

84) 홍희유, 「앞의 글」, 106쪽

85) 박한남은 고려가 각장의 설치를 반대한 것은 강동 6주 문제로 수차례의 침입을 경험한 고려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과 고려의 대외무역은 송과의 경제 교류에서 상당한 부분 채워졌기 때문에 거란과의 각장 무역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朴漢男, 『高麗의 對金外交政策 研究』, 成均館大 博士學位論文, 1993, 14~42쪽).

사를 통해 확인된다. 1108년(예종 3)에 여진의 공격을 받아 포위되고 식량이 떨어진 요의 장수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신들의 재화와 고려의 쌀을 바꾸자고 했을 때 변방의 수령이 백성이 서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sup>86)</sup> 그리고 고려에서는 都兵馬錄事 邵億을 파견하여 쌀 1,000 석을 보냈으나 來遠城의 統軍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고 한다.<sup>87)</sup>

두 기사가 연관이 된 것은 분명한데, 변방의 수령은 요의 다급한 사정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매매를 금지하였고, 대신 정부에서는 무상으로 쌀 1,000석을 보내고 있다. 이것은 차라리 많은 이익을 포기하고 무상으로 원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 개인들에게 국경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고려의 전통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고려에서 이러한 정책을 견지하는 한, 요에서 각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고려와 요 사이의 각장 문제는 영토 분쟁의 측면과 더불어 무역의 측면에서 변경 무역의 금지 원칙을 지키려는 고려의 입장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변경에서의 국경 무역을 금하는 고려의 정책은 각장 사태가 있었던 이후 약 1세기가 지난 뒤 金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13세기 초에 金의 宣撫使 蒲鮮萬奴가 요동에서 반란을 일으켜 大眞을 건국하였는데, 이로 인해 쌀이 부족해진 金에서는 고려에 두 차례 牒을 보내 쌀을 팔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려는 변방의 관리로 하여금 거절하게 하였다. 이에 1215년(고종 3)부터 금나라 사람들이 兵亂과 物資 枯渴로 인하여 다투어 珍寶를 가지고 義州·靜州의 關外에 와서 米穀을 매매하였다. 이 때 은 1錠에 쌀 4~5석을 바

86) 『高麗史』 권97, 金黃元傳.

87) 『高麗史』 권14, 「世家」睿宗 11년 3월 乙未.

꾸었으므로 상인들이 다투어 많은 이익을 바래서, 비록 국가—고려—에서 비록 엄한 형벌을 하고 물화를 몰수하였음에도, 탐욕하고 부정하는 것을 꺼리지 않아 몰래 매매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sup>88)</sup>

고려가 금의 미곡 매매 요청에 대해 응하지 않자, 의주와 정주의 관 밖에서 쌀의 교환이 이루어졌다. 그 이전에 금과 고려 사이에는 각장이 있었으나 그것이 기능하지 못하였는지,<sup>89)</sup> 고려의 매매 금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려 영토 바로 밖에서 미곡의 호시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국경 지역의 개인적인 무역을 금지하겠다는 고려의 정책은 요에 대해서와 거의 같았다.

다만 국왕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外官의 주도 하에 일시적으로 국경 무역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그러한 사례로는 1185년에 명종이 內府의 貯藏이 모두 없어지자 西北面兵馬使가 되어 부임 인사하러 온 李知命에게 ‘義州에서 비록 두 나라의 무역을 금하고 있으나 龍州 창고의 苧布를 가져가서 契丹絲와 무역하여 바치라’고 명령하였고, 李知命은 임지에 가서 그 일을 실행하여 契丹絲 5백 束을 바쳤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sup>90)</sup> 하지만 전근대 사회에서 국왕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왕실 재정이 국가 재정과 구분되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88) 『高麗史』 권22, 『世家』 高宗 3년 윤7월 병술.

89) 요에서 여러 차례 고려와의 국경에 각장을 설치하고 무역을 했는데 고려측에서 응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였으나, 고려와 금 사이에는 일시적으로나마 각장이 설치되고 실제 교역이 이루어졌다. 고려의 변경 지역에 각장이 있었다는 것은 12세기 후반 무렵에 의주에 수령으로 부임하였던(『新增東國輿地勝覽』 권53, 平安道 義州牧 名宦條) 金克己가 지은 각장이라는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東文選』 권6 權場).

90) 『高麗史節要』 권13, 明宗 15년 春正月.

## (2) 海外貿易에 대한 政策

周知하는 바와 같이 高麗를 建國한 王建은 西海 貿易을 통해 성장한 海上 勢力의 후손으로 여겨진다. 王建이 弓裔에게 귀부한 뒤 여러 차례 海軍 指揮官으로서 西南海 정벌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던 것도 이와 같은 先代의 배경과 관련되었다.<sup>91)</sup> 그러나 정작 고려 시기에는 바다를 건너오는 송상인에 대해 예성향을 개방하였지만, 고려인이 해외로 나가 무역하는 것에 대해 장려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럼 왕건과 고려의 역대 왕들은 왜 자유롭게 해외 무역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것은 이미 선학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무역을 방지할 경우 또 다른 해상 세력이 등장하여 왕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라하대에는 淸海鎮에 해상 제국을 건설하고 왕권에 도전했던 張保皋가 있었으며, 아울러 나말여초에도 晋州의 王逢規, 金海의 金仁匡과 蘇忠子·蘇律熙 형제, 壓海縣의 能昌, 興禮府의 朴允雄 등 강력한 해상세력이 있었다.<sup>92)</sup> 무엇보다도 왕건 그 자신이 해상 무역을 기반으로 정치적 세력을 키워 마침내 고려를 건국하고 국왕

91) 日野開三郎, 『羅末三國의 鼎立과 對大陸海上交通貿易(4)』 『朝鮮學報』 20, 1960. 朴漢高, 『王建 世系의 貿易活動에 대하여—그들의 出身究明을 중심으로—』 『史叢』 10, 1965.

92) 나말여초 해상 세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참조된다.  
日野開三郎, 『羅末三國의 鼎立과 對大陸海上交通貿易(4)』 『朝鮮學報』 20, 1960.  
金庠基, 『羅末 地方群雄의 對中交通—특히 王逢規를 中心으로—』 『黃義敦先生古稀祈念論叢』 1960; 『東方史論叢』, 서울大出版部, 1974.  
朴漢高, 『羅末麗初 西海岸交涉史 研究』 『國史館論叢』 7, 國史編纂委員會, 1989.  
鄭淸柱, 『新羅末·高麗初의 羅州豪族』 『全北史學』 14, 1991;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具山祐, 『羅末麗初의 蔚山地域과 朴允雄』 『韓國文化研究』 5, 1992.  
李貞信, 『고려시대의 상업—상인의 존재형태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59, 國史編纂委員會, 1994, 109~110쪽.

에 올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국 이후 추진된 중앙집권화에 장애가 되는 해상 세력—제2의 장보고나 왕건—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상 무역을 통제해야 했던 것이다.<sup>93)</sup>

이와 더불어 토지 중심의 농업 진흥책이 무역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 고려의 경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제도는 전시과였고, 그것은 당시 富의 원천이었던 토지를 분급하는 體制였다.<sup>94)</sup> 따라서 국가의 재정이 충실해지고 고려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전시과 제도가 잘 운영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이 잘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농업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게 되었다. 그에 반하여 상인은 농민처럼 土地에 緊縛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생업을 영위하므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抑商政策을 취하게 마련이었다.

고려 초의 국왕들은 해상 무역의 허용이 잠재적으로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거니와, 자급자족적인 농업 사회를 지향하게 되자, 개별적인 해상 무역은 물론 국가의 공인된 무역조차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최승로의 주장은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제시된 것이다. 그의 上書文에서 ‘交聘의 使節에게 인하여 무역을 겸하여 행하게 하고 그 나머지 외교적 명분 없는 매매[非時賣買]는 하나같이 모두 금하십시오.’라는 주장은 오직 무역만을 목적으로 한 배의 왕래를 제한하자는 뜻이었다. 그는 아울러 土産이 아닌 文彩있는 김과 주름진 비단을 庶人들이 입지 못하게 하자고 하였다. 이것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좋은 옷감을 庶人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옷에 의한 貴賤을 구

93) 森克己, 『앞의 글』, 1959, 555쪽.

蔡雄錫, 『高麗前期 貨幣流通의 기반』, 『韓國文化』 9, 1988, 116~117쪽.

94) 姜晉哲, 『高麗土地制度史研究』, 高麗大出版部, 1980.

분하고 사치스러운 풍조를 막자는 뜻으로 왕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면 무역상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었다. 이어 상서문의 다  
른 곳에서 君主가 政事와 功德을 쌓는 데에는 天時에 順應하고 그  
때에 맞춰 『禮記』 月令編의 時令을 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  
것은 그의 天時와 政令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重農的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sup>95)</sup>

그런데 성종은 중농이념을 표현하는 籍田親耕·雩祀 등을 고려왕  
조에 들어와 최초로 거행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수령에 대해 권농업  
무를 부과한 국왕이었다.<sup>96)</sup> 이처럼 성종이 농업 진흥을 꾀하였다면  
농업과 상대적인 관계에 있는 무역을 장려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승로의 무역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고려인의 해상활동은 더욱 위축되지 않  
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이나 귀족들의 사치품에 대한  
수요는 있었으며, 그것을 해결해준 것은 송상들이었다. 1058년 8월  
에 문종이 송과 通交하려 할 때 ‘송 상선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고  
날마다 귀중한 보배가 들어오고 있어 중국에서는 실로 도움을 받을  
것이 없다.’라는 內史門下省의 주장 속에서<sup>97)</sup> 그 당시의 무역 현실  
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고려인이 송으로 배를 타고 가서 무역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송의 배가 고려를 왕래하는 것에 의존  
하고 있으며, 내사문하성도 그러한 현실의 변화를 바라지 않았다.<sup>98)</sup>

95) 韓政洙, 2004, 「高麗前期 儒敎의 重農理念의 確立」, 『高麗時代 重農理念과 農耕  
儀禮』, 建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69~70쪽.

96) 李正浩, 「高麗前期 勸農政策에 관한 一考察」, 『史學研究』 46, 1994.; 『高麗時代  
勸農政策 研究』, 高麗大 博士學位論文, 2002, 35~38쪽.

97) 『高麗史』 권8, 「世家」 文宗 12년 8월 乙巳.

98) 森克己는 고려가 예성항을 개방하는 대신에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같은 시기 일본은 여러 지역 세력을 중심으로 활발히 해상활동을 하였다고 하

초기의 무역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고려시대 대외 무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중앙집권화에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되는 해상 세력의 등장을 막기 위한 측면과 고려의 농업 사회 지향이라는 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기록상으로는나 실제로도 고려인들의 遼·金を 상대로 한 국경무역이나 대송 해상 무역이 부진했었던 사실과 부합한다. 아마 무역 정책이 대외 무역을 위축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다만 禮成港에서는 송상을 비롯해서 일본과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찾아와 무역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고려 전기의 무역정책은 고려인의 해외 진출은 제한하는 대신에 외국 상인들에게 수도에 인접한 예성항을 개방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었다. 이러한 차이가 있게 된 것은 첫째, 고려는 중앙집권적 국가로서 富力도 중앙에 집중하므로 인해 지방관이나 자립한 지방정권이 독자적으로 해외에 선박을 파견하여 무역활동을 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 둘째 일본은 사회경제가 화폐부활의 단계였으나 고려는 아직도 자연경제에 있었다는 점, 셋째 이 시기 무역을 송과 일본의 상인이 주도하였으므로 고려의 상인이 파고들 여지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森克己, 『앞의 글』, 555~556쪽).

이러한 견해는 고려의 경제 발전 단계가 일본보다 낮다는 전통적인 역사관과 관련되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가 있다. 당시 고려는 발해의 유민 문제, 거란의 침입 등 북방민족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해상 진출을 막았으며, 더 나아가 장보고의 해상세력화를 경험한 왕건 이하 고려의 역대 왕들이 해외교역에 소극책을 썼다. 대신 고려는 송상이나 일본 규슈 지역의 상인을 팔관회에 참여시켜 고려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면서 교역을 시도했다고 한다(이병로, 『11세기 한일 양국의 대외교섭에 관한 일고찰』, 『大丘史學』 59, 2000, 105~106쪽). 그리고 고려는 이미 중세로 접어들어 토지 중심의 경제가 안정화되어 농업 진흥에 장애가 되는 해외 무역을 제한한 데 반하여, 일본은 아직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森克己가 말한 화폐경제의 부활이라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중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 맺음말

高麗時代 禮成港이 개방되고 여러 나라의 무역선이 드나들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아라비아의 상인들은 顯宗代 이후 고려에 온 적이 없었고 일본 상인의 방문도 매우 적었으며, 송나라 상인이 가장 많이 왕래하며 무역하였다. 그들의 배는 계절에 따른 바람을 활용하여 兩國間의 空間的 거리를 좁혔으며, 예성항에 도착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무역하다가 다음 무역선이 도착하면 송나라로 돌아가는 방식이었으므로 高麗와 宋 사이에는 사실상 常設的인 무역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런 점은 朝鮮의 閉鎖的인 대외 정책과 비교되는 것이었으나, 예성항에는 멀리 아라비아의 貿易船이 잇달아 드나들 정도였다고 하거나 고려 상인들이 예성항을 출발하여 해외로 나가 활발히 무역했다는 것은 史料를 잘못 이해한 것이었다. 실제 그 근거로 이용되었던 ‘또 樓閣 위에서 潮水를 보며 同僚 金君에게 주다.’라는 李奎報의 시에서 ‘오고가는 배는 머리와 꼬리를 물어 서로 잇대었더라’ 표현에서의 ‘배’는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무역선이 아니라 조운선이나 작은 어선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고려의 무역 정책을 보면, 북방 지역 요·금 국경 지역 貿易에 대한 政府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私貿易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12세기에 잠시 고려와 금나라 사이에 榷場을 두고 무역을 한 바 있으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상대 국가가 위기에 처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무역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원칙이 준수되었다.

그것은 해상 무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려 초의 국왕들은 해상 무역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상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중앙집권화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으며, 무역 자체가 상업의 하나로서 토지 긴박을 전제로 하는 토지 중심의 중세 농업 경제와 背馳되므로 개별적인 해상 무역을 제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成宗代 이후에는 국가의 허락을 받고 사절의 형태로 중국에 가는 방식의 무역조차도 제한되기 시작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해상 무역의 쇠퇴 현상이 있었다고 해서 고려가 신라에 비해 역사적으로 후퇴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보편사적으로 보건대 고려왕조가 自給自足적인 自然經濟를 특징으로 하는 중세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알려주는 증표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고려시대 대외무역과 정책을 검토하였다. 고려시대 무역이 번성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요·금 등과의 국경 지역의 무역은 통제되었고 해상 무역은 고려를 찾는 외국 상인에게 개방하였을 뿐이며, 정책도 역시 무역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무역은 오직 예성항에서만 이루어졌으며, 그 무역 상대도 거의 송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전반적인 무역의 규제 속에서도 예성항을 개방하여 외국 상인들을 불러들인 원인과 구체적인 무역의 과정 및 양상을 찾아내는 것이다. 즉, 고려정부가 왕실과 귀족들의 사치품 수요를 채우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거두었으며, 예성항에서 외국 상인과의 무역을 통해서 새로운 해상 세력이 등장할 여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後考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 V. 조선시대의 육상·해양 네트워크 발전 조건과 한계

(이욱, 공동연구원)

머리말

### 1. 대청 밀무역의 형태와 성격

(1) 사행과 관련한 밀무역

(2) 민간의 밀무역

### 2. 대일 밀무역의 형태와 성격

(1) 역관과 밀무역

(2) 민간의 밀무역

맺음말



## 머리말

조선시대의 무역은 외교관계에 부수되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외교 논리가 우선하였다. 그러나 청나라의 해금 정책에 따른 조선의 중계무역지로서의 위치는 무역에서 많은 이윤을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대청, 대일무역 참여욕구는 대단하였다. 무역에 참여하려는 상인들의 욕구는 점차 정부의 공인을 받는 단계로 발전하였다.<sup>1)</sup>

양관 이후 조선의 대청, 대일 무역은 크게 公貿易, 私貿易, 密貿易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sup>2)</sup> 공무역은 국가나 국가기관이 주체이며, 일반적으로 朝貢과 回賜의 형식을 취한 물화의 수수관계를 지칭하며 역관이 담당하였다. 사무역은 정부가 공인 하에 상인이 교역하는 것을 말한다. 대청무역에서의 팔포무역, 開市, 後市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sup>3)</sup> 대일무역에서는 倭館 開市가 이에 해당된다.<sup>4)</sup> 밀

---

1) 조선후기 무역사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이철성, 「조선후기 무역사 연구 동향과 전망」, 『조선후기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를 참조.

2) 今村鞆, 『人蔘史』제3권 人蔘經濟篇, 1938. 물론 이러한 구분에 대해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全海宗은 협의의 조공무역인 관무역, 사신이나 사행에 수행하는 상인이 행하는 공무역, 부대무역, 개시, 밀무역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현창은 전체적으로는 今村鞆의 틀을 인정하고 있지만, 무역용도와 조공 규제를 주요한 기준으로 하여 4가지 형태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김동철은 사무역 대신 개시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논자들이 따라 분류가 다르고, 또 今村鞆의 분류가 정확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큰 오류는 없다고 생각하여, 이 글에서는 이에 따르겠다. 한국 전근대의 무역 유형에 대한 다양한 설에 대해서는, 이현창, 「한국 전근대 무역의 類型과 그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36, 2004 참조.

3) 私商에 의해 행해졌던 후시무역에 대해서는, 柳承宙, 「朝鮮後期 對淸貿易의 展開過程-17·18世紀 赴燕譯官의 貿易活動을 중심으로-」, 『白山學報』8, 1970의 선구적인 연구 이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 목록은 이철성, 앞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무역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무역이다. 밀무역은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하였다. 공무역을 담당한 역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에서부터, 사행원역을 수행하는 大商에 의한 밀무역, 국경주변민의 생활필수품 교역을 위한 밀무역이 모두 포괄된다.

조선측의 입장에서 한중일 삼국 간 무역은 초기에는 주로 중계무역이었다. 즉 중국의 白絲와 비단을 수입하여 일본에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은으로 중국의 백사를 구입하는 형태였다. 그런데 18세기 전반 청의 해금책이 풀리고 청일간 직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의 중계무역 이윤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조선 상인들의 무역형태에 변화가 필요했다. 조선 상인들은 청일 양국에 인기가 높았던 산삼을 판매하고 청으로부터는 모자와 비단 등 사치품을 수입하였다. 일본으로부터는 대청무역에 필요한 은을 구입하였다. 18세기 말에는 산삼의 생산이 줄어들고 인삼 재배에 성공하면서 인삼이 주요 수출품이 되었다. 그리고 청나라의 수입품은 주로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모자와 비단에 대한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윤 역시 막대했다. 그러므로 조선 상인들은 정부의 무역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무역에 참여하려 하였다. 일부 상인은 사무역의 독점적인 특권을 보장받으려 했던 반면, 일부 상인들은 불법적인 방법, 즉 밀무역을 감행하였다.<sup>5)</sup> 특히 19세기가 되면 그 무역 규모와 지역이 매우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존 연구를 통해 역관 등에 의해 행해지던 공무역과 사무역에

4)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제2장; 정성일, 「일본과의 무역」, 『한국사』 33, 국사편찬위원회, 1997, 461-462쪽; 金東哲, 「조선 후기 倭館 開市貿易과 東萊商人」, 『民族文化』 21, 1998

5) 물론 밀무역은 보다 많은 무역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나 규모와 횟수가 훨씬 더 증가한 것은 청일직교역 이후라고 판단된다.

대해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밝혀졌다. 대청무역은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성장과 화폐경제의 발전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sup>6)</sup> 대일무역은 한국에서는 대청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규모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였다가 최근 들어 치밀한 연구성고가 나오고 있다.<sup>7)</sup> 일본에서도 대일무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up>8)</sup>

최근 들어서는 자료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밀무역의 전개 형태나 양상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9)</sup> 사무역과 함께 밀무

6) 대청무역에 대한 주요 연구성고를 들면 다음과 같다.

柳承宙, 「朝鮮後期 對淸貿易의 展開過程-17・18世紀 赴燕譯官의 貿易活動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8, 1970

김종원, 「근세 동아시아 관계사 연구 -조청교섭과 동아삼국교역을 중심으로-,」 혜안, 1999

張存武, 『淸韓宗藩貿易(1637-1894-)』, 1978

李哲成, 「朝鮮後期 對淸貿易史 研究」, 國學資料院, 2000

7) 대일무역에 관한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성고를 들면 다음과 같다.

金東哲, 「朝鮮後期 貢人研究」, 일조각, 1989

鄭成一, 「朝鮮後期 對日貿易」, 신서원, 2000

8) 대일무역에 관한 일본의 대표적인 연구성고를 들면 다음과 같다.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出版會, 1987

9) 밀무역에 대한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金鍾圓, 「朝鮮後期 對淸貿易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43, 1977

車守正, 「朝鮮後期 人蔘貿易의 展開過程-18世紀初 蔘商의 成長과 그 影響을 中心으로-」 『北岳史論』 1, 1989

吳 星, 「朝鮮後期 商人研究」, 일조각, 1989

吳 星, 「朝鮮後期 人蔘貿易의 展開와 蔘商의 活動」 『세종사학』 1, 1992

李哲成, 「朝鮮後期 對淸貿易史 研究」, 國學資料院, 2000

정성일, 「1861-62년 對馬藩의 密貿易事件 處理過程」 『韓日關係史研究』 2, 1994

田代和生, 「渡海譯官使의 密貿易-對馬藩 「潛商論議」의 背景」 『朝鮮學報』 150, 1994

김동철, 「17세기 日本과의 交易・交易品에 관한 연구-密貿易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61, 1995

尹裕淑, 「近世癸亥約條의 運用實態について-潛商・關出事例を中心に」 『朝鮮學報』 164, 1997 등이 있다.

역이 이루어지던 방법, 경로 등을 아울러 고찰해야 조선시대 한중일 삼국 간의 육상 및 해양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방향, 그리고 그 한계가 좀더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밀무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육상, 해양 네트워크 발전 조건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밀무역에서 육로와 해로로 이루어지는 밀무역의 형태와 주도했던 상인이 누구였던가를 밝히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시기 역시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및 일본과의 교역으로 제한하였다. 이를 위해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와 같은 연대기 자료와 『通文館志』, 『增訂交隣志』와 같은 관서지, 『邊例集要』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1. 대청 밀무역의 형태와 성격

### (1) 사행과 관련한 밀무역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까지의 대청무역은 개시무역 중심에서 후시무역 중심으로 바뀐 점에 특징이 있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다음 해에 국내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열린 중강개시가 명청교체 후에는 조청간의 공식 교역장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 사이의 교역보다 민간상인에 의한 사무역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교역은 중강후시가 중심이 되었다. 1700년(肅宗 26)에는 마침내 중강개시가 폐지되고 사신왕래와 관련하여 책문에 후시가 생겼으며

그것이 조청무역의 중심지로 변하였다.<sup>10)</sup>

개시무역에서 작용하였던 관권의 개입과 통제가 배제된 후시무역의 발달은 국내시장이 외국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1년에 2차례 열리던 개시무역과 달리 후시무역은 사행이 있을 때마다 이루어졌으므로 1년에 4, 5차례, 거래도 은 십만 냥 이상의 규모로 이루어졌다.<sup>11)</sup>

이처럼 17세기 이래 대청무역은 개시무역에서 후시무역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使行과의 연관 하에 이루어졌다. 사행 원역에게만 부여되는 八包權 및 官銀借貸에 私商이 개입하고, 특히 전형적인 사무역이라 할 수 있는 후시무역도 사행제도의 일환인 團練使, 延卜制, 餘馬, 刷馬와 같은 것에 의해 이루어졌다. 밀무역 역시 사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밀무역을 행했던 주체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가였다. 그것은 비공식적인 공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였다. 이 경우는 焰硝와 같이 청나라에서 수출을 금지하는 물품이지만, 조선에서는 군비 증강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역관 등에게 비공식으로 밀무역을 용인하였다.<sup>12)</sup>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대일무역에서도 나타난다.

두 번째는 역관에 의한 밀무역이다. 역관은 공식적인 팔포 이외에도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 밀무역을 행하였다. 조선 정부에서도 밀무역의 가장 큰 주체를 역관으로 지목하고 있었다.<sup>13)</sup> 그러나 중계무역이 쇠퇴한 이후 역관은 밀무역의 주도권을 사상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박지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

10) 姜萬吉, 『都賈商業과 反都賈』,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1973, 157쪽

11) 『英祖實錄』 卷 11, 英祖 3년 4월 16일

12) 유승주·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문화사, 2002

13) 『備邊司謄錄』 81책, 英祖 3년 3월 27일

赴燕正官은 가난하여 八包를 휴대하지 못하면 그 包窠를 송도, 평양, 안주 등지의 燕商에게 판다. 여러 곳의 연상은 그것을 사서 은을 채워가지만 법이 그들의 입연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포를 의주상인에게 주어서 중국상품을 무역하게 한다. … 그리하여 韓姓, 林姓을 가진 의주상인은 해마다 중국에 가서 연경을 제집 뜰처럼 여기며 저쪽 상인들과 서로 뜻이 맞아서 물건 값의 오르고 내리는 것이 모두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 중국 상품의 값이 날로 오르는 것도 실은 이들 때문인데도 온 나라가 도무지 이를 알지 못하고 역관만 나무라지만, 역관도 의주상인에게 권리를 빼앗기고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sup>14)</sup>

이를 보면 18세기 말이 되면 대청무역의 주도권이 사상, 그것도 개성, 평양, 안주 등지의 상인과 이들과 결탁한 의주상인에게 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밀무역 역시 私商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상들이 사행무역에 가담할 수 있는 길은 사행원역과 결탁하거나 경외 관아에 청탁하는 방법이 있었다. 서울의 부상들은 주로 사행원역들과 결탁하여 사행무역에 참여하였다.<sup>15)</sup> 京商들이 사행무역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행태는 三使의 子弟軍官이나 사행원역들의 馬夫, 奴子의 명의로 잠입하였다.<sup>16)</sup> 그러나 대부분은 사신이나 역관이 대동하였다. 사신들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상들을 수시로 대동하였고,<sup>17)</sup> 역관들은 행중의 인마를 장악하고 있어 사상들을 대동하기 쉬웠으며 특히 賫咨官 등의 약사로 부연할 때는 馬稅를 받고 사상을 잠입시켰다. 나중에는 정부의 공인 하에 무역별장으로 참여하였다. 현종 초년 정부는 사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

14) 朴趾源, 『熱河日記』 渡江錄 正祖 4년 6월 27일

15) 『承政院日記』 279책, 肅宗 6년 9월 27일

16) 『通文館志』 卷 3, 事大 渡江

17) 『謄錄類抄』 肅宗 16년 2월 17일

관아에 別包를 배정하였고, 점차 무역로에 접한 평양, 의주, 개성의 부상들이 3관장들에게 청탁하여 무역을 전담하는 무역별장으로 등장하였다.<sup>18)</sup> 1681년(肅宗 7)에는 관향고와 운향고에 이어 개성부에서도 무역별장을 입송하였다.<sup>19)</sup> 이어 1684년경에는 양서의 감영과 경기감영에까지 무역별장제가 확대 적용되었다. 이 무렵에 정식화된 각 관아의 무역별장 수는 경기감영별장 1명, 개성부별장 1명, 황해감영별장 1명, 보컬청별장 1명, 평안감영별장 1명, 관향별장 1명, 운향별장 1명, 병영별장 1명 등 모두 8명이었다. 이들은 각 관의 庫나 廳의 정식별장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實別將이라 불렸고, 이들의 무역은 공무역으로 지칭되었다.<sup>20)</sup>

한편 일부 부상들은 임시적인 별장, 즉 ‘假別將’으로 사행무역에 참여하였다. 이들 부상들은 관장들에게 뇌물을 바쳐 그들의 비호를 받았다.<sup>21)</sup> 이들은 부연역관과 더불어 중국 물화를 수입, 왜관을 통해 일본에 수출하였다. 이외에도 사상들은 단련사제, 여마제, 연복제 등에 편승하여 대청무역에 참여하였다.<sup>22)</sup> 이들 사무역에 의해 교역되는 물자량은 상당하였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부연원역과 단련사 일행의 팔포은을 제외고도 매번 후시에 유출되는 은만 10여만 냥이며, 후시가 해마다 4~5차례 열렸으므로 4~50만 냥에 달하는 금액이 거래되고 있었던 것이다.<sup>23)</sup> 이는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액수였다. 이외에도 상인들은 은밀하게 청나라 상인들과 거래를 행하였던 것이다.

18) 『肅宗實錄』 卷 11, 肅宗 7년 5월 계유

19) 『承政院日記』 283책, 肅宗 7년 5월 23일

20) 『備邊司謄錄』 47책, 肅宗 19년 4월 5일

21) 『通文館志』 卷 3, 事大 渡江

22) 단련사제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유승주, 1970, 앞의 글에 자세히 나와 있다.

23) 『英祖實錄』 卷 11, 英祖 3년 4월 16일

이와 같은 밀무역으로 인해 많은 폐단이 야기되자 정부에서는 이를 제재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청 무역의 중요 수출품이었던 인삼 수출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다. 정부에서는 인삼의 국외유출로 국내 삼가가 등귀하자, 삼상에 의한 대규모 인삼밀수출을 금단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삼은 본래 輕貨이거니와 대외인삼수출에 막대한 商利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국가행정력으로서 이를 금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1686년(肅宗 12년) 1월에는 『南北蔘商沿邊 犯越禁斷事目』을 마련하여 對外人蔘貿易을 공식적으로 전면 금지하였으며, 만약 이 법금을 어기고 인삼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자는 사행원역과 상고를 막론하고 境上에서 梟示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中江 및 會寧, 慶源開市에서의 인삼교역도 전면 금지하였다.<sup>24)</sup>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조청 무역에 많은 제재가 가해지자 조청양국의 상인들은 일정하게 지방관원의 비호를 받으면서 비합법적인 국경무역을 감행하였다. 다음의 자료는 그러한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淸債辱國 이후 연북무역을 철저히 금지해왔기 때문에 조청 잠상들이 상리를 잃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통화하고자 밤낮으로 상리를 추구하는 무리와 팔 곳을 갈구하는 상인들이 때 지어 있다.<sup>25)</sup>

조선의 상인들이 청나라와 밀무역을 행하다가 거래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외교분쟁으로까지 비화한 이후 조선 정부는 사행과 관련한 연북무역을 철저히 금지하였다. 이에 상인들은 밀무역을 행하

24) 『備邊司謄錄』39책, 肅宗 12년 1월 6일

25) 『英祖實錄』卷 39, 英祖 10년 12월 癸丑

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삼 밀 무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크게 성행하였다.

이처럼 인삼밀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사신에게 주는 禮單人蔘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동래의 금삼령은 결국 지속되지 못하였다. 금삼령이 해제된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685년(肅宗 11) 금삼령이 내려지고 2, 3년 이내에 다시 허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왜관개시에서 인삼교역은 공식적으로 재개되었다. 그러나 대청인삼수출만큼은 여전히 금지되었다. 그것은 江邊民의 越境潛採行爲가 빈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청 양국사이의 외교관계가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때문에 삼상들은 대량의 인삼을 중국에 밀수출하였다. 그들이 인삼을 밀수출하는 방식은 주로 부연사행에 편승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706년(肅宗 32) 호조판서 趙泰采는 삼상들이 부연사행에 편승하여 인삼을 밀수출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언제나 8월이 되면 京中 상고는 江界로 들어가 인삼을 무취하였다가 동지달초에 안주로 돌아와 節使行을 따라 의주에 도착하고 把守者에게 뇌물을 주어 먼저 柵門으로 들어간다. 이 때문에 잠상을 붙잡기에는 그 형세가 대단히 어렵다. 이미 邊境으로 들어간 다음에야 비록 범금자가 있음을 알아도 누가 적발하겠는가?<sup>26)</sup>

대개 삼상들은 생산지인 강계에서 미리 인삼을 구입하였다가 동지달초에 안주로 돌아와 부연사행과 함께 의주에 도착하면 의주에서의 금물수색을 피해 파수자에게 미리 돈을 주고 사행보다 먼저 도강하여 책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우부승지 박필

26) 『備邊司謄錄』57책, 肅宗 32년 8월 8일

명은 인삼밀수가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법령을 어기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27)</sup>

삼상들이 이처럼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인삼은 대개 강계민과의 암거래를 통해 마련하였다. 1707년(肅宗 33) 호조판서 尹世紀의 啓言에 의하면 삼상들은 강계민에게 인삼대금을 미리 주고 채삼하는 시기에 인삼을 받으러 가는 게 통례인데, 이때 적발되기 쉬운 육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압록강변을 따라 몰래 가서 인삼을 받아오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sup>28)</sup> 강계민들은 대량의 인삼을 밀채하여 삼상들에게 팔았고, 삼상들은 이렇게 마련한 인삼을 중국에 밀수출하였다.

당시 삼상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인삼을 중국에 밀수출하려 했던 것은 일본보다는 중국에 밀수출하는 것이 훨씬 큰 이윤을 보장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중국의 인삼수급사정도 우리나라 삼상들로 하여금 인삼의 밀수출을 감행케 한 데에 큰 관련이 있었다. 당시 중국은 인삼 품귀 현상으로 조선 인삼의 수요가 매우 컸다.<sup>29)</sup> 그만큼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삼상들이 국가에 稅蓼을 납부하고 왜관개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삼을 수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중국에 밀수출해서 얻는 이윤은 거의 배 이상이었던 것이다.<sup>30)</sup>

그러므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밀무역을 감행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윤이 큰 만큼 위험성도 컸기 때문에 주모자와 인삼을 국경 너머로 방출하는 자, 동조자 등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 행하였다.<sup>31)</sup> 그리고 혹시라도 거래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이름을 바꾸거나 다

27) 『備邊司謄錄』57책, 肅宗 32년 8월 8일

28) 『備邊司謄錄』58책, 肅宗 33년 3월 2일

29) 『承政院日記』441책, 肅宗 34년 閏3월 25일

30) 『承政院日記』445책, 肅宗 34년 10월 20일

31) 『備邊司謄錄』59책, 肅宗 34년 閏3월 27일

른 사람의 명의를 내세워 거래하였다.<sup>32)</sup>

이렇게 활발히 전개되던 대청무역은 18세기 초엽이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청일 직교역이 이루어져 한일 간의 중계무역이 쇠퇴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역관들의 이윤이 줄어들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역관들에 의한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사무역에 대해 제재하기 시작했다. 조선정부와 부연역관들은 조청 상인들과 결탁한 난두배를 해체하였다.<sup>33)</sup> 그리고 1725년(영조 1)에는 연복제에 의한 책문후시를 엄금하고 범법자를 압록강변에서 효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거기다가 조선의 사상들이 청나라 상인에게 부채를 제대로 갚지 못하면서, 양국 간에 외교마찰이 빚어지자, 심양팔포무역과 단련사제도 혁파도록 하였다.<sup>34)</sup>

물론 이처럼 사무역이 봉쇄되자 사상들도 반발하였다. 역관들에 대한 의주인들의 보복행위가 뒤따랐고 청측에서는 책문후시를 강요하였다. 대청무역에 참여하던 지방 상고들은 소속 관장을 종용하여 무역권을 되찾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사무역을 재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역관에 의한 공무역이 쇠퇴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사무역을 억제하자 오히려 밀무역이 성행하였다. 이들은 인삼 이외 다양한 물품을 밀무역으로 거래하였다. “황해, 평안 양도는 당물, 은, 紬가 모두 생산되는 곳이며 모든 물화가 폭주하는 곳”<sup>35)</sup>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물화가 밀무역으로 거래되었다. 예를 들어 1736년(英祖 12)에는 이정명이라는 자가 동지사행을 이용하여貂皮 110령을 밀무역하려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다.<sup>36)</sup> 또 1758년(英

32) 『備邊司謄錄』81책, 英祖 3년 閏3월 1일

33) 『增補文獻備考』卷 176, 交聘考 景宗 2년조

34) 『英祖實錄』卷 15, 英祖 4년 正月 辛酉

35) 『備邊司謄錄』99책, 英祖 12년 6월 3일

祖 35)에는 의주의 刷馬 驅人 李從之 등이 馬尾 4척을 잠매하다가 적발되었다.<sup>37)</sup> 1787년(正祖 11)에는 송도 상인들이 각 사찰에 제작한 종이를 매점해서 책문에서 대량으로 거래를 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sup>38)</sup>

이러한 밀무역을 조장하는 데는 관장들의 비호가 전제되었다. 예를 들어 1734년(英祖 10) 평안감사 朴師洙는 “관서인이 京城人物을 유인한 자는 사형함이 마땅하지만 청상에게 전매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청상과 매매한 것으로 단정하여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왕정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하면서 관서상인을 옹호한 데서 잘 드러난다.<sup>39)</sup> 또 관서어사 이성효가 보고하기를, “삭주부사 李萬圃가 의주부 상고에게 匹緞을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쌀 수백 석을 지급했다는 소문을 듣고 신이 몰래 상고들이 자주 출입하는 장시 안의 妓家에 들어가 상고들의 文蹟을 수검하려 하였는데 이만유가 이 소식을 듣고 포고를 풀어 신이 데리고 간 서리를 포박해 버렸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sup>40)</sup>

이에 조선정부는 1758년(영조 35) 官帽法을 시행하여 역관에게 무자수입권을 주면서 역관무역을 진작시키려 하였으나, 결국에는 1777년(정조 1)에는 稅冒法을 시행하여 무자수입권까지 상인에게 주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18세기 후반이 되면 대청무역의 주도권을 역관이 아닌 사상이 장악하였고, 이를 조선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sup>41)</sup> 그리고 그 배경에는

36) 『備邊司謄錄』100책, 英祖 12년 12월 12일

37) 『備邊司謄錄』137책, 英祖 35년 11월 17일

38) 『備邊司謄錄』170책, 正祖 11년 正月 1일

39) 『英祖實錄』卷 10, 英祖 10년 6월 戊午

40) 『英祖實錄』卷 50, 英祖 15년 9월 癸丑

41) 유승주·이철성, 2002, 앞의 책

정부의 사무역 억제 정책에 대해 사상들이 밀무역으로 저항함으로써 얻은 결과이기도 했다. 즉 조선정부는 사무역 억제가 공무역의 부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무역의 성행으로 나타났고, 이는 공사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는 판단하였다. 따라서 차라리 밀무역을 양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었다.

## (2) 민간의 밀무역

이처럼 사행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밀무역 이외에 청나라와 경계를 접한 지역에서 민간 차원의 밀무역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미 조선전기부터 犯越, 採蔘者나 밀무역이 끊이지 않아 자주 외교문제가 되었다. 원래 청나라 사람들은 압록강 근처에 거주하지 않았는데 肅宗 연간에 들어서면서 강변에 막사를 설치하고 양식이나 소금과 같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인삼을 지급하는 등 소량의 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sup>42)</sup>

특히 英祖 이후 의주를 통한 밀무역로가 막히자 강계 지역이 중요한 밀무역의 통로가 되었으며, 그중에서도 高山里, 伐登, 滿浦 3진이 강계에서 멀고 기찰이 엄하지 않아서 밀무역 통로가 되었다.<sup>43)</sup> “滿浦鎭 부근의 압록강 중에 있는 작은 섬에서 청상들이 通貨하는 폐단이 크다.”<sup>44)</sup>라든가, “평안도의 상인, 僧 釋訓 등이 錢帛을 소에

42) 『備邊司謄錄』 61책, 肅宗 37년 3월 15일

43) 『英祖實錄』 卷 22, 英祖 5년 6월 癸巳

44) 『備邊司謄錄』 95책, 英祖 10년 3월 2일

신고 昌城을 지나다가 소가 강에 빠졌는데 청인이 건져 주었다.”<sup>45)</sup> 는 자료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강계와 더불어 의주, 초산, 창성, 삭주, 위원 벽동 등 이른바 강변 7읍이 또한 밀무역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 지방은 피물, 인삼의 주산지일 뿐 아니라 금은의 생산으로도 유명하여 송상, 만상을 비롯하여 평양, 안주 상인과 멀리 경상까지 왕래하며 밀무역을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정부에서는 이 지역에서의 밀무역을 근절시킬 목적으로 錢文의 사용을 엄금케 하였다.<sup>46)</sup>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금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의 밀무역은 상당히 성행하였다. 강계 등 국경 지역 주민들의 범월과 밀무역이 성행함에 따라 강계군과 위원군의 건너편 중국 지역에는 중계무역을 하는 사람들로 大村을 이루었고, 재력을 지닌 중국 상인들은 수하에 3, 400명을 거느리고 무역한 조선상품을 심양 등지에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하에는 조선인 도망자 여러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들은 주야로 국경을 넘나들면서 물품을 교역할 뿐 아니라, 수천 필의 말을 동원하여 채삼을 일삼음으로써 이익을 탐하는 조선 변경민이 나날이 왕래하여 중국인의 막사에 머물렀는데 그들의 정분이 골육과 같았다고 한다.<sup>47)</sup> 양국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범월로 잡힌 죄인이 탈옥하여 중국인에게 도망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1735년(영조 11) 趙永三은 중국 땅으로 건너가 潛商으로 생계를 잇다가 발각되어 투옥되었는데, 탈옥하여 중국으로 도망갔던 것이다.<sup>48)</sup> 그가 탈옥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중국측에

45) 『英祖實錄』 권 35, 英祖 9년 7월 壬辰

46) 『續大典』 刑典, 禁制

47) 김종원, 1977, 앞의 글, 53쪽

48) 『備邊司謄錄』 97책, 영조 11년 5월 18일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밀무역이 성행하면서 함경남도 정평에서 고산리로 이어지는 山谷의 간로가 개발되어 밀무역의 통로가 되었다.<sup>49)</sup>

이와 함께 해상에서의 밀무역도 조금씩 이루어졌다. 荒唐船이라 불리던 중국선박 9척이 와서 며칠동안 서해안에서 머무르고 갔다는 기록이나,<sup>50)</sup> 1734년(英祖 10)에 황당선의 왕래가 요즘처럼 심한 적이 없다는 기록에서<sup>51)</sup> 그를 짐작케 해준다. 특히 1742년(英祖 18)의 다음 기사는 해로를 통한 밀무역이 일상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부터 황당선이 해삼을 어획하다가 폭풍으로 우리나라에 표류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왕래가 더욱 빈번해져서 심지어 땀값이나 물을 길어가기도 한다. 연해의 우매한 백성들은 그들의 왕래를 심상히 여겨 심지어 몰래 거래하기도 한다. 변장과 수령들은 이를 엄하게 막지 못한다.”<sup>52)</sup>

이처럼 18세기 중반부터 일상화되던 해로를 통한 밀무역은 19세기가 되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잠상 활동을 펼쳤던 상인은 매우 다양했다. 대규모 잠상행위는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의 상인에 의해 흔히 발생했다. 특히 1807년(순조 7) 대동강변에서 발각된 백대현과 이사즙의 잠상행위는 당시 대청 밀무역의 양상과 그 규모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의주상인 백대현과 평양상인 백사즙은 쌀 120석을 싣고 薪島에 잠입하여 청상들과 교역하였다. 이들은 청상으로부터 결제 받지 못한 쌀값을 唐錢, 鑰鐵, 白盤, 器皿, 丹朮

49) 『備邊司謄錄』 93책, 英祖 9년 4월 17일

50) 『備邊司謄錄』 36책, 肅宗 8년 5월 1일

51) 『備邊司謄錄』 104책, 英祖 14년 7월 10일

52) 『備邊司謄錄』 111책, 英祖 18년 10월 6일

등의 물건으로 받아왔다. 그 뒤 이들은 청상으로부터 받은 현물 가운데 당전, 유철은 유점에 팔아넘기고 용주기명, 백반, 단목 등은 시장에 팔아넘겼는데,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발각된 당전만 1천 300여냥에 은화 20여냥이었고 백반과 단목의 양도 적지 않았다.<sup>53)</sup> 이 사건은 그 거래 규모도 규모지만, 평소에 상선이 내왕하지 않는 수로를 이용하여 우리측의 상인과 청상 간에 잠무역이 행해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또한 우리 측의 거래물종이 쌀이었다는 점과 은 이외의 물품으로 대체 결재된 여러 가지의 물화가 국내시장을 통해 판매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잠상이 성행할 수 있었던 국내 배경으로 주목된다.<sup>54)</sup>

특히 고종연간에 가면 해로를 통한 밀무역은 더욱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모자 김정련과 거간인 임시형, 삼주 홍병구 등이 해로를 통해 인삼을 밀무역하다가 사로잡힌 일이 있었다. 김정련은 의주인으로 중국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2,500냥을 빌려 인삼을 구매하여 황해도 웅진에서 출발 滄連島에 가서 교역하고 돌아왔다고 자백하였다.<sup>55)</sup> 그러므로 고종 원년에는 중국선박과 인삼 밀무역을 엄금하도록 개성유수와 평안도, 함경도 관찰사에게 명하기도 하였다.<sup>5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 밀무역은 근절되지 않았고, 고종 6년에는 경강선 1척이 초도 앞바다에서 중국배와 밀무역을 하기도 하였다.<sup>57)</sup> 제너럴 셔먼 호 사건 당시 셔먼호는 대동강 어귀에서 한 중국인 정크배를 마주쳤는데, 그 배의 선장이 셔먼호를 상륙까지 안내해 주고 돌아갔다. 다른 기록에는 또 다른 중국인 선장이 강을 거슬

53) 『承政院日記』 1932책, 純祖 7년 8월 18일

54) 李哲成, 2000, 앞의 책, 191~192쪽

55) 『高宗實錄』 권 1, 高宗 元年 8월 1일

56) 『高宗實錄』 卷 1, 高宗 元年 2월 3일

57) 『高宗實錄』 권 6, 高宗 6년 7월 15일

러 올라왔다가 서면호의 폐선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것은 밀무역이 개성뿐 아니라 서해안의 곳곳에서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 1868년 체푸를 방문했던 브레스치아(Lugi Cocagna Brescia)는 “체푸가 한국과 무역을 하는 유일한 항구이다. (중략)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작은 양을 교역하기 위해 정크배를 타고 바다로 나와서 상품을 교환한다.”라고 말했다. 또 체푸에 있던 유태인 상인이 1865년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것, 1866년 대원이 외국 상품의 사용을 금지시킨 것 등도 당시 서해를 무대로 밀무역이 널리 행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sup>58)</sup>

이처럼 조선 정부의 무역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에서 대청무역은 끊임없이 시도되었다. 그리고 무역로도 육로 중심에서 점차 해상 교역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 2. 대일 밀무역의 형태와 성격

### (1) 역관과 밀무역

조선후기 대일무역은 1685년 청일 간의 직교역이 재개됨으로써 큰 변화를 맞았다. 이때를 고비로 조선의 중계무역은 쇠퇴하였다. 이후 대일무역은 사무역 위주로 이루어졌다.<sup>59)</sup> 그리고 기존의 중국산 白絲, 絹織物 대신에 조선의 人蔘이 주용 수출 품목이 되었다.

58) 토니 미셸, 「조선후기 경제와 무역 개방」, 『東方學志』 40, 1983, 102~103쪽

59) 金東哲, 「조선후기 倭館 開市貿易과 東萊商人」, 『民族文化』 21, 1998

일본이 조선에 수출하는 길을 ‘은의 길’이라 한다면, 조선이 일본에 수출하는 길은 ‘인삼의 길’이라고 부를 정도로,<sup>60)</sup> 인삼은 가장 중요한 조선산 수출품이었다.<sup>61)</sup>

그러나 조선의 인삼생산 부진, 중국과 일본의 직거래로 인한 생사 유통의 부진, 1752-3년 이후 은 수입 단절 등의 용인에 의해 조일무역은 18세기 중엽 이후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추세였다. 이에 따라 사무역품도 19세기 들어서면 牛皮, 牛角爪, 黃岑, 煎海鼠 등 4품목이 수출품의 중심이 되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피였다.<sup>62)</sup> 반면 인삼은 이전에 비해 그 양이 줄어들었다.<sup>63)</sup>

이러한 변화 양상을 보인 조선후기 대일무역에서 밀무역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을까? 대일 무역 역시 대청 무역과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밀무역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곳은 왜관과 그 일대였다. 일본사신의 상경이 금지된 이래 왜관은 조선과 일본의 공식적 외교가 이루어지던 곳이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던 밀무역은 기본적으로 대청무역과 마찬가지로 사행과 관련한 밀무역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통신사나 역관사 등이 일본에 갈 때에도 빈번하게 밀무역이 이루어졌다.

밀무역에 참가했던 주체는 국가부터 역관, 상인 등 매우 다양하였다. 우선 국가가 밀무역을 주도했던 사례를 보자.

1663년(현종 4) 훈련대장 이완은 서울에 거주하는 富商 李應祥에

60) 정성일, 『조일무역을 이끈 조선 인삼과 일본 은』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2』, 1998, 172쪽

61) 車守正, 『朝鮮後期 人蔘貿易의 展開過程-18世紀初 蔘商의 成長과 그 影響을 中心으로-』 『北岳史論』 창간호, 1989. 吳星, 『朝鮮後期 人蔘貿易의 展開와 蔘商의 活動』 『世宗史學』 1집, 1992.

62) 金東哲, 『19세기 牛皮貿易과 東萊商人』 『韓國文化研究』 6, 1993, 399-400쪽

63) 鄭成一, 『開港 직전 對日交易品의 특징(1874-1875)』 『수춘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상, 1992

게 유황의 밀수를 권하였다. 이응상은 林茂聖을 동래에 보내어 부산진 군관 박명천과 함께 밀수를 주선하게 하였다. 그 결과 그해 가을에 일본인이 유황 13,600근을 배에 싣고 야음을 틈타 가덕도에 왔었다. 구입한 유황은 훈련도감에 9,700여 근, 어영청에 2,000여 근이 각각 보내졌다.<sup>64)</sup> 1665년(현종 6) 경상감사는 유황 밀무역선 한 척이 龍草島에 皮奉事와 林主簿를 찾는다는 보고를 받았다. 일본인이 찾는 피봉사와 임주부는 상인 皮起門과 林之竹이었다. 이들은 전부터 일본인과 유황 밀무역을 하고 있었다. 정부가 동래부사와 통제사에게 명령하여 이들로 하여금 몰래 교역하게 하였던 것이다.<sup>65)</sup>

유황 밀무역은 사행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역관 홍희남이나 김근행 등은 문위행 때 조정의 지시를 받고 대마도주를 타일러 石硫黃 15,000근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배에 싣고 나올 무렵에 10,000근을 유치당하고 5,000근만 가지고 왔다. 이들은 이외에도 일본 장검 40자루와 중검 60자루도 사가지고 왔었다.<sup>66)</sup>

이처럼 정부의 묵인 하에 유황 밀무역이 증대하자 상인들은 이를 발미로 다른 물건까지도 밀무역하였다. 그리하여 상인들의 밀무역이 날로 증가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1664년 윤6월에 호조판서 정치화에 의해 밀무역을 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67)</sup> 1667년(현종 8)에는 유황 밀수입을 담당하던 일본측 상인이 체포되어 사건 전모가 드러나는 바람에 막부에까지 이 사실이 알려져 양국의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sup>68)</sup> 이처럼 조선 정부는 일본측에서 수

64) 柳承宙, 『17世紀 私貿易에 관한 一考察-朝·清·日間の 焰硝·硫黃貿易을 中心으로-』 『弘大論叢』 X, 1979, 127쪽

65) 姜萬吉, 앞의 책, 161~162쪽

66) 洪性德, 『朝鮮後期 「問慰行」에 대하여』 『韓國學報』 59, 1990, 154~155쪽

67) 柳承宙, 앞의 글, 129~130쪽

68) 鄭成一, 『1861~62년 對馬藩의 密貿易事件 處理過程』 『韓日關係史研究』 2, 1994, 129쪽

출을 금지하는 물품 중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요가 있는 경우 사신이나 상인을 통해 밀무역을 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행을 통한 밀무역은 역시 역관이 그 중심에 있었다.<sup>69)</sup> 역관은 일본상인과 조선 상인 사이의 무역을 주선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직접 밀무역을 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왜관에 서의 밀무역은 거의 역관이 주도하였다.<sup>70)</sup>

역관은 일본 상인이 오면 예단삼을 지급하고, 개시무역을 통해 피집삼을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밀무역할 기회가 많았다. 인삼이 인기가 높았던 것도 있었지만 백사나 견직물만큼 부피가 크지 않아 밀수출하기가 쉬웠다. 그리고 예단삼의 품질이 점점 떨어지는 것도 밀무역의 원인이 되었다.<sup>71)</sup>

국내 인삼의 품귀 원인을 생산량 고갈과 동래 지역 잠상이라고 할 정도로 인삼 잠상의 폐단은 심각하였다. 그 중에서도 일본어 역관의 인삼 밀무역은 나라의 이익을 독점할 정도였고,<sup>72)</sup> 이들의 밀무역은 무역세 감축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759년 왜관의 역관들이 예단삼 지급과 피집을 기회로 밀무역하다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sup>73)</sup> 여기에 연루된 역관은 훈도 朴宗大, 별차 金重禹, 館守差備譯官 玄商禎, 居間通事 金正貴, 隨從通事 朴渭太, 金重華였다. 이들은 일본사신에게 줄 예단삼을 지급한다는 핑계로 인삼을 밀무역하였다.<sup>74)</sup> 이 사건이 주목되는 것은 소통사들의 밀무역과는 달리 왜관에 주재한 여러 역관이 함께 밀무역에 참가한

69) 양홍숙, 『17-18세기 譯官의 對日貿易』, 『지역과 역사』 5, 1999

70) 역관이 왜관에서 행했던 밀무역에 대해서는, 주) 9에 나오는 논문 참조.

71) 『邊例集要』 卷14, 潛商路浮稅并錄, 甲戌(英祖 즉위) 10월

72) 『承政院日記』 794책, 英祖 11년 정월 4일

73) 이 사건에 대해서는, 김동철, 1995, 앞의 글 참조

74) 『承政院日記』 1172책, 英祖 35년 8월 21일 ; 같은 책, 1176책, 12월 16일

조직적인 밀무역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잠상은 연관인 훈도와 별차의 親黨이 아닌 자가 없다고 할 정도였다.<sup>75)</sup> 일본상인도 특정 물품의 수출이 금지되거나 개시가 열리지 않으면 훈도, 별차 등을 찾아와 밀무역을 요구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sup>76)</sup>

역관이 참여하는 밀무역 중 또 하나 중요한 형태는 일본으로 가는 사행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역관은 사행으로 일본에 파견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밀무역의 기회로 삼았다. 특히 問慰行은 역관이 부를 축적하는 데 좋은 기회로 인식되었다. 문위행은 그들의 利窟이라고 간주되었고, 역관들의 머리가 깨질 정도로 파견 경쟁이 치열하였다.<sup>77)</sup>

물론 이러한 형태의 밀무역에는 역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다. 1713년에는 도해역관선의 船將 安時迪이 일본인과 인삼을 매매하다가 발각되었고, 1717년에는 問慰譯官의 종인으로 따라갔던 金正男이 인삼을 거래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sup>78)</sup> 심지어 1721년(경종 6) 대마도에서 발각된 밀무역 사건의 경우는 역관사의 정사, 부사를 포함한 65명 전원이 밀무역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이때의 정사였던 崔尙嶠은 밀무역을 위해 꾀병을 부려 거류기간을 늘리기도 하였다.<sup>79)</sup> 또 다음의 자료를 보자.

이번 바다를 건너간 譯官의 배에 미곡을 백여 석이나 실었으니, 배가 침몰하는 우려는 반드시 여기에서 비롯된다. 듣건대 東萊府 근처의 閩帥와 邊將 및 幕裨의 무리가 붙여서 실은 것 또한 많다고 하는

75) 『邊例集要』卷 14, 潛商路浮稅并錄, 오성, 1989, 앞의 책, 42~43쪽

76) 『承政院日記』781책, 英祖 10년 6월 9일

77) 『備邊司謄錄』英祖 8년 9월 2일 ; 양홍숙, 앞의 글 161쪽

78) 『邊例集要』卷 14, 潛商路浮稅并錄, 癸巳(肅宗 39) 10월, 丁酉(肅宗 42) 8월

79) 이 사건에 대해서는, 田代和生, 「渡海譯官使の密貿易-對馬藩「潛商論議」の背景」 『朝鮮學報』 150, 1994 참조.

데, 이는 대마도에 흉년이 들어 1斛의 쌀값이 白金 7, 8냥이 되기 때문에 금화와 바꾸어 이익을 보려고 한 것이다. 배에 탄 사람은 모두 장사치들이어서 법을 범하면서 장사하는 것이 이미 매우 나쁘다. 그런데 곤수와 변장들은 변경을 지키는 신하이고 맡은 일은 이웃 敵에 관계되는데도 商譯과 친밀하여 몰래 財貨를 통하였다. 국법으로 논하면 마땅히 중한 법에 처해야 할 것이다.<sup>80)</sup>

이 자료를 보면 사행을 따라 일본에 가서 행하는 밀무역에는 역관 뿐 아니라 상인, 나아가서 동래부 근처의 곤수와 변장과 같은 관료들도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마도에 흉년이 들어 쌀의 밀수출이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경우, 밀무역에 가담하는 범위가 늘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쌀 밀무역에는 변장 등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인삼을 밀무역할 때는 선창 바닥이나 봉진 물품을 넣어둔 상자에 섞어서 가져갔다. 그러므로 물품 수색을 피할 수 있지만, 쌀의 경우는 부피가 커서 규정 이상의, 밀무역을 목적으로 한 쌀은 변장의 눈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쌀 밀무역에는 변장의 묵인이나 동조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사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밀무역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물론 매년 사행마다 그 규모는 달랐다. 예를 들어 1717년의 경우 그 규모가 인삼 6냥 9전 8푼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또 1719년 통신사행을 이용해 밀무역을 하다 적발된 權興植과 吳萬昌은 각각 인삼 12근과 2근을 밀무역했다고 보고되었다.<sup>81)</sup> 그런데 이때 製述官으로 갔던 申維韓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權興式의 행장 가운데서 인삼 12근과 은 2,150냥, 황금 24만 냥을 발견하였고, 吳萬昌의 행장

80) 『肅宗實錄』卷 38, 肅宗 29년 3월 壬申

81) 『邊例集要』卷 14, 潛商路浮稅并錄, 庚子(肅宗 45) 정월

에서 인삼 10근을 찾아냈다고 하였다.<sup>82)</sup> 이 일기를 작성한 시점은 일행이 江戸에 있을 때였고, 따라서 황금 등은 인삼 등의 판매대금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때의 밀무역 규모는 상상외로 엄청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변례집요』에는 그렇게 큰 규모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엄청난 규모에 놀란 통신사들이 규모를 축소해서 보고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1721년 도해역관사들이 가져간 인삼도 최소 200근 이상이었다. 당시 조선과 일본의 1년간의 인삼 밀무역량이 약 500근 정도였다. 즉 雨森芳洲가 1721년 밀무역을 통해 일본에 들어오는 인삼 규모에 대해, 10년 전에는 300근 정도였지만 지금은 연간 500근 정도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전해인 1720년 江戸의 인삼가게에서 소매된 인삼이 1년동안 550근, 大板에서 4근, 京都에서 9근이었다.<sup>83)</sup> 이를 보면 일본과의 인삼 무역에서 밀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또 이렇게 대량의 인삼이 대마도까지 밀수출되기 위해서는 국내와 대마도를 연결하는 일정한 조직이 있어야 했다. 조선국내에서 조달단계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산지에서 인삼 상인의 손을 거쳐 역관들에게 넘겨질 때까지 많은 잠매행위가 이루어져야 했다.

따라서 역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밀무역은 역관뿐 아니라, 배후에 대규모 자금을 제공하는 자, 잠상, 그리고 대마도의 역인 등이 참여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1757년 11월에 발각된 사건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sup>84)</sup> 이 사건에는 서울에 사는 張行觀과 그의 숙부인 張璘維, 대구에 사는 洪宇鼎, 訓練都監 鑄錢監官 司空璘, 出使譯官 鄭守誠 등이 관련되어 있었다. 일본에 역관사로 나가는 정수

82) 『海遊錄』1719년(肅宗 45) 12월 7일(『海行摠載』卷 1)

83) 田代和生, 1994, 앞의 글

84) 『邊例集要』卷 14, 潛商路浮稅并錄, 丁丑(英祖 33) 11월

함의 지휘 하에, 장행관과 장유린이 인삼 밀매를 주선하였다. 이에 자본금은 주전감관인 사공린이 훈련도감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인삼 거래는 대구에 사는 홍우정이 담당하였다. 아마도 대구 약령시에서 인삼이 대규모 거래되었기 때문인 듯하며, 홍우정은 대구의 인삼상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사공린은 이외에도 동래부에 사는 정세장 등을 이용해 인삼 밀무역을 행하고 있었다.<sup>85)</sup> 이처럼 역관을 이용한 밀무역은 서울과 대구, 동래에 사는 상인, 역관, 그리고 경야문의 서리까지 참여해 각각 자본주와 중간 알선책, 거래 주선자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 (2) 민간의 밀무역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밀무역 행위는 왜관과 그 주변에서 행해지는 것이 많았다. 조일무역이 왜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교역품과 상인이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밀무역은 당시 왜관에 거주하던 일본인에게 日用의 생선, 과일, 채소, 쌀 등을 공급하기 위해, 매일 아침-정오에 왜관 守門 밖에 서는 장인 조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sup>86)</sup>

조시 때 왜인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은 草梁 주민이었다. 당시 초량 주민은 약 92호였는데, 여자들이 주로 일본인과 거래하였고, 남자들은 그들의 상품을 물화를 받아 다른 지역의 장시에 매매하러

85) 『邊例集要』卷 14, 潛商路浮稅并錄, 戊寅(英祖 34) 6월

86) 이하 조시와 관련된 서술은, 金東哲, 『조선 후기 倭館 開市貿易과 東萊商人』 『民族文化』21, 1998, 58~60쪽에 의거하였다.

가기도 하였다. 특히 초량 여자들과 일본인은 서로 丹骨 관계가 될 정도로 사이가 가까웠다.<sup>87)</sup> 양자 사이에는 서로 主人이 있어 물건을 매매하였다.<sup>88)</sup> 마치 客商과 旅客主人의 관계와 같은 단골을 맺었던 것이다. 조시에는 300-400리나 되는 먼 곳에서도 물건을 가져와 성황을 이루었다. 이제 조시는 어물, 채소, 소량의 미곡 등을 판매하는 시장이 아니라, 다량의 미곡·포물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변하여 갔다.<sup>89)</sup> 19세기 후반에는 朝市軍들이 50-60명이나 되었다. 상들은 조시꾼들과 결탁하여 무리를 지어 왜관 안을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아침에 들어갔다 해거름이 되어서야 나오곤 했다.<sup>90)</sup>

이처럼 조시를 통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지속적인 거래가 훗날 밀무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와 관련해서 등장한 것이 路浮稅였다. 노부세는 일본인이 밀무역의 납입을 전제로 하여, 혹은 그것을 촉진할 목적으로 조선측의 밀무역자에게 주는 융자이다. 노부세는 밀무역을 위한 자본의 대부분이었다.<sup>91)</sup> 상인들은 노부세를 받고 인삼이나 쌀 등 주요 물품을 밀수출하였다. 물론 조선인 상인 뿐 아니라 동래부 관리들이나 倭學譯官들도 노부세를 받았고, 밀무역에 종사하였다.<sup>92)</sup>

이렇게 노부세를 통한 밀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지속적인 접촉과 일정한 신용관계를 전제로 한다. 때문에 조시를 통한 조선인과 일본인의 지속적인 접촉이 노부세라는 관계를 맺게 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87) 『邊例集要』卷 9, 開市 附朝市(하-53쪽)

88) 權以鎭, 『有懷堂集』 권7, 上廟堂別紙

89) 金文植, 「18세기 전반 權以鎭의 對外認識」, 『道山學報』 4, 1995, 140쪽.

90) 『日省錄』 高宗 4년 7월 28일

91) 長正統, 「路浮稅考」, 『朝鮮學報』 58, 1971

92) 金東哲, 1995, 앞의 글, 260쪽

생각된다.

그리고 조선상인이 노부세를 받아 밀무역을 행할 경우, 아무래도 그 장소가 주로 왜관이었기 때문에 역관이나 왜관의 관리 및 하리들의 공조내지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692년(肅宗 18)의 쌀 밀수출 사건을 보자. 이때 부산 草梁에 거주하던 孫琦, 金從日, 秋善奉, 金哲石, 朴正信 등이 일본인 잠상 太兵衛 등으로부터 노부세를 받고 쌀 50석을 사서 왜관에서 잠매를 하려다 발각되었다. 이때 손기 등의 공초에 의하면 色吏 裴得吉, 왜관 守門軍官 趙仁萬, 安有貞, 小通事 金芑金, 朴成俊, 崔貴同 등 6인이 손기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도와주었다고 한다. 또 박정신의 공초에 의하면 소통사 李益成, 金哲石, 金海云이 자신들 4인에게 노부세를 주었다고 하였다.<sup>93)</sup> 다시 말해 조선 상인이 노부세를 받을 때 역관이 주선하였고, 또 왜관의 하리와 역관이 밀무역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다.

노부세와 상관없이 왜관에서 밀무역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1681년(肅宗 7) 동래부 상인 趙必萬이 米豆 17석을 싣고 왜관에 출입하여 은화를 사오다 적발되어 호시되었다.<sup>94)</sup> 1688년(肅宗 14)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십 석의 쌀을 왜관에서 잠매하다가 체포되었다.<sup>95)</sup> 1702년에는 동래부 사람 崔今善이 쌀 198석을 팔매하려고 배에 싣고 왜관에 갔는데, 都將 千鶯立이 115석으로 속여 보고하고 잠상을 하려다 체포되었다.<sup>96)</sup>

이렇게 왜관에서 밀무역이 행해질 수 있었던 데는 동래부가 수세하기 위해 이를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호남의 영읍들도 군기수보를 벌미로 쌀을 싣고 와서 팔고 은을 사가는 일이 잦았으며,

93) 金東哲, 1995, 앞의 글, 252-253쪽

94) 『邊例集要』卷 14, 潛商路浮稅并錄, 辛酉(肅宗 7) 7월, 8월

95) 『邊例集要』卷 14, 潛商路浮稅并錄, 戊午(肅宗 14) 11월

96) 『邊例集要』卷 14, 潛商路浮稅并錄, 壬午(肅宗 28) 6월, 7월, 11월

거래량은 걸핏하면 수백 석에 이를 정도였다. 동래부에서도 사상과 결탁하여 밀무역을 하는 자들이 많았다. 동래부로서는 자체의 재정 수입을 위해서는 밀무역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동래왜관의 상업세 수입은 호조와 동래부가 양분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호조가 상업세 수입을 독점하게 되자,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하게 되었다.<sup>97)</sup>

이와 같이 왜관을 무대로 한 밀무역이 성행하자 조선 정부는 이를 금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었다. 왜관 조시 때 각營業邑과 私商의 배가 미곡을 매매하거나, 일본인이 가져온 상품을 포구에서 잠상하는 자는 모두 장 100대에 徒3년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sup>98)</sup> 그리고 밀무역을 하다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하는 극형주의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1653년(효종 4) ‘禁散入各房約條’, 1683년(肅宗 9) ‘癸亥約條’ 체결, 1691년(肅宗 17) ‘東萊商賈定額節目’ 등을 제정하여, 밀무역을 방지하고 공무역에서 사무역으로 대일무역의 중심을 옮기는 조치를 병행하였다.<sup>99)</sup>

조선의 인삼생산 부진, 중국과 일본의 직거래로 인한 생사유통의 부진, 1752-53년 이후 은 수입 단절 등의 요인에 의해 조일무역은 18세기 중엽 이후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추세였다. 이에 따라 사무역품도 19세기 들어서면 牛皮, 牛角爪, 黃岑, 煎海鼠 등 4품목이 수출품의 중심이 되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피였다.<sup>100)</sup> 반면 인삼은 이전에 비해 그 양이 줄어들었다.<sup>101)</sup>

97) 金東哲, 1995, 앞의 글, 254쪽

98) 『續大典』 刑典, 禁制

99) 金東哲, 1995, 앞의 글, 248쪽

100) 金東哲, 「19세기 牛皮貿易과 東萊商人」, 『韓國文化研究』6, 1993, 399-400쪽

101) 鄭成一, 「開港 직전 對日交易品の 특징(1874~1875)」,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上, 1992

이와 같은 조일무역의 전반적인 쇠퇴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의한 조일간의 밀무역은 상당히 이루어졌다. 당시 인삼밀수출이 주는 이익은 매우 컸다. 서울에서 70냥에 구입한 인삼이 동경에 가면 300냥에 거래되었다.<sup>102)</sup> 삼상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관에서 상당한 가격에 인삼을 전매하였고, 그 양도 매우 많았던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魚探을 핑계대로 일본인들은 飄風을 빙자하여 몰래 바다에서 배를 띄워놓고 인삼을 밀매하였다.<sup>103)</sup> 그것은 일본측의 사정도 작용하였다. 조선을 왕래하는 대마도 사람들이 금령을 위반해 사형에 처해지는 자가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형 때문에 밀무역을 그만두지는 않았다. 갈수록 잠상이 증가했다. 그것은 인삼 가격이 오르면서 밀무역으로 얻을 수 이윤이 증대했기 때문이었다. 대마도는 식량이 부족한 가난한 곳으로, 법을 어기면서 잠상을 행하는 자가 많은 것은 당연한 추세였던 것이다.<sup>104)</sup>

대마도 상인들은 밤에 부산 초량 근처에 와서 조선 상인들과 매매하는 방식으로 밀무역을 행하였다.<sup>105)</sup> 또 1813년 1월 동래상인 金處淳의 等狀에 의하면, 밀무역 때문에 개시무역에 참가하는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하였고, 이에 정부에서는 牛皮와 牛角의 매매는 동래상인에게만 허락하고 다른 사상의 매매는 엄금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sup>106)</sup>

그러나 사상에 의한 밀무역이 줄어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1850년과 1861년, 1862년 밀무역 사건을 보

102) 『承政院日記』 639책, 英祖 3년 5월 25일

103) 『承政院日記』 793책, 英祖 11년 正月 4일

104) 田代和生, 「渡海譯官使の密貿易-對馬藩『潛商論議』の背景」, 『朝鮮學報』 150, 1994

105) 『分類紀事大綱』 附錄第二, 「崔李潛商事」

106) 『慶尙道東萊府商賈等掾弊節目』(『各司謄錄』50); 김동철, 앞의 글, 422쪽

면, 이를 잘 알 수 있다.<sup>107)</sup>

1850년에 朴聖坤이라는 왜관 문지기 對馬藩의 水夫 永作과 모의 하여 일본으로부터 무기를 밀수하였다. 이처럼 최일선에서 밀무역에 직접 개입한 사람들은 거의 선원인 水夫였다. 1861년에도 수부인 芳五郎이 물건을 조선측으로부터 인계받은 그날 밤 ‘조선인의 배’를 이용하여 밀수품을 운반했다. 이 배의 주인인 조선인은 芳五郎으로부터 충분한 대가를 받고 밀수품을 운반해 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1862년에는 正作이라는 水夫가 나무열매기름 8말을 싣고 와서 부선의 한서방이라는 사람에게 1말에 3관문씩 받고 팔았다고 하였다. 또 왜관에서 대마도로 귀국할 때는 배를 대놓고 어둠을 기다렸다가 조선인 3명의 도움을 받아 밀수품을 배에 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62년 2월 초쯤 正作은 동백기름 8말을 마련해 두었다가, 2월 15일 출발해 해질 무렵 왜관에 가지고 갔다. 그곳에서 이미 협의를 해두었던 한서방이라는 사람에게 동백기름 8말을 맡기고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는데, 1말에 3관문씩에 팔아주기로 약속하였다. 3월 14일 동백기름의 대금으로 布海苔 12가마니, 牛爪 19가마니, 尾人蔘 12斤들이 1가마니 등 총 32가마니를 받기로 하였다. 3월 20일 “바츠허”에서 조선인의 도움을 받아 배에 옮겨 싣고 다음날 왜관을 출발하여 22일밤 鹿見浦에 입항하였다.

이처럼 적발된 밀무역 사건들은 모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두 사건 모두 대마도의 수부들이 조선인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서 가져온 밀수품을 조선에서 처분하여 다른 물건을 조달해 가고 있었으며, 심지어 왜관 주변과 대마도 근처에서는 선박을 이용

---

107) 이하의 밀무역 사건에 대한 서술은 鄭成一, 「1861~62년 對馬藩의 密貿易事件 處理過程」 『韓日關係史研究』 2, 1994에 의거하였다.

해 밀수품을 운반할 정도였다. 이러한 행위는 양국의 민간인 사이에 사전에 충분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일이었다. 특허상인인 동래상인(도중)들이 왜관 쪽에 밀무역 단속을 요청하는 것도 민간인의 밀무역행위에 의해 자신들의 무역독점 이익이 침해받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8세기 후반 이후 조일무역의 쇠퇴와 상관없이 민간에서는 밀무역이 성행하였으며, 그 규모나 조직 등에서 훨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 맺음말

조선후기 商人들은 무역을 통한 이윤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홍삼과 같은 경쟁력 있는 상품도 개발하고, 산간의 교통로와 해로를 개발하여 중국이나 일본 상인과 교역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조선 상인들은 일본과 달리 수입품의 국산화를 시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대청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백사나 모자와 같은 상품을 국산화하고 이를 토대로 더 큰 이윤을 축적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정부의 정책도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랐다. 삼국 모두 초기에는 쇄국정책을 폈으나, 18세기 들어서면서 중국과 일본은 일정 정도 융통성을 보였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무역이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국내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책으로 일관하였다. 무역 억제책에는 다음과 같은 무역관이 전제되어 있었다. 즉 英祖는 무역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생산

된 물건은 우리나라에 있어야만 한다. 조청간에 말썽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둘 사이에 교역을 하기 때문이다. 무역은 곧 漢唐年間에 사치를 조장하였다고 『史記』에서 이를 비난하였다.”고 하였다.<sup>108)</sup> 무역은 국내적으로 사치를 조장하고 외교 분쟁을 일으킬 뿐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海防이라는 명분하에 생계를 위한 어업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짚은 어채는 금지하였고<sup>109)</sup> 난바다로 나가서 조업하는 것도 금지하였다.<sup>110)</sup> 바다로 나가는 무역 상인이 해외 세력과 결탁하고 국가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특히 막기 어렵다. 그래서 해상 무역을 강하게 제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어업과 선운업의 발전에도 장애가 되었다. 결국 조선 정부의 정책과 무역관은 해상 무역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을 뿐 아니라, 어업과 선운업의 발전에도 장애가 되었던 것이다.

---

108) 『備邊司謄錄』 82책, 영조 3년 11월 13일

109) 『備邊司謄錄』 47책, 숙종 19년 11월 13일

110) 『備邊司謄錄』 81책, 영조 3년 6월 13일



# VI. 근대 해양 네트워크의 작동과 상업 발전

(김윤희, 공동연구원)

머리말

1. 해양유통네트워크의 형성
2. 韓・淸・日 상품유통과 거래방식
  - (1) 거류지 상업발달과 외환거래의 확대
  - (2) 삼국상인 간 신용거래의 확대
3. 해양유통네트워크와 국내상업-韓商의 성장조건

맺음말



## 머리말

1894년 이후 인천은 두개의 상품유통망을 연결하는 지위를 갖고 있었다. 하나는 나가사키, 오사카 등의 일본 지역과 상하이, 지푸 등의 중국 지역과의 해외유통망이었고, 다른 하나는 평양, 군산, 목포 등을 연결하는 서해안 유통망이었다. 해외무역과 국내무역의 중심지로서 인천항의 성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한 소비시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1894년 이후 인천항은 총 무역액의 60%를 점하는 최대무역항이면서 수입상품의 공급지로서 기능했다.

인천항에 대한 기존 연구는 개항기 무역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다루어져왔다. 1894년 이후 인천항을 중심으로 전개된 대청, 대일 무역에 대한 기존 연구는 米綿교환 또는 穀綿교환의 무역 구조가 농업과 織布생산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sup>1)</sup> 대외무역이 시장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sup>2)</sup> 그 중 최유길은 무역규모의 확대로 국내의 상품 구매력이 증진되고 그 결과 국내상품 유통량도 급속히 증가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하원호는 개항장 곡물수출구조를 고찰하면서 인천항 곡물수

- 
- 1) 村上勝彦, 1975, 「植民地」, 『日本産業革命の研究』 下, 東京大出版會; 吉野誠, 1979, 「李朝末期における綿製品輸入の展開」, 『朝鮮歴史論集』 下; 金敬泰, 1986, 「大韓帝國時期的 米穀通商構造; 帝國主義形成期の 米穀問題」, 『大韓帝國研 米穀通商研究』 4; 權泰禧, 1989, 『韓國近代綿業史研究』, 일조각; 崔泰鎬, 1992, 「開港期の 貿易構造와 貿易物價에 관한 研究 -開港期の 穀・綿交易體制를中心으로」, 『擇窩 許善道선생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河元鎬, 1995, 「開港期 서울의 穀物流通構造」, 『鄉土서울』 第55號.
- 2) 崔柳吉, 1973, 「李朝開港直後の 朝日貿易の 動向」, 『아세아연구』 15-3; 이현창, 2000, 「1882~1910년간 서울시장의 변동」, 『서울상업사연구』, 서울학연구소.

출로 인해 서울의 곡물수족현상이 발생했으며, 인천항 곡물가격이 일본의 곡물가격과 근접해가고 있었음을 밝혔다. 이현창은 인천항과 서울과의 상품 유통 상황을 고찰하여 1905년까지 외국상인의 상권침탈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국내유통도 증가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가 외상의 상권침탈에 대해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 연구를 통해 인천항의 무역구조는 수입무역 비중이 높게 형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으며, 인천항 무역이 곡물수출과 면제품 수입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인천항 해외무역과 국내무역 간의 관련성을 고찰하는데 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또한 인천항 수입상품구성의 변화와 환율변동의 요인과 과정 그리고 이러한 요인이 거류지와 국내 시장을 무대로 활동했던 韓商의 영업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 글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해외유통네트워크와 국내유통네트워크의 상호관련성을 상품구성의 변화, 환율변동과 자금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인천항 韓商의 성장조건이 어떻게 창출되고 있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천항 유통구조의 다양한 측면을 발견함과 동시에 청일의 경제침탈에 대한 韓商의 대응이라는 단선적 이해의 틀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1. 해양유통네트워크의 형성

인천이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외무역망을 형성했던 배경에는 1888년 중국 초상국의 정기항로가 개설되었던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되면서 인천항의 해외무역 상황은 나가사키를 통한 해외상품의 수입과 오사카 등지로의 곡물수출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었다. 인천항 중국 상인 역시 상하이시장과 연결되는 직항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나가사키를 경유하여 영국산 옥양목 등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이로 인해 1889년까지 인천항 수입액 중 대일수입액은 1100달러였던 데 비해 대청 수입액은 700달러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청의 招商局이 袁世凱와 在인천 淸商들의 직항로 개설 요구를 수용하여, 상하이-지부-인천을 연결하는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상황이 변화되었다. 1890년부터 1894년까지 대청 수입액이 대일 수입액을 앞지르기 시작했고,<sup>3)</sup> 1890년에서 1893년까지 인천항 대일무역은 흑자를 기록했다.<sup>4)</sup> 이는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의 풍작으로 미곡수출이 증대되었던 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 대일수입이 대청수입에 압도되는 경향과도 맞물려 있었다.

상하이-인천 간 직항의 개설은 인천항 수입상품의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영국산 옥양목 수입경쟁에서 淸商이 日商을 누르고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고, 日商은 옥양목 수입보다는 자국산 면제품을 수입하여 淸商과의 경쟁을 피하려는 경향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옥양목 수입 경유지였던 나가사키와 인천항 간의 수입무역액이 점차 줄어

3) 古田和子, 2000, 『上海ネットワークと近代東アジア』, 東京大出版會, 92쪽.

4) 오두환, 1991, 『韓國近代貨幣史研究』, 한국연구원, 44쪽.

들고 대신 면공업지대였던 오사카와의 무역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인천항과 오사카 간 무역이 확대되면서 인천항 수입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오사카에 본점을 두고 第十八은행의 지점이 1890년에 설립되었다.<sup>5)</sup>

1890년 이후 인천-상하이, 인천-오사카를 연결하는 상품유통망의 형성은 1894년 청일전쟁으로 상하이와의 정기항로가 일시적으로 두절되기는 했지만, 이후 상하이-인천 간 수입무역을 크게 증가하면서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1894년에서 1905년까지 인천항 무역구조는 대일 적자폭이 크게 증가했던 특징을 갖고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일 무역적자 폭과 달리 대청 무역적자 폭은 일방적인 수입무역에 의해 발생했다. 대청수출액 증감을 결정했던 홍삼수출을 제외하면 대청수출에서 한국산수출액은 매우 저조했고, 대일 외국산 재수출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청 외국산 재수출액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1904년 러일전쟁 이후 대청수출에서 외국산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산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일방적인 수입무역과 외국산수출 비중이 높은 인천항 대청무역구조는 인천항 환율변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1890년 이후 인천항의 통화 흐름은 대청 적자의 심화에 따라 청으로의 금은지금의 유출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개항 이후 인천항에는 일본은화와 지폐(은태화권)가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화는 관세납부용으로 제일은행에 예치되거나 나가사키 또는 상하이 등지로 수송되어 淸商이 수입상품을 결제하는데 사용되었고,

---

5) 1892년에는 나가사키에 본점을 두고 있었던 第五十八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었지만, 은행영업액에서는 第十八은행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高嶋雅明, 1978, 『朝鮮における植民地金融史研究』, 大原新生社, 41-44쪽).

인천의 거류지에 잔류하는 일본 은화의 양이 많지 않았다. 반면, 1886년까지 일본 국내에서도 불환 지폐적 성격을 갖고 있었던 일본 지폐(은태환권)는 인천항 일본인간 또는 일본인과 일본은행 간 거래 지폐로서 일본 円銀에 비해 거류지에 잔류하는 양이 많았다.

이로 인해 인천항 日商은 淸商에 비해 일본지폐(은태화권)와 한전(엽전, 1894년 이후에는 백동화) 간 환율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淸商은 금은지금 또는 은화를 매집함으로써 환율변동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조건을 갖고 있었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897년 일본이 금본위제를 실시하면서 역전되기 시작했다. 한·청·일 삼국이 동일한 은화가치체계를 유지했던 상황에서 이제까지 인천항 수입무역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자금 흐름을 갖고 있었던 淸商은 상하이 금은시세의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인천항 수입무역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淸商의 활동으로 인천항 환율과 상하이환율 변동이 연동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1897년 이전 청과 조선 그리고 일본이 동일한 은화체계를 갖고 있는 가운데 전개된 해외무역은 인천-상하이 그리고 인천-나가사키·오사카를 연결하는 유통망이 밀접하게 연결되지는 않았다. 또한 영국산 옥양목 등 중계무역적 성격의 수입무역에서 淸·日商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인천항에서 형성된 두개 해외무역망은 각기 淸·日商의 수입상품 루트로서 기능하고 있었다.<sup>7)</sup> 그러나 1897년 일본이 금본위제를 실시하고 삼국의 통화체계가 각기 상이하게 형성되면서 두개의 유통망은 인천항 일본지폐의 유통

6) 김윤희, 2003. 『일본의 금본위제실시(1897년)과 서울 지역 화폐시장의 변동』 『한국사학보』, 189~196

7) 古田和子, 2000, 『上海ネットワークと近代東アジア』, 東京大出版會, 91-124쪽.

루트로서 긴밀하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즉 은과 동화체계의 청과 금  
태환권 통화체계의 일본의 자금 흐름을 연결하는 기능으로서 금태  
화권과 은과 동화 모두가 유통되는 인천항이 상하이-오사카 무역의  
확대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淸・日商 자금흐름을 매개하는 기능을  
갖기 시작했다.

인천항에서 일방적으로 수입무역을 전개했던 淸商은 상하이시장  
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했는데, 상하이시장은 1900년 이후 일본 면제  
품 특히 오사카 지역 방적사가 다량 수입되는 지역으로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다.<sup>8)</sup> 여기에 국제은화시세의 급격한  
하락으로 상하이는 금본위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조건  
이 악화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은 금본위제 실시 이후 정화를 확보  
하기 위해 인천, 서울 지역으로부터 다량의 금을 매집했다. 금은 거  
류지에서 일본지폐로 매집되었고, 인천과 서울에서 금의 수출이 증  
대될수록 일본지폐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었다.

반면 인천항의 백동화와 일본지폐 간 환율은 상하이의 영국 파운  
드와 은화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었다. 즉 상하이의 은화  
가 영국 파운드에 비해 1900년부터 60%의 하락률을 기록하는데<sup>9)</sup>  
비해 인천항은 1903년에 와서야 60%의 하락률을 기록했다.<sup>10)</sup> 인천

---

8) 중국 면제품시장에서 종래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은 인도산 면제품이었다. 그러  
나 1890년부터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면제품 공업이 발달하면서 일본은 중국시  
장에 진출을 시도했고, 인도산 면제품과 가격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면공업 노동  
자의 저임금정책을 추진했다. 면공업 노동자 임금에서 인도에 비해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 임금이 유지되었던 데는 역시 조선에서 수출된 곡물의 역할이 컸다.  
이로 인해 일본은 1900년부터 인도산의 경쟁에서 점차 우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1894년에서 1905년까지 일본에서 생산된 방적사의 90% 이상이 중국에 수출되었  
다(Peter duus, 1995, *The Abacus and Sword -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45-2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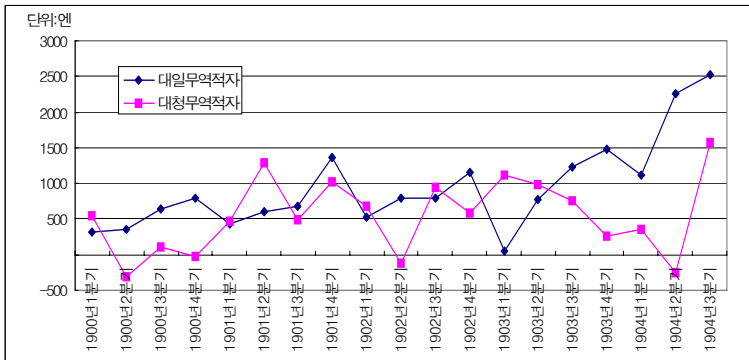
9) 浜下武志, 1989, 『中國近代經濟史研究』, 東京大學教東洋文化研究所, 136쪽.

10) 『通商彙纂』 「韓國事情」(明治37년) 제70호.

항의 금은시세격차가 상하이시장에 비해 작았기 때문에 淸商은 상하이환율하락으로 수입상품의 가격조건이 악화되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인천항에 상품을 판매하여 일본지폐를 매집했다. 淸商은 인천항에서 매집한 일본지폐를 상하이시장에 들여올 일본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다시 오사카와 나가사키로 수송하거나, 상하이시장으로 수송하여 수입상품결제에 사용했다.<sup>11)</sup> 이러한 淸商의 자금흐름은 인천항 수입무역과 환율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림1> 1900~1904년 인천항 대청·일 무역수지 변동

(단위:엔)



<출전> 『通商彙纂』 해당년도 계보.

1900년에서 1904년까지 인천항 무역수지 변동을 보면 분기별로 대청일 무역수지의 변동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계절적 수입상품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기별 수지변화는 환율변동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인천항 백동화 단기 변동액은 분기별로 일본지폐 100원에 대한 백동화시세 변동은 10원 미만에서 40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극심했

11) 『通商彙纂』 『明治36年中仁川第2季貿易』 개제32호.

다.<sup>12)</sup> 1900년 수원남문의 미가가 석당 11원 80전이었던 것과 비교하자면, 10원의 변동 폭은 매우 큰 것이었다.<sup>13)</sup> 그러나 1901년 4분기부터는 최저 변동 폭도 20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그 후 40원 이상을 상회하는 극심한 변동 폭을 고려한다면 30원 미만의 변동은 그 이상의 변동을 기록했던 시기와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이었다.<sup>14)</sup>

인천항 환율변동과 무역상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천항 배후지 시장의 풍년이 예상되면 인천항은 미곡거래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백동화의 수요도 점차 증대되는 경향이 있었다.<sup>15)</sup> 인천의 백동화비가 변동은 서울에 비해 곡물수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즉 日商의 곡물매입이 증가하면 백동화 수요가 증가하여 백동화의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 인해 극심한 변동폭을 기록하는 중에도 1903년 1분기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30원 정도로 안정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1903년 1분기 대청·일 수출입액이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대청 수입액이 급증하였다. 1903년 1분기 대청 수입액이 1902년 4분기에 비해 59만 여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동화 시세 변동 폭이 비교적 적었던 것은 日商의 한전 수요와 淸商의 일본지폐 수요가 동시에 증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흉작 뒤에 맞은 1902년 풍작으로 미곡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와 동시에 오사카 미가의 상승으로 인천항 미곡수출이 크게 증대하였다. 日商의 미곡 매집

12) 『通商彙纂』 「韓國事情」(明治37년) 제70호.

13) 『通商彙纂』 「韓國京畿忠淸兩道農商況視察復命書」(明治33년) 제187호.

14) 백동화시세 변동에서 20원 미만을 상대적 안정으로 보는 이유는 『通商彙纂』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 거류지 시세의 변동에서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서술된 시기는 변동폭이 20원을 넘지 않는 경우였다.

15) 『通商彙纂』 「仁川明治35年第3季貿易」 제257호; 「京城明治35年第3季貿易」 제253호.

으로 한전의 수요가 발생함과 동시에 淸商은 상하이 은화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 일본지폐를 매집하려 하였다. 이러한 양자의 이해 속에서 ‘백동화시세가 순조롭게 유지될’ 수 있었다.<sup>16)</sup> 그러나 이러한 안정세는 변동 폭이 컸던 시기에 비해 변동 폭이 적었던 상황일 뿐이었다.

이와 반대로 시세 변동 폭이 컸던 시기는 1900년, 1901년, 1902년, 1903년의 4분기였다. 매년 4분기에 시세 변동 폭이 컸던 이유는 미곡수출과 淸商의 귀국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인천항의 경우 대일 곡물 수출은 10월과 11월 사이에 절정기에 달하는 반면 淸商은 12월과 1월에 본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대량의 백동화를 판매하였다.<sup>17)</sup> 미곡수출의 증대는 한전 수요를 확대하기 때문에 한전시세가 일반적으로 등귀하는 경향이 있었다. 淸商은 매년 1월에 귀국하기 위해 12월이면 소지한 한전을 방매하여 일본지폐로 교환했기 때문에 백동화의 가치하락이 발생했다. 淸商이 백동화를 방매하고 일본지폐를 구입하면, 백동화 공급량이 증대되고 일본지폐 유통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백동화비가는 하락하면서도 크게 변동하는 것이었다.

한편 1903년 하반기에는 인천항의 백동화 하락률이 상하이 은화 하락율과 거의 비슷해졌는데 여기에는 淸商의 활동과 동시에 국내 외적 변동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sup>18)</sup> 그 원인은 첫째, ‘작년 이래 런던 銀시세가 날로 추락하여 …본 분기(1903년 1분기)에 이르러서 극점에 달하’였고 이로 인해 淸商은 상하이로부터 다량의 상품을 인천으로 수송하여 상하이와 인천 환율차이에서 오는 이익을 얻

16) 『通商彙纂』「仁川明治36年第1季貿易」 개제32호; 「京城明治36年第1季貿易」 개제33호

17) 『通商彙纂』「在韓淸國人貿易上の勢力」(明治33年) 제165호.

18) 『通商彙纂』「仁川明治36年中第1系貿易」 개제32호.

으려고 했다. 정부가 안남미 및 물건 구입대금의 지불로 한화를 판매하고 일본지폐를 매입한 것과 중앙은행 설립 후에 백동화의 통용을 폐지하고 시가에 의해 교환을 행하겠다고 한 것 때문이었다. 셋째, 풍작이 예상되면서 日商이 수출 목적으로 저장했던 미곡을 방매하여 얻은 한화를 일본지폐로 교환하였기 때문이었다. 넷째, 러일전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정치적 요인이 겹치면서 1903년 백동화 가격 변동은 하락의 경향 속에서 변동 폭도 매우 컸다.

이처럼 상하이와 인천 환율시장 간에는 단기 변동의 시차가 존재하였지만, 상하이은화시세 하락-대청수입액증가-백동화 공급량 증대(일본지폐 수요량 증대)-백동화 가격하락으로 연결되어 연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러일전쟁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하나는 1903년 하반기 이후 상하이와 인천 간 환율격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러일전쟁 이후 만주 지역으로 일본상품의 수출이 증대되어 청상이 인천항에 수입된 일본상품을 이 지역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로 인해 1904년 5월 이후 상하이-인천 간 무역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항 외국상품의 대청수출이 급증하기 시작했다.<sup>19)</sup>

인천항에서 형성된 인천-상하이, 인천-나가사키·오사카 간 유통망은 1897년 일본이 금본위제를 실시하면서 일본지폐와 淸商의 자금흐름에서 긴밀하게 접합되어 갔다. 여기에 상하이-오사카 간 무역의 확대는 淸商의 자금흐름이 인천항을 매개로하여 진행되는 배경이 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인천항은 일본지폐의 유통매개지로서

19) 『通商彙纂』 『仁川37年第3季貿易』 제38호.

가능하면서 상하이-인천-오사카(나가사키)를 연결하는 유통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망은 인천항의 금융시장이 상하이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도 다른 한편 일본지폐는 다시 일본으로 환류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루트가 되었다. 이로 인해 인천항에서는 무역액이 급증하고, 외환거래시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본지폐가 한·청·일 삼국 간 무역통화의 지위를 획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해외유통망의 형성은 거류지 삼국 상인간 신용거래의 확대를 가져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수입상품의 구성이 다양화되어 거류지 삼국 상인 간 거래가 확대되는 한편, 극심한 환율변동에서 오는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삼국 상인 간 외환거래가 이전에 비해 더욱 촉진되었다.

## 2. 韓 · 淸 · 日 상품유통과 거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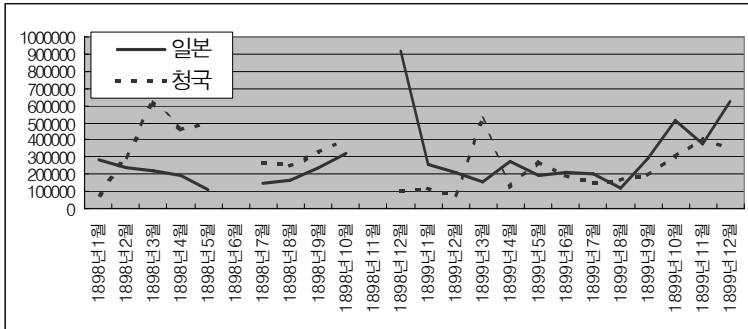
### (1) 거류지 상업발달과 외환거래의 확대

1890년 인천-상하이 직항로의 개설로 옥양목수입경쟁에서 淸商이 日商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日商은 면제품공업의 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자국산 면제품 수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수입상품의 구성이 다양화되면서 동일 상품의 판매경쟁에서 오는 배제적 관계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대청일 수입상품이 각기 다른 소비시장을 분점하면서 인천항을 중심으로 삼국 상인 간 상호거래

가 증대되었는데 이는 환차손에 대비한 환전거래의 확대와 함께 인천항 거류지 삼국 상인 간 신용거래를 확대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림2> 1898-1899년 인천항 대청·일 수입액변동

(단위:엔)



<출전> 『通商彙纂』 해당년도 월보.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청·대일 수입액의 증감 폭이 매우 큰 것은 對청·일 수입상품이 계절적 수요에 따라 각기 달랐기 때문이었다.<sup>20)</sup> 계절적 수요 변화는 1905년까지 큰 변동 없이 매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sup>21)</sup> 그리고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0년 이후 인천항 상품 구성은 면제품 수입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잡품의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 『通商彙纂』『仁川明治36年中第1季貿易』 개제32호.

21) 1900년을 전후하여 인천항 수입상황 보고 방식이 변화되었다. 먼저 월보에서 계보로 바뀌었으며, 수입상품 통계도 1900년 이전에는 각 단일 상품별통계가 나오는 반면, 1900년 이후에는 상품군별 통계를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1900년 이전 상품별 통계는 1900년 상품군통계에 묶는 데는 많은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각기 시기를 나누어 그림과 통계를 제시했다.

<표1> 인천항 대청·일 수입상품의 구성 변화

(단위 : %)

| 시기       | 면제품  |        | 모제품 |        | 견직물류 |        | 잡직물  |        | 금속류 |        | 잡품   |        |
|----------|------|--------|-----|--------|------|--------|------|--------|-----|--------|------|--------|
| 1901년1분기 |      |        |     |        |      |        |      |        |     |        |      |        |
| 1901년2분기 | 34.8 | (35.8) | 0.9 | (65.8) | 15.5 | (97.2) | 11.8 | (97.1) | 4.8 | (26.1) | 32.2 | (30.0) |
| 1901년3분기 |      |        |     |        |      |        |      |        |     |        |      |        |
| 1901년4분기 | 40.5 | (36.8) | 2.9 | (9.9)  | 9.7  | (94.8) | 0.1  | (40.0) | 3.8 | (21.4) | 42.9 | (63.9) |
| 1902년1분기 | 25.1 | (80.9) | 0.5 | (44.6) | 13.3 | (94.7) | 8.8  | (99.8) | 4.7 | (16.9) | 47.5 | (13.7) |
| 1902년2분기 | 20.3 | (55.3) | 0.6 | (66.7) | 9.8  | (96.8) | 14.7 | (99.5) | 2.8 | (51.1) | 51.9 | (52.0) |
| 1902년3분기 | 50.5 | (58.1) | 1.8 | (50.4) | 6.9  | (98.1) | 1.2  | (95.9) | 3.1 | (40.3) | 36.4 | (35.5) |
| 1902년4분기 | 50.5 | (25.2) | 0.6 | (27.6) | 5.4  | (92.0) | 0.2  | (10.9) | 2.0 | (38.0) | 41.2 | (15.2) |
| 1903년1분기 | 46.3 | (59.2) | 0.4 | (43.2) | 9.6  | (98.4) | 7.1  | (99.6) | 2.7 | (30.5) | 33.8 | (30.1) |
| 1903년2분기 | 27.6 | (36.4) | 0.5 | (52.9) | 7.0  | (96.4) | 13.0 | (99.4) | 3.8 | (31.0) | 48.2 | (48.0) |
| 1903년3분기 | 25.9 | (26.7) | 0.5 | (53.6) | 4.9  | (96.8) | 2.4  | (97.2) | 4.2 | (23.7) | 62.1 | (82.1) |
| 1903년4분기 | 38.4 | (39.4) | 0.9 | (49.5) | 5.7  | (93.2) | 0.1  | (35.3) | 3.0 | (19.9) | 52.0 | (35.6) |
| 1904년1분기 | 37.0 | (35.5) | 0.3 | (23.8) | 4.2  | (93.3) | 0.4  | (94.2) | 2.7 | (7.2)  | 55.3 | (10.6) |
| 1904년2분기 | 17.9 | (35.6) | 0.3 | (12.7) | 5.0  | (96.6) | 6.7  | (95.8) | 2.3 | (17.8) | 67.7 | (7.6)  |
| 1904년3분기 | 32.8 | (63.0) | 0.7 | (51.8) | 4.9  | (92.7) | 3.8  | (96.0) | 2.2 | (28.7) | 55.6 | (22.9) |
| 1904년4분기 | 36.9 | (54.7) | 0.7 | (32.0) | 7.3  | (86.0) | 0.2  | (16.1) | 1.9 | (14.2) | 53.1 | (19.5) |
| 1905년1분기 | 38.2 | (56.4) | 0.4 | (49.5) | 8.8  | (95.2) | 5.1  | (97.7) | 8.0 | (76.4) | 39.4 | (23.7) |
| 1905년2분기 | 17.0 | (8.8)  | 1.0 | (30.3) | 4.8  | (89.8) | 13.4 | (98.0) | 5.2 | (7.9)  | 58.7 | (13.6) |
| 1905년3분기 | 27.6 | (46.9) | 1.1 | (26.6) | 3.4  | (92.2) | 7.0  | (95.0) | 2.4 | (17.7) | 58.4 | (12.2) |
| 1905년4분기 | 41.2 | (38.9) | 1.1 | (38.3) | 3.6  | (88.4) | 0.2  | (20.1) | 1.2 | (5.2)  | 52.7 | (14.8) |

<출전> 『通商彙纂』 해당 연도 季報

- 주) 1. 수입상품 비중은 대청·일 수입액을 100으로 한 비중  
 2. ( )는 대청·일 수입액에 대한 대청수입액의 비중

면제품은 옥양목, 씨이팅 등 광폭면포(金巾), 일본 木綿, 夏布 그리고 방적사 등이었다. 서양산 광폭면포(洋金巾)는 1894년 이전 대청·대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점차 일본 면직업의 발전으로 일본산 광폭면포(和金巾)가 수입되어 면제품의 수입상품에 변화가 생겼다.<sup>22)</sup>

서양산 광폭면포(洋金巾)는 주로 대청 수입으로 상류층의 소비품

22) 洋金巾은 영국산 옥양목을 지칭하는 용어만은 아니었다. 1894년 이후에는 영국산, 인도산, 미국산 씨이팅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기계제 면제품으로 옷감의 폭이 토포에 2배 정도 넓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金巾이라는 용어대신 광폭면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洋金巾은 서양산 광폭면포, 和金巾은 일본산 광폭면포라고 사용했다.

이었고, 일본산 광폭면포(和金巾)는 대일 수입품으로 중류층의 소비품이었다. 방적사는 일본산 방적사가 수입되기 시작하여 日商이 취급하는 상품 중 예약 매입이 될 정도로 잘 팔리는 상품이었다.<sup>23)</sup> 방적사 판매 호황의 원인은 아직까지 청 시장에서는 일본산 방적사가 인도산에 비해 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으로의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방적사의 가격도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sup>24)</sup> 일본산 소폭 면포인 木綿은 수입량이 다른 면제품에 비해 크게 확대되지 않았지만, 하류 소비제품으로서 日商에 의해 수입 되었다.<sup>25)</sup> 그런데 1900년 이후에는 일본산 방적사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대신 목면의 비중이 높아 졌다. 이는 일본 목면과 방적사가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목면은 오사카 지방에서 조선시장만을 위해 소규모의 공장이 생산하는 면제품으로 폭과 질감에서 광목(土布)과 비슷한 것이었다. 목면은 주로 인천항을 통해 평양, 군산 등지로 다시 수출되었는데 소비층은 하류층이었다. 수입 방적사를 이용한 土布와 목면이 같은 소비층을 겨냥한 것으로 방적사의 증가는 목면 수입의 감소를 야기하는 것이었다.<sup>26)</sup> 또한 방적사는 1903년에 일본산 광폭면포(和金巾)의 수입확대로 수입 감소의 영향을 입기도 했는데 이는 중류의 소비상품이었던 일본산 광폭면포(和金巾)가 하류소비로 확대되어 있었던 경향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sup>27)</sup> 방적사는 목면에 의해 그리고 다

23) 『通商彙纂』「本年8月中仁川港商況」(明治31년) 제107호. 방적사 수입에서 일시적으로 淸商이 오사카에서 직수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淸商이 예약판매의 호황을 틈타 量目を 줄여파는 경우가 파생하여 방적사 판로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그 후 방적사는 日商 최고의 수입품으로 간주되었다.

24) 『通商彙纂』「本年8月中京城商況」 제115호.

25) 『通商彙纂』「本年仁川3月商況」(明治32년) 제140호.

26) 『通商彙纂』「本年1,2月仁川商況」(明治32년) 제139호.

27) 『通商彙纂』「明治37年中第3季仁川貿易」 제19호.

음에는 일본산 광폭면포(和金巾)에 의해 판매에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일본은 의도적으로 방적사의 수입을 줄이고 목면과 일본산 광폭면포(和金巾)의 수입을 늘렸다.<sup>28)</sup> 여기에 일본 방적사는 최대 소비시장이었던 상하이에서 인도산 방적사를 누르고 가격경쟁에서 점차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 소비시장의 확보로 조선에서 자국산 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방적사의 인천항 수출을 의도적으로 줄여나갔다.<sup>29)</sup>

한편 夏布는 여름철 옷감으로서 3월과 4월에 수입량이 급증하였는데 淸商에 의해 수입되는 것은 대부분 광둥성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광둥산 하포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광둥산 하포 보다 가격이 낮은 일본산이 유입되었다. 그러나 일본산 하포는 거류지 일본인 소비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sup>30)</sup>

한편 면제품 이외의 수입 상품은 양국 간 더욱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견제품은 거류지 일본인 소비를 위한 일본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청으로부터 수입되었다. 미곡과 잡곡류의 수입량도 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1898년 4월 인천항 미가의 상승으로 淸商의 곡물 밀수가 크게 성행했다.<sup>31)</sup> 석탄은 거의 대일 수입품이었고,<sup>32)</sup> 담배 수입에서도 紙卷煙은 일본, 葉煙草는 청 수입으로 소비층도 상류와 하류로 구분되어 있었다.<sup>33)</sup> 성냥 그리고 가옥의

---

28) Peter duus, 앞의 책, 245-288쪽.

29) 일본 방적사가 중국시장에서 인도산 방적사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이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898년 일본 노동시장의 저임금을 기초로하여 면사 가격은 인도산에 비해 낮았다.(安藤良雄, 앞의 책, 64쪽 참조)

30) 『通商彙纂』『本年仁川4月商況』(明治32년) 제140호.

31) 『通商彙纂』『本年4月中仁川商況』(明治31년) 제104호.

32) 『通商彙纂』『본년3월중인천상황』(明治31년) 제101호.

33) 『通商彙纂』『京城8月商況』(明治32년) 제150호, 紙卷煙중에 内村井제품이시장 점유율이 3/5을 점하였고, 다음으로는 オールトゴール트와 ピンヘット였다. 葉

바닥재로 수입된 洋紙 역시 일본 수입이었다.<sup>34)</sup>

일상적 소비품인 면제품의 경우 상류소비제품은 대청 수입품이, 중·하류소비제품은 대일 수입품이 점하고 있었으며, 계절적으로 여름 면제품은 대청 수입품이었다. 또한 잡품에 해당하는 성냥, 석탄, 양지 그리고 捲煙은 대일 수입품, 엽연초는 대청 수입품이었다.

1894년에서 1900년 이전 까지 인천항 수입상품에서 淸商과 日商의 수입경쟁이 치열했던 제품은 석유였다. 1886년 전국적으로 수입량이 10만 갤런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석유는 1897년에는 200만 갤런으로 크게 급증하여 일상적 소비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석유는 1880년대부터 미국산이 일본 나가사키를 경유하여 수입되고 있었고, 淸·日商 모두 나가사키를 통해 인천으로 수입했다. 그러다가 1889년 처음 러시아산 석유가 수입되기 시작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원산 등의 북부 지역에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했던 상인은 대부분 淸商이었던 데 비해 블라디보스톡에서 나가사키를 거쳐 인천에 들어오는 석유는 淸日商이 취급했다. 그러나 러시아산 석유가 가격이 싼 것에 비해 운반상의 어려움과 품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점차 경인 지역에서는 1898년부터 급격히 수입이 감소했고, 미국산 석유가 시장을 독점하다 시피 했다. 여기에 상하이로부터 淸商이 수마트라산 석유를 수입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미국산에 비해 품질이 낮았기 때문에 곧 수입이 정지되었다.<sup>35)</sup> 그러나 1900년 타운젠드 상사의 한국 총지배인이었던 일본 상인 奥田貞次郎이 인천에 石油商組合을 조직하여 타운젠드 상사로부터 석유수입의 독점권을 획득했고, 그 후로 인천항에 들어오는 석유는 일상이

---

煙草는 상하이 등지에서 전수되어 청국상인이 독점하는 상황이었다.

34) 『通商彙纂』「本年6月中京城商況」(明治 31년) 제110호.

35) 러시아대장성, 1983, 『舊韓末의 社會와 經濟』, 裕豊出版社, 256-259쪽.

독점적으로 수입하였다.<sup>36)</sup>

일상적 소비상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이들 상품 이외에도 거류지 일본인의 일상용품으로서 식품류, 장식품 등의 소비가 점차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경인 지역 한인들 사이에서도 소비되었고, 인천항 잡품 수입 증가에 한몫했다. 서울 지역에서 소비가 늘고 있었던 대표적인 상품은 맥주, 설탕, 장식품 등이었다. 맥주는 양반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여 1901년 3분기의 수입액이 전년 3분기와 비교하여 2배 이상이었다.<sup>37)</sup> 설탕과 장식품의 수입도 점차 증가하였는데 특히 장식품 수입은 1901년 3분기에 1만 여원이던 것이 1902년 2분기에 2만 4천 여원으로, 동년 3분기에는 12만 여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당국인(한인)의 물질적 욕망의 진보를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고종즉위)40주년 稱慶式 때문’이기도 했다.<sup>38)</sup> 이외에도 일본인 소비상품이었던 甲冑絹, 일본산 도기, 양산 등<sup>39)</sup>의 소비가 한인들에게도 확대되었는데 ‘양반 중에 생계에 여유 있는 자들은 근년(1901년)들어 장식품과 함께 다른 잡화를 이용하기에 이르고 있다. 실로 48만 여원이나 되어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 3배가 증가’했다고 할 정도였다.<sup>40)</sup>

인천항을 통해 수입되는 이들 상품의 수입증가는 서울과 경인 지역 소비경향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었다. 서울은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등지의 내륙 상품유통의 중심지로서 농번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이곳 지방민이 서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경

36) 『通商彙纂』「京城明治33年第4季貿易」 제188호; 田中孝之介, 1905, 『在韓人士名鑑』, 木浦新報社, 102-103쪽.

37) 『通商彙纂』「京城明治34年第3季貿易」 제204호.

38) 『通商彙纂』「仁川明治35年中第3季貿易」 제257호.

39) 『通商彙纂』「京城明治33年第2季貿易」 제180호; 『通商彙纂』「本年10月中京城商況」(明治 31년) 제120호; 『通商彙纂』「仁川輸入本邦絹織物商況」 제242호.

40) 『通商彙纂』「京城明治34年第3季貿易」 제204호.

인 지역 내륙유통의 중심지였던 서울은 대부분의 수입상품을 인천항을 통해 공급받고 있었다. 따라서 서울을 중심으로 경인 지역 소비경향의 변화는 인천항 수입상품 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인천항 수입상품 구성의 다양화는 상류층 소비증가라는 서울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경향이 생겨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닥재로 사용되던 거적을 걷어내고 값싼 양지를 사용하는 중류층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sup>41)</sup> 밝고 냄새가 적은 석유를 등불에 사용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sup>42)</sup> 또한 성냥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은 소수의 상류층의 소비경향 변화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경향을 뒷받침할 만한 소득 향상의 요인도 발생하고 있었다. 미곡, 우피, 콩 등의 대일 무역상품의 가격조건이 대일 수입상품의 가격 조건 보다 비교적 좋았기 때문에 수출무역은 전반적인 소득의 향상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었다.<sup>43)</sup> 또한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등지에서 채굴되어 직접적 영향이 적더라도 채금에 따른 세납액의 증가로 정부재정 수입의 증가라는 간접영향도 한 요인이었다.<sup>44)</sup> 여기에 경인철도 개통을 앞두고 노동인부의 수요가 증가하여 임금이 상승하는 추세였다.<sup>45)</sup> 그리고 서울에서 시작된 경부 철도공사로 경인 지역의 구매력이 증가되고 있었는데 이

---

41) 『通商彙纂』 「本年6月中京城商況」(明治31년) 제110호; 「本年6月中京城商況」(明治31년) 제115호.

42) 석유는 난방용 소비도 있었는데, 이는 상류층의 소비였다고 생각된다.

43) 김낙현, 2001, 「조선 무역의 장기동향」 『한국경제성장사-예비적 고찰』, 서울대출판부, 190-195쪽; 차명수, 2001, 「우리나라의 생활수준, 1700-2000」 『한국경제성장사-예비적고찰』, 서울대출판부, 7쪽.

44) 『通商彙纂』 「京城34年第3季貿易」 제207호.

45) 『通商彙纂』 「本年9月中京城商況」(明治31년) 제118호.

공사를 위한 철도재료의 수입이 급증하는 한편, 철도공사의 시장으로 임금상승, 토지수용비등의 지불 등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경인 지역 시장의 구매력이 상승되고 있었다.<sup>46)</sup> 한편 1902년 일본 이민법의 개정으로 인천항 일본인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 소비를 위한 상품 수입이 증대되고 있었다.<sup>47)</sup>

수입상품의 다양화는 인천항 거류지 삼국 상인의 거래처가 다변화되는 현상을 야기했다. 한 예로 안성의 일본인 잡화상은 ‘방적사, 광폭면포(金巾), 성냥, 비누, 담배 등을 처음에는 서울의 日商으로부터 구입하였으나, 서울의 淸商으로부터 구입함이 편리함을 알게 되어 모든 商貨를 淸商으로부터 구입하고’ 있었다.<sup>48)</sup> 淸商의 일본 수입상품 거래는 서울 同順泰를 매개로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둔포의 淸商은 서울 同順泰를 통해 성냥, 석유, 방적사, 염분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둔포와 안성 이외에도 龍仁, 全義, 公州, 洪州, 安山 등지의 淸商은 인천항을 통해 일본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sup>49)</sup>

한편 인천항 거류지에서 수출입상품 결제수단으로 백동화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1894년 청일전쟁으로 일본지폐(은태화권)의 유통이 크게 증대되어 日商과 韓商간 상품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1897년 일본의 금본위제가 실시되고 1898년 각인은화의 통용을 금지하면서 인천항 통용 은화(각인은화를 포함) 중 1/3이 일본으로 환류되고, 가치도 하락했다.<sup>50)</sup> 여기에 1898년에서 1900년까지

46) 『通商彙纂』 「韓國事情」(明治37년) 제70호.

47) 『皇城新聞』 잡보, 1902년 3월 21일; 3월24일; Peter duus, 앞의 책, 290쪽.

48) 『京城領事館報告』 「農商況視察報告書」 1902년 1월 14일; 김경태, 1994,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창작과비평사, 350쪽.

49) 『通商彙纂』 「韓國京畿忠淸兩道內地情況」(明治33년) 제178호; 179호.

50) 『通商彙纂』 「明治31年8月中京城商況」 제115호. 일본지폐에 대한 일본은화의 가치는 8월 초에 3원5,60전 전후로 보고되었다.

국제은화시세가 상승하면서 인천항에서 저평가되고 있었던 은화는 상하이, 대만 등지로 유출되었고, 거류지 통화로서 백동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인천항 은화유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만은 1894년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 일본은화가 유통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897년 일본의 금본위제 실시로 서울에서 환류된 일본은화가 대만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 대만 총독부는 일본지폐(금태환권)에 대한 은화 환율을 공정환율로 고시하였다. 대만 화폐시장에서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의 괴리현상이 발생하면서 대만총독부는 공정환율을 시장환율의 변동에 따라 수정 고시하였다. 1897년 이후 공정환율 변동의 추이를 보면 1897년 12월 일본 지폐 1엔에 대해 엔은 1매가 0.964엔이었다가 1898년 12월에는 0.940엔으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1900년에는 상승하여 11월에는 1.030엔이었다. 이시기 대만 공정환율이 청의 상하이 환율시장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하이, 홍콩 등의 은화가 대만에 유입되고 있었다.<sup>51)</sup> 반면 인천은 일본 금본위제 실시(1897)와 각인은화의 통용금지(1898) 등으로 유통은화의 하락이 발생했다.

인천 銀시세가 상하이와 대만에 비교하여 낮게 형성되는 현상은 淸商에게 이익이 되었고, 淸商은 1899년 1월부터 수입무역액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1899년 3월 대청 수입무역액이 전달에 비해 무려 7배 증가했던 상황은 다량의 은화 매집으로 淸商의 이익이 크게 보장되고 있었던 상황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sup>52)</sup> 동년 4월 재고량의 증가로 대청 수입액이 감소하였지만, 5월에는 다시 증가하였고, 淸商은 미곡을 매집하고 日商에 판매하여 일본 은화를 흡수하기도 했

51) 臺灣銀行史編纂室, 1964, 『臺灣銀行史』上, 20쪽.

52) 『通商彙纂』『明治32年中仁川3月商況』 제140호.

다.<sup>53)</sup> 1899년 인천 대청 무역 적자의 증가는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은화의 유출로 연결되고 있었다. 1899년 7월에는 은화가 부족하여 淸商이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상황이 될 정도로 은화의 부족현상이 심각했고, 이로 인해 淸商의 수입액이 정체되기도 했다.<sup>54)</sup> 1899년 1월 인천항 세관에 집계된 은화 수출액은 403323원이었는데 대부분 홍콩상하이은행이 인천출장점 홈링거 상회에서 일본 第一은행 인천지점으로부터 은화를 구매하여 수출하였다. ‘은화는 당국(대한제국)에서 최고로 필요한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래 수출무역의 부진으로 은화가 적었으며, 당항(인천)에 유입된 은화가 다시 지방으로 유출될 기회도 없이…지방에서는 은화가 비상히 결핍되고, 당항(인천)에서조차 다액의 은화가 없다.’<sup>55)</sup>라고 할 정도로 은화의 해외 유출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었다. 중국과 국제 은시세의 일시적 상승시기였던 1899년과 1900년의 상황에서 인천의 은화 저평가 현상은 은화의 해외 유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韓商의 자금 흐름에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했다. 은화가 유출된 자리를 백동화가 대신함으로써 백동화 유통을 장악하고 있었던 韓商에게는 자금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었다. 1899년 7월을 기점으로 ‘은화가 공급과 수요의 평균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은화의 공급이 부족하여 이와 동시에 은화 시세는 등귀하고 … 대만 기타에 있어서 圓銀(일본은화)의 수입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통용가격의 평균을 얻기가 힘든 상황’이었다.<sup>56)</sup> 인천시장에서 은화의 대량 유출로 백동화가 수출입 상품의 결제 수단으로 쓰이면서 은화의 지위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53) 『通商彙纂』 『仁川5月商況』(明治32년) 제143호.

54) 『通商彙纂』 『明治32年中仁川7月商況』 제150호.

55) 『通商彙纂』 『明治32年中仁川7月商況』 제150호.

56) 『通商彙纂』 『本年中京城7月商況』(明治32년) 제145호.

1899년 일본으로의 지금수출과 청으로의 은화의 유출로 日商과 清商은 보조화인 백동화를 다량 수취하게 되었다.<sup>57)</sup> 백동화가 수출입 상품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삼국 상인의 이윤은 백동화의 가격변동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그리고 ‘무릇 거류지 日商이 韓人에게서 米·豆을 매입함에 있어서 한전이 충분히 등귀한 때는 韓商은 관내에서 수입상품을 구입하고 또는 어음으로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바로 現錢(엽전과 백동화)으로 교환하고 그것을 일화로 바꾸어서 저축하거나 또는 경성(서울)방면에 換을 결제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만약 한전이 저락한 때에는 그 대금으로서 현전을 수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예탁어음을 청구하고 다른 날 한전시세가 등귀할 때를 기다려 발행인인 일본인에게 (결제를) 청구함으로써 일본인이 최초로 저락한 한전을 예탁하고 반환 시에 등귀한 것을 구입하여 반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불이익이 실로 적지 않게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인천항 韓商은 거류지 시장과 국내시장의 백동화 수급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sup>58)</sup>

## (2) 삼국상인 간 신용거래의 확대

인천항 수입상품구성이 변화되고, 거류지 통화로서 백동화가 부상함으로써 삼국 상인은 상품 매매 그리고 일본지폐와 백동화 교환을 위해 상호거래를 확대시켜나갔다. 그리고 환율변동이 극심하게 일어났던 불안정한 시장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삼국 상인 간 신용거래는 확대되고 있었다.

57) 『通商彙纂』『明治32年仁川貿易商況年報』제154호.

58) 岡庸一, 『新韓國事情』, 394쪽; 오두환, 앞의 책, 231-232쪽

조선 후기 이래 재정지출과 세금수송방식으로서 환송이 등장하면서 정부 발행 출급명령서가 어음과 같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私商들 사이에서 유통된 어음은 정부 발행 영수증에 비해 유통 지역이 협소하기는 했지만, 부도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개항 이후 韓商 사이에 어음 유통이 증대된 것은 유통량의 증가에 수반하여 고액화폐가 발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으며, 금과 은의 사용이 감정의 불편함과 수송의 불편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어음 유통은 상품유통량의 증가와 함께 크게 확대되었으며, 화폐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더욱 증가되는 양상이었다.<sup>59)</sup>

그러나 어음 유통의 확대는 단지 화폐수송의 불편함과 상품유통의 증가에 의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상인 간 거래에서 신용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종이조각에 불과한 어음은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어음은 최소한의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는 제한된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신용 시스템의 구축이 담보될 때 비로소 전국적 유통으로 확대될 수 있다.<sup>60)</sup> 이러한 점에서 개항기 어음 유통의 확대는 거래자간의 신용 형성과 신용 시스템의 구축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韓商이 발행한 백동화 어음은 비교적 확실한 신용을 갖고 있었고, 淸商과 日商과의 거래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다. 비교적 한정된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었던 신용은 韓商의 성장과 더불어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 대한천일은행이 어음 할인과 대출 업무를 실시하면서 어음

59) 어음 유통량은 추정할 수 없으나 1901년 부산항의 경우 한전어음 유통액이 한전 유통액의 5배 정도로 추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通商彙纂』『釜山通貨並貿易一斑』(明治35년) 제215호).

60) 개성상인이 최초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어음은 조합적 공동체에 의해 그 신용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정부 발행 공전 영수증은 정부가 지불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신용을 확보하는데 지역적 공동체간 관계를 벗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전 영수증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데 크게 장애를 받지 않았다.

유통 지역은 더욱 확대될 수 있었다. 서울과 인천 및 개성 지점을 통한 어음 할인과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한 예로 대한천일은행 회계장부에 나타난 韓商의 어음 종류는 다양했다. 어음과 표(일람불어음), 그리고 신용을 은행이 대행했던 換取票(당좌어음과 같음)등이 있었다. 어음과 표는 개인 또는 상호의 이름으로 발행되어 은행이 신용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개인 또는 사업장의 신용에 의해 유통되고 있었는데 대한천일은행은 어음과 표에 대해 할인 및 대출을 실시하였다. 대한천일은행 회계장부에 나타난 韓商 발행 어음과 표의 할인 및 대출 빈도를 비교해 보면 韓商은 표를 발행하기보다는 어음 발행이 일반적이었다.<sup>61)</sup>

그러나 이러한 금융기구에 의한 여신의 제공 이외에도 韓商은 외상 거래로 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까지 발견된 개성상인의 문서 중에는 長冊(또는 賬冊)이 있는데 外上장책은 채권을, 他給장책은 채무를 기록하여 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물품거래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韓商의 어음은 淸商이 수수하여 대한천일은행을 통해 할인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朴孝克의 어음을 淸商 同順泰가 할인을 요청하는 등 韓商 어음을 淸商이 할인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sup>62)</sup>

淸商은 어음발행뿐만 아니라 표를 발행했는데 同順泰와 瑞盛春을 비롯하여 公原福, 裕盛仁 등 유력한 淸商은 일람불어음으로서 ‘紙票’를 발행하였다. 淸商의 지표 발행은 淸商의 독특한 금융기구의 활동에 기인하고 있었다. 청일전쟁 직후 금융업자들의 활동이 저조하여 淸商간 대출 금리가 日商들의 금리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sup>63)</sup> 그러

61) 김윤희, 2002, 『한말 대한천일은행의 설립과 상업신용의 형성』 『아세아연구』 42-1, 176-179쪽.

62) 대한천일은행 『正日記』.

63) 1987년 淸商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인천 홈링거 상회가 홍콩상하이은행의 대

나 1899년 한청조약을 전후하여 淸商의 금융업자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고, 청상의 금리가 점차 하락하여 1899년 이후에는 日商간 대출 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淸商의 금리가 비교적 낮았던 이유는 淸商의 독특한 금융시스템에 의한 것이었다. ‘日商의 금융기구가 불과 2,3개에 그치고 있는 데 비해 淸商인의 금융기관은 票莊<sup>64)</sup>, 銀莊<sup>65)</sup>, 錢鋪<sup>66)</sup>, 銀爐<sup>67)</sup> 등이 활동하고 있어서 ‘본방상인(日商)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sup>68)</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을 배경으로 하여 淸商은 자신의 발행 ‘지표’를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무역업과 잡화 판매상 그리고 ‘江南彩票(복권)’을 발행했던 同順泰와 瑞盛春은 대부업과 ‘지표’를 발행하는 錢莊이기도 했다.<sup>69)</sup>

淸商이 발행하는 ‘지표’가 인천 등지에서 매우 신용이 있는 지불수단으로 유통될 수 있었는데 이는 신용거래로 인한 자금회전의 편리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淸商이 ‘상하이, 홍콩 등지의 청국 개항장으로부터 화물을 수입할 때, 은행 하환으로 송금되는 것이 없더라도 본 지점에 연락 한번이면 일시에 다액의 화물을 수입하고, 그 대금은 점차 판매하는 것을 통해 얻는 것으로 보통 정산기까지 1년에 두 번 송부하면 되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하여 신용이 실추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sup>70)</sup> 淸商은 본국과의 거래에서만뿐만 아니라 서울과

---

리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시작했지만, 영업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또한 청의 금융업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淸商간 대출이자도 日商간 이자에 비해 높게 형성되고 있었다(『通商彙纂』, 『明治30年中仁川港商況報告』 제107호; 『明治30年中京城商況年報』 112호).

64) 환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업자로 어음할인 및 송금을 주로 담당하였다.

65) 환 및 대부금을 취급하는데 대개 신용대부를 취급하며, 하환과 같은 것은 없다.

66) 洋換업로서 銀兩, 洋銀 그리고 동전 등의 교환 및 대부 예입을 하는 금융기구.

67) 각종 銀兩을 개주하는 것이 본업으로 실제 화폐를 주조하는 은행과 같다.

68) 『通商彙纂』, 『在韓淸國人貿易商の勢力』(明治33년) 제165호.

69) 京城府, 1934, 『京城府史』 第2券 694쪽.

인천 韓商과도 신용 거래를 하였다. 인천항 거류지에서 비교적 상업 신용을 얻고 있었던 淸商과 韓商 사이에는 서양산 광복면포(洋金巾) 등과 같은 주요 수입상품을 韓商과 거래할 때는 연불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71)</sup>

반면 日商은 어음발행과 신용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는 개항 초기부터 서울과 인천 시장에 진출한 日商이 모험적이고 투기적인 형태로 영업을 하는 한편 자본력에 있어서도 매우 취약한 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sup>72)</sup> 日商의 신용이 낮았기 때문에 韓商과 淸商은 그들과의 거래에서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日商 역시 일확천금의 모험을 감행하기 때문에 단기간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韓商과 淸商과의 거래에서 현금을 받기를 원했다.<sup>73)</sup>

신용에 제약을 받고 있었던 日商이 신용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예탁어음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예탁어음은 당오전의 가치하락으로 인해 환차익을 얻는 수단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는데 日商이 한전을 신용 있는 韓商에 미리 예치해 두고 발행하는 어음이었다. 일본인은 수출상품 중개상인 韓商에게 상품을 매집하고 銅貨(백동화)예탁어음을 발행했다. 예탁어음을 받은 韓商은 지급기일

70) 『通商彙纂』 「在韓淸國人貿易商の勢力」(明治33년) 제 165호.

71) 『通商彙纂』 「京仁鐵道全通後に於ける京城商況」(明治34년) 제189호,

72) 소상인과 뜨내기 장사꾼들은 제멋대로였고 무질서했으며, 가장 믿을만한 기회를 포착하는 데에만 열중해 있었다. 종종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이들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라면 동료 일본인을 고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만약 약탈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준비도 되어있었다. 조선인과 그들의 재산에 대한 일본인들의 취급방법은 매우 야만적이었다. 그들은 야영을 위한 장작을 구하기 위해 전장의 한가운데 남겨진 집을 부수기도 했으며, 가축이나 닭, 야채 심지어는 비어있는 집에서 나온 가재도구들까지도 먹거나 팔기 위해 훔쳤다. 지역군대의 책임자들은 이런 무질서 때문에 골치를 썩었고, 군부역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들을 논의하기도 했다(Peter Duus, 앞의 책, 301쪽).

73) 『通商彙纂』 「在韓淸國人貿易商の勢力」(明治33년) 제 165호.

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전시세가 상승하는 시기에 지불을 요청하였던 반면 日商은 백동화의 시세가 하락하면 할수록 환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예탁어음은 日商의 일방적 이익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고, 백동화시세 하락에 대한 日商과 韓商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기도 했다.<sup>74)</sup> 그러나 서울에서 1899년 금매집상이었던 大倉組의 서울지점 岩佐상점이 파산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행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었다.<sup>75)</sup> 그러나 1899년 대한천일은행이 설립되고 인천과 서울의 日商들이 대한천일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해 백동화를 예치하고, 어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전예탁어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sup>76)</sup>

그러나 日商은 淸商, 韓商과 같이 자유로운 어음 발행이 쉽지는 않았다. 신용거래의 제한성은 日商이 취급하는 백동화의 양이 많아 짐을 의미했다. 日商과 第一은행 또는 일본과의 거래 통화는 금태환권인 일본지폐였던 반면 서울과 인천 시장에서 日商은 상품의 판매 대금과 수출상품의 대금으로 백동화를 취급했다. 日商이 수입상품의 대금 결제를 위해 화폐교환을 해야 한다는 것은 淸商과 동일했

74) 『通商彙纂』『仁川9月商況』(明治32년) 제153호. 韓商 역시 동화예탁어음(銅貨豫手形)의 수수를 좋아했는데, 이는 추심 시기를 韓商이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75) 岩佐敬輔는 언제 조선에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부산의 新原상점에서 일하다가 1880년 무역상이었던 그의 친구 龜谷愛介와 합동하여 인천에 상점을 열었다. 그리고 1899년 小倉幸 서울지점을 운영하다가 독립하여 岩佐상회를 열었다(木村健二, 1999, 『朝鮮進出日本人の營業ネットワーク』, 『近代アジアの流通ネットワーク』, 倉文社, 51-57쪽) 대한천일은행의 기록에는 大倉지점으로 나와 있었던 것으로 보아 小倉幸에서독립한 후 大倉組의 무역업을 대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영업은 순조롭지 못했는데 1899년 9월 궁내부의 한전 수입으로 서울 지역 백동화가 등귀하면서 그는 금매집을 위해 발행했던 한전예탁어음 7만원을 부도냈다. 그의 파산은 서울 일본거류지에 일대 공황을 야기할 정도로 컸다(『通商彙纂』『京城9月商況』(明治32년) 제155호).

76) 김윤희, 2002, 「한말 대한천일은행의 설립과 상업신용의 형성-조직운영과 자금조달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2-2, 185-189쪽.

지만 이를 위한 금융기구는 거의 없었다.

第一은행과 第五十八은행 등이 한전을 취급하기는 했지만, 1901년 이후 인천과 서울에서 백동화시세의 변동폭이 극심해지자,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한전을 취급하지 않았다.<sup>77)</sup> 백동화 교환에 제한을 받고 있었던 日商은 인천과 서울 화폐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백동화의 주조정지와 유통구역의 확장 그리고 자신을 위한 韓貨거래소의 설립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1902년 京城商人同志組合 화폐교환소를 설립하여 환차손에 대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다.<sup>78)</sup> 日商은 자금회전의 장애요소를 타개하기 위해 第一은행권의 발행을 요청하였고, 일본 정부는 그들의 이해를 위해 대한제국에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sup>79)</sup>

더욱이 수입상품의 하환 手形사용에 따른 보관료, 수수료의 부담과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고리(日步)의 대출 금리는 日商의 자본회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었다. 日商은 자본회전 기일이 짧고, 백동화를 지폐로 교환하는 시기를 조절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日商은 ‘거래상 신용을 잃는 것이 적지 않고…금융의 자유가 없는 까닭에 (백동화)시세하락의 때에는 화물을 유지하지 못하고 손실을 입더라도 투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곤 했다.<sup>80)</sup>

日商의 자본회전 방식은 신용판매를 주저시키는 요인임과 동시에 日商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이었다. 여름 판매상품인 洋紙와 겨울 판매상품인 방적사의 投賣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미

77) 『通商彙纂』 「仁川通貨事情」(明治34년) 제194호.

78) 田中孝之介, 앞의 책, 59-60쪽. 1881년 부산을 거쳐 원산에서 약종상을 경영하였으며, 1883년부터 인천에서 무역상을 시작하였고, 그후 서울의 수출입품을 취급하여 서울과 인천 거류지의 자산가로 소문나 있던 和田常一은 서울상업 회의소 회두로서 활동했던 면포상 山口太兵衛와 함께 화폐교환소를 창설했다.

79) 波形昭一, 앞의 책, 94-102쪽.

80) 『通商彙纂』 「京仁鐵道全通後に於ける京城商況」(明治34년) 제189호.

곡수출상의 과다 경쟁에 의한 미가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중 방적사 수입상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오카사 방적사 가격보다 인천시장의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다.<sup>81)</sup> 결국 방적사 수입 日商들은 경쟁에서 오는 손실을 막기 위해 京仁綿絲組合을 결성하여 방적사의 재고가 없을 때까지 개인 수입을 정지하기로 하였다.<sup>82)</sup> 日商은 자본부족과 신용구축의 미비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고자 동업자간 조합을 결성하여 내부경쟁을 차단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백동화시세 하락으로 인한 상품가격의 상승은 수입日商의 판매에 장애요인이 되었고, 淸商과 韓商에 비해 크게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연불거래를 시도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인천항 日商은 비교적 신용이 두터운 淸商에게 수입화물을 넘기는 것을 선호하기 까지 했다.<sup>83)</sup> 그러나 淸商과의 연불거래를 할 때도 日商은 가격 조건에서 淸商과 韓商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수입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sup>84)</sup> 따라서 日商은 대한천일은행을 통해 예탁어음의 신용을 높이는 한편, 예금계좌 개설을 통해 어음을 발행하는 등 신용거래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日商이 淸・韓商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신용거래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日商이 인천과 서울 시장의 商慣習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韓商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존재했으며, 이 불신을 대신할 신용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못하였다. 보험과 창고제도 및 금융제도

81) 『通商彙纂』『仁川明治31年9,10月商況』 제 121호.; 『仁川明治31年11月商況』 제 124호.; 『仁川明治32年6月商況』 제145호.

82) 『通商彙纂』『仁川明治36年中第1季貿易』 개제32호.

83) 이병진. 1895, 『개항기 외국상인의 침입과 한국상인의 대응』,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46쪽.

84) 『通商彙纂』京仁鐵道全通後に於ける京城商況(明治34년) 제189호.

그리고 토지매매의 법적 보호 장치 등이 확립되지 못했다. 그래서 日商의 신용거래가 증가되는 속에서도 현금거래에 대한 日商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일어났다.<sup>85)</sup> 특히 러일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연불거래를 중지하고 현금 판매로 인해 거래가 침체’될 정도였다.<sup>86)</sup> 日商은 현금매매와 자본회전의 장애로 인해 淸商과 韓商에 비해 불안정성 시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대한제국시장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이를 위해 대한제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었다.<sup>87)</sup> 日商은 통감부의 재정정리로 淸商과 韓商의 신용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을 때 자신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수형조합, 창고회사 등이 설립되었다.<sup>88)</sup>

인천시장에서 삼국상인의 공생은 상품거래에서만뿐만 아니라 자본회전에서도 긴밀히 연결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김창영이 인천 北城浦의 화도진 地段을 淸商에게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았는데, 淸商은 이 지단을 다시 日商에게 저당하고 대출을 받았다.<sup>89)</sup> 이외에도 日

85) 자본력이 취약한 일본인은 외상거래로 종종 파산하곤 했는데, ‘조선의 오이지왕’으로 불렸던 東島祐太郎는 日商간 경쟁이 치열할 가운데 한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외상 판매를 하다 도산했다. 그는 남대문 노점에 채소와 과일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현금거래만을 했다(Peter Duus, 앞의 책, 328쪽).

86) 『通商彙纂』 『仁川二於ケル時局ノ影響』(明治37년) 제23호.

87) 『東洋經濟新報』 『對韓政策に就て現內閣に望む』 明治 34年 1月 5日. 서울 거류민이었던 鳳凰山人은 현 이토내각이 대한제국 정부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서, 비좁은 거류지에서 在韓 일본인의 고통이 너무 심각 한데 여기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에 좀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88) 화폐재정정리로 공황이 파생되었을 때 거류지 日商은 통감부의 성급한 화폐정리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리고 공황의 해소를 위해 신용어음의 유통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5전 이하의 보조화를 발행해 서울시장 금융분기의 회복을 꾀해야 한다고 하였다.(『通商彙纂』 『京城歲晚商況』(明治38년) 제4호)

89) 『皇城新聞』 잡보, 1903년 10월 14일.

商의 韓商에 대한 금융대부는 1894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韓商은 자본회전을 위해 각종의 상품과 부동산을 담보로 日商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sup>90)</sup> 日商과 韓商간 금융거래는 담보물이 설정된 것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신용대출도 적지 않았다. 신용대출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상품의 연불거래를 통해 양 상인 간 신용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했다. 삼국 상인 간 금융거래의 확대는 파산의 손실에 대한 연대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삼국 상인의 신용거래 양상은 차이가 있었지만, 인천 지역 환율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상품의 매매에 있어서 백동화시세 변동은 삼국 상인 모두에게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수입상에게 있어서 상품가격의 상승은 판로의 확대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삼국 상인은 어음과 연불거래를 통해 자본회전의 편리성을 획득하는 한편 환차손에 대비하려 하였다. 인천시장에서 삼국 상인 간 신용거래의 확대는 자본력이 취약한 상인들의 도태를 촉진했다. 불안한 시장 환경은 자본가에게 자본 규모를 확대하도록 요구했고, 여기에서 소외된 소자본의 상인들은 외상의 상권 확대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신용시스템의 발전은 자본가의 분화를 촉진하면서 대자본가에게는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주었지만, 소자본가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

90) 이병천, 1985, 『개항기 외국상인의 침입과 韓商의 대응』,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15-122쪽.

### 3. 해양유통 네트워크와 국내상업-韓商의 성장조건

인천-상하이, 인천-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인천 유통네트워크의 작동으로 다양한 수입상품이 유입되었던 인천항은 경인 지역과 평양, 군산, 목포 등지에 수입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인천항 국내유통네트워크는 인천과 서울 지역 韓商의 성장기반이 되고 있었다. 먼저 인천-서울 간 무역에서 한국산취급은 대부분 韓商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1901년부터는 서울 지역 韓商이 인천항으로부터 대량의 일본산 면제품 수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림3>~<그림5>의 서울 지역 면제품 수입액은 경인철도를 통해 수입된 것으로서 한강 수운을 이용한 상품거래에 대한 통계는 누락되어 있는 것이었다. 경인 철도 개통으로 한강 수운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京江 船商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었고, 조선의 봉선과 범선을 이용한 수송도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sup>91)</sup> 따라서 경인철도 수입량의 통계가 韓商의 수입량을 모두 포괄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1901년 상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韓商의 면제품 수입량은 1902년까지 日商의 수입량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특히 대일 수입상품이었던 방적사와 일본산 광폭면포(和金巾)의 서울 수입 상황은 日商의 퇴보와 韓商의 비약적 성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서울 지역 淸商의 서양산 광폭면포(洋金巾) 수입 독점 현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서울 지역 삼국 상인 간 면제품 수입액의 이러한 양상은 자본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었으며,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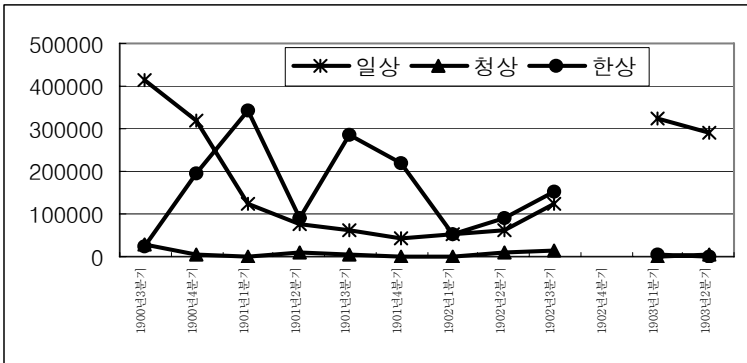
---

91) 羅愛子, 앞의 책, 164쪽.

히 방적사 수입액에서 韓商 취급액의 증가는 韓商 자본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백동화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었던 대자본 韓商은 자본회전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림3> 인천-서울 방적사 수입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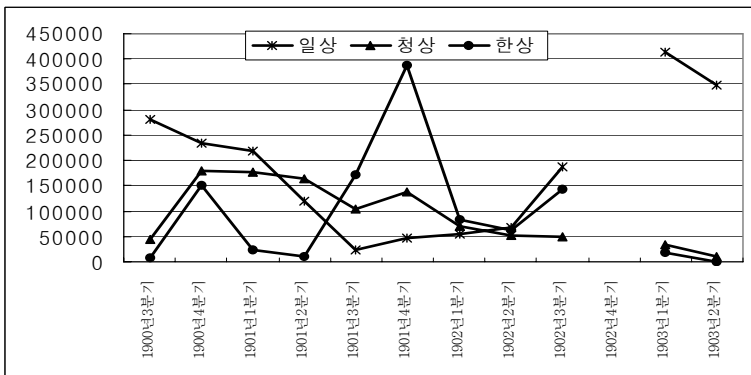
(단위:파운드)



<출전> 『通商彙纂』 해당년도 季報

<그림4> 인천-서울 일본산광폭면포 수입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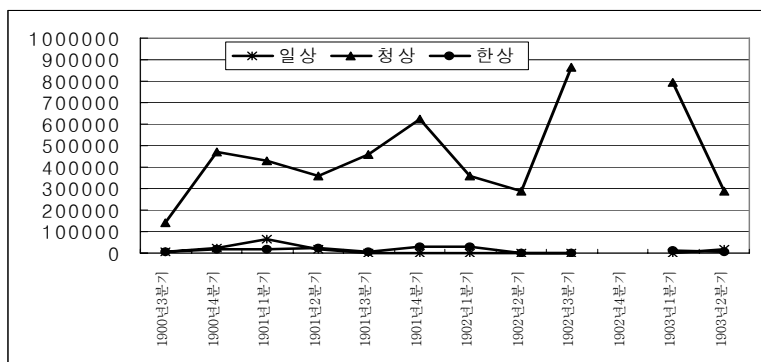
(단위:파운드)



<출전> 『通商彙纂』 해당년도 季報

<그림5> 인천-서울 서양산 광폭면포 수입상황

(단위:파운드)



<출전> 『通商彙纂』 해당년도 季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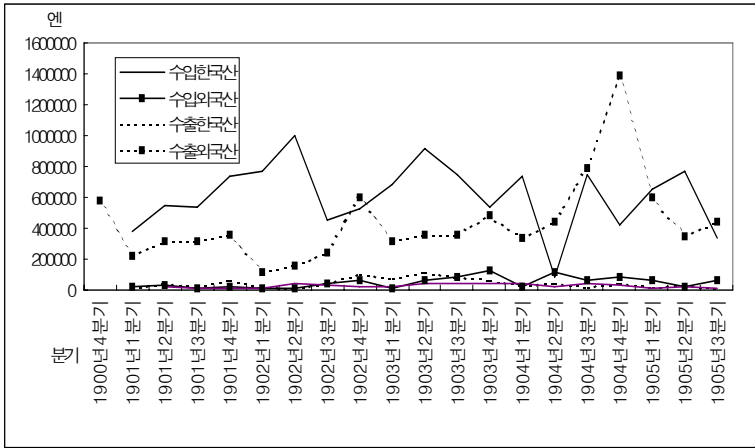
인천항 방적사 수입 日商과의 신용거래 확대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의 수입韓商은 방적사, 일본산 광폭면포(和金巾)를 연매방식으로 소매상에 팔았다. ‘가령 日商이 現金賣로서 50원을 받고 판매한다면, 韓商은 그것보다 50전을 싸게 판매하는데 그 50전의 손실을 연매로서 보충’하였다.<sup>92)</sup> 연불 거래는 인천과 서울 간 수입상품의 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에서 일반적 관행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현지 사정과 거래상인의 신용을 탐문할 수 있었던 韓商은 판로의 확대에서 淸商과 日商에 비해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 이처럼 경인철도를 이용한 인천-서울 간 수입무역의 확대는 서울韓商의 성장기반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도 1903년 백동화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상품 가격이 등귀하자, 서울의 韓商은 인천항을 통해 국내산면제품을 수입하는 쪽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1903년 인천항의 한국산품유입이 급증하기도 했다.<sup>93)</sup>

92) 『通商彙纂』 「京仁鐵道全通後に於ける京城商況」(明治34년) 제189호,

해로를 이용하여 평양, 군산, 목포 등 서해안 지역과의 국내무역 추이를 살펴보면, 분기별 변동이 큰 가운데 국내무역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림6> 인천항 국내무역량의 변화

(단위:엔)



<출전> 『通商彙纂』 해당년도 季報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인천항 국내 무역은 1902년 2분기에서 최절정에 달했으며, 3분기에는 일시적 하락 그리고 다시 상승하여 1903년 상반기까지 상승하였다. 인천항을 통해 수출되는 외국산 상품 량과 인천항으로 유입되는 국내산 상품 량은 증감이 교차하면서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외국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외국상품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는 대신 국내 상품의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인천항의 국내유통 상품 액의 이러한 변화 추이는 인천항을 무대로 활동하는 韓商

93) 『通商彙纂』 『仁川明治35年第1季貿易』 제224호.

들이 국내소비시장의 변화에 따라 유통 상품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수입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판매가 위축될 때는 수입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상품을 취급함으로써 영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수입상품의 유입이 정제되어 인천항 淸·日商 거류지의 영업상황이 위축될 때에도 국내유통의 확대에 따라 인천항 韓商의 영업은 위축되지 않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었다.<sup>94)</sup>

거류지와 국내시장 상황의 차이는 두 시장을 무대로 활동했던 韓商들이 淸商과 日商에 비해 상업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인천항 거류지 환율변동이 경인 지역 등 개항장 밖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적 차이가 존재했었다. 수입상품의 구입을 위해 인천항에는 백동화가 집중되는 특성을 갖고 있었던 반면 인천항 거류지 밖 시장에서는 반대로 수입상품의 결제를 위해 백동화의 유통량이 줄어드는 특성을 보였다. 백동화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단기 변동을 거듭했기 때문에 지역 간 수급의 차이는 상품에 대한 백동화의 가치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서울과 인천 거류지에서 백동화는 수입상품 결제통화로서 국제 은시세의 영향을 일정하게 받으면서 유통량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다. 반면, 지방에서 백동화는 정부의 공납용 수요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유통량에 의해 시세가 결정되고 있었다. 유통량이 많지 않았던 지방의 백

94) 『通商彙纂』 「仁川3月商況」(明治32년) 제140호: 「仁川明治34年中第4季貿易」 제216호.; 「仁川明治35年中第1季貿易」 제224호. 인천항 불경기의 원인은 日商에게 있어서는 미곡수출의 부진에 커다란 원인 있었지만, ‘小不景氣’라 할 만한 것은 수입상품의 판로 정체 때문이었다. 이는 淸商과 日商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국내상품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목면 판매량의 少長, 그리고 수출과 수입무역의 불균형에서 오는 금융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해 日商이 느끼는 불경기는 淸商에 비해 컸던 것 같다. 이에 비해 거류지 밖 국내시장은 전통적 소비시장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류지 상황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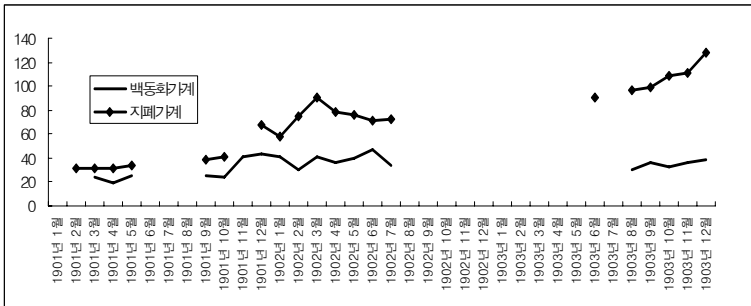
동화는 인천과 서울에 비해 시세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강했다.<sup>95)</sup>

거류지와 국내시장 간 백동화가치의 차이가 발생하는 가운데 해외유통망과 국내유통망을 연결하고 있었던 인천항 韓商은 백동화 가치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인천항의 경우는 아니었지만, 서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대한천일은행의 영업기록을 통해 이러한 사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sup>96)</sup> 다음의 <그림7>는 대한천일은행의 백동화가계(백동화 현금 수수료)와 지폐가계(백동화로 일본지폐를 구입할 때 붙는 프리미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대한천일은행 백동화와 지폐가계 변동

(단위:원)



<출전> 대한천일은행 『정일기』.

- 주) 1. 백동화가계는 어음만원을 백동화로 교환할 때의 가계.  
 2. 지폐가계는 일본지폐 100원을 백동화로 구입할 때의 가계.  
 3. 『정일기』 백동화가계는 1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지만, 여기서는 지폐가계 변동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백동화 어음 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95) 吳斗煥, 1991, 『韓國近代貨幣史研究』, 한국연구원, 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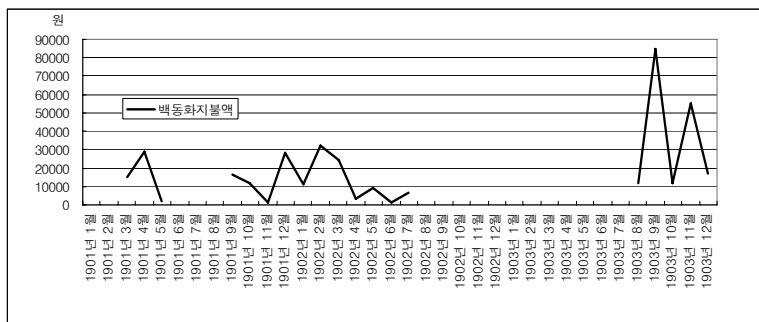
96) 현재 대한천일은행 거래 장부는 서울본점 거래 상황을 기록한 장부 외에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인천지점 영업을 고찰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경인철도 개통 이후 인천과 서울 간 상품유통이 크게 증대되었고, 인천항 거류지 환율이 서울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자금거래 관행상 서울과 인천은 거의 동일했다고 생각된다.

대한천일은행의 백동화가계는 현금 수요의 지표가 된다. 즉 현금 수요가 높아지면 가계가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는 가계가 하락한다. 이는 지폐가계에도 관철되는 것으로 지폐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백동화의 수요 감소와 공급과잉을 의미하며, 이는 동시에 백동화 시세의 하락을 의미하며, 수요의 감소(백동화 가계의 하락)로 연결된다. 지폐가격의 상승과 백동화가계의 하락이 동시에 수반되고 있다고 한다면 대한천일은행의 유통 백동화는 전적으로 일본지폐와 백동화 교환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폐가격 변동과 백동화 유통 상황이 밀접하게 결합할수록 <그림7>의 변동추이는 반대의 경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동화가계와 지폐가계의 변동 추이가 일치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1901년 4월과 1902년 2월 그리고 5, 6월을 제외하면 지폐가계가 상승함과 동시에 백동화가계도 함께 상승하고 있었다. 이점은 지폐에 대한 백동화의 시세가 형성되는 거류지와 국내시장의 백동화 수요의 증감이 반대되는 현상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대한천일은행의 유통 백동화가 국내시장의 수요를 위한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서울의 국내무역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었다. 즉 국내무역의 확대는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백동화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수요의 증가는 백동화가계의 증가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지폐가계의 상승과 백동화 현금 수수료가 동시에 상승했던 1903년에 대한천일은행의 백동화 지불액이 크게 급증했던 원인은 거류지에서 가치가 하락한 백동화가 국내시장으로 대량 유통되었기 때문이었다.(<그림8>참조).

<그림8> 대한천일은행의 백동화 지불액

(단위:원)



<출전> 대한천일은행 『정일기』.

주) 백동화 지불액은 대출, 예금인출, 교환지불 등을 포함한 것임.

대한천일은행 서울지점 백동화 유통과 관련된 이러한 사실은 앞서 언급했듯이 인천항에서도 관철되는 것이었다. 더욱이 인천항은 서울과 달리 진남포, 군산, 목포 등지에 수입상품을 공급하는 지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국내무역상품과 해외무역상품의 가격조건에 따라 인천항 수입상품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인천한 韓商은 ‘근래 크게 商賈上의 임기응변에 익숙하고 유력의 한인 중에는 韓錢 比價는 물론 阪神地方(오사카와 고베)에서의 미가 등도 전보로 탐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전하락시에 그것을 지방에 가져가서 가격 등귀한 때에 이르러 관내에서 소비함으로써 오히려 거류지 상인이 한전거래 상에서 한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sup>97)</sup> 지역간 백동화 시세변동을 쉽게 감지할 수 있었던 인천항 韓商은 수입상품과 국내 상품의 가격조건에 의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수입목면 1필의 가격이 가령 5원이라고 하면 한전으로는 50전의 가게가 있어서 한인에게는 5원의 광폭

97) 岡庸一, 『新韓國事情』, 393-394쪽; 오두환, 앞의 책, 230쪽.

면호(金巾)가 7원 50전으로 등귀하는, 한편 한화 1원에 구매하는 목면은 의연히 1원에 판매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민한 韓商은 한화와 일화의 차이가 격심하다고 알려지지 않은 곳을 알고 거류지에서 저락한 한화를 휴대하고 지방의 목면을 매취하여 수입하는' 것이 많았다.<sup>98)</sup>

이처럼 인천항 국내무역은 거류지 환율시장의 변동과 결합되어 인천항 韓商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류지와 국내시장의 백동화 가치차이는 대한제국 시장 질서를 대자본 중심의 독점적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했다. 즉 거류지 환율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 대자본 韓商은 거류지에서의 환차익과 국내시장의 가격조건의 차이라는 양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들의 자본이 이러한 단기화폐시장에 집중될수록 인천항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더욱 크게 요동치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불안정한 시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한 소자본 상인은 인천항 시장에서 점차 도태되어 갔다. 또한 지방의 소상공 생산자는 인플레이션 하에서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인천항 韓商(대자본)은 거류지와 국내시장의 백동화 시세차이를 이용해 지방민에게는 수입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지방의 생산품 가격은 저가로 매입하여 상품 유통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1902년 면화의 풍작과 면포 생산이 활성화되었지만, 그 이윤은 고스란히 인천 지역 韓商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이었다.<sup>99)</sup>

98) 『通商彙纂』 『仁川明治34年第4季貿易』 제216호.

99) 『通商彙纂』 『仁川明治35年第1季貿易』 제224호.

## 맺음말

1890년 인천항은 인천-상하이, 인천-오사카 지역 간 상품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유통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두개의 해외 유통네트워크는 1897년 일본이 금본위제를 실시하고 상하이-오사카가 무역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각기 淸商과 日商의 상품수입루트로서 작동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淸·日商간 중계무역상품 수입경쟁이 전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인천항 수입상품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서 거류지 청日商간 치열한 경쟁관계는 점차 보완적관계로 변화되어 갔다. 대청일 무역상품이 각기 다른 소비시장을 분점 했고, 인천항 淸商은 수입日商으로부터 대일수입상품을 인수하는 중간도매상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인천항으로부터 국내시장으로 수입상품을 공급하는 지위에 있었던 韓商은 1897년 인천항 거류지 통화로서 백동화가 부상하면서 거류지 백동화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올랐다.

한편 각기 자국을 경유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루트로 이용되었던 두개의 해외유통네트워크는 1897년 일본이 금본위제를 실시하여 한 청일 삼국 간 상이한 통화체계가 형성되면서 일본지폐 유통을 위한 루트로서 접합되어 갔다. 은화와 동화 유통의 상하이로 금태화권 유통의 오사카의 면제품이 대량 유입되면서 은화, 금태화권이 자유롭게 유통되었던 인천항은 상하이 수입면제품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일본지폐의 조달지로서 기능했다. 또한 금본위제 실시 이후 정화를 확보하기 위해 다량의 금이 인천항을 통해 유출되었고, 금수출 결제를 위한 다량의 일본지폐가 인천항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상하이 은화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했고, 상하이시장에서는 금본위제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상품의 가격조건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상하이를 통해 인천항에 상품을 수입하고 있었던 淸商은 상하이 가격조건이 악화되면 대량의 상품을 인천항으로 들여와서 판매하였고, 일본지폐를 매집하여 오사카 지역 면제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이러한 淸商의 활동으로 인천항 환율은 상하이시장과 연결되어 연동되면서 하락했으며, 인천항 일본지폐는 오사카 지역으로 대량 유출되었다. 1900년 이후 일본군대의 만주 진출, 그리고 1904년 러일전쟁 이후 만주시장이 열리면서 인천항 일본지폐가 淸商에 의해 이 지역으로 유통되면서 일본지폐 유통 지역이 확대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상하이-인천-오사카를 연결하는 해외유통망의 작동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인천항 해외유통네트워크의 작동은 인천항 수입상품의 구성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대청일 무역상품이 각기 다른 소비시장을 분점하면서 종래 중계무역상품 경쟁관계는 점차 보완적 관계로 전화되었고, 삼국 상인의 상호거래가 확대되었다. 또한 淸商의 활동에 의해 인천환율시장의 변동 폭이 극심하게 진행되면서 인천의 화폐시장은 매우 불안정했다. 인천항 거류지 삼국 상인은 불안정한 인천 거류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거래와 외환거래를 확대시켜 나아갔다.

한편 거류지와 국내 시장 간 형성된 백동화가치의 차이는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을 무대로 활동했던 인천항 韓商의 성장조건이 되고 있었다. 거류지 환율변동의 영향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었던 국내시장은 백동화가치가 거류지시장에 비해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격조건차이는 인천항 국내 무역과 연결되면서 국내 무역 소장에 영향을 미쳤다. 환율이 상승하여 수입상품의 가격조건이 악화되면 인천항 韓商은 국내 상품을 다량 인천항으로 구입해왔

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류지시장과 국내시장에서 가치차이가 발생했던 백동화는 국내시장으로 유통이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韓商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인천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해외유통 네트워크와 국내유통네트워크는 인천항 韓商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

그러나 인천항 삼국 상인 간 진행된 신용거래는 소자본의 도태를 촉진하였다. 거류지와 국내시장을 무대로 백동화의 수급을 조절하고, 거류지 시장과 국내시장의 백동화 가치 차이에서 초과 이윤을 장악했던 대자본 韓商의 활동으로 인해 지방의 소상공생산자의 상품은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했으며, 신용거래에서 배제된 소상공인은 시장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가질 수 없었다. 여기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화폐시장의 불안정성은 소자본가의 시장 대응력을 약화시켜 나아갔다. 이처럼 인천항 유통네트워크는 인천거류지 시장에서 신용시스템을 발전시키고, 韓商의 성장기반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 대한제국 시장에서 대자본의 논리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 한국고대 해상교류 일람표

<표 1> 신라와 일본의 민간교류

| 연도          | 국가 | 교류내용                                             | 조치                        | 전거            |
|-------------|----|--------------------------------------------------|---------------------------|---------------|
| 811. 8. 12  | 신라 | 작년에 金巴兄 등 3인 표류                                  | 방환을 허락                    | 日本<br>後紀      |
| 812. 1. 1   | 신라 | 작년 12월 6일 신라선 출몰                                 | 5인 살해 4인 생포, 신라에 대한 경계 강화 |               |
| 812. 3. 1   | 신라 | 淸漢波 등 표류                                         | 방환                        |               |
| 812. 9. 9   | 신라 | 劉晴 등 10명 표류                                      | 곡식을 주어 방환                 |               |
| 814. 8. 23  | 신라 | 신라인 6명 귀화                                        | 美濃國에 안치                   |               |
| 814. 10. 13 | 신라 | 신라 상인 31명 長門國 豐浦郡에 표착                            | 大宰府에 보고                   |               |
| 814. 10. 27 | 신라 | 신라인 辛波古知 등 26인 筑前國 博多津에 표착, 귀화 요청                |                           |               |
| 833. 4. 8   | 신라 | 金禮眞 등 10인 표류, 귀화                                 | 본관을 左京 5條에 속하게 함          | 續<br>日本<br>後紀 |
| 834. 2. 2   | 신라 | 신라인이 大宰府에 오니 일본인이 활을 쏘아 다치게 함                    | 가해자를 처벌하고 치료하고 양식을 주어 방환  |               |
| 835. 3. 13  | 일본 | 壹伎島에 신라인의 잣은 출몰                                  | 大宰府, 해안 요충지 경계            |               |
| 839. 8. 20  | 일본 | 遣唐使, 楚州의 신라배 9척을 대어 받아 귀국                        | 항해시 앞 뒤 배의 연락 방법을 강구하게 함  |               |
| 839. 10. 9  | 일본 | 遣唐使를 태운 신라배 1척 博多津 도착                            |                           |               |
| 840. 9. 15  | 일본 | 大宰府, 대마도에서 조정의 신라배 6척 중 1척 요청함을 보고               | 항해의 안전을 위해 지급 허락          |               |
| 840. 12. 27 | 신라 | 장보고 사신 파견                                        | 공납거절                      |               |
| 841. 2. 27  | 일본 | 장보고건에 대해 논의                                      | 민간교역 허가                   |               |
| 842. 1. 10  | 신라 | 李少貞 등 40인 筑紫도착. 장보고의 죽음과 李昌珍의 반란 알림. 闔丈의 침장가지고 옴 | 작년의 廻易使 李忠의 물건 탈취문제 논의    |               |
| 842. 8. 15  | 일본 | 大宰大貳 藤原朝臣衛, 신라인의 교역 금지 요청                        | 조정에서 不許                   |               |
| 843. 12. 9  | 일본 | 당유학승 天台宗 圓載의 제자 仁好와 신라인 張公靖 등 26인 長門國 도착         |                           |               |
| 845. 12. 5  | 신라 | 大宰府, 신라인이 강주의 첩문 2통과 일본 표류인 50명을 송환해 왔음을 보고      |                           |               |
| 848. 3. 26  | 일본 | 大宰府, 작년 10월 천태종 유학승 圓仁과 제자 性海 惟正이 신라 상선편으로 귀국 보고 |                           |               |
| 856. 3. 壬子  | 일본 | 大宰府, 신라인 30명 도착 보고                               | 방환                        | 文德天皇實錄        |
| 863. 4. 21  | 일본 | 앞서 大宰府가 신라 승려 3인이 博多津에 도착함을 보고                   | 鴻臚館에 안치하였다가 양식을 주어 방환     |               |

| 연도          | 국가 | 교류내용                                       | 조치                                             | 전거     |
|-------------|----|--------------------------------------------|------------------------------------------------|--------|
| 863. 11. 17 | 일본 | 앞서 신라인이 丹後國에 54명, 因幡國에 57명 도착              | 양식 주어 방환                                       | 日本三代實錄 |
| 864. 2. 17  | 신라 | 작년 신라인 34명 石見國 美乃郡에 도착, 24명 생존             | 양식 지급후 방환                                      |        |
| 869. 6. 15  | 일본 | 大宰府, 지난달 신라 해적선 2척이 博多津을 약탈했으나 잡지 못한 것을 보고 |                                                |        |
| 869. 12. 17 | 일본 | 신라해적 貢綿 약탈                                 | 勅을 내려 방비와 재해 예방 명함                             |        |
| 870. 2. 12  | 일본 | 對馬島人 卜部乙屎磨呂가 신라 경계에 갔다가 체포, 탈출함            | 신라의 군사훈련 상황을 접수한 大宰府가 보고, 勅으로 방어장비를 갖추어 대비를 명함 | 日本三代實錄 |
| 870. 2. 20  | 일본 | 大宰府 관내 거주 신라인 潤清 宣堅 등 30인, 서울로 귀환케 함       | 교관직에 종사한 潤清 등이 신라와 대응할 것에 대비함                  |        |
| 870. 6. 13  | 일본 | 潤清 등 30인 중 7인이 신라로 도망                      | 칙으로 大宰府에 신라에 대한 경계를 명함                         |        |
| 873. 12. 22 | 일본 | 大宰府가 9월 25일 對馬島에 표착한 신라인 32인을 가두고 보고       | 칙으로 정황을 살펴 방환케 함                               |        |
| 874. 8. 8   | 일본 | 大宰府가 신라사신 32인이 對馬島에 표착한 것을 보고              | 칙으로 속히 방환케 함                                   |        |

<표 2> 통일 신라의 遣日本使

| 연도       | 연호      | 사절단     | 내용                                                                | 비고                                      |
|----------|---------|---------|-------------------------------------------------------------------|-----------------------------------------|
| 668년 9월  | 문무왕 8년  | 級浪 金東嚴  | 進調                                                                | 김유신에 船 1척, 신라왕에 船, 絹, 綿, 韋 사여           |
| 669년 9월  | 문무왕 9년  | 沙浪 督儒   | 進調                                                                |                                         |
| 671년 6월  | 문무왕 11년 |         | 進調, 別獻(水牛, 山雞)                                                    |                                         |
| 671년 10월 | 문무왕 11년 | 沙浪 金萬物  | 進調                                                                | 신라왕에 絹, 絁, 綿, 韋 선사                      |
| 672년 11월 | 문무왕 12년 | 金押實     |                                                                   | 筑紫에서 연회, 신라사절단에게 船 1척 사여                |
| 673년 閏6월 | 문무왕 13년 | 韓阿浪 金承元 |                                                                   | 賀騰極使, 中客 이상 27인 入京                      |
| 675년 2월  | 문무왕 15년 | 王子 金忠元  | 進調                                                                | 送使 奈末金風那 筑紫歸國, 級浪金比蘇 등 4인 동행, 難波에서 귀국   |
| 675년 3월  | 문무왕 15년 | 級浪 朴勤修  | 進調                                                                | 大奈末 金美賀 동행                              |
| 676년 11월 | 문무왕 16년 | 沙浪 金淸平  | 請政                                                                | 김청평 이하 13인 入京, 送使 奈末被珍那 筑紫에서 귀국, 표류민 동행 |
| 676년 11월 | 문무왕 16년 | 大奈末 金楊原 | 고구려 使人 筑紫에 送使                                                     |                                         |
| 678년     | 문무왕 18년 | 級浪 金消勿  | 送使 奈末加良井山 新羅使의 해중조난을 알림. 消勿 등 不來                                  | 送使 加良井山 등 入京                            |
| 679년 10월 | 문무왕 19년 | 阿浪 金項那  | 調物, 金銀鐵鼎, 錦絹布, 皮馬, 狗, 騾, 駱駝之類 十餘種, 別獻物. 天皇, 皇后, 太子, 貢金銀刀旗之類各有數    | 筑紫筑紫에서 연회                               |
| 680년 5월  | 문무왕 20년 | 大奈末 考那  | 高句麗使人을 筑紫에 送使                                                     |                                         |
| 680년 11월 | 문무왕 20년 | 沙浪 金若弼  | 進調, 習言者 3인 동행                                                     | 筑紫에서 연회, 賜祿物                            |
| 681년 10월 | 신문왕 1년  | 一吉浪 金忠平 | 調物. 金銀銅鐵, 錦絹, 鹿皮, 細布之類各有數. 別獻 天皇, 皇后太子金銀, 錦, 霞幡, 皮之類, 各有數. 文武王 告喪 | 筑紫에서 연회                                 |
| 682년 6월  | 신문왕 2년  | 大那末 金釋起 | 高句麗使人 送使                                                          |                                         |
| 683년 11월 | 신문왕 3년  | 沙浪 金主山  | 進調                                                                |                                         |

| 연도       | 연호      | 사절단    | 내용                                                                                                                         | 비고                                            |
|----------|---------|--------|----------------------------------------------------------------------------------------------------------------------------|-----------------------------------------------|
| 684년 12월 | 신문왕 4년  | 大那末金智儒 | 大唐學生 土師宿禰等을 送使                                                                                                             |                                               |
| 685년 11월 | 신문왕 5년  | 波珍浪金智祥 | 請政, 進調. 細馬一疋, 騾一頭, 犬二狗, 鍤金器及金銀, 霞錦, 綾羅, 虎豹皮及藥物之類并百餘種. 別獻物, 金銀, 霞錦, 綾羅, 金器, 屏風, 鞍皮, 絹布, 藥物之類, 各六十餘種. 別獻皇后, 皇太子, 及諸親王等之物 各有數 | 筑紫에서 연회, 연회를 위해 川原寺의 伎樂을 筑紫로 옮김, 祿物사여         |
| 687년 9월  | 신문왕 7년  | 王子金霜林  | 奏請國政, 獻調賦, 金銀, 絹布, 皮銅鐵之類十餘物, 別所獻佛像, 種種彩絹, 鳥馬之類十餘種. 所獻金銀, 彩色, 種種珍異之物, 八十餘物                                                  | 筑紫에서 연회, 級浪 金薩學, 級浪 金仁述, 大舍 蘇陽信 동행            |
| 689년 4월  | 신문왕 9년  | 級浪金道那  | 天武天皇 弔問使, 學問僧 明聰, 觀智等 送使. 別獻金銅阿彌陀像, 金銅觀世音菩薩像, 大勢至菩薩像, 彩帛錦綾.                                                                | 筑紫에서 연회, 新羅 學問僧 明聰, 觀智의 師友에게 보낼 綿 사여, 사신에게 賜物 |
| 690년 9월  | 신문왕 10년 | 大奈末金高訓 | 大唐學問僧 智宗, 義德, 淨願, 大伴部博麻 等を 送使                                                                                              | 筑紫에서 연회, 사신에 賞賜                               |
| 692년 11월 | 효소왕 1년  | 級浪朴億德  | 進調                                                                                                                         | 難波館에서 연회, 新羅 調 5社에 헌납, 표류민 37명 송환             |
| 693년 2월  | 효소왕 2년  | 沙浪金江南  | 神文王의 告喪使                                                                                                                   | 신라왕에 絹, 絁, 綿, 韋 進사                            |
| 695년 3월  | 효소왕 4년  | 王子金良林  | 奏請國政, 進調獻物                                                                                                                 | 薩浪 朴強國, 韓奈麻 金周漢·金忠仙 동행                        |
| 697년 10월 | 효소왕 6년  | 一吉浪金弼德 | 貢調物                                                                                                                        | 신라사 大極殿新年賀禮, 新羅 公물 神社, 天武陵에 獻納                |
| 700년 11월 | 효소왕 9년  | 薩浪金所毛  | 孝昭王母의 告喪使                                                                                                                  | 金所毛사망, 絁·綿·布 사여, 新羅使 水夫 이상 賜祿                 |
| 703년 1월  | 성덕왕 2년  | 薩浪金福護  | 孝昭王의 告喪使                                                                                                                   | 難波館에서 연회, 표류 신라인 동행                           |
| 705년 10월 | 성덕왕 4년  | 一吉浪金儒吉 | 貢調使                                                                                                                        | 신라사 大極殿 신년하례, 朝堂 연회, 新羅 調 伊勢, 七道諸社에 헌납        |
| 709년 3월  | 성덕왕 8년  | 金信福    | 貢方物                                                                                                                        | 朝堂에서 연회, 賜祿, 신라왕에게 絁·射·綿 사여                   |
| 714년 11월 | 성덕왕 13년 | 重阿浪金元靜 | 朝貢                                                                                                                         | 入京, 中門에서 연회, 賜綿                               |

| 연도       | 연호         | 사절단                | 내용                                              | 비고                                                    |
|----------|------------|--------------------|-------------------------------------------------|-------------------------------------------------------|
| 719년 5월  | 성덕왕<br>18년 | 級浪 金<br>長言         | 獻貢物, 騾馬, 牧牝 各 一疋                                | 新羅王・長言에게 賜<br>祿                                       |
| 721년 12월 | 성덕왕<br>20년 | 一吉 浪<br>金乾安        | 貢調使                                             | 元明天皇 사망으로 筑<br>紫에서 방환                                 |
| 723년 8월  | 성덕왕<br>22년 | 韓 奈 麻<br>金貞宿       | 15명 來貢                                          | 朝堂에서 연회                                               |
| 726년 5월  | 성덕왕<br>25년 | 薩浪 金<br>造近         | 貢調物                                             | 入京, 朝堂에서 연회                                           |
| 732년 1월  | 성덕왕<br>31년 | 韓 奈 麻<br>金長孫       | 進種種財物, 并鸚鵡一口, 鳩鴿一<br>口, 獨狗一口, 獵狗一口, 驢二頭,<br>騾二頭 | 김장손 등 40인 入京,<br>朝堂에서 연회                              |
| 734년 12월 | 성덕왕<br>33년 | 級 伐 浪<br>金相貞       | 貢調使                                             | 입경후, 王城國으로 국<br>호변경 때문에 返却                            |
| 738년 1월  | 효성왕<br>2년  | 級浪 金<br>想純         | 147명 來朝                                         | 大宰府 연회, 放還                                            |
| 742년 2월  | 경덕왕<br>1년  | 沙浪 金<br>欽英         | 187명 來朝                                         | 新京 미완성으로 放還                                           |
| 743년 3월  | 경덕왕<br>2년  | 薩浪 金<br>序貞         |                                                 | 調를 土毛라고 개칭,<br>大宰府에서 返却                               |
| 752년 閏3월 | 경덕왕<br>11년 | 王子<br>韓 阿 浪<br>金泰廉 | 貢調使 大使 金宣, 送王子使 金弼<br>言 등 700여명 來朝              | 朝堂에서 연회, 大安寺,<br>東大寺 예불                               |
| 760년 9월  | 경덕왕<br>19년 | 級浪 金<br>貞卷         | 朝貢                                              | 放還                                                    |
| 763년 2월  | 경덕왕<br>22년 | 級浪 金<br>體信         | 211명 來朝                                         |                                                       |
| 764년 7월  | 경덕왕<br>23년 | 大 奈 麻<br>金才伯       | 91명 도착, 일본승의 귀국확인                               |                                                       |
| 769년 11월 | 혜공왕<br>5년  | 級浪 金<br>初正         | 146명 對馬島에 도착, 遣唐大使<br>藤原河清의 서간을 가지고 옴           | 土毛로 함. 大宰府 연<br>회, 신라왕에게 純・<br>綿・絲 사여                 |
| 774년 10월 | 혜공왕<br>10년 | 沙浪 金<br>三玄         | 235명 大宰府 도착, 遣唐大使 藤<br>原河清의 서간을 가지고 옴           | 貢調를 國信物이라 함,<br>放還                                    |
| 779년 10월 | 혜공왕<br>15년 | 薩浪 金<br>蘭蓀         | 貢調                                              | 入京, 新年賀正, 級浪<br>金嚴, 韓奈麻 薛仲業,<br>奈末金貞樂, 韓奈末 金<br>蘇忠 入京 |

<표 3> 일본의 遣新羅使

| 연도       | 연호      | 사절단          | 내용                    | 비고                                     |
|----------|---------|--------------|-----------------------|----------------------------------------|
| 668년 9월  | 문무왕 8년  | 小山下 道守臣麻呂    |                       | 新羅使 金東嚴과 동행                            |
| 670년 9월  | 문무왕 10년 | 阿曇連煩垂        |                       |                                        |
| 675년 7월  | 문무왕 15년 | 小錦上 大伴連國麻呂   |                       |                                        |
| 676년 10월 | 문무왕 16년 | 大乙上 物部連麻呂    |                       |                                        |
| 681년 7월  | 신문왕 1년  | 小錦下 采女臣竹羅    |                       |                                        |
| 684년 4월  | 신문왕 4년  | 小錦下 高向臣麻呂    |                       | 學問僧 觀常, 雲觀 귀국<br>신라왕 賜物, 馬・犬・鸚鵡・鵲及種種寶物 |
| 687년 1월  | 신문왕 7년  | 直廣肆 田中朝臣法麻呂  | 天武天皇의 告喪使             |                                        |
| 693년 3월  | 효소왕 1년  | 直廣肆 息長真人老    | 신라왕에게 선물              | 學問僧 弁通, 神叡 동행                          |
| 695년 9월  | 효소왕 4년  | 直廣肆 小野朝臣毛野   |                       |                                        |
| 700년 5월  | 효소왕 9년  | 直廣肆 佐伯宿禰麻呂   |                       | 신라 孔雀・珍物 하사                            |
| 703년 10월 | 성덕왕 2년  | 從5位下 波多朝臣廣足  | 신라왕에게 綿・純 선물          |                                        |
| 706년 11월 | 성덕왕 5년  | 從5位下 美努連淨麻呂  |                       | 學問僧 義法, 義基, 惣集, 慈定, 淨達 귀국              |
| 712년 10월 | 성덕왕 11년 | 從5位下 道君守名    |                       |                                        |
| 718년 5월  | 성덕왕 17년 | 正5位下 小野朝臣馬養  |                       |                                        |
| 719년 8월  | 성덕왕 18년 | 從6位上 白猪史廣成   |                       |                                        |
| 722년 5월  | 성덕왕 21년 | 正6位下 津史主治麻呂  |                       |                                        |
| 724년 8월  | 성덕왕 23년 | 從5位上 土師宿禰豐麻呂 |                       |                                        |
| 732년 2월  | 성덕왕 31년 | 從5位上 角朝臣家主   |                       |                                        |
| 736년 4월  | 성덕왕 35년 | 從5位下 阿倍朝臣繼麻呂 |                       | 阿倍朝臣繼麻呂 대마도에서 사망, 大伴宿禰三 中 염병으로 不入京     |
| 740년 4월  | 효성왕 4년  | 外從5位下 紀朝臣必登  |                       |                                        |
| 742년 1월  | 경덕왕 1년  |              |                       | 日本國使 신라에서 不納                           |
| 752년 1월  | 경덕왕 11년 | 正5位下 山口忌寸人麻呂 |                       |                                        |
| 753년 2월  | 경덕왕 12년 | 從5位下 小野朝臣田守  |                       | 日本國使 신라왕이 不見                           |
| 779년 12월 | 혜공왕 15년 | 正6位上 下道朝臣長人  | 탐라에 표류한 견당사를 귀환시키기 위해 |                                        |

<표 4> 고대 한국·중국·일본 삼국의 항해 사례

| 연도  | 항해자            | 출발지    | 경유지 | 도착지        | 출전                                  |
|-----|----------------|--------|-----|------------|-------------------------------------|
| 587 | 大世·仇柒          | 南海 黃山津 |     |            | 三國史記 권4, 진평왕 9년                     |
| 608 | 裴世清외 12명       | 登州     |     | 筑紫         | 日本書紀 권22, 推古天皇 16년 夏4월 隋書 倭國傳       |
| 609 | 道欣 등 80명       |        |     | 肥後國 葦北津    | 日本書紀 권22, 推古天皇 17년 庚子               |
| 650 | 義湘             |        |     | 揚州         | 三國遺事 권4, 義湘傳教                       |
| 660 | 蘇定方            | 成山     |     | 德物島        | 舊唐書 권83, 蘇定方傳 三國史記 권5, 태종무열왕 7년     |
| 670 | 義湘             |        |     | 登州         | 續高僧傳 권13                            |
| 685 | 土師宿禰甥외 3명, 金物儒 |        |     | 筑紫         | 日本書紀 권29, 天武天皇 13년 12월 丙寅朔 乙卯       |
| 690 | 智宗외 2명, 金高訓    |        |     | 筑紫         | 日本書紀 권30, 持統天皇 4년 9월 丁酉             |
| 769 | 金正初 등 225명     |        |     | 對馬島        | 日本紀略 神護景雲 11년                       |
| 779 | 金蘭蓀 외          |        |     | 大宰府        | 續日本後紀 光仁天皇 寶龜 10년 2월                |
| 804 | 일본 遣唐使         | 松浦郡 田浦 |     | 福州 赤岸鎮     | 日本後記 권24, 桓武天皇 延曆24년 6월 乙巳          |
| 805 | 일본 遣唐使         |        |     | 對馬下縣何禮村    | 日本後記 권24, 桓武天皇 延曆24년 6월 乙巳          |
| 810 | 金巴兄, 金乘第, 金小巴  |        |     | 大宰府        | 日本後記 권21, 嵯峨天皇 弘仁2년 秋7월 甲戌          |
| 812 | 신라인            |        |     | 對馬 下縣郡 佐須浦 | 日本後記 권23, 嵯峨天皇 弘仁3년 正月 庚申朔 甲子       |
| 813 | 신라인 110명       |        |     | 肥前 小近島     | 日本後記 권23, 嵯峨天皇 弘仁4년 3월 18일          |
| 814 | 신라상인 31명       |        |     | 長門 豐浦郡     | 日本紀略, 嵯峨天皇 弘仁 5년                    |
| 814 | 清石珍 등 180명     |        |     | 大宰府        | 日本紀略, 嵯峨天皇 弘仁 5년                    |
| 814 | 辛派古知 등 26명     |        |     | 筑前 搏多津     | 日本後記 권24, 嵯峨天皇 弘仁 5년 冬10월 庚午        |
| 814 | 寂忍禪師           | 取城郡    |     | 秦橋         | 大安寺 寂忍禪師照輪清淨塔碑文                     |
| 814 | 신라상인           |        |     | 長門         | 日本紀略 권14                            |
| 816 | 신라인 160명       |        |     | 浙東         | 三國史記 권10, 헌덕왕 8년 舊唐書 권199上, 동이열전 신라 |
| 820 | 李少貞 등 20명      |        |     | 出羽         | 日本紀略 권14                            |
| 822 | 郎慧和尚           | 唐恩浦    |     | 之罘山        | 三國史記 권10, 헌덕왕 17년 聖住寺 郎慧和尚白月葆光塔碑    |

| 연도  | 항해자                | 출발지    | 경유지 | 도착지         | 출전                                         |
|-----|--------------------|--------|-----|-------------|--------------------------------------------|
| 835 | 신라상인               |        |     | 壹岐島         | 續日本後紀 권24, 嵯峨天皇<br>弘仁 5년 10월 丙寅            |
| 837 | 慧目山和尚              |        |     | 武州 會津       | 祖堂集 권17, 東國慧目山和尚                           |
| 838 | 圓仁                 | 博多     |     | 如東縣 東梁<br>豊 | 入唐求法巡禮行記 開成 3년<br>7월 2일                    |
| 839 | 錄事大臣 宗雄            | 楚州     |     | 筑紫          | 續日本後紀 권8, 仁明天皇 承<br>和 6년 8월 己巳             |
| 839 | 일본 견당사             | 淮河 하구  |     | 登州 赤山浦      | 入唐求法巡禮行記 開成 4년                             |
| 839 | 圓仁                 | 東來縣    |     | 牟平縣 陶村      | 入唐求法巡禮行記 開成 4년                             |
| 839 | 交關船                | 신라 청해진 |     | 旦山浦         | 入唐求法巡禮行記 開成 4년<br>6월 27일                   |
| 840 | 崔押衙의 배             | 揚州     |     | 乳山浦         | 入唐求法巡禮行記 開成 5년<br>2월 15일                   |
| 841 | 신라상인               |        |     | 九州 山陰沿<br>海 | 續日本後紀, 仁明天皇 承和 8<br>년 8월 25일               |
| 842 | 李少貞 등 30명          |        |     | 筑紫 大津       | 續日本記 권11, 承和 9년 춘<br>정월 乙巳                 |
| 842 | 慧萼和尚               | 明州     |     | 일본          | 入唐求法巡禮行記 會昌 2년<br>5월 25일                   |
| 843 | 僧 仁好, 張公靖<br>등 26명 |        |     | 長門          | 續日本後紀 권11, 仁明天皇<br>承和 10년 12월 癸亥           |
| 845 | 일본배 2척             | 일본     |     | 江南 常州       | 入唐求法巡禮行記 會昌 5년<br>7월 5일                    |
| 847 | 唐人 金簡中             | 乳山浦    |     | 신라          | 入唐求法巡禮行記 會昌 7년<br>閏3월 10일                  |
| 847 | 圓仁                 | 乳山 長淮浦 |     |             | 入唐求法巡禮行記 會昌 7년<br>7월 20일                   |
| 847 | 圓仁                 | 赤山 莫耶嶋 |     | 格列飛列島       | 入唐求法巡禮行記 會昌 7년<br>9월 2일                    |
| 847 | 張支信 외 36명          | 明州 望海鎮 |     | 值嘉島 那留<br>浦 | 大日本佛教全書 13冊 遊方傳<br>叢書1, 入唐五家傳 安祥寺惠<br>運傳   |
| 847 | 金珍                 | 松江口    | 牢山  | 赤山 莫耶嶋      | 入唐求法巡禮行記 大中 원년<br>6월 9일                    |
| 847 | 圓仁                 |        | 鹿山島 | 博多 能舉島      | 入唐求法巡禮行記 會昌 7년<br>9월 7일                    |
| 847 | 圓仁외 2명             |        |     | 鎮西府         | 續日本後紀 권18, 仁明天皇<br>承和 5년 3월 乙酉             |
| 862 | 張支信・金文<br>習・任仲元    | 值嘉島    |     | 明州 石丹奧      | 大日本佛教全書 13冊 遊方傳<br>叢書1, 入唐五家傳 頭陀親王<br>入唐略記 |
| 863 | 신라인 50명            |        |     | 竹野郡 松原<br>村 | 日本三代實錄 清和天皇 貞觀<br>5년 11월 17일               |

| 연도  | 항해자       | 출발지    | 경유지                | 도착지       | 출전                                   |
|-----|-----------|--------|--------------------|-----------|--------------------------------------|
| 863 | 신라인 57명   |        |                    | 因幡國 荒坂海岸  | 日本三代實錄 清和天皇 貞觀5년 11월 17일             |
| 864 | 신라인 30명   |        |                    | 石見國 美濃國   | 日本三代實錄 清和天皇 貞觀6년 2월 17일              |
| 865 | 宗叡 등 63명  | 福州     |                    | 值嘉島       | 大日本佛教全書 13冊, 遊方傳叢書1, 入唐五家傳, 頭陀親王入唐略記 |
| 865 | 李延孝 등 63명 | 明州 望海鎮 |                    | 值嘉島       | 大日本佛教全書 13冊, 遊方傳叢書1, 禪林寺僧正傳, 宗叡      |
| 869 | 신라인       |        |                    | 博多津       | 日本紀略 清和天皇 貞觀 11년 6월 15일              |
| 870 | 신라해적      |        |                    | 博多        | 日本三代實錄 清和天皇 貞觀 12년 2월 15일            |
| 877 | 崔鐸 등 63명  | 登州     |                    | 筑前        | 日本三代實錄 乾符4년                          |
| 882 | 金直諒       | 신라     | 登州                 | 楚州        | 三國史記 권46, 최치원 열전                     |
| 885 | 崔致遠       | 중국     | 曲浦(海州東海縣), 乳山浦(山東) | 신라        | 桂苑筆耕 권20, 上太尉別紙                      |
| 888 | 法鏡大師      |        |                    | 華亭(江蘇省蘇州) | 五龍寺法鏡大師普照慧光碑文                        |
| 892 | 洞眞大師      | 신라     |                    | 秦橋        | 五龍寺洞眞大師宝雲塔碑                          |
| 892 | 阿湊 良貝     | 신라     |                    | 鵠島(白翎島)   | 三國遺事 권2, 眞成女大王·居陲知                   |
| 896 | 眞澈大師      | 신라     |                    | 鄞江        | 廣照寺眞澈大師宝月乘空塔碑                        |
| 905 | 先覺大師      | 중국     |                    | 平津(唐津)    | 無爲寺先覺大師遍光塔碑                          |
| 908 | 法鏡大師      |        |                    | 武州 會津     | 五龍寺法鏡大師普照慧光塔碑                        |
| 909 | 大鏡大師      |        |                    | 武州 昇平(順天) | 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                          |
| 911 | 眞澈大師      |        |                    | 羅州 會津     | 廣照寺眞澈大師宝月乘空塔碑                        |
| 921 | 洞眞大師      |        |                    | 全州 臨陂郡    | 玉龍寺洞眞大師宝雲塔碑                          |
| 921 | 元宗大師      |        |                    | 康州 德安浦    | 高達寺元宗大師惠眞塔碑                          |
| 924 | 靜眞大師      |        |                    | 喜安縣(扶安郡)  | 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碑                          |
| 928 | 僧 洪慶      | 閩府     |                    | 禮成江       | 高麗史 권1 太祖世家 11년 8월                   |
| 929 | 신라인       |        |                    | 登州        | 五代會要 권30 신라                          |
| 934 | 金吉        | 고려     |                    | 山東 靑州     | 冊府元龜 권972, 外臣部 朝貢5                   |
| 934 | 고려인       |        |                    | 登州 靑州     | 冊府元龜 권999, 外臣部 互市                    |

| 연도   | 항해자                              | 출발지                         | 경유지          | 도착지              | 출전                                                                            |
|------|----------------------------------|-----------------------------|--------------|------------------|-------------------------------------------------------------------------------|
| 940  | 王仁翟                              |                             |              | 靑州               | 冊府元龜 권96, 外臣部 納質<br>高麗史 권2, 太祖世家<br>五代會要 권30, 高麗                              |
| 940  | 眞觀禪師                             |                             | 백제           | 錢塘(杭州)           | 智谷寺眞觀禪師悟空塔碑                                                                   |
| 955  | 圓空國師                             |                             |              | 吳越國              | 居頓寺圓空國師勝妙塔碑文                                                                  |
| 993  | 秘書省 直史館<br>陳靖 秘書乘 劉式<br>고려사신 白思柔 | 東牟(登州)<br>八角海口<br>(烟台市 套子灣) | 芝崗島<br>(芝罘島) | 登津口              | 高麗史 권3, 成宗世家 宋史 권487, 列傳 246, 外國3, 高麗<br>文獻通考 권325, 四裔考2, 高句麗(高麗)             |
| 992  | 宋使臣 劉式<br>고려사신 元證衍               |                             |              | 安香浦口<br>(登州)     | 宋史 권487, 列傳 246, 外國3, 高麗<br>文獻通考 권325, 四裔考2, 高句麗(高麗) 宋史 권487, 列傳 246, 外國3, 高麗 |
| 1000 | 牙張 朱仁紹                           |                             |              | 登州               | 文獻通考 권325, 四裔考2, 高句麗(高麗) 宋史 권487, 列傳 246, 外國3, 高麗                             |
| 1019 | 崔元信                              |                             |              | 秦王水口<br>(登州 文登縣) | 文獻通考 권325, 四裔考2, 高句麗(高麗) 宋史 권487, 列傳 246, 外國3, 高麗                             |
| 1036 | 金元冲                              |                             |              | 登津               | 高麗史 권6, 靖宗世家                                                                  |
| 1071 | 金梯                               |                             | 登州           | 海門縣              | 高麗史 권8, 文宗世家, 辛亥25년3월 庚寅 續資治通鑑長編 권223, 神宗 熙寧 4년5월 文獻通考 권325, 四裔考2, 高句麗(高麗)    |
| 1078 | 安燾<br>陳睦                         | 定海(浙江省 舟山島)                 |              | 禮成江              | 文獻通考 권325, 四裔考2, 高句麗(高麗) 宋史 권487, 列傳 246, 外國3, 高麗 高麗史 권9, 文宗世家                |
| 1084 | 楊景略·王舜封                          | 密州 板橋<br>(山東 膠縣)            |              | 고려               | 高麗圖經 권2, 世次王氏<br>高麗史 권10, 宣宗世家                                                |
| 1085 | 大覺國師 壽介                          | 貞州(開豐)                      |              | 密州 板橋<br>津       | 靈通寺大覺國師碑·僊鳳寺大覺國師碑 高麗史 권90, 列傳3, 宗室1, 大覺國師                                     |
| 1086 | 大覺國師 壽介                          | 明州                          |              | 고려               | 東國通鑑 권18, 高麗紀, 宣宗 思孝王                                                         |
| 1102 | 劉達·吳弼                            | 明州道 梅岑(普陀島)                 |              | 고려               | 高麗史 권12, 肅宗世家<br>高麗圖經 권39, 海道6, 禮成港                                           |
| 1123 | 徐兢                               | 明州                          |              | 郡山島<br>(仙遊島)     | 高麗圖經 권39, 海道6, 禮成港                                                            |
| 1126 | 金富弼                              |                             |              | 明州               | 高麗史 권15, 仁宗世家                                                                 |
| 1133 | 韓惟忠                              |                             |              | 洪州(安眠島)          | 高麗史 권16, 仁宗世家                                                                 |

<표 5> 남북국시대 한국·중국·일본 삼국의 항해 사례(종합)

| 연도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668.9  | 金東嚴            | 신라  | 일본  |    | 김유신에 船 1척, 신라왕에 船, 絹, 綿, 韋 사여                                              |
| 668.9  | 小山下 道守臣<br>麻呂  | 일본  | 신라  |    | 新羅使 金東嚴과 동행                                                                |
| 669    |                | 일본  | 唐   |    |                                                                            |
| 669.9  | 督儒             | 신라  | 일본  |    |                                                                            |
| 670.9  | 阿曇連煩垂          | 일본  | 신라  |    |                                                                            |
| 671.6  |                | 신라  | 일본  |    | 別獻 水牛, 山鷄                                                                  |
| 671.10 | 金萬物            | 신라  | 일본  |    | 신라왕에 絹, 綿, 綿, 韋 선사                                                         |
| 672.11 | 金押實            | 신라  | 일본  |    | 筑紫에서 연회, 신라사절단에게 船 1척 사여                                                   |
| 673.閏6 | 金承元            | 신라  | 일본  |    | 賀登極使, 中客 이상 27인 入京                                                         |
| 675.2  | 金忠元            | 신라  | 일본  |    | 送使 奈末金風那 筑紫귀국, 級滄 金比蘇 등 4인 동행, 難波에서 귀국                                     |
| 675.3  | 朴勤修            | 신라  | 일본  |    | 大奈末 金美賀 동행                                                                 |
| 675.7  | 小錦上 大伴連<br>國麻呂 | 일본  | 신라  |    |                                                                            |
| 676.10 | 大乙上 物部連<br>麻呂  | 일본  | 신라  |    |                                                                            |
| 676.11 | 金淸平            | 신라  | 일본  |    | 김청평 이하 13인 入京, 送使 奈末被珍那 筑紫에서 귀국, 표류민 동행                                    |
| 676.11 | 金楊原            | 신라  | 일본  |    | 고구려 使人 筑紫에 送使                                                              |
| 678    | 金消勿            | 신라  | 일본  |    | 送使 加良井山이 新羅使의 해중조난을 알림. 消勿 등 不來                                            |
| 679.10 | 金項那            | 신라  | 일본  |    | 筑紫에서 연회. 調物 10여종. 別獻物                                                      |
| 680.5  | 考那             | 신라  | 일본  |    | 高句麗使人을 筑紫에 送使                                                              |
| 680.11 | 金若弼            | 신라  | 일본  |    | 習言者 3인 동행. 筑紫에서 연회, 賜祿物                                                    |
| 681.7  | 小錦下 采女臣<br>竹羅  | 일본  | 신라  |    |                                                                            |
| 681.10 | 金忠平            | 신라  | 일본  |    | 調物. 金銀銅鐵, 錦絹, 鹿皮, 細布之類各有數. 別獻 天皇, 皇后太子金銀, 錦, 霞幡, 皮之類, 各有數. 文武王 告喪. 筑紫에서 연회 |
| 682.6  | 金釋起            | 신라  | 일본  |    | 高句麗使人 送使                                                                   |
| 683.11 | 金主山            | 신라  | 일본  |    |                                                                            |
| 684.4  | 小錦下 高向臣<br>麻呂  | 일본  | 신라  |    | 學文僧 觀常·雲觀 귀국, 신라왕 賜物, 馬·犬·鸚鵡·鵲及種種寶物                                        |
| 684.12 | 金物儒            | 신라  | 일본  |    | 大唐學生 土師宿禰塙 등을 送使                                                           |

| 연도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685.11 | 金智祥         | 신라  | 일본  |    | 請政, 進調, 細馬一疋, 騾一頭, 犬二狗, 鍍金器及金銀, 霞錦, 綾羅, 虎豹皮及藥物之類并百餘種.<br>別獻物, 金銀, 霞錦, 綾羅, 金器, 屏風, 鞍皮, 絹布, 藥物之類, 各六十餘種, 別獻皇后, 皇太子, 及諸親王等之物 各有數<br>筑紫에서 연회, 연회를 위해 川原寺의 伎樂을 筑紫로 옮김, 祿物 사여 |
| 686.2  |             | 신라  | 唐   |    | 禮記・문장요청, 圓測 방환요청                                                                                                                                                        |
| 687.1  | 直廣肆 田中朝臣法麻呂 | 일본  | 신라  |    | 天武天皇의 告喪使                                                                                                                                                               |
| 687.9  | 金霜林         | 신라  | 일본  |    | 奏請國政, 獻調賦, 金銀, 絹布, 皮銅鐵之類十餘物, 別所獻佛像, 種種彩絹, 鳥馬之類十餘種, 所獻金銀, 彩色, 種種珍異之物, 八十餘物, 筑紫에서 연회, 級浪 金薩舉・金仁述 및 大舍 蘇陽信 동행                                                              |
| 689.4  | 金道那         | 신라  | 일본  |    | 天武天皇 弔問使, 學問僧 明聰, 觀智等 送使. 別獻金銅阿彌陀像, 金銅觀世音菩薩像, 大勢至菩薩像, 彩帛錦綾. 筑紫에서 연회, 新羅 學問僧 明聰, 觀智의 師友에게 보낼 綿 사여, 사신에게 賜物                                                               |
| 690.9  | 金高訓         | 신라  | 일본  |    | 大唐學問僧 智宗・義德・淨願・大伴部博疏 등을 送使 筑紫에서 연회, 사신에 賞賜                                                                                                                              |
| 692.11 | 朴億德         | 신라  | 일본  |    | 難波館에서 연회, 新羅調 5社에 헌납, 표류민 37명 송환                                                                                                                                        |
| 693.2  | 金江南         | 신라  | 일본  |    | 신라왕에 絹, 絁, 綿, 韋 선사                                                                                                                                                      |
| 693.3  | 直廣肆 息長真人老   | 일본  | 신라  |    | 신라왕에게 선물, 學問僧 弁通・神叡 동행                                                                                                                                                  |
| 695.3  | 金良林         | 신라  | 일본  |    | 奏請國政, 進調獻物. 薩浪 朴強國, 韓奈麻 金周漢・金忠仙 동행                                                                                                                                      |
| 695.9  | 直廣肆 小野朝臣毛野  | 일본  | 신라  |    |                                                                                                                                                                         |
| 697.10 | 金弼德         | 신라  | 일본  |    | 貢調物. 新羅使 大極殿新年賀禮, 新羅 公 물 神社・天武陵에 헌납                                                                                                                                     |
| 699.2  |             | 신라  | 唐   |    |                                                                                                                                                                         |
| 700.5  | 直廣肆 佐伯宿禰麻呂  | 일본  | 신라  |    | 신라에서 孔雀・珍物 하사                                                                                                                                                           |
| 700.11 | 金所毛         | 신라  | 일본  |    | 孝昭王母의 告喪使, 金所毛 사망, 絁・綿・布 사여, 新羅使 水夫 이상 賜祿                                                                                                                               |
| 702.6  |             | 일본  | 唐   |    |                                                                                                                                                                         |
| 703.1  | 金福護         | 신라  | 일본  |    | 孝昭王의 告喪使, 難波館에서 연회, 표류 신라인 동행                                                                                                                                           |

| 연도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703.1  |             | 신라  | 唐   |        |                                         |
| 703    | 金思諱         | 신라  | 唐   |        |                                         |
| 703.10 | 從5位下 波多朝臣廣足 | 일본  | 신라  |        | 신라왕에게 綿・絁 선물                            |
| 705.3  | 金志誠         | 신라  | 唐   |        |                                         |
| 705.9  |             | 신라  | 唐   |        |                                         |
| 705.10 | 金儒吉         | 신라  | 일본  |        | 新羅使 大極殿 新年賀禮, 朝堂 연회, 新羅調 伊勢 및 7道諸社에 헌납  |
| 706.4  |             | 신라  | 唐   |        |                                         |
| 706.8  |             | 신라  | 唐   |        |                                         |
| 706.10 |             | 신라  | 唐   |        |                                         |
| 706.11 | 從5位下 美努連淨麻呂 | 일본  | 신라  |        | 學問僧 義法, 義基, 惣集, 慈定, 淨達 귀국               |
| 707.12 |             | 신라  | 唐   |        |                                         |
| 709.3  |             | 신라  | 일본  |        | 貢方物, 朝堂에서 연회, 賜祿, 신라왕에게 絁・射・綿 사여        |
| 709.6  |             | 신라  | 唐   |        |                                         |
| 710.1  |             | 신라  | 唐   |        |                                         |
| 711.12 |             | 신라  | 唐   |        |                                         |
| 712.2  |             | 신라  | 唐   |        |                                         |
| 712.10 | 從5位下 道君守名   | 일본  | 신라  |        |                                         |
| 712.12 |             | 신라  | 唐   |        |                                         |
| 713.2  |             | 신라  | 唐   |        |                                         |
| 713.6  |             | 신라  | 唐   |        |                                         |
| 714.2  | 朴裕, 金守忠     | 신라  | 唐   | 賀正, 宿衛 | 朝堂 연회, 朴裕 朝散大夫 員外奉御 受爵, 김수충은 716년 9월 귀국 |
| 714.10 |             | 신라  | 唐   |        | 內殿 연회, 宰臣 및 4품 이상 清官 참석                 |
| 714.11 | 金元靜         | 신라  | 일본  |        | 入京, 中門에서 연회, 賜綿                         |
| 714    | 발해          | 唐   |     |        | 唐使 崔忻・學生 동행                             |
| 716.3  | 金楓厚         | 신라  | 唐   | 賀正     | 員外郎 受爵                                  |
| 717.3  |             | 일본  | 唐   |        |                                         |
| 717.5  |             | 신라  | 唐   |        |                                         |
| 718.2  |             | 신라  | 唐   |        | 守中郎將 受爵                                 |
| 718.5  | 正5位下 小野朝臣馬養 | 일본  | 신라  |        |                                         |
| 719.1  |             | 신라  | 唐   | 賀正     | 帛 50필 受領                                |
| 719.5  |             | 신라  | 唐   |        | 도중 卒, 太僕卿 追贈, 絹 100필 賻物                 |
| 719.5  | 金長言         | 신라  | 일본  |        | 獻貢物, 騾馬・牧牝 각1필, 신라왕과 長言에게 賜祿            |

| 연도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719.8  | 從6位上 白猪<br>史廣成   | 일본  | 신라  |           |                                                                         |
| 721.1  | 靺鞨大首領            | 발해  | 唐   |           | 折衝 受爵                                                                   |
| 721.12 | 金乾安              | 신라  | 일본  |           | 元明天皇 사망으로 筑紫에서 망환                                                       |
| 722.5  | 正6位下 津史<br>主治麻呂  | 일본  | 신라  |           |                                                                         |
| 722.10 | 金仁壹              | 신라  | 唐   | 賀正        |                                                                         |
| 722.11 | 大臣 味教計           | 발해  | 唐   |           | 鷹冠상, 大將軍 受爵, 錦袍金魚袋 受領                                                   |
| 723.4  |                  | 신라  | 唐   |           | 果下馬・人蔘・牛黃・表文 헌상                                                         |
| 723.8  | 金貞宿의 15인         | 신라  | 일본  |           | 朝堂에서 연회                                                                 |
| 724.2  | 金武勳              | 신라  | 唐   | 賀正        | 遊擊將軍 受爵, 帛 50匹 수령                                                       |
| 724.2  | 賀作慶              | 발해  | 唐   | 賀正        |                                                                         |
| 724.8  | 從5位上 土師<br>宿禰豐麻呂 | 일본  | 신라  |           |                                                                         |
| 724.12 |                  | 신라  | 唐   |           | 抱貞・貞苑 헌상                                                                |
| 725    |                  | 신라  | 唐   |           | 封禪儀式 慶賀                                                                 |
| 725.1  | 大首領 烏借<br>芝蒙     | 발해  | 唐   | 賀正        |                                                                         |
| 725.4  | 首領 謁德            | 발해  | 唐   |           | 果毅 受爵                                                                   |
| 725.5  | 王弟 大昌敦<br>價      | 발해  | 唐   |           | 左威衛員外將軍・襄平縣開國男 受爵, 紫袍<br>金帶魚袋, 帛50필, 무왕의 綵練 100필 수령                     |
| 726.4  | 從弟 金忠信           | 신라  | 唐   | 賀正,<br>宿衛 | 帛 100필 수령                                                               |
| 726.4  | 長子 大都利<br>行      | 발해  | 唐   |           | 貂鼠皮 헌상, 左武衛大將軍員外置 受爵,<br>在唐卒, 特進兼鴻臚卿 追贈, 絹 300필・粟<br>300석 賻物, 官造靈輿 본국송환 |
| 726.5  | 王弟 金欽質           | 신라  | 唐   |           | 郎將 受爵                                                                   |
| 726.5  | 薩飡 金造近           | 신라  | 일본  |           | 入京, 朝堂에서 연회                                                             |
| 726.11 | 王子 大義信           | 발해  | 唐   |           |                                                                         |
| 727.1  |                  | 신라  | 唐   | 賀正        | 奉御 受爵, 緋袍銀帶魚帶 수령                                                        |
| 727.8  | 王弟 大寶方           | 발해  | 唐   |           |                                                                         |
| 727.9  | 大使 高仁義<br>외 24명  | 발해  | 일본  |           | 出羽國 도착                                                                  |
| 728.2  | 引田虫麻呂            | 일본  | 발해  |           | 送使                                                                      |
| 728.7  | 從弟 金嗣宗           | 신라  | 唐   |           | 果毅 受爵                                                                   |
| 728.9  | 蔭夫須計             | 발해  | 唐   |           | 果毅 受爵                                                                   |
| 729.1  |                  | 신라  | 唐   | 賀正        |                                                                         |
| 729.2  | 王弟 大胡雅           | 발해  | 唐   |           | 遊擊將軍 受爵, 紫袍金帶 수령                                                        |
| 729.3  |                  | 발해  | 唐   |           | 帛 20필 수령                                                                |
| 729.8  | 王弟 大琳            | 발해  | 唐   |           | 中郎將 受爵                                                                  |

| 연도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729.9  |              | 신라  | 唐   |            |                                              |
| 730.1  | 王弟 大郎雅       | 발해  | 唐   | 賀正, 宿衛     | 在唐 嶺南에 유배                                    |
| 730.2  | 王姪 金志滿       | 신라  | 唐   |            | 小馬・狗・頭髮 헌상. 太僕卿員外置同正員 受爵, 絹 100필, 紫袍銀帶魚帶 수령  |
| 730.2  | 大首領 知蒙       | 발해  | 唐   |            | 馬 헌상. 中郎將 受爵, 絹 20필, 緋袍銀帶 수령                 |
| 730.5  | 烏那達利         | 발해  | 唐   |            | 海豹皮・貂鼠皮・瑪瑙杯・馬 헌상. 果毅 수작, 帛 수령                |
| 730.10 |              | 신라  | 唐   |            |                                              |
| 731.2  | 金志良          | 신라  | 唐   |            | 牛黃・金銀 등 헌상. 太僕小卿員外置 受爵, 詔書・帛 60필 수령          |
| 731.2  |              | 발해  | 唐   | 賀正         | 장군 受爵, 帛 100필 수령                             |
| 731.4  | 馬文軌, 葱勿雅     | 발해  | 唐   | 大門藝 주 살 요청 | 唐에 억류                                        |
| 731.10 | 大耶珍 등 120인   | 발해  | 唐   |            | 果毅 受爵, 帛 30필 수령                              |
| 732.1  | 金長孫          | 신라  | 일본  |            | 進種財物, 并鸚鵡・鳩・獨狗・獵狗・臘・驪. 김장손 등 40인 入京, 朝堂에서 연회 |
| 732.1  |              | 신라  | 唐   | 賀正         |                                              |
| 732.2  | 從5位上 角朝臣家主   | 일본  | 신라  |            |                                              |
| 732.9  |              | 신라  | 唐   | 宿衛         | 在唐 病死                                        |
| 733.4  |              | 일본  | 唐   |            | 4척 가운데 3・4船 조난                               |
| 733.12 | 王姪 金志廉       | 신라  | 唐   | 謝恩, 宿衛     | 表文・馬・牛黃・人參 헌상. 內殿연회, 鴻臚小卿員外置 受爵, 束帛 수령, 在唐病死 |
| 734.4  | 大臣 金丹竭丹      | 신라  | 唐   | 賀正         | 內殿연회, 衛尉小卿 受爵, 緋蘭袍平漫銀帶, 絹 60필 수령             |
| 734.12 | 金相貞          | 신라  | 일본  |            | 入京後 王城國으로 국호변경 때문에 返却                        |
| 735.1  | 金義忠, 金榮, 金義質 | 신라  | 唐   | 賀正         | 金榮 在唐 卒, 光祿小卿 추증, 溟江鎮 사여, 詔書 수령              |
| 735.2  | 金思蘭          | 신라  | 唐   | 謝恩         | 太僕卿員外置 受爵, 당에 잔류                             |
| 735.12 | 金(忠)相        | 신라  | 唐   |            | 도중 卒, 衛尉卿 추증                                 |
| 735    | 大茂慶          | 발해  | 唐   |            |                                              |
| 736.3  | 大蕃           | 발해  | 唐   | 宿衛 교 체 요청  | 太子舍人員外 受爵, 帛 30필 수령, 大郎雅 동행 귀국               |
| 736.4  | 從5位下 阿倍朝臣繼麻呂 | 일본  | 신라  |            |                                              |
| 736.6  |              | 신라  | 唐   | 賀正, 謝恩     |                                              |
| 737.1  | 大首領 木智蒙      | 발해  | 唐   |            |                                              |
| 737.2  | 金抱質          | 신라  | 唐   | 賀正         |                                              |

| 연도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737.4  | 公伯計            | 발해  | 唐   |         | 將軍 受爵                                     |
| 737.8  | 大首領 多蒙固        | 발해  | 唐   |         | 左武衛將軍 受爵, 紫袍金帶·帛 100필 수령                  |
| 737.12 |                | 신라  | 唐   | 告哀, 告嗣位 |                                           |
| 738.1  | 金想純외 147명      | 신라  | 일본  |         | 大宰府 연회, 放還                                |
| 738.3  | 金元玄            | 신라  | 唐   | 賀正      |                                           |
| 738.6  |                | 발해  | 唐   |         | 『唐禮』, 『三國志』, 『晉書』, 『36國春秋』 필사요청           |
| 738.閏7 |                | 발해  | 唐   |         | 貂鼠皮·乾文魚 헌상                                |
| 739.2  | 王弟 大晟進         | 발해  | 唐   | 宿衛      | 鷹 헌상. 內殿연회, 左武衛大將軍外置同正 受爵, 紫袍金帶·帛 100필 수령 |
| 739.7  | 大使 胥要德, 副使 己玆蒙 | 발해  | 일본  |         | 出羽國 도착                                    |
| 739.10 | 受福子            | 발해  | 唐   | 謝恩      | 果毅 受爵, 紫袍銀帶 수령                            |
| 740.1  | 大伴犬養           | 일본  | 발해  |         | 專使                                        |
| 740.4  | 外從5位下 紀朝臣必登    | 일본  | 신라  |         |                                           |
| 740.10 |                | 발해  | 唐   |         | 貂鼠皮·昆布 헌상                                 |
| 741.2  | 失阿利            | 발해  | 唐   | 賀正      | 郎將 受爵                                     |
| 741.4  |                | 발해  | 唐   |         | 鷹鶚 헌상                                     |
| 742.1  |                | 일본  | 신라  |         | 日本國使 신라에서 不納                              |
| 742.2  | 金欽英외 187명      | 신라  | 일본  |         | 新京 미완성으로 放還                               |
| 742.5  |                | 신라  | 唐   |         |                                           |
| 743.3  | 金序貞            | 신라  | 일본  |         | 調를 土毛라고 개칭, 大宰府에서 返却                      |
| 743.7  | 大蕃             | 발해  | 唐   | 宿衛      | 左領軍衛員外大將軍 受爵                              |
| 744.閏2 |                | 신라  | 唐   | 賀正      |                                           |
| 744.4  |                | 신라  | 唐   | 謝恩      | 馬·보물 등 헌상                                 |
| 744.10 |                | 신라  | 唐   | 賀正      | 左清道率府員外長史 受爵, 紫袍銀帶 수령                     |
| 745.4  |                | 신라  | 唐   |         |                                           |
| 746.2  |                | 신라  | 唐   | 賀正      |                                           |
| 746.3  |                | 발해  | 唐   | 賀正      | 馬 헌상                                      |
| 747.1  |                | 신라  | 唐   | 賀正      |                                           |
| 747.1  |                | 발해  | 唐   | 賀正      |                                           |
| 748    |                | 신라  | 唐   |         | 金銀, 牛黃, 人蔘, 布 등 헌상                        |
| 749.3  |                | 발해  | 唐   |         | 鷹 헌상                                      |
| 750.3  |                | 발해  | 唐   |         | 鷹 헌상                                      |
| 752.1  | 正5位下 山口忌寸人麻呂   | 일본  | 신라  |         |                                           |

| 연도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752.閏3 | 金泰廉외 700인            | 신라  | 일본  |            | 朝堂에서 연회, 大安寺・東大寺 예배    |
| 752.閏3 |                      | 일본  | 唐   |            | 4작 가운데 1船은 安南에 漂着      |
| 752.9  | 慕施蒙외 75인             | 발해  | 일본  |            | 越後國 도착                 |
| 753.1  |                      | 신라  | 唐   | 賀正         |                        |
| 753.2  | 從5位下 小野朝臣田守          | 일본  | 신라  |            | 日本國使 신라왕이 不見           |
| 753.3  |                      | 발해  | 唐   | 賀正         |                        |
| 754.1  |                      | 발해  | 唐   | 賀正         |                        |
| 755.4  |                      | 신라  | 唐   | 賀正         |                        |
| 757.1  |                      | 신라  | 唐   | 賀正         | 成都에서 賀正, 당 현종 五言十韻詩 수령 |
| 758.2  | 小野田守                 | 일본  | 발해  |            | 專使                     |
| 758.8  |                      | 신라  | 唐   |            |                        |
| 758.9  | 대사 楊承慶, 부사 楊泰師 외 23인 | 발해  | 일본  |            | 越前國 도착                 |
| 758    |                      | 발해  | 唐   | 唐帝還宮 여부 확인 |                        |
| 759.1  | 高元度                  | 일본  | 발해  |            | 送使                     |
| 759.2  |                      | 일본  | 唐   |            |                        |
| 759.10 | 대사 高南申, 부사 高興福       | 발해  | 일본  |            | 對馬島 漂着                 |
| 760    | 揚方慶                  | 발해  | 唐   | 賀正         | 일본인 高元度 등 11인 동행       |
| 760.2  | 陽侯玲瑤                 | 일본  | 발해  |            | 送使                     |
| 760.9  | 金貞卷                  | 신라  | 일본  |            | 放還                     |
| 761.2  | 金嶷                   | 신라  | 唐   | 宿衛         |                        |
| 761.10 | 高麗大山                 | 일본  | 발해  |            | 專使                     |
| 762.9  |                      | 신라  | 唐   |            |                        |
| 762.10 | 대사 王新福, 부사 李能本 외 23인 | 발해  | 일본  |            | 越前國 加賀郡 도착             |
| 763.2  | 金體信외 211인            | 신라  | 일본  |            |                        |
| 763.4  |                      | 신라  | 唐   |            | 檢校禮部尙書 受爵              |
| 763.11 | 多治比小耳                | 일본  | 발해  |            | 送使                     |
| 764    | 金容                   | 신라  | 唐   | 謝恩         | 唐使 韓朝彩 동행 入唐           |
| 764.7  | 金才伯외 91인             | 신라  | 일본  |            |                        |
| 765.4  |                      | 신라  | 唐   |            | 檢校禮部尙書 受爵              |
| 767.冬  | 金隱居                  | 신라  | 唐   |            |                        |
| 767.7  |                      | 발해  | 唐   |            |                        |
| 767.8  |                      | 발해  | 唐   |            |                        |

| 연도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767.9   |                             | 발해  | 唐   |    |                                                  |
| 767.11  |                             | 발해  | 唐   |    |                                                  |
| 767.12  |                             | 발해  | 唐   |    |                                                  |
| 768.9   |                             | 신라  | 唐   |    |                                                  |
| 769.1   |                             | 발해  | 唐   |    |                                                  |
| 769.3   |                             | 발해  | 唐   |    |                                                  |
| 769.11  |                             | 신라  | 唐   |    |                                                  |
| 771.6   | 대사 壹萬福,<br>부사 慕昌祿<br>외 325명 | 발해  | 일본  |    | 常陸國 도착                                           |
| 772.2   | 武生鳥守                        | 일본  | 발해  |    | 送使                                               |
| 772.5   | 金標石                         | 신라  | 唐   |    | 1월 신라출발. 衛尉員外小卿 受爵                               |
| 772.秋   |                             | 발해  | 唐   |    |                                                  |
| 772.12  |                             | 발해  | 唐   |    |                                                  |
| 773.4   |                             | 신라  | 唐   | 賀正 | 金銀・牛黃 등 헌상                                       |
| 773.4   |                             | 발해  | 唐   | 賀正 |                                                  |
| 773.6   |                             | 신라  | 唐   | 謝恩 |                                                  |
| 773.6   |                             | 발해  | 唐   | 賀正 |                                                  |
| 773.6   | 대사 烏須弗<br>외 40인             | 발해  | 일본  |    | 能登國 도착                                           |
| 773.11  |                             | 발해  | 唐   |    |                                                  |
| 773.閏11 |                             | 발해  | 唐   |    |                                                  |
| 773.12  |                             | 발해  | 唐   |    |                                                  |
| 774.1   |                             | 발해  | 唐   |    | 2월 延英殿 귀국 인사, 大英俊 동행 귀국                          |
| 774.4   |                             | 신라  | 唐   |    |                                                  |
| 774.10  |                             | 신라  | 唐   | 賀正 | 延英殿 引見, 衛尉員外郎 受爵                                 |
| 774.10  | 金三玄외 235인                   | 신라  | 일본  |    | 大宰府도착. 遣唐大使 藤原河清의 서간을 가지고 옴.<br>貢調를 國信物이라고 함, 放還 |
| 774.12  |                             | 발해  | 唐   |    |                                                  |
| 775.1   |                             | 신라  | 唐   |    |                                                  |
| 775.1   |                             | 발해  | 唐   |    |                                                  |
| 775.5   |                             | 발해  | 唐   |    |                                                  |
| 775.6   |                             | 신라  | 唐   |    |                                                  |
| 775.6   |                             | 발해  | 唐   |    |                                                  |
| 775.12  |                             | 발해  | 唐   |    |                                                  |
| 776.7   |                             | 신라  | 唐   |    |                                                  |
| 776.10  |                             | 신라  | 唐   |    |                                                  |

| 연도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776.12 | 대사 史都蒙외 166인          | 발해  | 일본  |                        | 越前國 加賀郡 도착               |
| 777.1  |                       | 발해  | 唐   |                        | 일본 舞女 11인 헌상             |
| 777.2  |                       | 발해  | 唐   |                        | 鷹 헌상                     |
| 777.4  |                       | 발해  | 唐   |                        |                          |
| 777.5  | 高麗殿嗣                  | 일본  | 발해  |                        | 送使                       |
| 777.6  |                       | 일본  | 唐   |                        | 1船 난파                    |
| 777.12 |                       | 발해  | 唐   |                        |                          |
| 777.12 |                       | 신라  | 唐   |                        |                          |
| 778.9  | 張仙壽                   | 발해  | 일본  |                        | 越前國 坂井郡 三國湊 도착           |
| 778.12 | 大網廣道                  | 일본  | 발해  |                        | 送使                       |
| 779.5  |                       | 일본  | 唐   |                        |                          |
| 779.9  | 押領 高洋粥, 通事 高說昌 외 359인 | 발해  | 일본  |                        | 出羽國 도착                   |
| 779.10 | 金蘭蓀                   | 신라  | 일본  | 賀正                     | 入京, 金嚴・薛仲業・金貞樂・金蘇忠 등 入京  |
| 779.12 | 從6位上 下道朝臣 長人          | 일본  | 신라  | 탐라에 표류한 건당사를 귀환 시키기 위해 |                          |
| 780.10 |                       | 발해  | 唐   |                        |                          |
| 782.閏1 |                       | 신라  | 唐   |                        |                          |
| 782.5  |                       | 발해  | 唐   |                        |                          |
| 784    | 金讓恭, 道義               | 신라  | 唐   |                        |                          |
| 786.4  | 金元全                   | 신라  | 唐   |                        | 唐 칙서, 답례품 수령             |
| 786.9  | 李元泰외 65인              | 발해  | 일본  |                        | 越後國 도착                   |
| 787.2  |                       | 일본  | 발해  |                        | 送使                       |
| 789    | 金俊邕                   | 신라  | 唐   |                        |                          |
| 790    | 金彦昇                   | 신라  | 唐   |                        |                          |
| 791.1  | 大常靖                   | 발해  | 唐   | 賀正                     | 衛尉卿同正 受爵                 |
| 791.8  | 王子 大貞翰                | 발해  | 唐   | 宿衛                     |                          |
| 792    |                       | 신라  | 唐   |                        | 7월 본국 출발                 |
| 792.閏2 | 楊吉福 등 30인             | 발해  | 唐   |                        |                          |
| 794.1  | 王子 大清允 등 30인          | 발해  | 唐   |                        | 右衛將軍同正 受爵, 수행인 30인 官爵 수령 |
| 795.11 | 呂定琳외 68인              | 발해  | 일본  |                        | 越後國에 도착                  |
| 795.12 | 密阿古 등 30인             | 발해  | 唐   |                        | 中郎將 受爵                   |
| 796.5  | 御長廣岳                  | 일본  | 발해  |                        | 送使                       |
| 798.初  |                       | 발해  | 唐   | 康王 官爵加授 요청             |                          |
| 798.4  | 王姪 大能信                | 발해  | 唐   | 官爵加授 요청                | 左驍衛中郎將 受爵                |

| 연도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798.4  | 內藏賀茂麻呂             | 일본  | 발해  |                    | 專使                            |
| 798.12 | 大昌泰                | 발해  | 일본  |                    | 隱岐國 智夫郡 도착                    |
| 799    |                    | 신라  | 唐   | 告哀                 | 人蔘헌상                          |
| 799.4  | 滋野船白               | 일본  | 발해  |                    | 送使                            |
| 803    |                    | 일본  | 唐   |                    | 3船 난파                         |
| 804.11 | 眞鑑禪師 동행            | 신라  | 唐   | 賀正                 |                               |
| 804.11 |                    | 발해  | 唐   |                    |                               |
| 805.5  |                    | 발해  | 唐   |                    |                               |
| 806.8  |                    | 신라  | 唐   |                    |                               |
| 806.12 |                    | 신라  | 唐   |                    |                               |
| 806.12 |                    | 발해  | 唐   |                    |                               |
| 807.4  | 楊光信                | 발해  | 唐   | 端午節 경축             |                               |
| 807.12 |                    | 발해  | 唐   |                    |                               |
| 808.7  | 金力奇                | 신라  | 唐   | 謝恩, 故昭成王<br>冊封書 요청 | 2월 본국출발. 소성왕 冊封書 ·<br>門戟 수령   |
| 809    | 金陸珍                | 신라  | 唐   | 謝恩                 | 7월 본국출발                       |
| 809.1  |                    | 발해  | 唐   |                    | 麟德殿 引見                        |
| 809.10 | 高南容                | 발해  | 일본  |                    |                               |
| 810.1  | 高才南                | 발해  | 唐   |                    |                               |
| 810.9  | 高南容                | 발해  | 일본  |                    |                               |
| 810.10 | 왕자 金憲章,<br>僧 冲虛 동행 | 신라  | 唐   | 順宗 명복 기원           | 佛像 · 佛經 헌상, 勅書 수령             |
| 810.11 | 왕자 大延眞             | 발해  | 唐   |                    |                               |
| 810.12 | 林東仁                | 일본  | 발해  |                    | 送使                            |
| 812.1  |                    | 발해  | 唐   |                    | 麟德殿 引見, 官告 35통, 의복<br>각 1벌 수령 |
| 812.4  | 金昌南                | 신라  | 唐   | 告哀, 賀正, 請<br>冊封    | 54명 入京, 門戟 수령                 |
| 812.12 |                    | 발해  | 唐   |                    |                               |
| 813.12 | 왕자 辛文德 등<br>97인    | 발해  | 唐   |                    | 연회, 錦綵 수령                     |
| 814.1  | 高禮進 등 37인          | 발해  | 唐   |                    | 금은불상 헌상. 麟德殿 연회,<br>선물 수령     |
| 814.9  | 대사 王孝廉<br>부사 高景秀   | 발해  | 일본  |                    | 出雲國 도착                        |
| 814.11 |                    | 발해  | 唐   |                    | 鷹鵬헌상                          |
| 814.12 | 大孝眞 등 59인          | 발해  | 唐   |                    |                               |
| 815.1  |                    | 신라  | 唐   |                    | 南詔使 共同引見, 연회, 선물<br>수령        |

| 연도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815.1      | 印貞壽                          | 발해  | 唐   |                        | 官告 수령                        |
| 815.2      | 大呂慶                          | 발해  | 唐   |                        | 2월 22일, 3월 5일 官告 수령          |
| 815.7      | 왕자 大庭俊 등<br>101인             | 발해  | 唐   |                        |                              |
| 816        | 金士信                          | 신라  | 唐   | 宿衛                     | 11월 楚州 鹽城縣 漂着                |
| 816.2      | 고숙만 등 20인                    | 발해  | 唐   |                        | 錦綵, 銀器, 官告 수령                |
| 816.11     |                              | 발해  | 唐   |                        |                              |
| 817        | 金張廉                          | 신라  | 唐   | 노비금지요청                 | 明州 漂着                        |
| 817.2      | 大誠愼                          | 발해  | 唐   |                        | 錦綵 수령                        |
| 818        |                              | 신라  | 唐   |                        | 樂工 헌상, 6월 본국출발               |
| 818.3      | 李繼常 등 26인                    | 발해  | 唐   | 告哀                     | 官告 수령                        |
| 818.4      | 慕感德                          | 발해  | 일본  |                        |                              |
| 819.11     | 대사 李承英                       | 발해  | 일본  |                        |                              |
| 820.閏<br>1 |                              | 발해  | 唐   |                        | 麟德殿 연회                       |
| 820.2      |                              | 신라  | 唐   |                        | 麟德殿 연회, 선물 수령                |
| 820.11     |                              | 신라  | 唐   |                        | 麟德殿 연회                       |
| 820.12     |                              | 발해  | 唐   |                        | 麟德殿 연회                       |
| 821.11     | 王文矩                          | 발해  | 일본  |                        |                              |
| 822.1      |                              | 발해  | 唐   |                        | 麟德殿 引見                       |
| 822.12     | 金昕, 金柱弼,<br>無染禪師 동행          | 신라  | 唐   | 賀正, 宿衛, 본국<br>인 노비방환요청 | 金昕 金紫光祿大夫 試太常卿<br>受爵         |
| 823.11     | 대사 高貞泰 부사<br>瑋瑋외 101인        | 발해  | 일본  |                        | 越前國 도착                       |
| 824.2      | 大聰叡 등 50인                    | 발해  | 唐   | 宿衛요청                   |                              |
| 825.3      |                              | 발해  | 唐   |                        |                              |
| 825.5      | 金昕, 金允夫·<br>金立之·朴<br>亮·道允 동행 | 신라  | 唐   | 國學입학 및 放<br>還 요청       |                              |
| 825.11     | 대사 高承祖 부사<br>高如岳외 103인       | 발해  | 일본  |                        | 隱岐國 도착                       |
| 826.1      |                              | 발해  | 唐   |                        |                              |
| 826.12     |                              | 신라  | 唐   |                        | 麟德殿 送別宴會, 선물수령               |
| 827.4      |                              | 신라  | 唐   |                        |                              |
| 827.4      | 승려 貞素 동행                     | 발해  | 唐   |                        | 11인 入京, 麟德殿 연회, 선물<br>수령     |
| 827.12     | 王文矩외 100인                    | 발해  | 일본  |                        | 但馬國 도착                       |
| 828        |                              | 신라  | 唐   |                        | 2월 본국출발                      |
| 828.12     | 金大廉                          | 신라  | 唐   |                        | 麟德殿 引見, 선물 수령, 茶宗<br>자 지참 귀국 |

| 연도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828.12 |                             | 발해  | 唐   |                   | 麟德殿 引見                          |
| 830.12 |                             | 신라  | 唐   |                   |                                 |
| 830.12 |                             | 발해  | 唐   |                   |                                 |
| 831.2  | 金能儒, 승려 9명 동행               | 신라  | 唐   |                   |                                 |
| 831.12 |                             | 신라  | 唐   |                   |                                 |
| 831.12 |                             | 발해  | 唐   |                   |                                 |
| 832.3  | 왕자 大明俊                      | 발해  | 唐   |                   | 麟德殿 引見, 宴會                      |
| 833.1  | 同中書右平章事 高寶英, 解楚卿·趙孝明·劉寶俊 동행 | 발해  | 唐   | 謝恩, 학생 입학 및 방환 요청 | 李居正·朱承朝·高壽海 동행 귀국               |
| 833.2  | 왕자 大先晟                      | 발해  | 唐   |                   | 麟德殿 宴會                          |
| 836.6  | 왕자 金義琮, 梵日 동행               | 신라  | 唐   | 謝恩, 검 宿衛          | 정월 본국출발, 玄扈 동행 귀국               |
| 836.12 |                             | 신라  | 唐   | 宿衛, 학생 放還 및 처우 요청 | 金義琮 동행 귀국                       |
| 836.12 |                             | 발해  | 唐   |                   |                                 |
| 837.1  | 왕자 大明俊 외 19인                | 발해  | 唐   | 賀正, 국학 입학 요청      | 麟德殿 연회                          |
| 837.7  |                             | 일본  | 唐   |                   | 2船 南海에 漂着 신라선을 타고 귀국            |
| 838    |                             | 발해  | 唐   |                   | 麟德殿 引見, 錦綵銀器 수령                 |
| 839.7  |                             | 신라  | 唐   | 淄青節度使에게 노비헌상      | 體澄 동행 귀국                        |
| 839.12 | 왕자 大延廣                      | 발해  | 唐   |                   | 唐使 동행 귀국                        |
| 840.4  |                             | 신라  | 唐   | 告哀, 宿衛학생 방환요청     |                                 |
| 841    |                             | 발해  | 唐   |                   | 瑪瑙櫃, 紫瓷盆 헌상                     |
| 841.12 | 대사 賀福延 부사 王寶璋외 105인         | 발해  | 일본  |                   | 長門國 도착                          |
| 846.1  | 왕자 大之萼                      | 발해  | 唐   |                   | 宣政殿 朝會, 麟德殿 引見, 內亭子 연회, 錦綵器皿 수령 |
| 846.2  | 金國連                         | 신라  | 唐   |                   |                                 |
| 848.12 | 대사 王文矩 부사 烏孝愼외 100인         | 발해  | 일본  |                   | 能登國 도착                          |
| 850    | 元弘                          | 신라  | 唐   |                   | 佛經, 佛牙 지참귀국                     |
| 856    | 圓朗禪師 동행                     | 신라  | 唐   | 賀正                |                                 |
| 858    | 了悟禪師 동행                     | 신라  | 唐   |                   |                                 |
| 859.1  | 烏孝愼외 104인                   | 발해  | 일본  |                   | 加賀國 도착                          |
| 861.1  | 대사 李居正외 104인                | 발해  | 일본  |                   | 出雲國 嶋根郡 도착                      |

| 연도     | 항해자                 | 출발지 | 도착지 | 목적                       | 내용                                  |
|--------|---------------------|-----|-----|--------------------------|-------------------------------------|
| 862    | 富良                  | 신라  | 唐   |                          | 7월 본국출발, 8월 入唐도중 의사                 |
| 864    |                     | 신라  | 唐   | 告哀, 請冊封                  |                                     |
| 869    | 金胤, 李同 등 동행         | 신라  | 唐   | 謝恩, 국학생 입학요청             | 馬·金銀·牛黃 등 헌상, 국학생 입학요청, 7월 본국 출발    |
| 870    | 金因, 金緊策, 朗空大師 동행    | 신라  | 唐   | 宿衛                       | 2월 본국출발                             |
| 871.12 | 대사 楊成規 부사 李興晟외 105인 | 발해  | 일본  |                          | 加賀國 도착                              |
| 873    | 崔宗佐, 大陳潤, 門孫宰 등 60인 | 발해  | 唐   | 徐州平定 축하                  | 2척의 배, 일본 薩摩國 飢嶋郡 漂着, 본국송환          |
| 876    |                     | 신라  | 唐   |                          | 7월 본국출발                             |
| 876.12 | 대사 楊中遠외 105인        | 발해  | 일본  |                          | 出雲國 嶋根郡 도착                          |
| 878    |                     | 신라  | 唐   |                          | 7월 본국출발, 황소의 난으로 중단                 |
| 882    | 金直諒, 朴仁範            | 신라  | 唐   |                          |                                     |
| 882.11 | 대사 裴頌 부사 高周封외 105인  | 발해  | 일본  |                          | 加賀國 도착                              |
| 884    | 金仁圭                 | 신라  | 唐   |                          | 최지원 동행 귀국                           |
| 885    | 金僅, 金茂先·崔渙 등 동행     | 신라  | 唐   | 황소의 난 평정경하, 국학생 입학요청     | 10월 본국 출발, 唐帝 敕書 2통 수령, 金紹遊 등 동행 귀국 |
| 891    | 崔元, 崔震·先覺大師 동행      | 신라  | 唐   | 昭宗登極 慶賀, 숙위학생 입학요청       | 초봄 본국 출발                            |
| 892.1  | 王龜謀외 105인           | 발해  | 일본  |                          | 出雲國 도착                              |
| 893    | 金處誨                 | 신라  | 唐   | 納旌節                      | 入唐도중 의사                             |
| 893    | 金峻, 崔致遠             | 신라  | 唐   | 告奏, 賀正                   | 도로불통 還國                             |
| 894.12 | 대사 裴頌외 105인         | 발해  | 일본  |                          | 伯耆國 도착                              |
| 896    |                     | 신라  | 唐   | 崔藝熙, 眞澈大師 동행             |                                     |
| 897    | 金穎                  | 신라  | 唐   | 賀正, 告讓位, 숙위학생 입학 및 방환 요청 |                                     |
| 897.7  | 왕자 大封裔              | 발해  | 唐   | 賀正, 발해의 신라상석 요청          |                                     |
| 진성왕대   | 良貝                  | 신라  | 唐   |                          |                                     |
| 효공왕대초  |                     | 신라  | 唐   | 謝恩, 告嗣位                  |                                     |
| 906    | 제상 烏昭度              | 발해  | 唐   | 賓貢科 석차변경 요청              |                                     |
| 908.1  | 대사 裴璆               | 발해  | 일본  |                          | 伯耆國 도착                              |
| 919.11 | 대사 裴璆외 105인         | 발해  | 일본  |                          | 越前國 도착                              |
| 929.12 | 대사 裴璆외 93인          | 東丹國 | 일본  |                          | 丹後國 竹野郡 大津浜 도착                      |

## 조선시대 密貿易·雜貿易 관련 기사

## 1. 密貿 관련기사

### ○ 『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10월 갑신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김한로(金漢老)를 파직(罷職)시키었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서(上書)하여 죄주길 청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한로(漢老)가 갈 때에 거상(巨商) 백구(白龜)를 데리고 가려 하므로, 종사관(從事官)들이, 백구는 항상 금은(金銀)을 가지고 상국(上國)에 가서 장사를 하니, 데리고 가지 말자고 청하였는데, 한로가 재리(財利)를 탐(貪)하여 듣지 않고, 정부(政府)의 차차(差劄)에다 백구의 이름을 용(龍)이라 고쳐 썼다가, 평양부(平壤府)에 이르러 의정부(議政府)에서 추고(推考)한다는 말을 듣고 백구를 돌려보내고, 백구의 처제(妻弟) 이원(李元)을 시켜 대신 그 재물(財物)을 받아 가지고 가게 하였으니, 이것은 비단 재상(宰相)의 도리를 잃었을 뿐 아니라, 국가를 속인 것 또한 심합니다. 청컨대, 직첩(職牒)을 거두고 먼 지방으로 내치소서.”

다만 파직(罷職)만 시키었다.

### ○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2월 을축

서북(西北) 백성이 월강(越江)하여 매매(買賣)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의주(義州) 백성 주부개(朱夫介) 등 4인이 몰래 마필(馬匹)을 가지고 국경 밖의 사람에게 팔았다가, 일이 발각되어 도망 중에 있고, 성주(成州)의 중 해선(海禪)은 동북면(東北面)을 거쳐 마침내 월강(越江)하여 깊이 들어갔습니다. 빌건대, 동북면(東北面) 각호(各戶)

의 마필(馬匹)은 그 털빛과 나이를 상고하여 문적(文籍)에 기록하고 낙인을 찍을 것이며, 만일 매매하거나 죽거나 잃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관(官)에 고하게 하고, 그 낙인이 없는 말과 각도의 행장(行狀)이 없이 갔다가 돌아오는 자는 모두 남이 진고(陳告)하기를 허락하여, 말 1필마다 배 50필을 징수하여 진고(陳告)한 사람에게 상(賞)으로 충당하여 주도록 하고, 말 주인[馬主]은 법률에 의하여 죄를 결정하고, 마필(馬匹)은 관에서 몰수하고, 행장(行狀)이 없는 중은 남이 진고(陳告)하기를 허락하여, 가진 물색(物色)을 거두어서 진고한 사람에게 상으로 충당하여 주고, 그 중은 각각 그 본적지에 선군(船軍)으로 충정(充定)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 『태종실록』권16 태종 8년 10월 신묘

좌소감(左少監) 기보(祁保)와 예부 낭중(禮部郎中) 임관(林觀)이 돌아가므로, 임금이 모화루에서 전송하였다.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가 상언하기를,

“기 천사(祁天使)를 영접(迎接)할 요동(遼東) 군관(軍官)과 군인(軍人)들이 마음대로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의순관(義順館)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마(牛馬)를 무역하려고 하여, 혹 6, 70명씩 떼를 지어 근처의 민호(民戶) 뿐만 아니라 5, 60리(里)나 되는 촌락(村落)에까지 이르러 밤을 틈타 횡행하며 억매(抑賣)·강탈(强奪)하여 못하는 것이 없으니, 이것을 금하지 않으면 폐단이 장차 무궁할 것입니다. 금후로는 한결같이 도사(都司)의 차비 약속(差批約束)에 의하여 마음대로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비록 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촌락에 돌아다니며 폐단을 짓지 말게 하도록 빨리 도사에 자문(咨文)을 보내어 금약(禁約)에 빙거(憑據)하소서.”

하니, 임금의 말이 맞았다.

“가급적 황 천사(黃天使)를 영접할 군관이 오기 전에 빨리 도사에 이문(移文)하여 알리라.”

### ○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2월 을미

사헌부(司憲府)에서 희천군(熙川君) 김우(金字)의 죄를 청하였다. 소(疏)는 이러하였다.

“김우가 일찍이 강계(江界)에 부임하여 초피(貂皮) 50장과 황랍(黃蠟) 16근을 가지고 비밀히 통사(通事) 박지성(朴之成)에게 부탁하여, 요동(遼東)에 가서 초피 10장으로는 능(綾) 2필을 사고, 20장으로는 중견(中絹) 10필을 샀습니다. 박지성이 돌아오니, 김우가 이미 벼슬이 갈렸으므로, 길에서 만나 능(綾)·견(絹)과 남은 초피 20장을 김우에게 되돌려 주고, 다만 황랍만 강계부(江界府)에 도로 바쳤습니다. 본부(本府)에서 그 도(道)의 감사(監司)에게 이문(移文)하여 이 사실을 갖추어 알아냈습니다. 김우가 금하는 물건을 함부로 거두어 국경을 넘어 매매한 죄는, 이를 엄하게 징계하여 후인을 징계함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소장을 대내(大內)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 ○ 『태종실록』 권 18 태종 9년 8월 신유

사간원(司諫院)에서 대사헌(大司憲) 유양(柳亮)과 장령(掌令) 유의(柳)를 탄핵하였다. 임첨년(任添年)이 입조(入朝)할 때에 다른 사람의 포필(布匹)을 많이 받았는데, 행대 감찰(行臺監察) 이유상(李有常)이 압록강(鴨綠江)에 이르러 포(布) 3백 필을 찾아냈었다. 포단(布端)에 모두 주인(主人)의 이름을 썼는데, 권귀(權貴)가 대부분이었다. 헌부(憲府)에서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에게 이첩

(移牒)하여 그 포(布)를 모두 서울로 실어 보내게 하였다. 그 뒤에 오래도록 거핵(舉劾)하지 않기 때문에 간원(諫院)에서 논핵(論劾)한 것이다. 임금이 유양과 유의에게 직사(職事)에 나오도록 명하니, 유양이 면대(面對)하여 사과하기를,

“포필(布匹)이 서울에 도착한 이튿날에 비로서 내선(內禪)의 명령이 계셨으므로, 신서(臣庶)들이 놀라고 황황(惶惶)하여 다른 일에 미칠 겨를이 없었고, 그 뒤에 신(臣)이 복(服)을 가져서 부(府)의 일을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포(布) 임자의 이름을 신이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부덕(否德)하나 나라를 전(傳)하는 것은 큰 일이니, 서사(庶司)가 다른 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임금이 사간(司諫) 권우(權遇)를 보며 말하기를,

“각사(各司)가 죄를 범하면 다만 해당 관리만 논핵하는 것이 이미 나타난 영갑(令甲)이 있는데, 일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유양을 탄핵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권우가 대답하기를,

“행대 감찰(行臺監察)을 명해 보내어 범금(犯禁)을 추핵(推劾)하였는데, 지금 거둔 포물(布物)이 이토록 많습니다. 만일 엄하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어찌 행대(行臺)를 명할 것이 있습니까? 신은 직책이 간원(諫院)에 있으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권우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일이니, 훈귀(勳貴)의 신하로서 혹 범한 자가 있으면 핵문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우정언(右正言) 송치(宋)를 불러 이 뜻을 이르니, 송치가 대답하기를,

“만일 어리석은 백성이라면 용서할 수 있지만, 대체(大體)를 아는 훈신(勳臣)이 이것을 범하였다면 어떻게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또 이 포(布)를 중국(中國)에 팔다가 포단(布端)의 성명(姓名)을 보게 된다면, 중국에서 우리 재상(宰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이 진실로 큼니다.”

하고 물러갔다. 임금이 명하여 포단(布端)의 주인 이름을 꿰어서 불태우게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록 불태운다 하더라도, 어찌 척연(然)하게 내심(內心)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 ○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2월 경오

사사로운 일로 사직(辭職)하는 것을 금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무릇 사환(仕宦)하는 자가 긴급하지 않은 사사로운 일로 사직하고 외방에 나가는 것은 원래 믿고서 맡긴 의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부모의 질병이나 상사(喪事)·장사(葬事) 외에는 사직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또 아뢰었다.

“동서 양계(東西兩界)의 백성이 국경 밖의 사람과 우마(牛馬)를 매매하지 말라는 것은 일찍부터 나타난 법령이 있는데도, 무식한 백성들이 비밀히 매매를 행합니다. 이제부터 범(犯)하는 자와 관리(官吏) 및 파절인(把截人)으로서 알면서 고의로 놓아준 자와 동모하여 매매를 주선한 자와 숨겨두고 고발하지 않은 자는, 빌건대, 중하게 형벌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5월 신사

초전(楚殿)의 왜사(倭使) 등이 돌아왔다. 순금사(巡禁司)에서 아뢰었다.

“근래 왜관(倭官)에서 금물(禁物)을 무역(貿易)하는 자가 자못 많습니다. 판의정(判議政) 남재(南在)·부원군 유양(柳亮)·정탁(鄭擢)·전 경력(經歷) 허반석(許盤石) 등도 또한 백은(白銀)·인삼(人蔘) 등의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시켜 무역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들 거실(巨室)도 또한 법령을 범한다면 심히 방가(邦家)의 영광이 못되니, 마땅히 묻지 말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라.”

○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5월 신묘

윤인부(尹仁富) 등에게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가산(家產)을 적몰(籍沒)하였으니, 금법(禁法)을 범하고, 금은(金銀)의 금물(禁物)을 왜인(倭人)에게 사사로이 팔았기 때문이었다.

○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5월 신묘

원민생(元閔生)·장유신(張有信)·김타(金)·김언용(金彦容)·오의(吳義)·강상부(姜尙傅)를 의금부에 가두었다. 의정부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원육전(元六典)』 호전(戶典) 내에, ‘부경 사신(赴京使臣)의 행차(行次)에 모리(謀利)하는 사람이 중국으로 나아가 몰래 매매를 행하여 <국가에> 오욕(汚辱)의 이름을 가져오게 하면 관계가 적지 아니하니, 진헌 방물(進獻方物), 노차 반전(路次盤纏), 의복(衣服) 이외의 잡물(雜物)은 모조리 몰관(沒官)하고, 그 모리(謀利)하는 사람이 끌고 가던 마필(馬匹)도 아울러 각참(各站)에 소속시킨다.’고 하였습니

다. 정조 진표사(正朝進表使) 이도분(李都芬)과 진전사(進箋使) 이발(李潑) 등은 많은 사물(私物)을 가지고 가서 매매를 자행하여 중국에서 웃음거리가 되게 함으로써 상명(上命)을 욕되이 하였으니 일이 대체(大體)에 관계됩니다. 헌부(憲府)에서 4월 25일 유사(宥赦)전의 일이라 하여 그 죄를 묻지 말도록 하여, 신충(宸衷)에서 결단하시어 단지 직임만 정지케 하였으나, 이도분·이발·장유신·김언용 등을 유사(攸司)에 두어 그 이유를 국문(鞫問)함으로써 국법[邦憲]을 바르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의금부에 명하여, 이도분·이발 이외는 모두 가두어 국문하고, 근수(根隨)매매인(買賣人)과 끌고 간 마필(馬匹)은 『원육전(元六典)』에 의하여 참(站)에 속하게 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국문(鞫問)할 때에 그 물주(物主)는 추핵(推劾)하지 말고 단지 그 매매한 필수(匹數)만 물어 모조리 속공(屬公)케 하라.”

하니, 조말생이,

“신 등의 생각은 물주도 국문하여 모두를 징계함으로써 뒷사람을 경계함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이도분·이발 및 희천군(熙川君) 김우(金宇) 등이 혹은 장삿군의 은정(銀丁)을 받기도 하고, 혹은 채단(綵段)도 받아들이고 이어서 그들을 데리고 중국(中國)으로 가게 되니, 전수(轉輸)하는 사람들이 많이 원망하였다.

## ○ 『세종실록』 권22 세종 5년 11월 병술

우사간(右司諫) 박관(朴冠) 등이 소를 올려 말하기를,

“신들이 언관의 직책에 있으므로, 감히 묵묵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옳고 삼가 좁은 소견을 뒤에 조열(條列)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옵서 재량(裁量)하시와 시행하옵시면 이보다 다행한 일이 없

을까 하나이다.

1. 남의 신하가 된 자, 집에 있어서는 청백과 검소함으로써 스스로 마음을 닦고 기르며, 사명을 받들면 예의로써 스스로 지조를 지킨 연후에 자신이 불의에 빠지지 않고 임금의 명령을 욱되게 하지 않는 것이니, 옛날의 사신이 성실하고 미더운 사람에게 물어서 같이 피하고도 매양 부족한 느낌을 품었던 것은 대개 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명을 받드는 사람들은 일찍이 이를 생각지 아니하고 많이들 사화(私貨)를 끼고 가서 무역을 감행하고 있사오며, 심한 자는 상인들의 뇌물을 많이 받고서, 자기 창두(蒼頭)를 버리고 상인을 인솔하고 가서 자기의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자행하여, 드디어 더럽고 욱된 이름을 우리 예의지방(禮義之邦)에 더하게 하였으니, 비록 이 무리를 다 죽인다 하더라도 일국의 수치를 씻기는 어렵게 되었나이다. 지금 국가에서는 사신이 갈 때마다 그 반전(盤纏)을 넉넉하게 주어 행역(行役)의 비용에 충당케 하고 있으니, 또 무엇 하려고 사화(私貨)의 수량을 정하여 밀무역의 사단(事端)을 가져오게 한단 말입니까. 신들이 또 듣자오니, 평안도 호송군(平安道護送軍)에게는 한 사람마다 사포(私布) 10필씩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하나, 그 지방의 습속(習俗)이 베를 찌는데 능하지 못하므로, 서울의 부상 대고(富商大賈)들이 삼베와 잡물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사신보다 먼저 그 곳에 내려가서, 혹은 호송군과 더불어 나누어 쓸 것을 약속하고는 많이 위탁하여 보내기도 하고, 혹은 이름을 사칭하고 대신 들어가서 모리를 마음껏 행하니, 이도 또한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사신과 그의 요좌(僚佐)와 호송군에게 준다고 상정한 포화(布貨)는 일절 금단(禁斷)하고, 서장관(書狀官)에게 항상 감찰(監察)하는 책임을 주어서 파견하여, 그로 하여금 음(陰)으로 그 비루하고 편벽된 마음을 꺾으며 비밀히 그 외람하고 위

장한 사실을 기록하였다가, 복명할 때에 이르러 그 정실을 갖추어 계문케 하고, 그 중에 혹 범한 자가 있으면 장물죄(贓物罪)로 결단하여 죄를 당하도록 할 것이며, 또 폐단을 제거하려고 할진대, 반드시 먼저 그 근원을 막게 한 연후에 지식시킬 수 있을 것이니, 사라(紗羅)·금단(錦段)이란 한갓 미관(美觀)만이 있을 뿐이요, 그 쓰임에 있어서는 본국의 포백과 다른 것이 없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재산을 기울여 가면서 무역하기 때문에, 물가가 이로 인하여 뛰어나고, 북경에 가는 무리들이 금법(禁法)을 범해 가며 무역하여 그 이익을 도모하므로, 비록 형벌에 빠진다 하더라도 끝내 징계되지 못하여, 누적된 폐단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사라와 금단은 다만 궁중[宮禁]에서만 쓰고, 2품 이상과 대소의 부녀자는 그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검소한 풍습을 숭상하며 염치의 길을 기르도록 할 것입니다.

1. 성균관(成均館)은 풍화(風化)의 근원이며, 인재가 나오는 곳으로서, 국가에서 유생(儒生)의 스승을 가려서 세우고 그 공급 물자를 후하게 하였으니, 양육(養育)하는 길이 갖추어졌다고 이를 만하겠습니까. 그러나 생원(生員)의 무리들은 성상의 문학을 숭상하시는 뜻을 체념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모두 사사로운 연고를 청탁하고 본가에 물러나가 있으며, 현시에 관에 머물러 있는 자는 겨우 수십 명도 되지 못하니, 국학(國學)의 허소(虛疎)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맡은 관원으로 하여금 자주 중외의 생원을 불러서 모두 국학에 나아가게 하고, 또 생원 출신으로 전직 참외(參外)나 전직 교도(敎導)로 있던 자도 또한 국학에 나아가서 모두 관시(館試)에 응하게 하고, 한성시(漢城試)를 허가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약 사고를 청탁하고 즉시 국학에 나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시험 보는 해에 정거(停擧)하게 하고, 그

정상이 더욱 심한 자는 법으로 다스릴 것이며, 수령(守令)으로서 이들을 힘써 독책(督責)하여 보내지 못하는 자는 감사(監司)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생원으로 나이 많지 않은 자가 또한 교도(敎導)의 직책을 피하여 얻으려 하고, 이미 얻은 뒤에는 문득 그 업무를 게을리하다가 작산(作散)함에 이르러서는 역시 국학에도 나가지 아니하니, 지금부터는 나이 40이 차지 않은 자에게는 교도의 직임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요행의 길을 막게 하여, 문교(文教)를 진흥하도록 할 것입니다.

1. 의창(義倉)을 설치한 것은 민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왕에 비록 감모(減耗)의 법이 없었으나, 환상 양곡을 두량(斗量)하여 들일 때를 당하여, 수령이 백성의 숨은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서 말질을 높고 무겁게 하여, 그 수량 이외의 남는 것을 제 마음대로 쓰는 자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만약 1석마다 감모미(減耗米) 3승(升)씩을 더 받는다면, 한갓 수령들의 거둬들이는 모략을 편리하게 도울 뿐이니, 이익이 백성에게 미치기 전에 손해가 이미 따를 것이요, 또 환상곡을 가을과 겨울에 거둬들이고 봄·여름에 도로 내어 주니, 그 감손되는 것이 또한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감모의 법은 비록 주문공(朱文公)이 제정한 것이라 하나, 만약 문공과 같은 자로 하여금 수령을 삼는다면 가하거니와, 문공의 덕이 없고 한갓 걷는 것을 더하는 방법만 있다면, 주군(州郡)의 번다(繁多)함과 수령의 수많은 속에서 이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손해를 주는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바라건대, 감모미를 더 받는 법[加納法]을 제거하여 민생을 편하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1. 밭이 있으면, 조세[租]가 있는 것은 옛 제도이요, 전세(田稅) 이외에 또 쌀을 내게 하는 옛날에 없던 것입니다. 민간에 저화(楮貨)를 쓰는 것은 본래 저화를 왕성히 통행케 하려고 세운 것이오나, 본

다 아름다운 법이 아니었으니, 비록 혁폐하더라도 좋은 것입니다. 또 어찌 저화 대신에 쌀을 내게 하여 백성을 곤란하게 하오리까. 또 이것이 의창(義倉)을 보존하고,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이롭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오나, 지극히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찌 뒷날의 이익됨을 알고서 당장 눈앞의 소비됨을 원망하지 않으리까. 또 감수(減收)된 수량을 등급으로 나누어서 거둔다 하더라도 또한 관대한 법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것을 거두지 말라는 명령을 환연(渙然)히 발포하시와, 생민들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1. 감사는 한 지방을 통찰하는 직책이므로, 무릇 군민(軍民)에 관한 일을 관섭(管攝)하지 않는 것이 없겠으나, 왕왕이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직위와 품질(品秩)이 감사와 같다 하여, 체통과 소속의 본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처사를 독단하며 태연히 출입하니, 진실로 타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도절제사는 적(敵)을 대응하거나 군병을 동원하는 이외에 군병의 점검 고찰, 산행(山行)의 출입 등, 비록 하룻동안의 행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감사에게 보고한 연후에 시행하도록 하여 체통을 세우도록 하소서.”

하였다.

### ○ 『세종실록』 권35 세종 9년 3월 갑인

전지하기를,

“요사이 금령(禁令)이 엄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북경(北京)에 가는 사신의 행차에 모리(謀利)하는 사람이 몰래 매매를 행하여, 법을 범한 자가 많으니, 영락 21년 헌부(憲府)의 수교(受敎)를 거듭 밝혀서 거행하되, 그 중 가산(家產)을 관청에 몰수하는 조목은 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 10월 계유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국 사람들이 요동 호송군(遼東護送軍)과 서로 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방비하고 금지하는 법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도 장사치들이 몰래 금지품을 가지고 가서 무역을 하고 있으니,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그 법을 철저히 밝혀서 감사(監司)가 사람을 보내서 의주 목사(義州牧使)와 더불어 엄하게 금단(禁斷)하게 하고, 인삼(人蔘)은 중국에 바치는 가장 요긴한 것이니 아울러 금하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권107 세종 27년 1월 임진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요동(遼東)의 호송군(護送軍)이 의주에 이르게 되면, 서울 장사꾼들과 그 고을 사람들이 가는 베[細布]와 인삼 등 금지품을 많이 가지고 몰래 숨어서 사고팔고 하니, 실로 미편한 일입니다. 청하옵건대, 통사를 시켜서 제용감(濟用監)의 베 2백 필을 의주에 보내어 그 고을 사람과 시골 통사에게 나누어 주되, 요동과의 무역하는 값으로 반 필이나 혹은 한 두 필씩 더 주어서, 나라에서 소용이 될 물건을 사도록 하고 비밀히 사사로 매매를 행하는 자와 금지품을 가지고 있는 자를 엄중히 금지하게 하사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8월 계묘

정원에 전교하기를,

“평안 감사 장계에 ‘서울 장사치와 안악(安岳) 사람 등 13명이 유

기(鑰器)와 인삼(人蔘)을 몰래 가지고 나가 요동(遼東) 지방에서 팔고 돌아오다가 선천(宣川)에서 붙잡혔다.’ 하였으니, 상국(上國) 지경을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큰 죄인데, 하물며 수로로 통행했음에랴? 더욱 놀랄 일이다. 그들을 잡아와야 될지 공문을 보내서 추고해야 될지, 그것을 해조(該曹)에 물어보라.”

하매, 형조가 아뢰기를,

“잡아와서 조옥(詔獄)에서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 『중종실록』 권56 중종 21년 3월 을사

조강에 나아갔다. 영사 남곤(南袞)이 아뢰기를,

“신이 호사신(胡士紳)의 주본을 보건대, 외국 사람들에게는 좋게 된 듯하지만 중국 조정의 일로 보아서는 바르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궁각(弓角)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어서 만일 무역하지 않는다면 구득할 길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밀무역(密貿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일이 탄로되면 2백 대(對)의 수효란 또한 반드시 저지될 것이니, 이는 더욱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공적으로 한 말이 아닐 것이다. 서반(序班)의 말에 따라 낭중(郎中) 및 주사(主事)를 곤장 심문을 하게 된 것은, 다음에 의논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리 추측할 수는 없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경사(京師)에 가는 사신이 오갈 적이면 평안도에는 계속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신이 경사에 갈 적에도 국가에서 알지 못하는 일을 많이 했으니, 신이 이미 법을 범해 놓고 또한 그 일을 아뢰기

가 진실로 곤란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점점 그렇게 되어 가면 평안도 인물(人物)의 힘이 모두 곤궁해질 것인데, 중국에서 우리를 대우하는 것도 반드시 전과 달라질 것입니다. 중국의 일로(一路)에서는 모두 우리나라 사신을 공궤(供饋)해 줍니다. 거친 밥이라서 모두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으레 평안도로 하여금 쌀 80말을 주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도 예와 같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중국에서 한갓 반전포(盤纏布)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필묵(筆墨)이라 하더라도 받으려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요구하게 되었고, 산해관(山海關)에서 주사(主事)하는 문관(文官)들도 오히려 그러하니, 그 나머지는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뇌물을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응당 해줄 일도 모두 저지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세가 80말의 쌀을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주기 시작했던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또 동팔참(東八站)까지의 사이는 수송하는 짐을 모두 우리나라 사람과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날로 더욱 곤궁하고 피폐해져, 다행히 혹 살아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쓸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중국의 일로(一路)에서는 수레 30~40량(輛)을 내도록 책임 지우기 때문에 잔약하고 피폐한 역(驛)에서는 수효대로 마련하지 못해 처자(妻子)를 전당(典當)잡히고 내기까지 합니다. 만일 중국 조정의 담당 관원(官員)이 이런 폐단을 듣고서 일행의 차량에 모두 한도를 정하게 된다면, 사신이 왕래하기가 진실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듣건대 달자(子)들이 조공(朝貢)할 때는 사람 10명씩에게 수레 1량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예의의 나라라 하여 차량 수효를 한정하지 않는다 합니다. 때문에 뜻대로 내도록 책임지우니, 일로가 잔약하고 피폐한 것을 반드시 조선(朝鮮) 탓이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무릇 이런 폐단들은 모두 신이 전일에 법을 범했던 일입니다. 이 다음 경사에 가는 사신

들은 반드시 절약해서 한 다음에야 폐단을 없애게 될 것인데, 만일  
번번이 이렇게 한다면 평안도의 인물이 모두 곤궁해지고 중국의 역  
로(驛路)들도 지탱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를 들어 한 말이 있었는데, 어떤 의  
논이 있었는지를 모르겠다.”

하매, 집의 한승정(韓承貞)이 아뢰기를,

“경사에 가는 사신의 양식을 황해도에서 평안도까지의 연도(沿  
道) 각 고을들이 앞을 다투어 선사하는데, 단지 사신 및 서장관(書  
狀官)에게만이 아니라 아래로 통사(通事)에게까지도 사사로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호송군(護送軍)에게 지우거나 실려서  
운반하게 하므로 이 때문에 사람과 말이 모두 죽게 되니, 만일 의외  
의 변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공수(拱手)한 채 잡히게 될 것입니  
다. 또한 가진 물건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니, 도둑들이 어찌 이를  
이득으로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사신들이 국가의 뜻을 체득  
하게 된다면 이런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또 금은(金銀)을 지니는  
것은 모두 중한 죄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었  
고, 비록 간혹 가지고 가더라도 역시 어렵게 여겼었습니다. 지금 함  
경도의 은 나는 데가 한이 없는데도 값이 10배나 오른 것은 진실로  
모두 중국으로 가버리기 때문이니, 마침내는 국가의 큰 근심거리가  
될까 싶습니다. 금은은 간직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사신이나 서장  
관이 검찰(檢察)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간직하기는 용이하지만 돌  
아올 적의 짐은 운반하기가 어려운데, 통사들만 그런 짓을 하는 것  
이 아니라 군관(軍官)과 자제(子弟)들도 모두 이익보는 것을 앞세웁  
니다. 만일 돌아올 적에 선사(宣賜) 받은 물건만 헤아려서 짐바리  
수효를 정하고, 나머지는 싣고 오지 못하도록 굳게 법을 정하여 변

동하지 않는다면, 금은을 가지고 가는 폐단을 혹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화피(樺皮) 같은 것은 또한 우리나라에서 금하는 물건인데, 중국에 밀무역하여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인들이 백황사(百黃絲)·명주·약재(藥材) 등의 물건을 왜인(倭人)들이 머무는 곳 및 역로(驛路)에 가지고 가 다투어 매매하니, 이는 수령(守令)들이 법을 준행(遵行)하지 않는 소치입니다.

이런 것으로 경상도 및 개성부(開城府)가 흥리(興利)했기에 본부(本府)가 지금 바야흐로 추고(推考)하고 있는데, 만일 조정의 기강(紀綱)을 두려워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 ○ 『중종실록』 권66 중종 24년 8월 병술

삼공이 의논하려 아뢰기를,

“대저 변방 장수가 저들과 교통하면서 밀무역을 하다가 그 사실이 드러났으면, 엄중히 징계해야지 조금이라도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김극달의 사건은 당초 병사(兵使)와 경차관의 계본에는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뒤 최유원의 어머니 및 그 동생들이 유원을 구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 사간인들이 비록 첨사를 무함했으나 경차관은 이것을 사실로 여길 수 없었기 때문에 가형(加刑)하기를 계청했을 것입니다. 과연 상의 분부처럼 밝히기 어려운 사건을 가지고 수다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상당한 죄로 죄주라는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의논한 대로 하라.”

○ 『중종실록』 권66 중종 24년 8월 기축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전 첨사 김극달(金克達)은 그 계본을 보니 의심스런 정상이 없는 데, 이제 검속을 근실히 하지 않은 율로 정죄하여 판하(判下)하셨습니다. 변장으로서 관하(管下) 사람들과 뇌동하여 야인들과 피물(皮物)을 매매하였고, 그 일이 발각되자 군민(軍民)들이 도망하여 온 진이 거의 비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변진의 중대한 일입니다. 극달은 죄의 괴수인데도 도리어 그 죄를 면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뒷사람들을 징계시킬 수 있겠습니까?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시고 조옥(詔獄)에 명하시어 잡아다가 끝까지 추궁, 율에 따라 정죄하소서. 유계종(柳繼宗)은 전에 탐오하고 무례하여 여론이 있었으니, 서용할 수 없습니다. 개차(改差)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중종실록』 권66 중종 24년 8월 임진

진사 송세형(宋世珩)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은 먼 지방에 사는 몸으로 조정의 일을 어찌 감히 하나하나 거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북경(北京)에 가는 사람들은 명이 내리는 날부터 재물 모을 궁리를 하여 군현(郡縣)에서 거두어들이는 데 있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군현에서 이 요구에 응하는 것은 모두 백성에게서 염출하는 것이니, 백성들의 탄식을 또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6개 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황해도와 평안도는 다른 도처럼 넉넉하지도 못한데, 사신을 맞고 보내는 데 쓰이는 비용이 거액이어서 텅 비게 될까 걱정입니다. 2로(路)의 군현들은 또 환심을 사기 위해 요구에 응하느라 가혹한 토색질이 타도에 비해 배나 됩니다. 민물(民物)의 소모와 역로(驛路)의 쇠잔이 모두 여

기에서 연유하니, 원한에 찬 자들의 호소가 천재(天災)로 불러오기에 충분합니다.

명색이 검속(檢束)한다는 자들이 스스로 먼저 범하니, 풍헌(風憲)과 기강(紀綱)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구나 우역(郵驛)의 이속(吏屬)들이 위세에 눌려 분주하게 왕래하는 것이 모두 이 때문이니,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때문에 사신들은 마음대로 말을 징발하여 길이 매어지도록 다니며, 압마관(押馬官)이나 역리(驛吏)들까지 세력을 등에 얹고 이(利)로 꺾어 말을 빌려 강까지 운반하는가 하면, 단련사(團練使)의 위졸(衛卒)들에게도 짐을 지워 공공연히 운반합니다. 요동(遼東)에 이르러서는 수레로 실어나르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북경에 도착하여 수레에서 내리자마자 상인들은 관소(館所)에까지 끌어들여 다투어가면서 무역을 하므로 마치 장바닥 같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모두들 우리나라를 흥리(興利)하는 나라로 지목하고, 심지어는 과거를 볼 때 책제(策題)로 출제하여 ‘조선은 예의를 가탁하여 중국에서 이(利)를 도모하니, 내왕을 막는 것이 좋은가? 기미국(國)으로 두는 것이 좋은가?’ 하는 지경입니다. 신하들의 탐욕과 비루함 때문에 그 누(累)가 국가에까지 미치니, 매우 통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사신이 북경에 갈 때에는 친히 뜰에서 인견(引見)하시어 순순(諄諄)히 타일러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또 검속하는 사람을 뽑아서 사신이 왕래할 때에 압록강에서 수색을 철저히 하여, 조금치도 숨기지 못하게 하소서, 또 2로(路) 연변의 각 고을에 명을 내려 환심을 사기 위하여 징구(徵求)하지 못하게 하고, 우역의 이속(吏屬)들에게 법규 이외의 말을 빌려주지 못하게 하신다면, 역시 시정될 것입니다.

또 국가에서 실시하는 토목 공사의 웅장함에 대해서는 대간과 시종이 계속해서 글을 올렸으니, 어리석은 신의 군소리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가 살피건대 경대부(卿大夫)들의 토목 공사가 지나치게 많으니, 그 폐단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기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더욱 심한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특별히 별와서(別瓦署)를 설치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염가로 사다가 각자의 집을 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백성도 그 기와를 사다가 자기 집을 이었다는 소문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중에는 가옥들이 촘촘하여 처마가 잇달았으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1백 집이 불타고 한 밤중에 종을 두드리면 대궐까지 진동합니다. 해마다 구워 내는 기와가 어디로 가는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세력 있는 집에서는 제조(提調)에게 청탁하여 마음대로 사다가 쓰면서도, 반드시 서인의 이름을 기록하여 합법적인 형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집을 태운 백성의 원망이 없을 수 없으며, 힘들여 기와를 굽는 백성의 원한 역시 없을 수 없을 것인즉, 원망이 일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관직을 설치하여 분명히 부서를 만들었는데 위로 임금을 속이고 사육을 채우는 것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별와서를 폐지하고 용관(冗官)을 없앤다면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설치한 지가 오래어 가볍게 혁파할 수 없다고 한다면, 1년 동안 구운 기와의 수를 유사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다가 한성부(漢城府)에 신보(申報)하게 하소서. 또 각부(各部)로 하여금 세초(歲抄)에 민가에서 지붕이는 데 필요한 숫자를 자세히 기록하여 계달하게 하고, 특별히 중사(中使)를 파견하여 해당 민가를 가려 사실 여부를 단속하게 하소서. 그러면 빈민들도 은택을 입을 것이고, 국가의 본의도 실추되지

않을 것입니다.”

○ 『중종실록』 권68 중종 25년 9월 무신

“김세형과 김순련(金順連) 등이 왜인의 물품을 사려고 남몰래 해도에 들어가다가 중도에서 붙잡혔다. 김순련은 도망쳐버렸고, 김세형만 잡혀 금부에서 추고한 결과 모든 것을 이미 승복하였기 때문에 사죄(死罪)로 조율하였다. 이 사람의 용심 자체는 매우 허물이 크지만 중도에서 발각되어 붙잡혔으니, 범행을 이루지는 못한 것이다. 비록 죽을죄라도 범행을 이루지 못했으면 감사(減死)하는 율이 있는 것인데, 더구나 김순련이 이미 도망쳐 버려서 누가 수악(首惡)인지 종악(從惡)인지조차도 가려지지 않은 처지로서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때문에 이 일은 비록 계복할 때라도, 범행을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차이점에 관해서 논의가 없지 않을 것이기에 이를 금부에 물었더니, 금부가 회계하기를 ‘강간(强姦)이나 재물을 도둑질한 사건의 경우는 이루지 못한 자에 대하여 형을 감등(減等)하는 율문이 있지만, 매매의 사건에 관해서는 그런 율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율했다.’ 하였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유사(有司)로서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겠지만, 임금이 사형을 결단하는 데는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만일 이루지 못한 사건을 범행 목적을 이미 달성한 자와 같은 죄로 논한다면 이는 온당치 않기 때문에 감사(減死)로 판부한 것이다. 이제 집법관(執法官)이 사죄(死罪)로 다스리려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다만 임금이 사형을 결단하는 일은 중대하기도 할 뿐더러, 한재(旱災)가 심하여 신원(伸)해야 할 시기라 독단할 수 없으므로 의논한다.”

하였다.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처럼 한재가 걱정되는 시기에는 중범(重犯)이라 할지라도 정

상만 그리 중대하지 않으면 가벼운 쪽으로 결단하시어 살리기 좋아하는 은혜를 보이시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왜인이 나 야인들과 무역(貿易)하는 무리들이 꺼림 없이 금법(禁法)을 범하고 있으니, 만일 이들을 통렬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끝내 그 폐단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세형은 국법으로 금지된 물품을 가지고 해도(海島)로 들어갔으니, 이는 정상과 범행이 다 중대하여 용서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대신이 의논한 결과 모두 율령(律令)에 따르기로 하였으니, 금부는 초사(招辭)를 취하여 정죄(定罪)하는 것이 옳다.”

#### ○ 『중종실록』 권92 중종 34년 10월 무자

윤은보 등에게 전교하였다.

“근래 재변이 거꾸 나타나고 겨울 천둥까지 치니 재변을 부른 이 유가 어찌 없겠는가. 재변이 잇따라 드는데 상하가 두려워하여 조심하는 것 같으나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이 아닌가. 마땅히 한층 더 반성하고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야대(夜對)할 때 들으니 경연관(經筵官)의 말이, 내수사 서제(內需司書題) 박수영(朴守榮)이 채단(綵緞)과 백사(白絲)를 몰래 가지고 제포(薺浦)로 가서 내지(內旨)라 사칭하고 길례(吉禮)에 쓸 것이라는 구실로 왜인들의 은을 무역하여 중국에 부쳤다고 하니, 매우 해괴하고 놀랍다. 수영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시정(市井) 사람일 것이다. 조옥(詔獄)에 잡아들여 추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밀무역에 대한 법은 일죄(一罪)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가볍게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에 이에 대해 의논하던 사람이 ‘통사(通事)가 은을 가지고 중국에 가면 일죄라 했으니, 누가 일죄를 고발하려 하겠는가. 만일 처벌하

는 법을 한 등급 내린다면 반드시 고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것으로 유추해 보면 왜은(倭銀)을 밀무역한 자는 그 죄를 약간 가볍게 해주고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며 그 은은 속공(屬公)시키면 고발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거짓 고하는 사람은 자연 반좌법(反坐法)에 해당시키면 거의 금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일의 형편상 시행하기 곤란한 점도 있을 듯하다.

그리고 또 어제 야대 때 들으니 ‘임금은 밝게 살피는 것으로 현명함을 삼아서는 안 된다.’ 했는데 지극히 옳은 말이다. 근래 외방의 계본(啓本)과 중앙의 공사(公事)를 보면 다만 해사(該司)에 이첩만 하면 될 것도 모두 계하(啓下)하니, 분란스럽기만 할 뿐이다. 그러나 후세에는 인심이 예스럽지 못하여 계하한 공사도 오히려 불행하지 않는데 하물며 관례대로 해사에 이첩한 공사이겠는가. 이래서 반드시 계하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힘써 큰 요점만 파악해야지 일까지 살살이 살피는 것은 마땅치 않다.

또 어제 최보한(崔輔漢)의 말을 들으니, 이조(吏曹)에서는 매양 인재가 모자라 고충을 겪고 있으니,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시죄를 범하여 파직된 사람은 2년이 경과하면 서용할 수 있다.’는 법을 다시 밝히라고 청하였다. 『대전(大典)』을 상고해 보니 과연 그러한 법이 있었다. 이 법을 오랫동안 쓰지 않은 것이 또한 무슨 뜻인가. 그 많은 군읍(郡邑)에 어찌 모두 어진 사람만 등용할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감사(監司)를 잘 선택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감사라고 어찌 수령들의 부정행위를 다 알 수 있겠는가. 비록 안다고 하더라도 인정(人情)에 얽매어서 전최(殿最)를 엄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한 도내의 수령들 중 사죄를 범한 사람이 몇 명이면 감사를 좌천시키고 또 몇 명이면 파직시키는 등 이렇게 법을 만들면 감

사가 스스로 다잡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뜻이 어떠한가?”

○ 『중종실록』 권92 중종 35년 1월 기미

전교하였다.

“왜인들이 은을 가지고 와서 무역하는 일은 비록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왜인들이 어찌 우리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여 가지고 오지 않겠는가. 만약 도로 가지고 가게 한다면 필시 원한을 품을 것이다. 그 값을 낮추고 포화(布貨)로 공공연하게 거래하게 한다면 금지품을 몰래 들여와 무역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연혁에 관계된 일이라 가벼이 바꿀 수가 없다. 대신에게 의논하라.”

○ 『중종실록』 권92 중종 35년 1월 기미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왜은(倭銀)의 밀무역을 금지하는 법은 매우 엄하여 범법자는 사형에까지 처하는데, 이익을 피하는 무리들은 그래도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로 방자해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허락하면 가격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오히려 포화를 이롭게 여겨 전처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은이 더욱 민간에 유포되어 중국에 가는 사행 때마다 다량을 가지고 들어가 연경에서 물화를 사들인다면 은의 출처를 중국에서 어찌 알겠습니까. 뜻밖의 걱정이 생길지도 모르니 시장을 열기는 어렵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명종실록』 권5 명종 2년 2월 정해

영부사 홍언필(洪彦弼), 영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의정 이기(李), 우의정 정순봉(鄭順朋), 좌참찬 심연원(沈連源), 우참찬 임권(任權),

예조 판서 신광한(申光漢), 참의 박세후(朴世煦) 등이 빈청(賓廳)에 나아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동평관(東平館)의 외국 물건을 몰래 무역한 일은 『후속록(後續錄)』에 ‘모두 관에 몰수(沒收)하고 징급하지 않는다[沒官勿許徵給]’는 법이 있긴 하지만 지금 피물(皮物)이 너무 많으니 징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몰수하지 말고 징급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직(庫直)·사령(使令)·시인(市人) 등은 그 죄상이 매우 무거우니 만약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뒤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전 가족을 경원(慶源)·경흥(慶興) 등지로 옮기고 이 뒤로부터 이것으로 영원히 형식(恒式)을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전에 동평관의 고직·사령 등이 왜인(倭人)의 담비[山獺]·수달(水獺)·여우가죽 3천 3백여 장을 몰래 무역하려고 지난 겨울에 시인(市人) 채상(蔡祥)·채가(蔡嘉)·김선복(金善福) 등에게 내주었는데, 이들이 그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왜인이 해조(該曹)에 고소(告訴)하였다. 해조에서는 몰래 무역한 물품은 관에 몰수하는 것이 법에 마땅하며 아자(牙子) 등도 법에 의해 엄하게 다스려야 하겠지만 그 많은 물품을 관에 몰수하고 징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원망을 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상이 정부와 해조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한 것이다.】

### ○ 『명종실록』 권7 명종 3년 1월 계미

형조가 아뢰기를,

“당인(唐人) 박표로(朴瓢老)가 물화(物貨)를 싸가지고 철산(鐵山) 오윤(吳潤)의 집에 왔다가 붙잡혀서 본군(本郡)에 수금(囚禁)되어 있습니다. 당인을 추국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추국하는 예와는 다르

니 대신에게 의논하소서. 경상인(京商人) 여흥(呂興)이 당인과 서로 통하여 왕래하였습니다. 또 박표로의 공초(供招)에 ‘본국(本國) 사람 여흥과 서로 통하여 왕래하였다.’ 하므로 그를 목에 칼을 썬 뒤 당인 민결(閔傑)의 집에 구류시켜 두었는데, 이 일 또한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전교하였다. 삼공이 회계(回啓)하기를, “이 일은 전에 이미 의정(議定)한 일입니다. 만일 당인이 확실하다면 요동(遼東)에 이자(移咨)하여 교할(交割)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흥을 구류시킨 일도 요동에 이자하여 물어야 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 『명종실록』 권19 명종 10년 8월 갑신

헌부가 아뢰기를,

“중조(中朝)에서, 우리나라 하인(下人)들이 외람된 짓을 한다고 하여 달자(子)와 다름없이 대우하기 때문에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보내어 서책(書冊)·약재(藥材)외에는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일체 무역(貿易)을 금지하게까지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못 되어 물화(物貨)를 무역하는 것이 지난날 범람하던 것과 같아 비웃음만 크게 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례에 의한 무역 외에 궁각(弓角)을 밀무역하게 하고, 또 역관(譯官)으로 하여금 요동(遼東)으로 가 병을 핑계로 그곳에 머무르면서 동(銅)·납(鉛)을 밀무역하게 하니,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에서 사대(事大)하는 것이 이러하니 어떻게 하인의 부정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궁각을 밀무역하게 하지 마시고 또 역관으로 하여금 뒤에 처져 동·납을 밀무역하게 하지 마소서.”

하니,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답하였다.

○ 『명종실록』 권28 명종 17년 12월 병인

정원이 고변봉서(告變封書) 【사역원의 전함(前銜)인 상인(喪人) 김석련(金石連)이 상소한 것인데, 대강의 내용은, 제주도에 정배(定配)간 여인 옥복(玉福)이 자전(慈殿)에 대하여 온갖 못할 말을 한다고 하였고, 또 예조의 서리(書吏) 신수진(申守眞) 등이 왜인들과 교통하면서 밀무역을 한다고 하였다.】 를 입계하니, 전교하였다.

“금부 당상을 즉시 부르라.”

○ 『선조실록』 권142 선조 34년 10월 경인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죄인을 계복(啓覆)하였다. 형방 승지 최기(崔沂)가 앞으로 나아가 죄인 고덕연(高德淵)·고덕준(高德濬)·감동(甘同)의 추안(推案)을 읽었는데, 【덕연이 노비 쟁송하는 일로 인하여 김홍(金弘)·방진(方進) 두 사람을 아우 덕준과 함께 결박하여 물에 던졌다. 감동도 그의 노비로서 따라서 참여하였다.】 죄가 참형(斬刑)에 해당되었다. 그 중 감동은 수종(隨從)이라는 것으로 교형(絞刑)으로 논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죄는 어떠한가?”

하니, 영사 이항복이 아뢰기를,

“저들이 분명히 승복(承服)하였으니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조율(照律)한 대로 할 것인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그 죄는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초 계획은 덕연이 하였으니 덕준을 덕연에 비교하기는 애매한

듯한데, 죄가 같은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형조 판서 황진(黃進)이 아뢰기를,

“이 죄를 조율할 때에 소신도 참석하였습니다. 덕준은 덕연에 비하면 죄가 가벼운 듯하나 감동에 비하면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덕연이 길에서 쟁송인(爭訟人)을 만나자 그들을 결박하여 집으로 돌아왔다가 밤에 아우 덕준과 함께 각각 한 사람씩 데리고 가서 돌을 달아 물에 던졌다. 감동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계획은 덕연이 하였다면 율(律)이 같아서는 안 될 듯하다.”

하니, 해평 부원군(海平府院君) 윤근수가 아뢰기를,

“계획은 덕연이 하였으나 두 사람이 각각 한 사람씩 데리고 가서 물에 던졌기 때문에 그 죄가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초 죽이려고 끌고 간 사람은 덕연이다. 율문(律文)에 ‘계획하여 살인한 자는 참(斬)한다.’ 하였으니, 덕준은 이 율과는 차이가 있는 듯하다. 사형에 처하더라도 교형(絞刑)에 해당된다.”

하니, 도승지 서성(徐)이 아뢰기를,

“소신도 어제 이 율을 의심하여 율관(律官)을 불러 물었더니 ‘당초 물에 던질 때 덕연과 덕준이 각각 한 사람씩 데리고 가서 던졌으니 덕준의 죄가 덕연보다 가벼운 듯하나 감동에 비하면 중하기 때문에 조율이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좌참찬 홍진(洪進)은 아뢰기를,

“노비는 상전의 지휘를 받아야 하니 감율(減律)하여야 할 듯하고 아우는 형의 말에 따르지 않았어야 하는데 따랐으니,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할 말이 하나 있다. 고언백(高彦伯)이 전공(戰功)이 있는 것은 말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태릉(泰陵)의 변(變)에 언백이 공이 적지 않았다. 이제 그의 두 아들을 함께 사죄로 논하였는데 형제를 모두 죽여야 하겠는가? 수종(隨從)한 사람은 사죄에서 감하는 것이 마땅한 듯한데 어떠한가?”

하니, 판의금부사 이충원(李忠元)이 아뢰기를,

“소신의 생각에도 팔의(八議)에 의거 다시 밖에서 의논해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형은 원한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아우는 무지(無知)한 사람이니 어찌 간하여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이치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두 아들을 일시에 죽이는 것은 과한 듯하다. 각각 여러 사람의 뜻을 말하라. 더구나 덕준은 미리 계획한 덕연과는 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니 다시 의논함이 어떠한가?”

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이 일은 털끝만큼도 차이를 둘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계획은 덕연이 하고 덕준은 당초 간섭하지 않았으나 물에 던질 때에 이르러서는 덕준이 말릴 수 없었던 일이 아니었는데 따라서 죽였습니다. 당초 고언백의 공은 온 조정이 누가 아름답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것을 가지고 아래에서 의논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고, 대사헌 황신은 아뢰기를,

“이충원이 아뢰는 팔의(八議)를 여기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팔의는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찌 그 아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겠습니까. 살인한 자는 죽인다는 것은 고금의 정법(定法)으로 한 고조(漢高祖)의 약법삼장(約法三章)에서도 없애지 않았습니다. 고언백 자신이 살인하였더라도 살인은 용서받지 못할 것인데, 어찌 살인

하고 면할 길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무리 살인이라 해도 어찌 경중이 없겠는가? 다시 의논하라.”

하니, 헌납 민유경(閔有慶)이 아뢰기를,

“살인에 관한 일은 매우 중합니다. 아버가 공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아들의 살인죄를 용서한다면 뒤폐단이 있을까 염려되어 매우 미안합니다.”

하고, 서성은 아뢰기를,

“예로부터 사형을 면하는 것은 자신에 불과하고 아들에게까지 미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옛적에 큰 공이 있는데 큰 죄를 범하여 죽게 된 사람이 있을 경우 한 아들을 남겨서 그 제사를 끊어지지 않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고언백의 공은 이같이 중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이 없더라도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이는 사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달리 의심할 바가 없으니 조율한 대로 하라.”

【사신은 논한다. 상이 언백의 공을 생각하여 그 아들의 살인죄를 면해주려 하였으니 훈로를 잊지 않은 뜻이 지극하다 하겠다. 그러나 언백이 자기 아들이 살인한 뒤로 그 죄를 면하게 하려고 김공량(金公諒)의 삼촌 조카를 사위로 삼기까지 하는 등 구해 낼 수 있는 일이라면 앗는 짓이 없었으니, 이런 까닭에서였던가.】

하였다. 최기가 또 죄인 구남(具男)의 추안을 읽었는데 【중국인과 밀무역하다가 원가(元價)를 돌려주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뒤 잡아 국문하라는 명이 내리자 도망쳤고 또 인신(印信)과 유지(有旨)를 위조하였다.】 죄가 참형이었고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데에 해당되었다. 상이 이르기를,

“이 죄는 어떠한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이것도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여러 사람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서성이 아뢰기를,

“구남의 일은 신이 소상하게 압니다. 당초 중국인에게 물건값을 받았는데 돈 곳이 없으니 첫 번째 사죄(死罪)이고, 나포한다는 명을 듣고 도망하였으니 두 번째 사죄이고, 인신(印信)과 유지(有旨)를 위조하였으니 세 번째 사죄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죄를 범하였으니, 어찌 의심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하고, 충원이 아뢰기를,

“추안을 보건대 유지를 위조한 일은 매우 흉참(凶慘)합니다. 이 죄는 부대시참(不待時斬)에 해당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읍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사시(巳時)에 파하였다.

### ○ 『선조실록』 권201 선조 39년 7월 계미

평안도 관찰사 박동량(朴東亮)이 장계(狀啓)하였다.

“신이 요즈음 보건대 중앙과 지방의 사람들이 대부분 의주(義州)의 중강(中江)에서 화약을 무역하고 있는데, 그 값이 또한 비싸지 않다고 합니다. 신이 중국 사신을 영접하려고 의주에 이르러 그 자세한 실정을 알아냈습니다. 이른바 화약을 파는 중국인들은 무뢰배들로 요양(遼陽)에서 진강(鎭江)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의 많은 진보(鎭堡) 관아의 화약을 암암리에 5백~6백 근이나 1천여 근씩 훔쳐 내어 본국의 거래하는 사람에게 밤을 틈타 비밀리에 팔아넘긴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값이 비록 헐하지만 흠쳐내는 것은 더욱 많아  
 저 몇 해 이래로 요양 일대의 화약이 죄다 도둑맞고 있으며, 진보의  
 관리도 제때에 점검하지 않아서 한갓 빈 창고만 닫아 놓고 있습니  
 다. 의주 부근의 무뢰배들 또한 떼지어 어둠을 타고 강을 건너가 직  
 접 벽을 뚫고 흠쳐오는 것이 5~6차례뿐만이 아니라고 했는데, 신이  
 듣고는 섬뜩하였습니다. 조만간에 이 일이 반드시 드러날 실마리가  
 있고 보면 우리나라 상인들도 연루되는 일이 없지 않겠기에, 즉시  
 의주 부윤 구의강(具義剛)을 불러 이러한 사정을 다 말하고 통렬히  
 엄금하게 하였습니다. 대체로 피차의 국경이 확실한 다음에 크고 작  
 은 사건들이 뜻밖에 돌발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경이  
 엄하지 않아 뒤섞여 드나들게 된 것은 모두 중강에서 세금을 거둬  
 들이는데 말미암은 것입니다. 1년에 거둬들이는 세금이 별로 용도  
 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데, 중앙과 지방의 행상들이 의주에 몰려  
 들어 시장이 열리는 날이 아니더라도 서로 오고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먼저 수세관(收稅官)을 폐지하  
 고 의주 부윤으로 하여금 맡아 관리하게 하는 한편, 행상을 통렬히  
 금지시키고 일체 드나들지 못하게 한다면 중강개시(中江開市)는 저  
 절로 폐지될 것이며 거의 국경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백성들이 조  
 금이나마 쉬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조정이 미리 지시하여 각별  
 히 잘 처리하소서.”

【사신은 논한다. 감사의 이 장계는 너무나 사리에 가깝지 아니  
 하다. 과연 이러한 사건이 있다면 더없는 큰 변이다. 폐단을 고치는  
 요점이 수세관을 폐지하는 데만 있지 않고 의주 부윤에 책임자를  
 얻어 쓰는데 있다. 참으로 굳세고 밝은 사람을 얻는다면 국경이 저  
 절로 엄해지고 밀무역 상인들이 저절로 끊어질 것이다.】

○ 『선조실록』 권201 선조 39년 7월 계미

의주 부윤 구의강이 장계하기를,

“관시(關市)에서 인삼 매매를 일체 금지하기를 아뢰었기 때문에  
행상 무리들이 감히 시장에 나가지 못하고 수상(水上)의 여러 곳에  
잠복하여 밀무역을 일삼으면서 소굴을 만들어 날로 더욱 치성하지  
만 본부가 막을 길이 없어서 항상 통분해 하였습니다.

관시의 위관인 경력(經歷) 이동(李棟)이 본부에 이문하기를, ‘밀무  
역 상인들이 별열박(別泊), 운두리(雲頭里) 등처에 인삼을 실어가  
버젓이 장사하고 있으므로 마시(馬市)에서 일체 인삼을 볼 수 없다.’  
고 하며, 온갖 책망을 다하였습니다. 본부가 비록 공손한 말로 회답  
하였지만 수상의 밀무역은 그가 속속들이 알고 있기에 신의 말을  
믿어 줄 리가 전혀 없으므로 그의 분노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불화의 씨가 야기될까 매우 염려됩니다. 조정이 엄하게  
과조(科條)를 세워 수상의 벽동(碧潼)·창성(昌城) 등의 고을에 거  
듭 밝혀 통지하여 각별히 엄금시켜 중국인들에게 트집잡힐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 『광해군일기』 권33 광해군 2년 9월 신해

비변사가 아뢰었다.

“부산 왜관(倭館)에 시장을 여는 일을 일찍이 계하받아 본도에 행  
회(行會)한 결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여는 날이  
드물기 때문에 왜인들이 오래도록 체류하고 있으므로 그 사이에 밀  
무역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3일마다 한 차례씩  
시장을 열도록 허락해서 공동으로 매매하게끔 하고, 중국 조정에서  
사용을 금지한 망룡단(龍段) 외에는 각색(各色) 단자(段子)이하에

대해 모두 금하지 말게 하소서. 요즈음 듣건대 동래부(東萊府)에서 이 공사(公事)의 본래 의도를 자세히 알지 못한 나머지 홍색과 황색의 주단과 포복 등 물건까지 모두 팔리 못하도록 금하고 있기 때문에 왜인들이 낙심하는 일이 없지 않다고 하니, 지금 이후로는 망룡단을 제외하고 각종 단자 등 물건에 대해서는 모두 상행위를 허락하도록 하소서.

시장이 열릴 때 예전에는 상인이 가지고 온 물건에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경중과 고하를 막론하고 상인들이 원망하는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먼저 매매하도록 한 뒤 상거래를 통해 얻은 은자(銀子) 등 물건에 대해 적절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공사(公私) 간에 편중되는 폐단이 없게끔 하소서.

그리고 경외(京外)의 상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호조의 행장(行狀)이나 각도 감사의 행장을 받게 하여 검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밀무역을 한 울로 논하게 함으로써 간사한 무리들이 자기들 멋대로 시장에 나와 밀무역을 한 울로 논하게 함으로써 간사한 무리들이 자기들 멋대로 시장에 나와 밀무역을 자행하는 폐단을 근절시키도록 하소서.

그리고 시장을 여는 날마다 어떤 행장을 소지하였는지, 상인이 싸 가지고 온 물품은 어떤 것들인지, 무슨 물건들을 무역하였는지, 세금은 얼마나 거두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름 아래에 기록하게 한 다음 동래 부사가 공정하게 조사를 해 한 책으로 만들어서 월말마다 한 건은 호조에 보고하고 한 건은 본사(本司)에 올려 보내게 하소서.

시장을 여는 일이야말로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인 만큼 각항(各項)마다 일어나는 간사한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동래 부사로 하여금 엄격하게 금하고 조사하게 하여 적발하는

대로 사안이 작은 것은 감사에게 보고하여 처치하게 하고 사안이 큰 것은 수금(囚禁)한 뒤 곧바로 아뢰어 법에 따라 중하게 처치하게 함으로써 관시(館市) 사이에 혼잡하게 되는 폐단이 없게끔 하소서.”

### ○ 『광해군일기』 권36 광해군 2년 12월 병술

의금부가 아뢰기를,

“비망기로 이르기를 ‘근래에 보건대 죄수가 감옥 가득 갇혀 있는데, 그 가운데는 간혹 몇 년 동안이나 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도 있다. 속히 소결(疏決)하여 풀어줄 자는 풀어주고 단죄할 자는 단죄하여 오래 지체하지 않도록 하라는 <일을 해조에 말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신중히 심의하려는 성상의 생각은 하늘의 덕과 동일한 것이기에 신들은 감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본부는 다른 법사와 달리 분부를 받들어 추국하는 곳으로서 각사가 가두어둔 죄수의 죄상과 시종 곡절을 상께서 모두 통촉하고 계시므로 아래에서 감히 함부로 가벼이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가 각 죄수의 죄목, 갇힌 기간, 형신(刑訊)을 받은 횟수의 많고 적음을 별단(別單)에 적은 다음 여쭙어 상의 재가를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께서 알았다고 답하시고, 대신과 의논하여 아뢰라고 전교하셨으므로 대신에게 의논해 보았습니다.

완평 부원군(完平府院君) 이원익(李元翼), 좌의정 이항복(李恒福), 청평 부원군(淸平府院君) 한응인(韓應寅)은 의논드리기를 ‘옥사의 정상은 은미하여 본래 규명하기가 어려우므로 친히 원고와 피고에게 임하여 오청(五聽)을 참고하지만 그래도 혹시 빠뜨림이 있을까 염려하곤 합니다. 더구나 허다한 추안(推案) 중에 단편적인 말을 집어내어 하나의 기록에 나열한다면 어떻게 일일이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당사자가 전후 범죄의 정상을 두루 조사하여 경중

을 해아린 다음 죄의 정상에 맞게 여쭙어 결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들은 감히 함부로 의논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영부사 윤승훈(尹承勳)은 의논드리기를 ‘감옥에 있는 각 사람의 범죄의 정상과 경중은 단편적으로 끄집어낸 말만 가지고는 추측으로 판결하기 어렵습니다. 계획적으로 9명을 죽인 신정(愼靖)의 극도로 흉악한 죄상에 대해서는 신이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머느리는 바로 심제겸(沈悌謙)의 장녀인데, 역시 죽은 9명 가운데 들어 있으므로 신은 감히 의논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우의정 심희수(沈喜壽)는 의논드리기를 ‘간사한 소인배인 최산해(崔山海)·덕복(德福)이 제 분수를 모르고 재물을 탐하여 중국에 죄를 지은 정상은 분명히 드러나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본관(本官)이 추문하던 때에 낱알이 자백하였고, 금부에서 국문받던 때에도 이미 승복했었는데, 결안(結案)하는 때에 이르러서는 다시 숨기려드니, 흉악하게 속이려 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김춘희(金春希)는 중국인을 끌어들여 멋대로 밀무역을 하다가 우리나라 지경 안에서 피살되는 일이 초래되도록 하였으니, 그 사이의 정상이 너무도 가증스럽습니다. 대개 이 세 사람이 지금까지 질긴 목숨을 구차하게 연명하고 있는 것은 실로 국가의 형벌이 엄하지 않은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비록 누차 큰 사면을 거쳤다 하더라도 어찌 다시 석방할 수 있겠습니까. 격숙(格淑)이 옥금(玉今)을 타살한 정상은 격계룡(格季龍)의 함사(緘辭)로 살펴보면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합니다만, 시체 검안증명서를 뜯어 고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로, 당초 한성부, 형조의 당상, 낭청 등 허다한 관원 가운데에는 필시 빈틈없고 명확하게 일을 해결할 능력을 갖춘 자가 있었을 것인데, 어찌 한 사람도 그 알기 어렵지 않은 문서상의

간악한 정상을 깨달아 살피지 못하고, 위협하는 사람의 치사 사건으로 논단(論斷)하고 말았던 말입니까. 극히 괴이하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밤중에 자기가 타살한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신고하고 검사를 청한 것은 인정에 가깝지 않은 듯하니, 이것으로 보면 의심스러운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후의 경기 관사(官司)의 3차 시체 검안서에 자살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고, 「실제 사인(死因)은 몽둥이 구타로 인한 치사」라고 기록되었으니, 법의 판례로 따져보아 상형(常刑)인 사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박진일(朴震一)이 술에 만취되어 난동을 부린 정상은 각 사람들의 공초에 나열되어 있으므로 끝내 숨길 수 없습니다. 살인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은 조사한 시체 검안서로 근거를 삼는 것이 당연한데, 당시에 시체 4구의 상처가 이렇듯이 분명하여 모두 「실제 사인은 타살로 인한 치사」라고 기록되었으니, 장차 무슨 말로 살인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애당초 원수를 갚을 일도 없으면서 일시의 작은 분노 때문에 술에 취하여 함부로 행동하여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것만으로도 사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다면 원통한 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칠고 패려긋고 형편없는 그 때문에 무고히 죽은 자가 9명이나 되니 지극히 원통하고 분한 일입니다. 정시웅(鄭時雄)의 갖가지 죄목은 대부분 하인들의 호소에서 나왔습니다. 비록 어사도 틀림없는 정상을 반드시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대개 탐람 방종하고 포악하다는 진술이 못사람의 입에서 한결같이 나왔고 보면, 직권을 남용하여 재물을 탐한 죄를 몇 번의 형신을 가하고 갑자기 용서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유순(柳淳)은 남이 시키는 대로 근거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는 말로 대신(大臣)을 모함하여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는 실로 고금에 들어보지 못하였던 일로서 보고 듣는 사

람치고 통분해 하고 놀라워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풍속을 해치고 국가의 기강을 무시한 흉악하고 패려한 정상은 엄중히 조사하여 무겁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그렇게 함으로써 훗날 간사하게 남을 모함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가 이미 『중풍이 들어 정신이 돈 사람이 망령되게 소를 올렸다.』고 운운하였고 보면 그는 이미 승복한 것입니다. 잡범(雜犯) 사죄(死罪) 이하의 죄인들이 누차 사면을 받았는데도 이 사람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으니, 법례로 보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정의 저주로 해를 입었다는 것은 곧 신의 집안 6촌 동생 심제겸 부자의 일입니다. 비록 법적으로 상피해야 할 경우는 아니지만, 가문의 송사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신은 감히 전례대로 의논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알기 어려운 것은 사건의 정상이며, 제대로 살피기 어려운 것은 사건 진술서입니다. 신은 본래 그지없이 어리석은 자이니, 허다한 사람들의 추안을 그저 흘깃 스쳐보기만 할 뿐이지 어찌 적절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유사의 감독 하에 차근차근 구명하여 분명하고 신중히 함으로써 가려짐이 없게 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관중추 기자현(奇自獻)은 의논드리기를 ‘신은 병이 있어 감히 의논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더구나 유순의 일은 바로 신의 강상(綱常) 문제와 관련된 일인데 어찌 감히 거기에 의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성상의 결정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대신의 뜻이 이와 같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뢰 대로 하라. 박진일과 정시웅은 지금 바로 의논하여 처리하라. 유순은 강상에 관계되는 극악무도한 죄로 대신을 모함하였으니, 강상의 사건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가벼이 의논해서는 안 되

겠으니 다시 엄중히 국문하여 자백받도록 하라.”

하였다.

#### ○ 『인조실록』 권12 인조 4년 3월 갑자

호조가 아뢰기를,

“부산의 왜영(倭營)에 대하여 조세를 만약 착실히 받아들이었다면 1년 동안에 은자 몇천 냥은 힘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 부산 왜영을 상대로 무역하는 경외(京外)의 장사치들이 상사(上司)의 공문을 교묘히 발부받아 모두 면세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세입이 날로 감축되어 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새로 과조(科條)를 만들어 비록 공문을 가지고 내려간 자라도 모두 조세를 받게 하고 그 밖에 다른 길을 통하여 밀무역하는 자들은 모두 법대로 처단하여 수세(收稅)의 길을 넓히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질(秩)이 높은 아문에서도 이렇게 염치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 오늘날의 풍조를 살펴 보건대 너무나도 한심스럽다 하겠다.

#### ○ 『인조실록』 권17 인조 5년 9월 정묘

헌부가 아뢰기를,

“회답사 신경호(申景琥)는 일행이 물건을 몰래 갖고 가 오랑캐 땅에서 매매하는 것을 잘 단속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길이 한번 열리면 막기 어려우니 파직시키고 다시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추고하라고 답하였다.

### ○ 『인조실록』 권21 인조 7년 9월 임오

황해도 안악군(安岳郡)의 잠상(潛商) 죄인 전송산(田松山)이 바칠 은화(銀貨)로 미곡 3백 석을 무역하여 안주(安州)에 수송하고 본 은화는 도로 관에 납부하여 속죄(贖罪)하기를 원하니, 조정이 허락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맹자가 말하기를 “위아래가 서로 이익을 다투면 국가가 위태로워진다.”고 하였다. 밀무역하는 무리들이 죽을 곳에 스스로 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국법을 범하는 것은 아래에서 이익을 다투는 행위이다. 지금 전송산이 이미 범망에 걸려든 마당에 수백 석의 미곡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실로 위에서 이익을 다투기 때문으로서, 끝내는 이익이 중하고 법은 가벼운 결과가 되어 사람마다 요행을 바라게 되었으니, 금하는 자가 사실은 그런 길을 열어 준 것이라 하겠다.】

### ○ 『인조실록』 권22 인조 8년 6월 을묘

상이 숭정전(崇政殿)으로 나아가 금차(金差) 아지호(阿之好)와 중남(仲男) 등을 인견하였다. 비국이 아뢰기를,

“삼가 금(金)나라 한(汗)의 글을 보건대, 여러 가지로 공갈 협박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네 조목을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목별로 답하기를 ‘본국이 병화(兵火)를 겪은 나머지 해마다 기근이 들었고 변방에는 원래 비축된 군량이 없었기 때문에, 섬과 무역한 일이 있었다 해도 실은 쌀을 가지고 가 무역한 적은 없었는데, 변경의 백성들이 사사로이 서로 무역한 것에 대해서는 본래 관가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감히 단속하지 않겠는가. 도망해 돌아와 발각 된 사람은 그 전에 즉시 쇄환하였는데, 요즘에는 전혀 온 자가 없으니, 붙잡아 보내고 싶어도 바람을 잡는 일에 가깝다. 이러한 뜻은 전에 모두 말하였으므로 양해할 줄로 안다. 의주(義州)

의 사변은 곧 유흥치가 한 것이므로 본국에서는 알 바가 아니다. 북변의 밀무역상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요즈음들은 바로는 변신(邊臣)이 엄중히 단속하지 못하여 범을 어기고 매매하는 간사한 백성이 이따금 있게 하였다 한 이 일은 귀국의 말이 참으로 옳다. 이제 별도로 군세고 밝은 관리를 뽑아 보내 착실히 금지하게 할 것이니 허물치 않으면 다행이겠다. 다만 근래에 섬에서 발생한 사변으로 인하여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침범하려는 기미가 있기에 군사를 동원하여 변화에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변경에 일이 많아, 근일 유흥치가 빼앗아 간 물화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금나라의 수많은 사람과 말을 벌판에서 지체하게 하였으니,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승문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으로 문장을 만들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 『인조실록』 권25 인조 9년 12월 정해

비국이 아뢰기를,

철산(鐵山)의 아전 이계립(李繼立)이 오랑캐에 투항한 정상을 실토하지는 않았습디만, 우리나라가 섬에 물자를 대주었다는 사실을 골자(骨者)에게 말하였고, 밀무역한 한 조항만은 그도 제대로 숨기지 못하고 있으니, 효수(梟首)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 『인조실록』 권39 인조 17년 7월 병진

호조가 아뢰기를,

“전부터 청나라 사람들이 발매(發賣)하는 것이 더할 수 없는 근심거리였는데, 정역(鄭譯)이 역관들로 하여금 그 사이에 참여하지 못

하게 하므로 시장 백성들이 끝없이 원망하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들어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질까지 해대니 시장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은 이치상 당연합니다만, 도피하여 본조에 옥을 끼치기까지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선은 평시서(平市署)로 하여금 잘 타일러 돌아오게 하고, 끝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기어이 잡아다가 율에 의거하여 죄를 주고 단연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 『인조실록』 권40 인조 18년 4월 경오

빈객 이행원(李行遠)이 치계하기를,

“청나라에서 담배[南草]를 금함이 요즈음 더욱 심하고 조정의 사목(事目) 역시 몹시 엄준합니다. 그런데 이익을 탐하여 목숨을 걸고 온갖 방법으로 숨겨 가지고 가서 나라를 욕되게 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금법을 범하는 자를, 1근(斤) 이상은 먼저 참수한 다음에 아뢰게 하고 1근 미만인 자는 의주(義州)에 가두고서 경중에 따라 죄를 주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 『인조실록』 권41 인조 18년 11월 병신

몰래 무역한 상인 2인을 의주에서 처형하였는데, 칙사의 분부로 인한 것이다.

#### ○ 『현종실록』 권10 현종 6년 7월 계사

어떤 왜인이 몰래 배 1척에다 유황을 싣고 와서 용초도(龍草島)에 정박하고 피 봉사(皮奉事)와 임 주부(林主簿)를 찾았다고 경상 감

사 임의백(任義伯)이 보고하였다. 이른바 피 봉사와 임 주부는 곧 상인 임지죽(林之竹)과 피기문(皮起門)으로 전부터 왜인과 유향을 몰래 매매해온 자들이다. 비국(比國)이, 동래 부사 및 통제사로 하여금 두 사람에게 분부하여 비밀히 교역하도록 하고, 또 이후로는 밀무역하는 상인을 일체 엄금하도록 동래 부사에게 신칙하기를 청하니, 따랐다.

### ○ 『현종실록』 권10 현종 6년 7월 계축

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최근에 있는 지방의 풍재(風災)는 벼와 곡식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무가 뽑히고 돌이 날아갔으니 극히 놀랍고 두렵습니다.”

하니,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천재(天災) 가운데에서도 바람의 변고가 가장 두렵습니다. 과거의 일을 가지고 말을 해보면, 을해년과 신묘년에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끝내 큰 화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중외(中外)의 인심이 모두 놀라고 의혹하는 것입니다. 풍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일의 변고까지 도처에 일어나고 있으니, 이 또한 두려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형조 판서 김좌명이 아뢰기를,

“김근행(金謹行)이 유향을 밀거래하기로 약속했던 건은 지금 여쭙어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수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자, 좌명이 아뢰기를,

“전에는 1만 5천여 근이었는데 이번에는 2만 7천 근입니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정부(政府)의 노복이 면천(免賤)하기 위하여 밀무역하여 온 것입니다. 대개 이 일은 고 상신(相臣) 원두표(元斗杓)가 재직하던 당시

에, 비국이 역관에게 분부하여 은밀히 장사꾼으로 하여금 저들에게 가서 약속하고 오게 한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니, 호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밀무역은 저들 나라가 엄중히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는 처사를 관왜(館倭)가 뻔히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장사꾼들이 반드시 이 일을 벌미삼아 멋대로 밀무역을 하려들 것이니, 어찌 나라의 체통을 손상시키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이후로 엄중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영동 지방의 가뭄은 매우 참담한데 강릉은 특히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미 감사로 하여금 직접 살펴본 다음 보고하여 구휼할 근거를 삼도록 하였습니다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백성이 없지 않을 듯하니, 아직 처결되지 않은 본도의 옥사를 일일이 아뢰게 한 다음 형조로 하여금 소결(疎決)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치화가 아뢰기를,

“고 교리 윤집(尹集)은 남한산성에 있었을 때에 화의를 배척하였다가 청나라로 잡혀가 굴복하지 않고 죽었는데, 그가 청나라로 떠나던 때에 인조 대왕께서 윤집을 인견한 자리에서 ‘노모와 처자를 돌보아 주겠다.’라고 하교하셨고, 그 후 매달 쌀을 그의 집에 지급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듣건대 그의 처는 죽고 집안이 매우 궁핍하다고 하니, 3년 동안은 쌀을 계속 지급해 주어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태화가,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았으니 상을 치르는데 필요한 물건을 지급해 주기를 청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이조 판서 김수항이 아뢰기를,

“신은 원자 보양관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아직 배알하지 못

하였으니, 아랫사람된 자로서 심정이 매우 답답합니다. 또 실록을 지금 이미 베껴 왔으니 여쭙어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실록에서 베껴온 것은 매우 소략하다. 태종조에는 원자부(元子府)라 칭하고 관속(官屬)은 시학관(侍學官)으로 칭하였는데, 중종조에는 곧장 세자로 칭하고 인종 대왕이 6세 되던 때에 관을 쓰고 서연에 출입하였다. 이는 중종조에 창설한 것이니 지금은 따를 필요가 없다.”

하자, 명하가 아뢰기를,

“쌍동계(雙童)는 『대명회전(大明會典)』에 나옵니다.”

하였다. 수항이 아뢰기를,

“조종조의 고사(故事)에는 시강하는 관원을 여러 명 차출하였는데 중종조에는 심지어 대신으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조조에는 원자 관속을 차출하여 당상관은 강학관, 당하관은 시학관이라고 불렀으니, 지금 다 차출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송준길의 뜻은 이렇게 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로 만나보게 하고자 한 지가 오래인데, 원자가 근래에 병을 앓고 있으니 병이 나으면 경들과 서로 만나보게 하겠다.”

하였다. 태화가, 예판 및 보양관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절목(節目)을 정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 ○ 『현종실록』 권20 현종 13년 6월 정유

부산 첨사(釜山僉使) 이연정(李延禎)을 옥리(獄吏)에게 내렸다. 이에 앞서 부산진(釜山鎭)의 군관 정종필(丁宗弼)이 왜인들과 밀무역을 하다가 발각되었는데, 비국이 경내에 효시할 것을 청하면서 첨사도 잘 단속하지 못한 죄를 면키 어렵다고 하여 잡아다 문초할 것

을 청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이에 이연정에게 공초를 받은 뒤에 그의 고신(告身)을 박탈하였다.

#### ○ 『현종개수실록』 권13 현종 6년 7월 계사

어떤 왜인이 몰래 배 1척에다 유황을 싣고 와서 용초도(龍草島)에 정박하고 피 봉사(皮奉事)와 임 주부(林主簿)를 찾는다고 경상감사 임의백(任義伯)이 보고하였다. 이른바 피 봉사와 임 주부는 곧 상인 피기문(皮起門)과 임지죽(林之竹)으로 전부터 왜인과 유황을 몰래 매매해온 자들이다. 비국이, 동래 부사 및 통영으로 하여금 두 사람에게 분부하여 비밀리 교역하도록 하고, 또 이후로는 밀무역하는 상인을 일체 엄금하도록 동래 부사에게 신칙하기를 청하니, 따랐다.

#### ○ 『영조실록』 권46 영조 13년 12월 갑신

하교(下敎)하기를,

“청(淸)나라에 주청(奏淸)한 것이 받아들여졌음을 함께 경하하는 뜻으로 멀고 궁벽한 곳부터 먼저 은전을 베풀어야겠다. 무신년에 위협에 못이겨 따랐던 무리로서 그 죄가 곤장을 맞고 방면된 것에 지나지 않는 자와, 변방에서 밀무역을 하다가 도망하여 숨은 무리로서 관청에 자수하거나 혹은 향리에 스스로 돌아간 자에 대해서는 각도(各道)에 유시하여 그 허물을 묻지 말고 상민(常民)으로 대하며 어루만져 교화하도록 하라.”

하였다.

#### ○ 『영조실록』 권58 영조 19년 12월 경오

사직 유복명(柳復明)이 연경(燕京)에서 돌아와 상소하여 서울의 부상(富商) 이진철(李震哲)이 화폐를 숨겨 들어가서 몰래 매매(賣

買)한 죄를 진달하고 형배(刑配)하여 후일을 징계하기를 청하니, 임금  
금이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 『영조실록』 권59 영조 20년 2월 을해

황해 수사(黃海水使) 박문수(朴文秀)가 아뢰기를,

“당선(唐船)이 어채(漁採)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여름이 되면 오  
지 않는 해가 없는데 이를 인하여 연해의 백성들과 물건을 교역(交  
易)하는 등 그들이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습관이 더욱 조장되  
고 있습니다. 그들을 추포(追捕)하기 위해 온갖 계책을 다 썼지만  
힘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에 있어 최상의 계책은 비선(飛船)을  
많이 만들어 밤낮으로 바다 위에 띄워 놓고 당선의 어채의 이익을  
빼앗는 것이 제일이기 때문에 먼저 비선 20척을 만들려 하고 있습  
니다만 본영(本營)의 재력으로는 실로 착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영  
의 유고전(留庫錢)과 병영의 별비전(別備錢) 각 2백 민(緡), 상정미  
(詳定米) 50곡(斛)을 특별히 획급해 주도록 허락하면 제때에 배를  
만들어 쓸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좌의정 송인명이 그 말을 따를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  
기를,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은 간과(干戈)가 극렬한 가운데에  
서도 능히 전선(戰船)을 만들었는데 웅진(瓮津)이 아무리 피폐되  
었다고 해도 돈 4백 냥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런 청을 한단 말인가?  
수신(帥臣)은 추고하고 스스로 마련하여 배를 만들게 하라.”

하였다. 형조 참판 이주진(李周鎭)이 말하기를,

“황해 수사가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만 1년에 거두어 들이는 어리(漁利)가 4,5천 냥에 가까워서 그 재력  
이 호곤(湖)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에게 어떻게 영곤(營)에 있는 물력(物力)의 풍박(薄)에 대해  
 비교하여 진달할 수 있는가?”  
 하고, 이주진을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 ○ 『영조실록』권59 영조 20년 2월 을해

북병사(北兵使) 조호신(趙虎臣)이 아뢰기를,  
 “온성 부사(穩城府使) 성운혁(成胤赫)이 전례에 따라 군관(軍官)  
 최수약(崔守約)을 보내어 청(淸)나라의 차인(差人)을 위문하게 했더  
 니, 그 가운데 우호(禹胡)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갑자기 본부(本府)  
 의 품관(品官)인 오세옹(吳世雍)의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수약이 거짓말로 이미 죽었다고 했더니, 우호가 말하기를, ‘신유  
 년에 5냥의 삼(蔘)을 오세옹에게 주고 토산마(土產馬) 3필(匹)을 사  
 도록 약속했었는데 2필을 아직 받아오지 못했으나, 이제 그가 이미  
 죽었다고 하니, 어찌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세옹  
 이 법을 무시하고 잠상(潛商)한 일은 의당 구핵해야 하는데 본인이  
 곧 죽었으므로 그의 아들 오태일(吳泰逸)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하였는데, 함경 감사 심성희(沈聖希)는 ‘태일’이라는 두 글자가 이  
 미 우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아들에게 아버지의 죄를 증거하게  
 하는 것은 풍화를 손상시킨다는 것으로 장계하여 신문하지 말고 먼  
 곳에 정배(定配)시킬 것을 청하였다. 좌의정 송인명이 말하기를,

“심성희의 말이 옳습니다. 마땅히 그의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그  
 리고 성운혁은 변방의 일을 완만하고 소홀하게 여겼으며 조호신은  
 이런 성운혁을 논하지 않았으니, 함께 죄주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고 아울러 나처(拿處)할 것을 명하였다.

○ 『영조실록』 권65 영조 23년 1월 임인

재자관(咨官) 이명직(李命稷)을 감사(減死)하여 섬에 귀양 보내고 전인(塵人)으로 수범(首犯)인 자는 먼 곳에다 귀양보내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명직이 문단(紋緞)을 무역해 온 데 연좌되었으므로 추조(秋曹)에 명하여 사문(査問)하여 아뢰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대신에게 하문하자, 모두 말하기를,

“법과 금지하는 것은 다르니 정한 법이 없으면 율(律)로 조치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 이런 명이 있었다. 인하여 하교하기를, “이 뒤로 이를 범하는 시민(市民)은 곧바로 일률(一律)로 시행하고, 역관(譯官)과 상고(商賈)는 곧바로 만부(灣府)에서 먼저 효시(梟示)한 뒤에 장문(狀聞)하도록 하라.”

하였다.

## 2. 潛質 관련기사

○ 『현종개수실록』 권13 현종 6년 7월 계축

상이 회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금년 농사가 꽤 기대할 만했는데 갑자기 풍채와 수해를 만나 곡식이 상했으니 몹시 염려됩니다.”

하고, 좌의정 홍명하가 아뢰기를,

“혜성이 겨우 사라졌는데 풍채와 수해가 또 이와 같으니, 원컨대

성상께서는 더욱 공구 수정하소서.

영동 지방의 가뭄은 매우 참담한데 강릉은 특히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미 감사로 하여금 직접 살펴본 다음 보고하여 구휼할 근거를 삼도록 하였습니다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백성이 없지 않을 듯하니, 아직 처결되지 않은 본도의 옥사를 일일이 아뢰게 한 다음 형조로 하여금 소결(疎決)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형조 판서 김좌명이 아뢰기를,

“김근행이 납부한 은밀히 사들인 유황(硫黃)에 관한 일을 지금 마땅히 품달하여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자, 좌명이 아뢰기를,

“전에는 1만 5천여 근이었는데 지금은 2만 7천 근입니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이 일은 처음에 정부의 노예를 면천시켜 주기 위한 계책이었는데 잠무역한 이래로 고 상(故相) 원두표(元斗杓)가 비국으로부터 역관(譯官)에게 분부하여 은밀히 상인으로 하여금 저들 나라에 가서 규약을 맺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니, 호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잠상(潛商)에 대해서 저들 나라에서는 엄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왜관에서 환히 알고 있을 터이니 어찌 국가의 체모에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신은 이후부터는 단단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예조 판서 이일상이 아뢰기를,

“대왕 대비전에 풍정(豐呈)을 올릴 일을 부부인의 상제(祥制)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품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 거행하라. 그런데 의주(義注)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였는가?”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정유년에 진연(進宴)할 때는 집안사람이 하는 예에 따라 하였으니 풍정에 비하여 조용하게 치렀던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도 여기에 의거하여 거행하라. 그러나 정유년에는 단지 대왕 대비전에만 설행한 것이었고 이번에는 양전(兩殿)에 행해야 한다. 일찍이 듣건대 인조 갑자년에 인목 대비를 위하여 풍정을 올렸는데 인현 왕후가 연주 부부인(蓮珠府夫人)으로 있었기 때문에 각각 설행하지 않았던 것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번에도 같이 설행하게 된다면 왕대비전에 예를 행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예를 행하는데 과연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정유년 예에 따라 행하되 두 번을 설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자, 상이 여기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다. 치화가 아뢰기를,  
“고 교리 윤집(尹集)은 화의를 배척하였다가 청나라로 잡혀가 굴복하지 않고 죽었는데, 그가 청나라로 떠나던 때에 인조 대왕께서 윤집을 인견한 자리에서 ‘노모와 처자를 돌보아 주겠다.’라고 하고 하였고, 그 후 매달 쌀을 그의 집에 지급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듣건대 그의 처는 죽고 집안이 매우 궁핍하다고 하니, 3년 동안은 쌀을 계속 지급해 주어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듣건대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하니, 상을 치르는데 필요한 물건을 지급해 주어야 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이조 판서 김수항이 아뢰기를,

“신은 원자 보양관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아직 배알하지 못하였으니, 아랫사람 된 자로서 심정이 매우 답답합니다. 또 『실록』을 지금 이미 베껴 왔으니 여쭙어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실록』에서 베껴온 것은 매우 소략하다. 태종조에는 원자부(元子府)라 칭하고 관속(管屬)은 시학관(侍學官)으로 칭하였는데, 중종조에는 곧장 세자로 칭하였으니, 지금도 마땅히 태종조에 칭호한 대로 준행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수항이 아뢰기를,

“조종조의 고사(故事)에는 시강하는 관원을 여러 명 차출하였는데 중종조에는 심지어 대신으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조조에는 당상관은 강학관, 당하관은 시학관이라고 불렀으니, 지금 다 차출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송준길의 뜻은 이렇게 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로 만나보게 하고자 한 지가 오래인데, 원자가 근래에 병을 앓고 있으니 병이 조금 나으면 경들과 서로 만나보게 하겠다.”

하였다. 태화가, 예판 및 보양관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절목(節目)을 정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 ○ 『정조실록』 권16 정조 7년 10월 임신

영의정 정존겸(鄭存謙)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역관(譯官)들이 상언(上言)한 것에 따라 만부(灣府)의

후시(後市)를 혁파하기 청하였고, 우상(右相)이 복명(復命)하기 기다렸다가 품처(稟處)하기로 진달했었습니다. 대개 당초에 후시를 창설(創設)한 것이 폐단의 근원이 되어, 연복(延卜)의 잡물(雜物)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잡물(皮雜物)로 절가(折價)하기를 절행(節行) 때는 1만 냥(兩), 별행(別行) 때는 5천 냥, 자행(咨行) 때는 1천 냥 씩을 정식(定式)으로 하여 들여보내 책문(柵門)의 화물(貨物)을 환무(換貿)하게 한 것인데, 이득이 있게 되므로 간계(奸計)를 부리는 구멍이 점점 퍼지게 되고 금화(禁貨)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잠입(潛入)하게 되는 염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은화(銀貨)를 협대(挾帶)하는 것이 있으면 잠상률(潛商律)로 시행하도록 하여, 계하(啓下)된 절목(節目)이 준엄하고 명백하게 되어있는데도, 들여보내는 소위 잡물(雜物)의 수량이 정식으로 절정(折定)한 값의 것보다도 몇 배가 될 뿐만이 아닙니다.

요사이 상역(象譯)들의 팔포(八包)를 헛되게 하는 것도 진실로 후시(後市)에게 이권(利權)을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변금(邊禁)이 준엄하지 못하고 금화(禁貨)가 새어 나가게 되어 진실로 소소한 근심거리가 아니니, 의당 시급히 혁파해야 합니다마는, 다만 후시의 존속과 혁파는 저들의 책문(柵門)에서의 세수(稅受) 영축(盈縮)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자연히 되돌아보며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여러 차례 마땅히 혁파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시행해 온 지 이미 오래이므로 잉구관(仍舊貫)하지 않을 수 없지마는, 정식 이외에 수량을 더 남월(濫越)하는 폐단은 별다르게 엄금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이 뒤로는 만일에 수량을 더 남월하는 폐단이 있게 되면 한결같이 본율(本律)로 준엄하게 감죄(勘罪)해야 하고, 변신(邊臣)도 또한 잘 검칙

(檢飭)하지 못한 죄를 면하게 되기 어려우니, 우선 삼령 오신(三令五申)하는 뜻으로 준엄하게 신칙하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제대신(諸大臣)에게 물었다. 우의정 이복원(李福源)이 말하기를,

“신이 돌아오다 강을 건넌 다음에 제역(諸譯)들이 상언(上言)했음을 듣고서, 시험삼아 일행(一行) 중의 역관(譯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한 만부(灣府)의 사례(事例)를 고찰해 보니, 소위 후시는 비록 옛적부터의 법은 아니지만 정식(定式)하여 거행해 온 지가 또한 이미 여러 해인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줄연히 철폐(撤罷)하려고 하면 피차(彼此)의 사세에 있어서 다소의 장애가 없지 않을 것이니, 오직 마땅히 준엄하게 만부(灣府)를 신칙하여 외람한 짓을 금단하고 정식 수량 이외에는 잠무(潛貿)할 수 없게 한다면, 연경(燕京)에 가는 역관들도 팔포를 비게 되는 것을 면하게 될 것이고, 만부의 상민(商民)들과 송도(松都)의 상고들도 또한 크게 실업(失業)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판중추부사 서명선(徐命善)이 말하기를,

“시행해 온 지 이미 오래인 것을 만일 이번에 갑자기 혁파한다면 과연 지장이 생길 염려가 없지 않으니, 우선은 또한 잉구(仍舊)하면서 단지 그 외람하게 잠무(潛貿)하는 것만 금단한다면 거의 폐단이 없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판중추부사 정홍순(鄭弘淳)이 말하기를,

“책문(柵門) 저자에 들여보내는 잡종(雜種)과 내 오는 물건이 당초에 정식(定式)한 것과는 현저하게 다를 뿐만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는 만부의 상민과 송도의 상고들이 죄과를 범하여 일을 내는 수가 간혹 탄로되어 전해지는 소문이 있었지마는, 요사이에는 딱 끊어지고 없게 되었으니, 어찌 이 무리들이 고기(顧忌)할 줄을 알아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특히 변신(邊臣)들이 직책을 잃어서이니, 기강(紀綱)이 없고 법이 없게 되면 과거처럼 신칙해도 효과가 있기를 기필할 수 없을 듯싶습니다.”

하고, 이복원이 말하기를,

“후시는 비록 혁파할 수가 없지마는, 정해진 수량 이외에 더 하는 짓과 법 밖의 잠무(潛貿)를 하는 폐단에 있어서는, 만일에 준엄하게 금단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대로 답습(踏襲)하기를 내버려 둔다면, 변금(邊禁)이 문란해져 단지 역관(譯官)들의 팔포가 비게 되는 것이 염려될 뿐만이 아닐 것이니, 본사(本司)에서 만부(灣府)를 관칙(關飭)하여 준엄하게 금단을 가하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표 1> 개항장과 개항시기

|     |          |     |           |     |          |
|-----|----------|-----|-----------|-----|----------|
| 부산  | 1876년 9월 | 경흥  | 1888년     | 마산  | 1899년 5월 |
| 원산  | 1880년 4월 | 진남포 | 1897년 10월 | 성진  | 1899년 6월 |
| 인천  | 1883년 1월 | 목포  | 1897년 10월 | 용암포 | 1906년 8월 |
| 양화진 | 1883년 8월 | 평양  | 1898년 8월  | 청진  | 1908년 4월 |
| 경성  | 1883년    | 군산  | 1899년 5월  | 신의주 | 1909년 8월 |

<출전> 조선무역협회, 1943 『조선무역사』 40~41쪽

<표 2> 서울과 인천의 청, 일본인 수

| 연도   | 서울     |       | 인천     |
|------|--------|-------|--------|
|      | 일본인    | 청국인   | 일본인    |
| 1883 |        | 99    | 348    |
| 1884 |        | 354   | 116    |
| 1885 | 89     | 111   | 562    |
| 1886 | 163    |       | 706    |
| 1887 | 245    |       | 855    |
| 1888 | 348    | 600여  | 1,359  |
| 1889 | 527    | 625   | 1,361  |
| 1890 | 523    | 751   | 1,616  |
| 1891 | 698    | 957   | 3,331  |
| 1892 | 715    | 1,254 | 2,540  |
| 1893 | 779    |       | 2,504  |
| 1894 | 848    |       | 3,201  |
| 1895 | 1,839  |       | 4,048  |
| 1896 | 1,749  |       | 3,904  |
| 1897 | 1,588  | 1,273 | 3,949  |
| 1898 | 1,734  |       | 4,301  |
| 1899 | 1,985  |       | 4,218  |
| 1900 | 2,113  |       | 4,215  |
| 1901 | 2,490  |       | 4,628  |
| 1902 | 3,034  |       | 5,136  |
| 1903 | 3,673  |       | 6,433  |
| 1904 | 5,323  |       | 9,484  |
| 1905 | 7,677  |       | 12,711 |
| 1906 | 11,724 |       | 12,937 |
| 1907 | 14,879 |       | 11,467 |
| 1908 | 21,789 | 1,990 | 11,283 |
| 1909 | 28,788 | 1,756 | 10,907 |
| 1910 | 34,468 | 1,828 | 13,315 |

<출전> 이현창, 2000, 『1882~1910년간 서울시장의 변동』 『서울상업사』, 368쪽, 태학사.

<표 3> 1885-1905년 조선의 무역상황(일반)

| 연도   | 총수입    | 총수출    | 상품수출  | 금수출   |
|------|--------|--------|-------|-------|
| 1885 | 1,671  | 529    | 388   | 141   |
| 1886 | 2,474  | 1,634  | 504   | 1,130 |
| 1887 | 2,815  | 2,192  | 804   | 1,388 |
| 1888 | 3,046  | 2,240  | 867   | 1,373 |
| 1889 | 3,377  | 2,215  | 1,233 | 982   |
| 1890 | 4,727  | 4,299  | 3,550 | 749   |
| 1891 | 5,256  | 4,055  | 3,366 | 689   |
| 1892 | 4,598  | 3,295  | 2,443 | 852   |
| 1893 | 3,880  | 2,616  | 1,698 | 918   |
| 1894 | 5,832  | 3,245  | 2,311 | 934   |
| 1895 | 8,088  | 3,834  | 2,482 | 1,352 |
| 1896 | 6,531  | 6,119  | 4,729 | 1,390 |
| 1897 | 10,067 | 11,008 | 8,974 | 2,034 |
| 1898 | 11,817 | 8,084  | 5,709 | 2,375 |
| 1899 | 10,227 | 7,931  | 4,998 | 2,933 |
| 1900 | 10,940 | 13,073 | 9,440 | 3,633 |
| 1901 | 14,696 | 13,395 | 8,462 | 4,933 |
| 1902 | 13,541 | 13,381 | 8,317 | 5,064 |
| 1903 | 18,219 | 12,934 | 9,478 | 3,456 |
| 1924 | 26,805 | 6,934  | 6,934 |       |
| 1905 | 31,960 | 6,904  | 6,904 |       |

<출전> 1896, 『한국개항기의 화폐제도 및 유통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물관.

<표 4> 1885-1893년간 조선의 수출입통계(전체)

단위(Mexican dollar)

|      | 총수입(a)     | 지수  | 총수출(b)     | 지수  | 무역수지(b-a)   |
|------|------------|-----|------------|-----|-------------|
| 1885 | 1,675,192  | 100 | 388,023    | 100 | -1,287,169  |
| 1886 | 2,477,442  | 148 | 504,225    | 130 | -1,973,217  |
| 1887 | 2,816,041  | 168 | 804,996    | 207 | -2,077,045  |
| 1888 | 3,052,641  | 182 | 867,058    | 223 | -2,185,583  |
| 1889 | 3,377,815  | 202 | 1,233,841  | 318 | -2,143,974  |
| 1890 | 4,727,965  | 282 | 3,550,478  | 915 | -1,177,487  |
| 1891 | 5,256,788  | 314 | 3,366,344  | 868 | -1,890,444  |
| 1892 | 4,598,479  | 275 | 2,443,739  | 630 | -2,154,740  |
| 1893 | 3,880,155  | 232 | 1,698,116  | 438 | -2,182,039  |
| 합계   | 31,862,518 |     | 14,856,820 |     | -17,005,698 |

<표 5> 1885-1905년 조선의 대일무역현황

| 연도   | 수입     | 수출     | 상품수출  | 금수출   |
|------|--------|--------|-------|-------|
| 1885 | 1,377  | 976    | 377   | 599   |
| 1886 | 2,064  | 1,399  | 488   | 911   |
| 1887 | 2,080  | 1,960  | 783   | 1,177 |
| 1888 | 2,196  | 1,810  | 785   | 1,025 |
| 1889 | 2,299  | 1,730  | 1,122 | 607   |
| 1890 | 3,086  | 3,750  | 3,475 | 275   |
| 1891 | 3,226  | 3,492  | 3,219 | 273   |
| 1892 | 2,542  | 2,637  | 2,271 | 366   |
| 1893 | 1,949  | 1,968  | 1,543 | 425   |
| 1894 | 3,646  | 2,688  | 2,050 | 638   |
| 1895 | 5,838  | 3,318  | 2,366 | 952   |
| 1896 | 4,294  | 5,198  | 4,396 | 802   |
| 1897 | 6,432  | 9,037  | 8,090 | 947   |
| 1898 | 6,777  | 5,714  | 4,522 | 1,192 |
| 1899 | 6,658  | 6,254  | 4,205 | 2,049 |
| 1900 | 8,241  | 10,297 | 7,232 | 3,065 |
| 1901 | 9,051  | 12,259 | 7,402 | 4,857 |
| 1902 | 8,689  | 11,553 | 6,549 | 5,004 |
| 1903 | 11,554 | 11,145 | 7,599 | 3,546 |
| 1904 | 19,007 | 5,697  | 5,697 |       |
| 1905 | 23,561 | 5,389  | 5,389 |       |

<출전> 오두환, 1896, 『한국개항기의 화폐제도 및 유통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33쪽  
일본의 대한 수출액은 최유길, 1973, 『이조개항 직후의 일조무역의 동향』 『아세아연구』15-3

<표 6> 1877-1904년 주요상품별 대일수출입액 구성비

| 연도   | 수출총액      | 쌀         |        | 콩         |        | 수출곡물<br>구성비(%) |
|------|-----------|-----------|--------|-----------|--------|----------------|
|      |           | 가액(엔)     | 구성비(%) | 가액(엔)     | 구성비(%) |                |
| 1877 | 58,759    | 1,959     | 3.3    | 4,155     | 7.1    | 10.4           |
| 1878 | 181,469   | 50,600    | 27.9   | 25,323    | 14.0   | 41.8           |
| 1879 | 612,174   | 358,812   | 58.6   | 99,123    | 16.2   | 74.8           |
| 1880 | 1,256,225 | 729,706   | 58.1   | 119,307   | 9.5    | 67.6           |
| 1881 | 2,230,296 | 381,283   | 17.1   | 196,695   | 8.8    | 25.9           |
| 1882 | 1,768,619 | 21,011    | 1.2    | 311,325   | 17.6   | 18.8           |
| 1883 | 1,656,078 | 45,625    | 2.8    | 293,955   | 17.8   | 20.5           |
| 1884 | 884,060   | 196       | 0.0    | 100,705   | 11.4   | 11.4           |
| 1885 | 388,023   | 15,691    | 4.0    | 28,884    | 7.4    | 11.5           |
| 1886 | 504,225   | 12,193    | 2.4    | 51,733    | 10.3   | 12.7           |
| 1887 | 804,996   | 90,071    | 11.2   | 335,415   | 41.7   | 52.9           |
| 1888 | 867,058   | 21,810    | 2.5    | 471,541   | 54.4   | 56.9           |
| 1889 | 1,233,841 | 77,578    | 6.3    | 645,429   | 52.3   | 58.6           |
| 1890 | 3,550,478 | 2,037,868 | 57.4   | 1,005,156 | 28.3   | 85.7           |
| 1891 | 3,366,344 | 1,820,319 | 54.1   | 913,939   | 27.1   | 81.2           |
| 1892 | 2,443,739 | 998,519   | 40.9   | 797,884   | 32.7   | 73.5           |
| 1893 | 1,698,116 | 367,165   | 21.6   | 628,324   | 37.0   | 58.6           |
| 1894 | 2,311,215 | 979,292   | 42.4   | 506,888   | 21.9   | 64.3           |
| 1895 | 2,366,427 | 305,196   | 12.9   | 923,695   | 39.0   | 51.9           |
| 1896 | 4,396,346 | 2,509,343 | 57.1   | 1,277,071 | 29.0   | 86.1           |
| 1897 | 8,090,039 | 5,556,700 | 68.7   | 1,710,211 | 21.1   | 89.8           |
| 1898 | 4,522,963 | 2,759,046 | 61.0   | 1,124,048 | 24.9   | 85.9           |
| 1899 | 4,205,382 | 1,417,842 | 33.7   | 1,974,863 | 47.0   | 80.7           |
| 1900 | 7,232,416 | 3,625,629 | 50.1   | 2,368,545 | 32.7   | 82.9           |
| 1901 | 7,402,116 | 4,195,309 | 56.7   | 1,881,014 | 25.4   | 82.1           |
| 1902 | 6,549,646 | 3,524,619 | 53.8   | 1,735,945 | 26.5   | 80.3           |
| 1903 | 7,596,624 | 4,224,721 | 55.6   | 1,528,834 | 20.1   | 75.7           |
| 1904 | 5,697,371 | 1,300,790 | 22.8   | 2,399,513 | 42.1   | 64.9           |

<출전> 하원호, 1997, 『한국근대경제사 연구』, 125쪽, 신서원

<표 7> 1885-1905년 조선의 대청무역현황

| 연도   | 수입    | 수출    | 상품수출  | 금수출   |
|------|-------|-------|-------|-------|
| 1885 | 301   | 9     | 9     |       |
| 1886 | 439   | 233   | 15    | 218   |
| 1887 | 732   | 228   | 18    | 210   |
| 1888 | 847   | 419   | 71    | 348   |
| 1889 | 1,085 | 482   | 109   | 373   |
| 1890 | 1,651 | 544   | 70    | 474   |
| 1891 | 2,044 | 551   | 136   | 415   |
| 1892 | 2,050 | 634   | 149   | 485   |
| 1893 | 1,906 | 627   | 134   | 493   |
| 1894 | 2,065 | 421   | 162   | 259   |
| 1895 | 2,120 | 492   | 92    | 400   |
| 1896 | 2,159 | 851   | 264   | 587   |
| 1897 | 3,536 | 1,822 | 736   | 1,086 |
| 1898 | 4,929 | 2,313 | 1,130 | 1,183 |
| 1899 | 3,471 | 1,569 | 686   | 883   |
| 1900 | 2,582 | 2,536 | 1,969 | 567   |
| 1901 | 5,618 | 936   | 800   | 136   |
| 1902 | 4,832 | 1,594 | 1,536 | 58    |
| 1903 | 5,359 | 1,549 | 1,549 | 0     |
| 1904 | 5,053 | 1,233 | 1,233 |       |
| 1905 | 5,945 | 1,501 | 1,501 |       |

<출전> 오두환, 1896, 『한국개항기의 화폐제도 및 유통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33쪽

<표 8> 1901-1905년 인천항 대청, 일 수입품 상황

(단위 : 엔)

|          | 면포 및 면서류  |           | 모제품    |        | 견직물류   |         |
|----------|-----------|-----------|--------|--------|--------|---------|
|          | 일본        | 청         | 일본     | 청      | 일본     | 청       |
| 1901년 1계 |           |           |        |        |        |         |
| 1901년 2계 | 531,040   | 296,510   | 7,116  | 13,699 | 10,304 | 357,786 |
| 1901년 3계 |           |           |        |        |        |         |
| 1901년 4계 | 669,090   | 389,382   | 69,210 | 7,621  | 13,278 | 239,753 |
| 1902년 1계 | 57,735    | 244,684   | 3,376  | 2,723  | 8,495  | 152,160 |
| 1902년 2계 | 193,258   | 239,460   | 4,027  | 8,076  | 6,593  | 201,818 |
| 1902년 3계 | 416,272   | 577,341   | 17,555 | 17,823 | 2,623  | 133,499 |
| 1902년 4계 | 1,003,779 | 337,369   | 12,475 | 4,747  | 11,580 | 132,713 |
| 1903년 1계 | 440,037   | 639,446   | 5,913  | 4,490  | 3,630  | 219,943 |
| 1903년 2계 | 422,472   | 242,174   | 5,267  | 5,910  | 6,148  | 162,484 |
| 1903년 3계 | 430,831   | 157,020   | 4,842  | 5,593  | 3,486  | 106,951 |
| 1903년 4계 | 756,451   | 490,866   | 14,361 | 14,101 | 12,473 | 171,049 |
| 1904년 1계 | 421,211   | 231,737   | 4,286  | 1,341  | 5,023  | 69,403  |
| 1904년 2계 | 392,670   | 217,186   | 8,415  | 1,226  | 5,768  | 165,827 |
| 1904년 3계 | 548,345   | 934,647   | 15,353 | 16,525 | 15,991 | 203,589 |
| 1904년 4계 | 1,005,514 | 1,215,924 | 26,748 | 12,593 | 61,305 | 375,568 |
| 1905년 1계 | 698,612   | 903,321   | 7,965  | 7,814  | 17,616 | 349,454 |
| 1905년 2계 | 434,935   | 42,060    | 19,039 | 8,274  | 13,752 | 120,946 |
| 1905년 3계 | 423,264   | 373,197   | 22,283 | 8,086  | 7,755  | 91,444  |
| 1905년 4계 | 947,668   | 603,373   | 24,371 | 15,134 | 15,746 | 120,198 |

|          | 잡직물    |         | 금속류     |         | 잡품        |         |
|----------|--------|---------|---------|---------|-----------|---------|
|          | 일본     | 청       | 일본      | 청       | 일본        | 청       |
| 1901년 1계 |        |         |         |         |           |         |
| 1901년 2계 | 8,270  | 272,119 | 83,580  | 29,573  | 536,686   | 229,468 |
| 1901년 3계 |        |         |         |         |           |         |
| 1901년 4계 | 1,773  | 1,181   | 82,160  | 17,563  | 684,284   | 437,278 |
| 1902년 1계 | 224    | 106,306 | 48,542  | 8,200   | 502,664   | 69,056  |
| 1902년 2계 | 1,412  | 311,035 | 40,092  | 20,504  | 727,545   | 378,187 |
| 1902년 3계 | 1,006  | 23,567  | 43,389  | 17,466  | 528,938   | 187,614 |
| 1902년 4계 | 5,320  | 649     | 38,103  | 14,492  | 948,626   | 144,340 |
| 1903년 1계 | 596    | 165,317 | 48,566  | 14,821  | 606,547   | 182,490 |
| 1903년 2계 | 1,741  | 312,210 | 69,589  | 21,568  | 784,848   | 376,878 |
| 1903년 3계 | 1,516  | 52,576  | 77,749  | 18,391  | 772,865   | 634,286 |
| 1903년 4계 | 1,462  | 799     | 80,821  | 16,052  | 1,244,428 | 442,834 |
| 1904년 1계 | 426    | 6,859   | 44,545  | 3,229   | 882,845   | 93,282  |
| 1904년 2계 | 9,551  | 219,399 | 65,574  | 11,698  | 2,139,270 | 163,405 |
| 1904년 3계 | 6,871  | 164,438 | 78,966  | 22,649  | 2,049,198 | 469,149 |
| 1904년 4계 | 7,695  | 1,478   | 101,162 | 14,374  | 2,671,733 | 521,165 |
| 1905년 1계 | 4,867  | 210,704 | 79,530  | 257,109 | 1,335,058 | 316,582 |
| 1905년 2계 | 7,468  | 367,860 | 135,279 | 10,676  | 1,450,778 | 196,724 |
| 1905년 3계 | 10,208 | 192,819 | 59,639  | 10,553  | 1,500,705 | 182,612 |
| 1905년 4계 | 5,021  | 1,260   | 43,177  | 2,257   | 1,727,266 | 256,431 |

<출전> 오두환

<표 9> 1901-1905년 인천항 국내 무역액

(단위 : 엔)

| 연도       | 수입조선산   | 수입외국산   | 수출조선산   | 수출외국산     | 재수출조선산 |
|----------|---------|---------|---------|-----------|--------|
| 1900년 4계 |         |         |         | 575,933   |        |
| 1901년 1계 | 383,658 | 18,533  | 13,755  | 221,184   |        |
| 1901년 2계 | 548,387 | 31,735  | 37,080  | 316,528   | 18,797 |
| 1901년 3계 | 538,618 | 5,668   | 18,708  | 314,605   | 14,522 |
| 1901년 4계 | 737,226 | 23,291  | 61,771  | 358,012   | 8,534  |
| 1902년 1계 | 766,329 | 6,744   | 17,385  | 115,201   | 10,721 |
| 1902년 2계 | 999,875 | 9,518   | 8,776   | 160,422   | 38,549 |
| 1902년 3계 | 448,508 | 42,267  | 44,755  | 243,170   | 30,840 |
| 1902년 4계 | 524,877 | 58,459  | 108,229 | 602,343   | 16,898 |
| 1903년 1계 | 687,794 | 14,869  | 74,867  | 312,255   | 19,804 |
| 1903년 2계 | 918,949 | 66,218  | 115,663 | 354,149   | 38,099 |
| 1903년 3계 | 744,101 | 83,489  | 80,987  | 359,040   | 45,666 |
| 1903년 4계 | 534,298 | 128,522 | 61,364  | 486,167   | 41,110 |
| 1904년 1계 | 741,063 | 23,196  | 36,700  | 335,268   | 37,192 |
| 1904년 2계 | 82,054  | 113,002 | 45,053  | 439,534   | 21,557 |
| 1904년 3계 | 745,235 | 58,803  | 19,912  | 791,207   | 43,557 |
| 1904년 4계 | 422,078 | 82,216  | 43,727  | 1,386,684 | 27,208 |
| 1905년 1계 | 648,155 | 66,443  | 23,452  | 599,976   | 14,213 |
| 1905년 2계 | 764,553 | 18,753  | 27,854  | 349,096   | 18,006 |
| 1905년 3계 | 339,527 | 68,318  | 10,542  | 446,547   | 15,389 |

<출전> 김윤희, 2002, 『대한제국기 서울지역 금융시장의 변동과 상업발전』, <부표2>

<표 10> 1900~1903년 서울지역 삼국상인의 주요 면제품 수입상황

(단위 : 파운드)

| 연도       | 방적사     |        |         | 화금건     |         |         |
|----------|---------|--------|---------|---------|---------|---------|
|          | 일본      | 청      | 조선      | 일본      | 청       | 조선      |
| 1900년 1계 | 72,545  | 825    | 65,120  | 46,914  | 59,935  | 35,108  |
| 1900년 2계 | 28,658  | 0      | 0       |         |         |         |
| 1900년 3계 | 413,590 | 27,790 | 24,510  | 282,110 | 42,925  | 6,915   |
| 1900년 4계 | 316,810 | 2,620  | 194,690 | 235,380 | 179,910 | 151,550 |
| 1901년 1계 | 72,545  | 825    | 65,120  | 108,270 | 61,170  | 51,525  |
| 1901년 2계 | 26,160  | 5,830  | 137,981 | 37,448  | 51,460  | 3,609   |
| 1901년 3계 | 62,250  | 3,890  | 284,965 | 23,040  | 103,760 | 172,360 |
| 1901년 4계 | 43,635  | 2,175  | 220,410 | 46,500  | 137,453 | 387,688 |
| 1902년 1계 | 50,700  | 1,540  | 54,546  | 54,000  | 70,950  | 84,387  |
| 1902년 2계 | 60,450  | 10,430 | 89,665  | 67,800  | 50,961  | 63,095  |
| 1902년 3계 | 121,650 | 14,000 | 150,045 | 186,975 | 49,235  | 143,935 |
| 1902년 4계 |         |        |         |         |         |         |
| 1903년 1계 | 324,355 | 1,340  | 7,090   | 412,370 | 34,080  | 19,030  |
| 1903년 2계 | 290,621 | 4,540  | 0       | 349,010 | 11,110  | 300     |

| 연도       | 양금건    |         |        | 합계      |         |         |
|----------|--------|---------|--------|---------|---------|---------|
|          | 일본     | 청       | 조선     | 일본      | 청       | 조선      |
| 1900년 1계 | 17,117 | 216,854 | 9,438  | 136,576 | 277,614 | 109,666 |
| 1900년 2계 |        |         |        | 28,658  | 0       | 0       |
| 1900년 3계 | 5,300  | 137,795 | 4,000  | 701,000 | 210,510 | 35,425  |
| 1900년 4계 | 26,430 | 473,138 | 20,500 | 578,620 | 655,668 | 366,740 |
| 1901년 1계 | 19,655 | 187,488 | 21,952 | 200,470 | 249,483 | 138,597 |
| 1901년 2계 | 14,152 | 174,323 | 14,152 | 77,760  | 231,613 | 155,742 |
| 1901년 3계 | 2,720  | 458,715 | 5,780  | 88,010  | 566,365 | 463,105 |
| 1901년 4계 | 890    | 624,996 | 28,435 | 91,025  | 764,624 | 636,533 |
| 1902년 1계 | 396    | 357,469 | 29,274 | 105,096 | 429,959 | 168,207 |
| 1902년 2계 | 0      | 285,405 | 2,325  | 128,250 | 346,796 | 155,085 |
| 1902년 3계 | 2,880  | 864,323 | 1,425  | 311,505 | 927,558 | 295,405 |
| 1902년 4계 |        |         |        | 0       | 0       | 0       |
| 1903년 1계 | 0      | 794,810 | 10,790 | 736,725 | 830,230 | 36,910  |
| 1903년 2계 | 17,472 | 290,384 | 3,320  | 657,103 | 306,034 | 3,620   |

<출전> 김윤희, 2002, 『대한제국기 서울지역 금융시장의 변동과 상업발전』, <부표2>

<표 11> 1905-1909년 조선의 무역현황(1)

| 연도   | 수출         |           |            | 수입         |       |            |
|------|------------|-----------|------------|------------|-------|------------|
|      | 조선산        | 외국산       | 계          | 외국산        | 조선산   | 계          |
| 1905 | 6,904,301  | 1,012,270 | 7,916,571  | 32,971,852 |       | 32,971,852 |
| 1906 | 8,132,844  | 769,543   | 8,902,387  | 30,291,445 |       | 30,291,445 |
| 1907 | 16,479,834 | 493,740   | 16,973,574 | 41,387,540 |       | 41,387,540 |
| 1908 | 13,463,947 | 649,363   | 14,113,310 | 41,021,436 | 4,087 | 41,025,523 |
| 1909 | 15,399,678 | 849,210   | 16,248,888 | 36,646,256 | 2,514 | 36,648,770 |

<출전> 통감부통계년보

<표 12> 1905-1909년 조선의 무역현황(2)

| 연도   | 수출입 합계     |            | 금은수출입     |           |           |
|------|------------|------------|-----------|-----------|-----------|
|      |            | 수입초과       | 수출        | 수입        | 수출초과      |
| 1905 | 40,888,423 |            | 5,515,967 | 1,151,322 | 4,364,645 |
| 1906 | 39,193,832 | 21,389,058 | 6,057,552 | 1,329,642 | 4,727,910 |
| 1907 | 58,361,114 | 21,389,058 | 5,547,243 | 1,992,186 | 3,555,057 |
| 1908 | 55,138,833 | 24,413,966 | 5,016,686 | 3,247,881 | 1,768,805 |
| 1909 | 52,897,658 | 20,399,882 | 6,959,349 | 921,125   | 6,038,224 |

<출전> 통감부통계년보

<표 13> 1905-1909년 개항장별 수입 상황

(단위 : 원)

|      | 인천         | 부산        | 원산        | 진남포       | 경성        | 군산      |
|------|------------|-----------|-----------|-----------|-----------|---------|
| 1905 | 16,803,768 | 8,219,328 | 3,954,785 | 3,200,999 |           | 362,981 |
| 1906 | 14,135,494 | 7,938,034 | 3,416,635 | 2,959,431 | 252,925   | 490,225 |
| 1907 | 20,751,854 | 8,722,805 | 3,100,720 | 3,904,823 | 1,273,302 | 915,244 |
| 1908 | 17,892,584 | 9,258,086 | 2,884,613 | 3,057,586 | 3,920,490 | 973,442 |
| 1909 | 13,350,584 | 8,307,944 | 2,686,691 | 3,215,383 | 4,902,640 | 913,436 |

|      | 목포      | 마산포     | 청진        | 성진      | 신의주       | 합계         |
|------|---------|---------|-----------|---------|-----------|------------|
| 1905 | 320,060 | 106,169 |           | 3,752   |           | 32,971,842 |
| 1906 | 413,582 | 390,430 |           | 122,226 | 172,463   | 30,291,445 |
| 1907 | 668,299 | 835,719 |           | 298,649 | 916,125   | 41,387,540 |
| 1908 | 659,102 | 385,160 | 436,289   | 371,315 | 1,186,856 | 41,025,523 |
| 1909 | 724,440 | 355,835 | 1,023,843 | 334,700 | 833,274   | 36,648,770 |

<출전> 통감부통계년보

<표 14> 1885-1904년 관세수입과 국고화 비율

| 연도   | 수입세       |      | 수출세     |      | 돈세     |     | 합계        | 국고화<br>비율 | 조세수<br>입비중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
| 1885 | 120,449   | 85.8 | 19,602  | 14.0 | 299    | 0.2 | 140,350   |           |            |
| 1886 | 432,757   | 94.0 | 24,812  | 5.4  | 2,708  | 0.6 | 460,277   |           |            |
| 1887 | 203,271   | 82.4 | 40,384  | 16.4 | 3,045  | 1.2 | 246,700   |           |            |
| 1888 | 219,759   | 82.6 | 42,330  | 15.9 | 4,124  | 1.5 | 266,213   |           |            |
| 1889 | 213,457   | 76.2 | 61,835  | 22.1 | 4,707  | 1.7 | 279,999   |           |            |
| 1890 | 327,460   | 63.6 | 178,552 | 34.7 | 8,587  | 1.7 | 514,599   |           |            |
| 1891 | 372,022   | 67.8 | 168,096 | 30.6 | 8,940  | 1.6 | 549,058   |           |            |
| 1892 | 308,954   | 70.5 | 123,212 | 28.1 | 6,247  | 1.4 | 438,413   |           |            |
| 1893 | 262,679   | 74.2 | 85,720  | 24.2 | 5,717  | 1.6 | 354,116   |           |            |
| 1894 | 357,828   | 74.4 | 115,779 | 24.1 | 7,399  | 1.5 | 481,006   |           |            |
| 1895 | 601,588   | 81.2 | 124,261 | 16.8 | 15,448 | 2.1 | 741,297   |           |            |
| 1896 | 448,137   | 64.8 | 226,342 | 32.7 | 17,304 | 2.5 | 691,783   | 73.0      | 17.1       |
| 1897 | 673,187   | 60.5 | 420,292 | 37.8 | 19,688 | 1.8 | 1,113,167 | 28.3      | 17.6       |
| 1898 | 740,420   | 74.0 | 237,732 | 23.8 | 22,295 | 2.2 | 1,000,447 | 48.4      | 19.8       |
| 1899 | 645,978   | 72.3 | 227,457 | 25.4 | 20,519 | 2.3 | 893,954   | 1.2       | 15.7       |
| 1900 | 688,806   | 62.8 | 384,525 | 35.0 | 23,885 | 2.2 | 1,097,216 | 5.2       | 14.8       |
| 1901 | 912,276   | 68.8 | 387,181 | 29.2 | 25,955 | 2.0 | 1,325,412 | 1.1       | 10.2       |
| 1902 | 813,620   | 67.5 | 354,969 | 29.5 | 36,185 | 3.0 | 1,204,774 | 4.1       | 12.5       |
| 1903 | 1,019,488 | 68.8 | 413,215 | 27.9 | 48,301 | 3.3 | 1,481,004 | 4.0       | 8.3        |
| 1904 | 1,500,103 | 81.3 | 292,010 | 15.8 | 53,236 | 2.9 | 1,845,349 | 3.6       | 6.0        |

<출전> 김순덕, 1986, 『1876-1905년 관세정책과 관세의 운용』, 『한국사론』15, 261-345쪽

<표 15> 개항장 입항 선박의 국적별 선적규모

(단위 : 톤)

|      | 한국        |         | 일본         |            | 청       |         | 기타        |           | 합계         |            |
|------|-----------|---------|------------|------------|---------|---------|-----------|-----------|------------|------------|
|      | 입항        | 출항      | 입항         | 출항         | 입항      | 출항      | 입항        | 출항        | 입항         | 출항         |
| 1893 | 41,466    |         | 304,224    |            | 14,376  |         | 27,441    |           | 387,507    |            |
| 1894 | 36,281    |         | 244,551    |            | 10,544  |         | 73,925    |           | 365,301    |            |
| 1895 | 40,619    |         | 167,762    |            | 498     |         | 197,251   |           | 406,130    |            |
| 1896 | 25,759    |         | 424,984    |            | 557     |         | 47,860    |           | 499,160    |            |
| 1897 | 59,491    |         | 462,904    |            | 937     |         | 77,943    |           | 601,275    |            |
| 1898 | 90,093    |         | 502,145    |            | 9,257   |         | 57,517    |           | 659,012    |            |
| 1899 | 98,104    |         | 656,950    |            | 2,595   |         | 56,695    |           | 814,344    |            |
| 1900 | 105,291   |         | 694,246    |            | 2,327   |         | 40,513    |           | 842,377    |            |
| 1901 | 122,228   |         | 807,190    |            | 3,330   |         | 52,561    |           | 985,309    |            |
| 1902 | 178,059   |         | 938,316    |            | 3,531   |         | 121,528   |           | 1,241,434  |            |
| 1903 | 160,894   |         | 1,365,701  |            | 10,616  |         | 208,794   |           | 1,746,005  |            |
| 1904 | 189,754   | 189,672 | 784,436    | 783,276    | 30,297  | 30,277  | 387,986   | 386,813   | 2,782,511  | 1,390,038  |
| 1905 | 198,712   | 198,040 | 1,369,322  | 1,368,586  | 28,409  | 28,464  | 404,181   | 402,174   | 3,997,888  | 1,997,264  |
| 1906 | 102,407   | 103,620 | 2,269,302  | 2,265,017  | 15,862  | 15,821  | 379,938   | 380,510   | 5,532,477  | 2,764,968  |
| 1907 | 74,788    | 74,032  | 2,669,003  | 2,674,033  | 14,149  | 14,109  | 330,731   | 334,869   | 6,185,714  | 3,097,043  |
| 1908 | 111,297   | 106,596 | 2,672,674  | 2,672,751  | 23,698  | 23,446  | 172,629   | 172,629   | 5,955,720  | 2,975,422  |
| 1909 | 118,486   | 114,867 | 2,808,518  | 2,807,389  | 22,333  | 22,307  | 84,711    | 84,011    | 6,062,622  | 3,028,574  |
| 1910 |           |         | 3,205,641  | 3,189,241  | 25,705  | 25,525  | 65,126    | 59,384    | 6,570,622  | 3,274,150  |
| 합계   | 1,753,729 | 786,827 | 22,347,869 | 15,760,293 | 219,021 | 159,949 | 2,787,330 | 1,820,300 | 45,635,408 | 18,527,459 |

<출전> 조선무역협회편, 1943, 『조선무역사』, 52-53쪽